

研究報告書 97-20

주요국가간 경찰의 임무 및 치안상태의 비교연구

연구자 : 정진환(인천대 부총장)

목 차

제 1 장 서 론	33
1. 연구목적	33
2. 연구내용 및 방법	34
3. 연구결과의 활용	36
제 2 장 주요국가의 경찰임무	38
제 1 절 영국경찰의 임무	38
1. 개 설	38
2. 영국경찰의 일반적 권한	42
3. 정부수준별 경찰임무	44
4. 경찰임무의 확충: 경찰 및 형사증거법	50
5. 경찰개혁: 경찰 및 치안법원법	52
6. 경찰관계법의 통합: 신경찰법	53
제 2 절 미국경찰의 임무	54
1. 경찰제도의 개요	54
2. 미국경찰의 일반적 임무와 권한	55
제 3 절 일본경찰의 임무	68
1. 국가개요와 경찰체제	68
2. 경찰조직과 일반적 임무	71
3. 기능별 경찰임무	75
제 4 절 한국경찰의 임무	82
1. 일반적 임무	83
2. 한국경찰의 기능별 임무	84

제 3 장	경찰활동과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	97
1.	경찰활동의 주요임무	98
2.	영국 경찰임무의 특색	100
3.	미국 경찰임무의 특색	106
4.	일본 경찰임무의 특색	114
5.	한국 경찰임무의 특색	120
제 4 장	국가별 치안상태	130
1.	통계적 치안상태	130
2.	체감적 치안상태	158
제 5 장	경찰임무 및 치안상태의 비교	181
1.	경찰임무의 비교	181
2.	치안상태의 비교	187
3.	순찰·인력·이미지에 관한 비교	193
3.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	196
제 6 장	요약 및 결론	208
1.	요 약	208
2.	결 론	215
Abstract	231
참고문헌	234
부 록	241

표 목 차

〈표 2-1〉 영국의 관할지역별 경찰조직	40
〈표 2-2〉 주요연방집행기관의 경비와 인력	66
〈표 3-1〉 영국경찰임무에 관한 배치비율	104
〈표 3-2〉 기능별 배치비율	105
〈표 3-3〉 미국경찰임무에 관한 배치비율	113
〈표 3-4〉 기능별 배치비율	114
〈표 3-5〉 일본경찰임무의 배치비율	119
〈표 3-6〉 일본경찰의 기능별 배치비율	119
〈표 3-7〉 한국경찰임무의 배치비율	124
〈표 3-8〉 한국경찰의 기능별 배치비율	125
〈표 3-9〉 세부적 방법경찰 협조업무 현황	126
〈표 3-10〉 방법경찰 업무협조 현황	129
〈표 4-1〉 살인 및 강도의 인지건수·발생률	132
〈표 4-2〉 살인 및 강도에 있어 총기가 사용되는 비율	132
〈표 4-3〉 살인 및 강도의 검거건수·검거율	133
〈표 4-4〉 살인 및 강도범의 남녀 비율	133
〈표 4-5〉 살인 및 강도범의 양형상황	134
〈표 4-6〉 살인 및 강도사범 수형자의 수용인원	136
〈표 4-7〉 살인 및 강도 인지건수·발생률	139
〈표 4-8〉 살인 및 강도의 검거인원·검거율	140
〈표 4-9〉 살인으로 검거된 자의 연령층별 및 남녀별 구성비	140
〈표 4-10〉 미연방지방재판소의 살인 및 강도의 양형상황	141
〈표 4-11〉 살인 및 강도범의 구금시설 수용인원 추이	142
〈표 4-12〉 일본 1995년 형법법 개황	144

〈표 4-13〉 살인 및 강도의 인지건수·발생률·검거율	148
〈표 4-14〉 살인 및 강도 발생건수·발생률	152
〈표 4-15〉 살인 및 강도 검거건수·검거율	152
〈표 4-16〉 살인 및 강도 검거건수에 있어 흉기사용 유무	153
〈표 4-17〉 살인 및 강도가해자의 속성별 인원	154
〈표 4-18〉 살인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55
〈표 4-19〉 살인 및 강도의 검찰 처리인원	156
〈표 4-20〉 살인 및 강도의 제1심 공판사건 처리인원	156
〈표 4-21〉 살인 및 강도의 구급시설 수용인원의 추이	157
〈표 4-22〉 설문조사 내용 구분	159
〈표 4-23〉 설문지 응답 현황	159
〈표 4-24〉 방법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영국)	160
〈표 4-25〉 범죄율에 대한 느낌 조사내용	161
〈표 4-26〉 치안상태(체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162
〈표 4-27〉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163
〈표 4-28〉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	164
〈표 4-29〉 방법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미국)	165
〈표 4-30〉 범죄율에 대한 느낌 조사내용	166
〈표 4-31〉 치안상태(체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167
〈표 4-32〉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168
〈표 4-33〉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	169
〈표 4-34〉 방법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일본)	170
〈표 4-35〉 범죄율에 대한 느낌 조사내용	171
〈표 4-36〉 치안상태(체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172
〈표 4-37〉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173
〈표 4-38〉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	174
〈표 4-39〉 방법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한국)	175
〈표 4-40〉 범죄율에 대한 느낌 조사내용	176

〈표 4-41〉 치안상태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177
〈표 4-42〉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178
〈표 4-43〉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	179
〈표 5-1〉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	182
〈표 5-2〉 주요국가 경찰임무의 공식적 배치비율	183
〈표 5-3〉 주요국가의 경찰기능별 배치비율	183
〈표 5-4〉 경찰임무의 범위에 대한 견해	184
〈표 5-5〉 경찰임무의 수행과 경찰권에 대한 견해	185
〈표 5-6〉 경찰관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185
〈표 5-7〉 경찰기능 중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할 부분	186
〈표 5-8〉 경찰의 대민봉사행정에 있어서의 근무형태	187
〈표 5-9〉 살인 및 강도의 인지건수·발생률·검거율	189
〈표 5-10〉 살인 및 강도의 발생율·검거율에 대한 평균치	190
〈표 5-11〉 발생율·검거율의 평가표시 비교	190
〈표 5-12〉 방법체계의 비교	191
〈표 5-13〉 체감적 범죄율의 비교	191
〈표 5-14〉 체감적 치안상태의 비교	192
〈표 5-15〉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192
〈표 5-16〉 지역순찰에 대한 인식조사	193
〈표 5-17〉 경찰인력에 대한 인식조사	194
〈표 5-18〉 경찰상에 대한 인식	195
〈표 5-19〉 경찰상 개선을 위한 방안	196

그림 목 차

〈그림 2-1〉 일본경찰 기구표	72
〈그림 2-2〉 경찰청 기구표	84
〈그림 2-3〉 서울지방경찰청 기구표	85
〈그림 2-4〉 시·도 지방경찰청 기구표	85
〈그림 4-1〉 살인인지건수의 추이	135
〈그림 4-2〉 형법범의 인지건수·검거인원·발생률의 추이	145
〈그림 4-3〉 형법범의 인지건수·검거인원의 죄명별 구성비	146
〈그림 4-4〉 살인의 인지건수·검거율·발생률의 추이	147
〈그림 4-5〉 강도의 인지건수·검거율·발생율의 추이	148
〈그림 5-1〉 형법범 범죄인지건수의 추이	188

요 약 문

1. 研究의 目的 內容 方法

가. 研究目的

현대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위기요인의 제거나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기능의 하나인 治安行政을 담당하는 警察의 역할도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으로는 地方自治가 실현되고 밖으로는 WTO에 의한 시장개방, OECD 가입에 따른 새로운 경제체제 등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위와 같은 政府의 역할과 사회변동에 따라 질서유지와 법의 집행을 주임무로 하는 우리 警察의 역할이나 임무도 마땅히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이 조명하고 재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警察任務와 治安狀態 등을 비교·고찰코자 하는 것이다.

나. 研究內容 및 方法

(1) 研究內容

먼저 비교연구를 위한 주요국가로서는 英國, 美國 그리고 이웃나라 日本 등 3개의 외국과 우리나라 등 모두 4개국을 택하여 警察任務와 治安狀態를 비교·고찰코자 한다.

비교·고찰의 주요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첫째 국가별 警察任務의 내용이다. 대륙법체계의 국가이건, 영미법체계의 국가이건 어느나라의 警察이나 現代警察의 기본기능은 秩序維持와 법의 執行 그리고 奉仕기능이라는 3대기능으로 요약되지만 이같은 기본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警察任務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적 차원에서 법치행정의 원리하에 경찰기능을 소극적 작용에 국한하려는 행정법학적 警察任務와 현대 행정국가적·복지국가적 국가관에 의한 행정학적 警察任務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현실적 治安狀態와 연계하기 위하여는 행정학적 警察任務를 전제로 연구를 전개코저 한다. 따라서 국가별로 법규상 주어진 警察任務는 물론 현실적으로 분담되어져 있는 警察任務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별 治安狀態의 평가이다. 개별적 국가마다의 治安狀態는 모두 상이할 것이며, 그 이유는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 사회·문화적 요인, 국민적 정서나 教育水準 그리고 生活樣式이나 遵法精神 등 모든 것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체제론적 의미에서의 투입요소가 모두 상이하므로 현실적 산출인 治安狀態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연구자는 국가별로 治安狀態를 파악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두가지 접근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그 하나는 警察任務와 관련된 각종 통계상에 나타난 治安狀態 즉 統計的治安狀態의 파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거나 느끼고 있는 治安狀態 즉 體感的治安狀態의 파악이다.

셋째, 국가별 警察任務와 治安狀態의 상관관계의 고찰이다. 즉 각 국가의 제도적 또는 현실적 警察任務와 治安狀態는 서로 연관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治安狀態(위기요인이 없는 평화적 치안상태)를 위하여는 警察任務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이어야 하나 하는 점들을 연구고찰 할 것이다. 민주성이나 자치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自治警察體系를 취하고 있는 英國이나 美國, 능률성이나 합법성을 제일의 원리로 하는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警察임무 그리고 양대체계의 장점만을 고루 취하고 있는 절충형의 日本警察의 임무 등 그 집행력이나 범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일정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국가별 治安狀態 차이의 원인분석이다. 국가에 따라 治安狀態는 統計的治安狀態나 體感的治安狀態가 상이할 것이며, 따라서 그 원인을 추출하고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한 警察의 任務과 治安狀態간의 相關關係도 더욱 분명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 研究方法

본 연구는 주로 文獻調查, 設問調查 그리고 대담과 토론을 병행하여, 比較論的接近方法에 따라 연구를 전개하였다. 문헌조사를 위하여는 현재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문헌이나 자료를 얻는 외에 외국 현지로부터 직접 자료를 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의 자료를 입수하였다.

국가별 警察任務의 내용, 統計的治安狀態 등의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였지만, 국가별 體感的治安狀態, 警察任務과 治安狀態의 相關關係 등의 연구에는 文獻調查외에 設問調查의 방법이 병행되었다. 설문조사방법은 국내에서는 研究者가 직접 실행하였지만 외국에서의 설문조사는 현지에 거주하는 親知와 유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2. 研究內容의 要約

이제 본연구의 마무리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고찰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의 경찰임무, 치안상태 그리고 양자와의 관계중에서 핵심부분과 특징적인 면만을 간추려 본 다음 결론으로서는 바람직한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가. 경찰임무

(1) 영 국

영국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종주국으로서 자치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The Greater London)과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형식상 자치경찰제이나 중앙의 내무성장관이 아닌 스코틀랜드성 장관의 지휘하에 있다. 경찰체제상의 특색으로는 관리기구로서 경찰위원회가 존재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

경찰임무를 보면 사법사무도 경찰의 고유임무이며 임무의 배치는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그리고 부수적 업무등 기능별로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다.

경찰임무와 관련된 변화로는, 첫째는 제2차 대전이후 봉사적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능률화의 추구(경찰기관의 통합, 1984년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 셋째는 경찰통제의 강화(1994년의 경찰 및 치안법원법) 등을 들 수 있다.

(2) 미 국

미국경찰은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타운(또는 타운십)경찰(Constable), 도시경찰(City police), 군 보안관(County sheriff), 주경찰(State police) 그리고 연방법집행기관(Federal Law-Enforcement agency)의 5종류의 경찰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로서의 도시경찰이 주축이며, 주경찰과 연방법집행기관은 국가경찰 또는 국가의 법집행기관이다. 이러한 공경찰 외에도 미국에서는 민간 경비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이 크게 발전되어 있어서 질서유지기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임무는 법집행 업무를 우선으로 하나 실제 공식적인 임무배치 비율은 봉사업무가 가장 많고 이것은 미국시민들의 봉사업무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특이한 것은 미국경찰에게는 행정적인 부수업무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다.

경찰임무와 관련된 변화현상으로는 첫째 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 둘째 사회통제적 역할의 증대, 셋째는 법집행력의 강화(60년대의 범죄와의 전쟁, 80년대의 마약과의 전쟁, 90년대의 삼진법<三振法 : Three-strike-out Law>등)를 들 수 있다.

(3) 일 본

일본경찰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륙법체계로 출발하여 2차대전 직후에는 미국식 자치경찰제(1947년의 구경찰법)를 취하였다가 다시 질충식체제(1954년의 신경찰법)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都道府縣의 대단위 자치경찰 조직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찰을 병행운동하는 이원적조직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관리기구로서는 영국식 공안위원회 제도를 택하고 있다.

경찰임무는 질서유지업무에 배치된 비율이 가장 높고 영미의 경우와는 달리 봉사업무나 부수적인 행정업무에도 높은 비율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범집행에 있어서는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다.

경찰임무의 특색으로는, 첫째 60년대 이래로 봉사적 임무가 계속해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경찰임무의 수행방식은 윤리교사적 성격을 띄고 있어서 「술선수범」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70년대 이래 사전적 예방적 업무에 「민간조직(경비회사)」활용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4) 한 국

한국은 1894년 갑오경장기에 근대경찰이 도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륙법체계의 일원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일제하에서는 헌병경찰제도와 비밀경찰제(고등계)를 체험하였으며, 광복이후 군정경찰, 그리고 국립경찰시대를 맞아 치안국, 치안본부 시대를 거쳐, 1991년 경찰법제정과 함께 경찰청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임무는 전형적인 대륙법체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능률성과 합법성의 추구를 주된 이념으로 하여 왔으며 특히 일제하에서 횡행하였던 「정치 행정의 경찰의존성」은 아직도 그 잔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행정지원 등의 부수적 업무가 너무 많고 「시국치안」이니 「전경시대」니 하는 용어들도 모두 그같은 인상을 질게하고 있다.

경찰임무와 관련된 변화현상으로는, 첫째 자치성 내지는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내무부 외청으로의 독립, 경찰위원회 제도의 도입 등), 둘째 방법체제의 개선(파출소 운영의 효율화, 순찰방식의 변화), 셋째 민간조직의 활용범위 확대(용역경비법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나. 치안상태

(1) 영 국

통계적 치안상태를 보면 흉악범죄(살인 강도)의 발생율은 최근 20여년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1970년과 비교하면, 1994년에는 약 9배가 증가하였다. 강도중에서도 특히 노상강도 사범이 늘고 있어서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범죄가 증가하여, 경찰력의 강화를 위해서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을 제정하더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테러범죄, 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 등이 날로 늘어나 급기야는 1994년 11월에 「형사사범 및 공공질서법」에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용,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시민보호를 위한 포괄적 대책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수치상으로 보아 발생율과 검거율 모두 다섯단계 (양호·평온·보통·불안·공포)중 중간인 「보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감적 치안상태를 보면 방법체계에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으며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도 좋아서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있다.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는 조사대상자의 60%가 「나아졌다」고 답하고 있다.

(2) 미 국

먼저 통계적 치안상태에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25년간의 살인발생율을 보면, 1980년과 1991년을 피크로 대체로 8%에서 10% 사이에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강도의 발생률도 그와 비슷하게 1970년이래 25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 중에서도 1975년과 1981년 (발생율 250.6%)이 두개의 피크가 되고있다. 그 후 1991년에 이르러 27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1992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가지 범죄대책중 두드러진 것은 80년대 이후의 중벌주의이다. 연방법으로서의 1984년의 「총합범죄규제법」, 1994년의 「폭력범죄단속및 범집행법(Violent

Crime and Law Enforcement Act)」 그리고 1996년의 「테러리즘 대책법」등은 모두 중벌주의의 산물이며 또한 연방뿐만아니라 많은 주에서도 중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국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흉악범죄를 기준으로 123.4%의 발생율로서 「공포」상태이며, 검거율은 44.4%로서 「보통」상태이다.

한편 미국의 체감적치안상태는, 방법체계에 대하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높은 범죄 발생율에도 불구하고 치안상태에 대하여는 별다르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다. 거주지 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치안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80년대에 비하면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의 치안정책과 경찰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3) 일 본

통계적 치안상태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흉악범죄는 종전 직후 10수년간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1955년을 정점으로 그 후로는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최근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약간의 상승기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근래 외국인에 의한 범죄, 총기사범의 증가 등 새로운 양상에 기인하는 듯 하다.

살인과 강도를 나누어 요약해 보면 먼저 살인의 경우 인지건수는 1954년 3081건을 정점을 이루어 전후 혼란상태를 엿보게 했다. 그 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 1975년 이후는 1000건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기미를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의 추이를 보면 96%에서 98%선까지 달하고 있다.

강도의 인지건수는 1948년의 1만 854건이 피크로서 가장 많았다. 195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1000건대로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는 다시 약간의 증가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10년간의 강도 검거율을 보면 1992년에는 60%밖에 되지 않았다가 이듬해부터 차츰 나아져 70%내지는 80%까지 상승하여 1995년에는 82.7%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흉악범죄 기준으로, 발생율 1.55%로서 「양호」, 검거율

도 87.0%로서 「양호」로 평가된다. 영미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좋은 수치이다.

한편 치안상태를 보면, 방법체계에 대해서는 영·미보다 떨어지지만 대체로 높은 신뢰도(79.0%)를 보이고 있으나, 범죄율에 대한 느낌이나 치안상태에 관한 느낌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자기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고 있다. 다만 80년대에 비하여는 조사대상자의 80%가 「달라진 것이 없다」, 「더 나빠졌다」로 답하여 현재보다는 80년대가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였던 모양이다.

(4) 한 국

먼저 통계상으로 치안상태의 내용을 요약한다.

흉악범죄의 발생상황은, 살인에서 발생건수는 1993년의 806건, 94년의 705건을 제외하고는 600건을 전후로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발생율을 보면 1.6%내외로 거의 일정하다. 강도에서는 발생건수와 발생율이 다함께 1990년과 1994년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94년의 강도 발생건수는 4,469건, 발생율 10.1%이다.

다음 흉악범죄의 검거내용은, 살인의 경우 93년에는 877건(검거율 108.8%)이었으나 94년에는 720건(검거율 102.1%)으로 감소하였다. 강도의 경우는 93년에 3,873건(검거율 99.2%)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수치를 놓고 살인과 강도의 평균치로 평가할 때, 1994년의 경우 흉악범죄의 평균 발생율은 5.85%로서 「양호」하며, 검거율도 100.6%로서 역시 「양호」하다. 이같은 수치는, 발생율은 일본다음으로 우리가 양호하며, 검거율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양호한 수치이다.

한편 체감적 치안상태는 다음과 같다.

방법체계에 대하여는 영·미·일의 경우처럼 높은 신뢰도(62.0%)를 보이나, 범죄율이나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도 판이하게 많은 사람들(71.1%)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도 「달라진 것이 없다」가 42.5%로서 사회적 불안 심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활동의 평가에 있어서도 영·미·일과는 대조적이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미·일 제국에서는 모두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대체로 30%선 내외의 지지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 부분은 각기 7%에 불과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일 잘한다고 여기는 활동은 「테모진압」이 53.5%로 첫째요, 「교통정리」가 17.5%로 둘째이다.

다.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

(1)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논점

경찰임무와 관련된 주요 국가의 공통된 논점으로는 첫째, 치안정책은 경찰기능과 그에 따른 임무의 내용을 결정하며 둘째로는, 경찰임무의 범위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공공복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항상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따라서 치안정책은 행정목적의 의식해야 하며, 임무의 범위는 행정법학자들의 주장(소극적작용)을 참고하게 된다.

치안상태의 논점은 첫째, 시민 개개인의 심리적 안전감은 치안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점 즉, 시민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둘째는 치안상태와 경찰의 대응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바, 즉 범법행위가 있을 때 사회의 안전을 책무로 하는 경찰의 대응력(질서회복과 범의 집행)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 치안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안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측정치인 이른바 통계적 치안상태와, 이와는 별개로 시민 개개인의 주관적이며 경험적 판단인 체감적 치안상태가 있다.

(2)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호작용

1) 경찰임무가 치안상태에 미치는 영향

i) 경찰임무의 배치비율과 치안상태 : 경찰임무의 공식적 배치비율이 기능별로

균형을 이룰 때 치안상태는 양호하다.

ii) 법집행력의 강화와 치안상태 : 법집행 분야를 강화한다고 해서 치안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2) 치안상태가 경찰임무에 미치는 영향

i) 치안상태의 악화와 경찰임무 : 치안상태의 악화는 경찰의 법집행력을 자극하지만 임무의 범위나 수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ii) 치안상태의 안정과 경찰임무 : 치안상태가 안정되면 현대적 기능인 봉사임무의 영역이나 활동이 확대된다.

(3) 경찰임무와 통계적 치안상태와의 관계

1) 형사정책적 연관성 : 통계적 치안상태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통계자료와 분석결과는 형사정책의 방향은 물론 그에 따른 경찰임무의 조정이 가능하다.

2) 공식적 통계자료의 한계성 : 공식적 통계는 '숨은범죄'를 나타내 주지 못한다. 경찰에 인지된 범죄건수는 실제로 발생한 건수보다 더 적다. 또한 범죄통계는 치안정책, 법원정책, 여론 등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수치임으로 범죄지수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범죄발생의 예고성 : 범죄에 관한 통계자료는 범죄동향과 유사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찰관의 임무수행을 도와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와 사회 안전을 도모한다.

(4) 경찰임무와 체감적 치안상태와의 관계

1) 치안정책적 연관성 : 경찰임무와 통계적 치안상태간에는 형사정책적 연관성이 있다면, 경찰임무와 체감적 치안상태간에는 치안정책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에 경찰력을 이용하려는 이른바 시국치안의 임무가 부각되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치안상태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2) 방법체제와의 연관성 : 체감치안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기 사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직접체험하는 안전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전을 도모하는 파출소, 경비, 순찰 등의 방법체제는 체감적 치안상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3) 근무행태와의 관련성 : 경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태도 즉 근무행태 또한 체감치안과 관련이 있다. 근무행태가 「친절」할 때 느끼는 감정과 「고압적」일 때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를 것이며 그같은 감정은 체감치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3. 結 論

위의 「요약」부분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과 분석결과가 어느정도 정리되었을 것이나, 끝으로 궁극적 목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찰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경찰임무의 내용, 범위, 수행방법 그리고 치안상태의 특성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 바람직한 경찰임무

(1) 경찰임무의 내용과 배치비율

‘경찰임무의 내용은 전통적기능이 우선해야 하며 임무배치비율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경찰임무는 기능상으로 보면 전통적기능인 질서유지와 법의 집행 그리고 현대적기능인 봉사임무와 부수적임무로 분류된다. 양대기능 중에서 어느 부분에 치중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치안정책에 좌우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영국이나 일본 등 비교적 치안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의 예를보면 전통적기능 중 질서유지 임무에 치중(기능별배치비율이 영국은 28.37%, 일본은 33.72%)하면서도 현대적기능인 봉사업무나 부수업무에도 균형있게 업무가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봉사업무 39.90%, 부수업무 1.50%에 불과하며 또 한국

의 경우는 봉사업무 5.30%, 부수업무 40.14%로써, 미국은 봉사업무쪽에, 한국은 부수업무쪽에 쏠려 있다. 요컨대 바람직한 업무배치비율은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그리고 부수업무의 4가지 기능에 대체로 4분의 1씩 균형있게 나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경찰임무의 범위

‘소극적 야경 목적을 위한 임무외에 적극적 복리목적을 위한 임무도 어느정도까지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논한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행정법 학자들이 「현대국가에 있어서 경찰행정과 급부행정(급부작용 내지는 규제작용)과를 엄격히 제한 지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근대 자유주의시대 이래의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과 현대의 적극목적적 행정작용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원칙에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진대, 경찰의 개념은 여전히 공안의 유지를 위한 소극적 작용으로, 그리고 그 임무도 야경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하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자칫하면 남용되기 쉬운 공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자유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행정국가적 국가목적(복지국가 봉사국가)에 따라 일반 행정이나 경찰행정 모두가 「어느정도」까지의 적극적 복리목적을 위한 임무를 인정하기 않을 수 없다. 「어느정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은 역시 행정목적이나 치안정책에 의존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자유주의를 지상 이념으로 하는 영·미에 있어서도 급부작용 내지는 규제작용이 증가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경찰의 임무범위는 소극적 야경목적을 위한 임무외에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제작용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경찰임무의 범위에 관한 행정학적 논리는 행정법학적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경찰작용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주축으로 20개 가까운 법령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 법령을 하나의 작용법으로 체계화하여 통합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바, 새로운 경찰작

용법 제정시에는 위에서 제시한 경찰임무의 범위가 실정법상에 반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임무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바로 「一般的(概括的) 授權規定」의 설치문제이다.

一般的 수권규정에 관한 행정법학적 논리는 다음과 같다.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법규에 의한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률의 우위 및 법률의 유보원칙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우기 행정중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고 개인에 대한 명령 강제권을 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경찰권이야말로 법률유보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이 경찰권 발동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조항을 통하여 아무리 구체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하여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방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우발적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협을 미리 예측하며 그에 대비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며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찰권 발동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반조항(개괄조항)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울러 오늘날 여러나라의 경찰법이 임무조항외에 수권조항을 두고 있고 개별조항을 매우 보충적 수권조항으로서 일반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미구에 제정될 우리나라의 경찰작용법에도 제2차적, 보충적 수권규정으로 일반조항을 설치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반조항은 경찰의 소극적 임무수행뿐만 아니라 적극적 임무수행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기능적 측면에서의 경찰임무의 재조정

‘질서유지기능은 민간조직의 활용을 확대하고, 범집행 기능에는 독자적 수사권이 필요하다. 또 봉사기능은 늘려야하며 반대로 부수적기능은 줄여가야 한다.’

1) 민간조직의 활용

영미법계의 여러나라들은 원래 자구사상(自救思想 : Vigilantism,의 원리아래 자치경찰로서 출발한 나라들로서 일찍부터 민간조직으로서의 私警備制度(Private

Security System) 또는 민간경비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이 발달하였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전 1740년경부터 상인들이 상품보호를 위하여 사경비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1849년 이른바 「골드러쉬(Gold Rush)」를 계기로 민간경비제도가 탄생하여 그 후 크게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질서유지 기능에는 없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1960년대부터 동경올림픽에 민간조직을 활용함을 계기로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대 6.25동란 직후 미군에 의한 용역경비에서 비롯하여 70년대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되더니 199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활동의 영역도 확대되고 「경비지도사」제도도 탄생하였다. 1996년말 현재 민간경비회사의 숫자가 1000개를 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과 정부당국의 소극적 배려로 인해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경찰의 양대기능 중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질서유지기능에는 되도록 민간조직을 활용하고 정규경찰은 좀더 전문화하여 법집행기능이나 봉사기능에 전념토록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좀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질서유지기능중 경비·방범·순찰업무의 상당 부분은 그 임무를 민간조직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 독자적 수사권

법집행은 경찰의 기본적기능이다.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필요하다.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의 지위는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는 수사기관과의 권력분립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수사기관마다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이룬다. 이에 반하여 국가권위주의 절대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화되는 경향을 띄게 되므로 권력자의 명을 받들어 획일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검찰총수를 정점으로 하여 일선 사법경찰 직원에까지 수직적 상명하복관계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의 임무가 질서유지외에 사법사무도 경찰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추권을 행사한

다.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언과 원조를 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범죄수사 구조상의 제도적·기구적 특징으로서는 50개주의 독특한 법제도에 따라 역할 지위 권한관계 등이 모두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느 주에서나 수사의 주체, 수사의 개시권은 경찰에 있으며 몇몇 특수한 경우의 검찰에 의한 지휘권외에는 양자는 보완적 상호작용관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대륙법체계를 도입하여 권위주의적 수사구조와 함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차대전후 미국식 자치경찰제 그리고 다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혼합한 질충식제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수사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警察法과 刑事訴訟法을 개정하여 警察에 獨自의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고 경찰은 제1차적 수사주체가 되고 검찰과는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영·미·일의 수사체계는 이상과 같거니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형적인 대륙법 체계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많은 부분이 민주화과정을 겪어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수사구조는 구태의연하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에 대하여는 그 총수를 국민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대통령이 임명) 소송제기에 있어서도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 같은 민간인에 의한 민주적 견제기구도 없음으로 검찰이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독선화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 같은 현상은 수사과정에 있어서 변호권의 보장도 충분치 아니하고 또 수사활동에 대하여 사법적 규제도 미비한 상황아래서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약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며 또 정치권력이나 정실에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게 독자적수사권을 맡길수 없다는 생각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경찰이 그의 기본적인기능을 회복하고 그 위상을 높임으로서 얻어지는 국가적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미·일의 선진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경찰에게 독자적수사권이 부여 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 혼란을 방지하고 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개선방향도 가능할 것이다.

3) 봉사기능의 확대와 부수적기능의 축소

경찰임무의 공식적 배치비율이 기능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함은 이미 논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같은 균형적 비율을 준거로 하여, 우리나라 경찰기능의 배치 비율 <표5-3>을 보면, 법집행 34.78%, 질서유지 19.78%, 봉사업무 5.30%, 부수업무 40.14%로서 봉사업무에 배치된 비율이 너무도 보잘 것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봉사기능은 현대 행정국가(봉사국가 복지국가)의 일반적 행정목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차대전후 선진제국은 경찰의 봉사기능에 역점을 두어 위의 <표5-3>에서와 같이 영국은 27.54%, 미국은 39.90% 그리고 일본은 22.75%의 비율로 봉사기능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물론 경찰의 봉사기능 하나로서 전체적인 경찰임무와 치안상태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봉사기능은 너무도 보잘 것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수업무 즉 행정기능이나 행정협조기능은 어떠한가, 위의 <표5-3>을 보면, 영국은 20.08%, 미국 1.50%, 일본 26.59%, 그리고 한국은 40.14%로 나타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부수적 업무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미국은 봉사적 업무를 중시하고 그의 행정적 업무는 아예 무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반대로 봉사업무가 무시되고 부수적 업무(행정협조업무)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전통적인 기본기능(법집행 질서유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제3장 경찰활동과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에서 논하였지만은 부수업무의 내용을 보면 방범경찰 대상업무에 가장 많고 또 타행정부처에 대한 협조업무도 적지 않다. 92년말 현재 방범경찰 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무려 44종에 달하며 또 타부처 협조업무는 12개부처 6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같이 부수적 업무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대체로 영미법계 국가들 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더 많은 부수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에는 첫째, 일체치하의 헌병경찰시대의 이른바 「정치행정의 경찰의 존성」의 잔재가 광복후에도 상당기간 답습되어 왔다는 점 둘째, 국립경찰시대에도 역대정권이 능률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점 그리고 셋째로는 제3공화국 이래 국가정책이 국가안보와 시국치안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 등의 원인으로 행정협조기능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고 하겠다. 경찰기능의 개혁적 차원에

서 업무의 내용과 배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부수적임무를 과감히 축소하여 축소시킨 만큼의 경찰력이 질서유지 임무와 봉사임무에 투입되는 이른바 민생치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경찰임무에 대한 기대범위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4) 임무수행방식(근무형태)의 개선

‘경찰임무는 집행과정에서 특수성이 있으나, 그 방식은 적어도 사무적이어야 하며, 일정한 정도의 재량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1) 임무수행(집행과정)상의 특수성

경찰임무는 일반 행정업무와 비교할 때 그 수행(집행)에 있어 몇가지 특수성이 있다. 첫째는, 규제작용으로 인한 논란과 갈등의 여지가 많다. 즉 치안정책은 대체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고 반발의 강도도 높게 나타난다. 둘째는 임무수행에 있어 집행수단이 강제적 직접적이어서 집행활동의 가시성(可視性)이 높다. 일반 시민들과 구분되는 제복의 착용은 범죄 억제력을 가져오면서 활동의 가시성을 더욱 높이는 작용을 한다. 가시성이 높은만큼 집행과정이나 결정사항이 공개되어 비판적 평가를 받기 쉽고 경찰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 쉽다. 셋째는 규제대상 활동의 다양성 돌발성 때문에 집행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즉 치안정책의 대상집단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게다가 규제대상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그 발생이 갑작스러우면서도 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해결과정 즉 임무수행 과정에는 예기치 않은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근무형태

위와같은 경찰임무수행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미법계의 국가이건, 대륙법계의 국가이건 경찰관의 근무형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제5장, 경찰의 대민 봉사행정에 있어서의 근무형태에 관한 설문조사(표5-8)

에서, 영국은 「친절하다」가 50.0%, 미국은 역시 「친절하다」가 41.3%, 일본은 「사무적이다」가 58.0%, 그리고 한국은 「고압적이다」가 48.5%로 나타나 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영·미의 경찰은 대체로 친절하다는 것이며,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국민성으로 보아 매우 친절할 듯 싶은데 친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친절하다」는 1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압적이다」가 「매우 고압적이다」를 합하여 58.5%로 나타나 있고 「친절하다」는 4.0%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생각컨대, 경찰업무의 집행과정이 아무리 특별나고 어렵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미의 경우처럼 「친절」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사무적」이란 평가까지는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찰의 근무행태에 대한 평가가 「사무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58%, 「친절하다」가 11.0%인바, 대체로 사무적이기만 해도 경찰전체에 대한 신뢰나 이미지에 좋은 반응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무생태와 관련하여 꼭 부연해야 할 것은, 「경찰임무의 수행과 경찰권에 대한 견해」라는 설문조사 <표5-5>에서 「경찰은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가 영국에서는 29.0%, 미국은 20.0%, 일본은 23.05, 대체로 영·미·일은 교육의 필요성이 2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61.0%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관의 근무행태는 적어도 고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사무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개선은 교육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교육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3) 임무수행과 자유재량권

경찰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자유재량권의 문제이다.

최근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범죄의 잔인성이나 지능화가 더해감에 따라 법의 규정이 이를 모두 '커버'할 수 없음에 따라 상당부분이 때로는 법의 위임에 따라, 때로는 위임이 없이도 실무경찰관의 상황에 따른 즉각적 판단이나 결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이른바 경찰재량권 행사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다.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는 自由裁量權을 “공무원과 정부기관 자신이 깊이 생각한 판단과 양심에 따라 특수한 상황하에서 행동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경찰활동들은 경찰관들의 최선의 행동방향을 요구하는 상황들을 수반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종종 치명적이거나 인권에 관계되는 것들로서 재량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재량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재량권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즉 無統制의 裁量權(uncontrolled discretion)의 문제이다. 경찰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문제는 재량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일정량의 자유재량권은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적절한 요소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인간의 행태는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며 따라서 경찰관들은 상황마다의 독특한 특성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자유재량권이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제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경찰재량권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法執行과 司法行政에 관한 大統領委員會(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형사재판의 기준과 목표에 관한 國家諮問委員會(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그리고 美國辯護士會(The American Bar Association) 등의 모든 관계단체들은 한결같이 경찰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요컨대, “경찰은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유재량권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허다함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정리 요약될 수 있다.

그러면 선진국의 경우와도 다른 우리나라 경찰체제의 운영과정, 환언하면 우리나라 경찰체제의 특색과 관련지어, 자유재량권의 행사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되, 통제의 한계는 어느 선까지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경찰의 재량권에 관한 깊은 연구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부득이 미국경찰의 재량권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매듭지을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경찰의 재량권문제는 ‘인권적 법집행’ 과 ‘能率的 法執行’ 이라는, 환언하면 ‘理想(규범)’ 과 ‘現實(경험)’ 의 조화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경찰의 재량권행사의 범위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테두리’ 로, 그리고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제의 한계는 ‘능률적 법집행을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 라고 관념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념적 범위나 한계가 되도록 구체적 표현으로 문서화 공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개정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치안상태의 개선

치안상태란 국민생활의 안전도를 의미한다. 국민생활의 안전도를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주요 국가들의 치안상태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즉 치안상태의 형성요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간 치안상태의 공통적 특성을 추출하여 보고 끝으로 이에 대비되는 한국적 특성과 치안상태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국가간 치안상태 차이의 원인(치안상태의 형성요인)

1) 경찰임무

일국의 경찰임무는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즉 형사정책이나 치안정책에 따른 경찰임무의 범위, 배치비율, 집행력 그리고 임무의 수행방식(근무행태) 등은 치안상태 형성에 영향을 준다.

2) 범죄발생율과 검거율

범죄발생율과 검거율은 치안상태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범죄발생율이 높아도 국가의 공권력이 이를 제압한다면 치안상태는 호전될 것이며, 반대로 범죄율이 낮아도 공권력이 무력하여 범죄발생을 방치한다면 치안상태는 악화될 것이다. 범죄발생율과 검거율은 특히 통계적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3) 사회적 안정상태

일국의 사회적 안정상태는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즉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치안상태는 양호할 것이며 급격한 사회변동(정국 불안, 경제불황, 노사분규나 학생소요 등)시에는 치안상태가 악화될 것이다. 사회적 안정상태는 특히 체감적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4) 국민적 갈등요소

일국의 국민적 차원에서의 인종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은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다수인종으로 인한 인종분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불신, 지역간의 불화 등은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미국의 흑백갈등, 영국의 지역간의 분쟁은 치안상태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종적인 갈등은 없으나 계층간이나 지역간의 갈등이 치안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

5) 집행력과 기동성

경찰의 집행력의 강약이나 공권력(안기부, 검찰, 경찰)의 기동성은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력이나 기동성은 단기적으로 작용한다. 즉 집행력이 강화되거나 기동성이 높아지면 치안상태는 호전의 기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치안상태의 호전은 일시적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치안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경우 흔히 「공안정국」이라 불리는 시기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 될 수 있다.

6) 국민의식

국민의 준법정신이나 질서의식 또한 치안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같은 국민의식이 향상될 수록 치안상태는 호전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치안상태는 악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의식의 영향력은 장기적인 것으로서 치안상태 형성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질서의식 향상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치안상태의 공통적 특성

영·미·일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치안상태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임무와 치안상태는 상호 작용한다. 즉 위의 치안상태 형성요인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임무가 치안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반대로 치안상태도 경찰임무에 영향을 준다. 특히 통계적 치안상태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체감적 치안상태는 치안정책적 차원에서 경찰임무에 영향을 준다.

둘째, 통계적 치안상태와 체감적 치안상태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는 양자는 접근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불안정하고 격변하는 시기에는 양자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셋째, 경찰임무가 광범위하고 집행력이 강하다고 치안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임무가 광범위하거나 집행력이 강화되면 단기적 일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호전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치안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넷째, 치안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찰기능은 전통적기능이다. 즉 경찰기능에는 전통적기능(법의 집행과 질서 유지)과 현대적기능(본사업무와 행정기능)이 있는바, 치안상태에 영향을 주고 경찰력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은 주로 전자이다. 경찰이 봉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면 수혜자에게는 고마움을 줄 것이나 치안상태의 개선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영·미·일의 경우). 또, 경찰이 부수적 행정적 기능을 지나치게 수행하면 타기능을 소홀히 하게 되어 치안상태는 오히려 악화된다(한국의 경우).

(3) 치안상태의 한국적 특성과 개선방안

이제 본 연구의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치안상태에서 가려낼 수 있는 특성들과 함께 치안상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첫째, 통계적 치안상태와 체감적 치안상태의 격차가 심하다. 영·미·일의 경우, 통계적 치안상태와 체감적 치안상태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영국과 일본은 범죄의 낮은 발생을 그대로, 그리고 미국은 높은 발생율(123.4%) 그대로 체감으로 표시된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통계적 치안상태는 좋은편(일본 다음)으로 범죄 발생율이 낮는데(5.9%)도 체감으로는 높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실제의 치안상태

보다 훨씬 나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치안 상태는, 통계적 치안상태보다는 체감적 치안상태에 문제가 있으며, 후자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체감적 치안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통계적 치안상태가 개선되면 즉 범죄의 발생율이 낮아지고 검거율이 높아지면 체감적 치안상태도 함께 개선되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체감적 치안상태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정치·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 안정이다.

「시국치안」이니, 「전경시대」니 하는 새로운 용어들은 우리의 사회적 불안을 잘 말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체감적 치안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안정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요망된다.

셋째, 경찰관의 근무행태와 경찰의 이미지도 체감적 치안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미 논한바 와 같이 영·미의 경찰은 친절하며, 일본의 경찰은 사무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찰은 고압적인 근무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데(영·미·일 모두 32%선)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는 41.5%로 나타나 있다.

경찰관의 근무행태가 「고압적」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미지가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될 때 체감적 치안상태에는 나쁜 영향만을 줄 것이다. 경찰이 「대단히 민주적」이란 항목에 일본은 28.0%가, 우리 나라는 2.0%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근무행태와 경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우리 나라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양호하다. 형법범의 경우, 특히 흉악범죄(살인, 강도)는 통계적 상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발생율에 있어서 영·미·일 그리고 한국의 4개국중 일본이 가장 낮고(1.6%)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낮다(5.9%). 검거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고(100.6%), 일본이 다음이다(87.0%).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범죄의 동향이다. 즉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줄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흉악범죄의 경우 강도의 발생 건수가 90년대

에 들어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발생율이 91년에 6.4%에서 94년에 10.1%). 증가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리 나라 통계적 치안상태는 사범 당국의 편향성 때문에 중요한 범죄가 무시되기 쉬우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비리행위, 화이트칼라 범죄, 부정 부패와 같은 범죄는 그 위험성이 커서 치안상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런데도 오히려 경시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통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범집행 과정에서 집행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법관등의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라 범죄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을 함으로써 통계상의 혼란이 있다.

그 외에도 범죄 통계에 오차를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법률의 개정·제정이나 제도의 변혁에 따라 범죄사건 전체 치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관계 법률 등의 새로운 입법이 증대되는 경우, 범죄 기록방법이 간편화 강제화 되어 통계방법이 쇄신되는 경우 그 전후의 범죄통계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상과 같은 통계작성상의 문제점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계라는 점만으로 통계적 치안상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범죄통제기구'의 창설과 활성화가 시급하며, 피해자 조사작업(Victimization surveys)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 나라 치안상태의 개선을 위하여는 외국의 공통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치안 상태는 여러가지 면에서 특성적인 면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적 측면만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며 위에서 고찰한 국가간의 공통적 특성 즉 경찰 임무와 치안상태의 상호작용, 통계적 치안상태와 체감적 치안상태와의 관계, 경찰의 집행력과 치안상태 그리고 경찰기능의 편중과 치안상태와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는 이른바 종합적 개선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적특성이나 한국적특성 모두가 우리 나라 치안 상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第1章 序 論

1. 研究目的

최근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고속변화의 시대라고 한다. 고속 변화시대의 요인으로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고속 변화의 결과는 고도의 산업사회를 이룩하였고, 산업사회는 다시 8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¹⁾ 이같은 급속한 사회변화는 곧 인간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인간생활의 변화는 공동생활을 이끌어 가는 정부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생활의 변화중에서 긍정적 측면으로는 소득의 증가나 교육수준의 향상,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 한마디로 말하여 「삶의 질」을 놀랄만치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서 적응성의 위기와 도덕성의 위기라는 부수적 역작용도 낳고 있다. 이러한 인간생활의 변화와 관련지어 현대 정부의 역할을 논한다면, 긍정적 측면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부정적 측면인 현대사회의 두 가지 위기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현대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위기요인의 제거나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기능의 하나인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도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안으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밖으로는 WTO에 의한 시장개방, OECD 가입에 따른 새로운 경제체제 등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거

1) 과학자들이 흔히 '정보화 사회'로 부르는 반면 미래학자들은 고도의 산업화가 이룩된 사회를 흔히 後期産業社會(Postindustrial Society) 또는 轉換産業社會(Transindustrial Society)라고 부르고 있다.(Harman, 1979, p.3)

들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역할과 사회변동에 따라 질서유지와 법의 집행을 주임무로 하는 우리 경찰의 역할이나 임무도 마땅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이 조명하고 재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警察任務와 治安狀態 등을 비교·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研究內容 및 方法

가. 研究內容

먼저 비교연구를 위한 주요국가로서는 영국, 미국 그리고 이웃나라 日本 등의 3개국과 우리나라 등 모두 4개국을 택하여 警察任務와 治安狀態를 비교·고찰하기로 한다.

비교·고찰의 주요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첫째, 국가별 警察任務의 내용이다. 대륙법체계의 국가이건, 영미법체계의 국가이건 어느나라의 경찰이나 현대경찰의 기본기능은 秩序維持와 법의 執行 그리고 奉仕기능이라는 3대기능으로 요약되지만 이같은 기본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警察任務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적 차원에서 법치행정의 원리하에 경찰기능을 소극적 작용에 국한하려는 행정법학적 警察任務와 현대 행정국가적·복지국가적 국가관에 의한 행정학적 警察任務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治安狀態와 연계하기 위하여는 행정학적 警察任務를 전제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별로 법규상 주어진 警察任務는 물론 현실적으로 분담되어져 있는 警察任務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별 治安狀態의 평가이다. 개별적 국가마다의 治安狀態는 모두 상이할 것이며, 그 이유는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 사회·문화적 요인, 국민적 정서나 教育水準 그리고 生活樣式이나 遵法精神 등 모든 것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체제론적 의미에서의 투입요소가 모두 상이하므로 현실적 산출인 治安狀態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 연구자는 국가별로 治安狀態를 파악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두가지 접근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그 하나는 警察任務와 관련된 각종 통계상에 나타난 治安狀態 즉 統計的治安狀態의 파악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거나 느끼고 있는 治安狀態 즉 體感的治安狀態의 파악이다.

셋째, 국가별 警察任務와 治安狀態의 상관관계의 고찰이다. 즉 각 국가의 제도적 또는 현실적 警察任務와 治安狀態는 서로 연관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治安狀態(위기요인이 없는 평화적 치안상태)를 위하여는 警察任務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연구·고찰 할 것이다. 민주성이나 자치성을 기본원리로 하는 自治警察體系를 취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능률성이나 합법성을 제일의 원리로 하는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警察임무 그리고 양대체계의 장점만을 고루 취하고 있는 절충형의 日本警察의 임무 등 그 집행력이나 범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일정한 相關關係가 있음이 분명하다.

넷째, 국가별 治安狀態 차이의 원인분석이다. 국가에 따라 治安狀態는 統計的治安狀態나 體感的治安狀態가 상이할 것이며, 따라서 그 원인을 추출하고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 분석을 위하여 위해서는 위에서 논한 警察의 任務와 治安狀態간의 相關關係도 더욱 분명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研究方法

본 연구는 주로 文獻調查, 設問調查 그리고 대담과 토론을²⁾ 병행하여, 比較論的接近方法에 따라 연구를 전개하였다. 문헌조사를 위하여는 현재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문헌이나 자료를 얻는 외에 외국 현지로부터 직접 자료를 구하거나 인터넷을

2) 연구자가 재직중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서, '97학년도 제1학기 교과목으로서 「비교 경찰제도」가 설강되었는 바, 수강생 중에는 장기근속의 현직 경찰공무원이 여러명(간부 1명, 비간부 1명)이 있어서 비교연구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경찰의 임무를 법규상의 임무는 물론 현실적 상황을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었음.

통하여 최신의 자료를 입수하였다.

국가별 警察任務의 내용, 統計的治安狀態 등의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였지만, 국가별 體感的治安狀態, 警察任務와 治安狀態의 相關關係 등의 연구에는 文獻調査외에 設問調査의 방법이 병행되었다. 설문조사방법은 국내에서는 研究者가 직접 실행하였지만 외국에서의 설문조사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親知와 유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3. 研究結果의 活用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나라 治安政策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나 연구의 심도와 범위에 따라서는 몇가지 활용방안이 예견될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警察業務의 內容과 範圍가 제시되었다. 警察任務 수행에는 강제력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법치주의원리와 인권옹호차원에서 임무와 관련된 범주와 한계가 항상 논의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근무행태 自由裁量權의 한계, 警察任務에 대한 일반시민의 기대범위 등도 아울러 시사되었다.

둘째, 정확한 治安狀態의 이해와 경찰이미지 쇄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統計的治安狀態와 體感的治安狀態의 두가지 방법은 각국의 현실적인 治安狀態를 정확히 이해하여 평온성과 안정성 기준의 차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治安狀態를 바람직한 일정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척도가 제시되었다. 특히 體感的치안상태는 일반시민이 직접 느끼고 있는 치안상태이므로 구체적 여론수렴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警察의 肯定的 이미지 刷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治安政策의 개발과 경찰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警察의 임무와 治安狀態의 상관관계는 경찰임무에 대한 재검토와 治安政策開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 警察任務의 特色과 현실적 治安狀態의 내용분석은 선진제국의 治安狀態를 정확히 이해하여 날로 증가하는 重犯罪나 國際犯罪에 대처하며 수사상의 공조체제 또는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인도 등 우리나라 경찰의 세계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警察任務에 대한 논의는 警察作用法 정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警察組織法(1991년의 警察法)이나 身分法(1969년의 警察公務員法)은 이미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나 경찰작용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15가지가 넘는 많은 법령에 분산되어 이를 통합·정비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작용법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경찰의 복무규정과 권한규정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있는 점, 경찰임무의 한계로서 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일반수권조항의 설치문제 등이 그것인 바, 본 연구의 영·미·일 제국의 경찰임무 등을 참고함으로써 그 같은 논란의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第2章에서 국가별(英·美·日·韓)警察任務의 내용을 먼저 고찰하고 第3章에서는 警察活動과 국가별 警察任務의 특색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第4章에서는 국가별 治安狀態를 統計的治安狀態와 體感的治安狀態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前者는 犯罪와 관련된 각종 統計資料를 기초로, 後者는 現地에서 실시된 設問調査의 分析結果를 토대로 考察하였다. 第5章에서는 警察任務와 治安狀態를 따로 比較·分析한 후 兩者의 相互關係를 추출해 보았다. 마지막 第6章에서는 要約 및 結論으로써 研究內容 전체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끝으로는 우리나라 警察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警察任務의 內容과 範圍 그리고 治安狀態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第 2 章 主要國家의 警察任務

第 1 節 英國警察의 任務

1. 概 說

가. 英國概要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탄(Great Britain)」의 세 지역인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트랜드(Scotland)」와 「노던 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 지역을 모두 합한 공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United Kingdom)」으로, 흔히 대영제국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 영토의 크기는 24만4천여km², 인구는 약 6천여만명이다. 주민은 「벨지움」과 북부 「프랑스」에서 건너온 「켈트(Gelts)」족이 살고 있었으나 독일지방으로부터 「앵글로 색슨(Anglo Saxon)」인이 이주하였다. 1066년에는 「노르만(Normans)」인이 침입, 지배하였고, 현재의 주민 분포는 영국인(앵글로 색슨) 81.5%, 「스코트랜드」인 9.6%, 「아일랜드」인 2.4%, 「웨일즈」인 1.9%이며, 그 밖에 유색인종이 총인구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의 선구자였던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총수출의 80%가 공업제품, 에너지는 북해의 유전·석탄·천연가스로 90년대초까지 완전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사회보장의 충실화에 힘을 기울여 현재는 북구의 3국과 더불어 우수한 사회복지국가가 되고 있다.

영국 경찰제도의 대강을 살펴보면, 앞에서 지적한 네 지역 모두를 통한 통일적인 경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그 연혁과 법적 근거에 따라 (1)「잉글랜드」·「웨일즈」경찰, (2) 「스코트랜드」경찰, (3) 북「아일랜드」경찰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조직·임무·기능·규모 등

모든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잉글랜드」·「웨일즈」경찰이며, 따라서 우리가 흔히 「영국경찰」이라 할 때는 이 「잉글랜드」·「웨일즈」경찰을 지칭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찰이 전형적인 자치체경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 「잉글랜드」·「웨일즈」의 경찰이 전통적으로 자치체 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국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차츰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웨일즈」경찰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의 내무성이 중앙경찰조직이며, 내무성에는 「경찰국」이라고 하는 사무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내무성에는 이밖에 「경찰감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지방경찰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주는 조건으로서 지방경찰이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능률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찰을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내무성장관은 현행법하에서 이 「경찰감찰관」에 의한 감찰 외에 지방경찰의 장인 「경찰장」의 임명에 대한 승인 또는 퇴직요구, 「경찰관리규칙」의 제정 등 극히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스코트랜드」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 내정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내무성과 개별의 「스코트랜드」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코트랜드」경찰의 중앙조직이다.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구 식민지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정부 직할인 국가경찰이 설치되어 있다. 위의 3지역 경찰유형 외에 영국에는 군·철도·항만·하천·공원·대학 등에 특별경찰이 설치되어 있다.¹⁾

나. 警察組織의 概要

(1) 경찰체제

영국은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잉글랜드」·「웨일즈」·「스코트랜드」·북「아일랜드」의 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체제는 전통적으로 내무성(Home Office) 직속의 수도경찰청(The Metropolitan Police)을 제외하고는 전국 경찰이 자치체경찰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국 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 및 경찰기관간의 협력을 요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는 내무성으로부터 직접 조정·통제를 받고 있다.

1) 정진환, 「영국의 경찰제도」, 「치안문제」, 10월호 (서울: 치안문제연구소, 1980), pp. 28-29.

이와 같은 영국경찰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및 북「아일랜드」에 있어서는 경찰 책임자는 내무성장관(Home Secretary)이고, 「스코트랜드」에 있어서는 「스코트랜드」성장관(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이다. 다만 「북아일랜드」에 있어서는 경찰총감(Inspector General)이 내무성장관의 책임하에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이 있어서의 소방 기타 특수경찰(Special Constable)을 제외하고는, 전영국 경찰이 대체적으로 국가경찰인 수도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인 주경찰(County Police),²⁾ 특별시경찰(County Borough Police), 병합경찰(Combined Police Force)로 대별된다.

따라서 영국경찰조직을 관할지역별로 경찰관리자, 책임자 등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영국의 관할지역별 경찰조직

관할지역 (Police Area)	경찰관리자 (Police Authority)	책임자 (Chief Officer)	경찰비출처 (Police Fund)
수도경찰청 관할지	내무성장관 (Home Secretary)	수도경찰청장	수도청기금
「런던」자치시	시의회 (Common Council)	「런던」시경찰청장	시비 및 반액정부 부담
주(County)	주경찰위원회 (Police Committee)	경찰국장	주기금 및 반액 정부부담
특별시	시경찰위원회 (Watch Committee)	경찰국장	일반지방세 및 반액정부부담
병합지역	병합경찰위원회 (Combined Police Authority)	경찰국장	병합경찰기금 및 반액정부부담

자료: 정진환, 상계논문, p. 30.

2) 영국의 카운티(county)는 인구 30만 이상의 행정 단위로서 편의상 주(州)로 표기한다. 우리나라의 道와 郡의 중간 정도의 단위이다. 미국에서의 카운티는 郡으로 표기된다.

(2) 내무성장관

내무성장관(「스코트랜드」에서는 「스코트랜드」성장관)은 치안유지의 총책임자로서 의회에 대하여 경찰상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답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도경찰청과 주 및 특별시경찰국에 대한 권한은 각기 일정하지 않다. 즉 수도경찰청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로서, 수도의 치안유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경찰총감(Commissioner), 부총감(Deputy Commissioner), 총감보(Assistant Commissioner) 및 회계관(Receiver)의 임면을 국왕에게 제청한다. 그 외에, 경찰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경찰총감 이하의 모든 경찰관을 관리·감독하며, 경찰예산과 경찰예산에 충당할 지방세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무성장관은 감독관청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주 및 특별시경찰국에 대하여는 그들이 자치경찰로서 치안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기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책임이 있을 뿐으로, 이들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는 좁으나, 이들 경찰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시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승인,³⁾ 경찰감찰관(Her Majesty's Inspectors of Constabulary)을 통한 순시,⁴⁾ 국고보조금의 교부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업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내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출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방경찰에 대한 내무성장관의 가장 강력한 통제력은 경찰비의 국고보조인 바, 지방경찰의 치안이 능률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경찰조직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 내무성장관은(「스코트랜드」에서는 「스코트랜드」성장관)은 항구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경찰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원을 유보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⁵⁾

- 3) 내무성장관의 승인사항은 경찰규칙으로 정하는 바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치정부경찰의 ①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본계급 외에 중간의 감독계급의 설치와 징원의 결정 및 변경 ② 경찰국장의 임명 ③ 징계사범의 종목결정 ④ 수당의 종류 및 그 액의 결정 ⑤ 기타 경찰구·경찰서의 설치 등이다.
- 4) 경찰감찰관은 내무성 산하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수도경찰청을 제외한 전국경찰국을 4분하여 관할하고 매년 1회 각 경찰국을 순시한다. 이들의 순시보고는 지방경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정하는 내무성장관의 판단자료가 되므로, 지방경찰에 있어서는 중요한 행사가 되고 있다.

2. 英國警察의 一般的 權限⁶⁾

가. 警察任務

영국의 모든 경찰관은 공무의 독립소지자로서 단독관청이다. 그의 경찰로서의 권한은 여러가지 특별법에 의하여 부여되었거나 보통법에 의하여 부여되었거나 그의 직무에 따라 행사되며 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책임으로 행사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은 어떤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법률상의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는 경찰관리자의 고용인이 아니므로 그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자신의 상식 및 법률지식에 따라 소신껏 행동하여야 한다.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은 도로순시 및 교통정리로부터 범죄수사, 범인체포에 미치지 않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어서는 치안재판소에서의 명백한 사건의 작성, 제출에 까지 미친다.

모든 경찰대는 그들 자신의 범죄수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경찰은 소방, 위생, 영업 등에 관한 행정경찰과는 무관하다.

경찰관의 임무에 대해서는 성문법상의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잉글랜드 웨일즈의 경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② 범죄의 예방
- ③ 범인의 추적 검거
- ④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의 결정
- ⑤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
- ⑥ 도로교통에 대한 통제 및 지방정부에게 도로교통문제에 대한 조언
- ⑦ 이민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특별한 경우 중앙정부 권한의 대리수행
- ⑧ 국민에 대한 긴급구조 등이다.

5) 경찰대학, 「경찰학개론」(용인: 경찰대학, 1992) 참조.

6) 치안본부, 「구주경찰」(서울: 치안본부, 1989), pp. 55-64 참조.

경찰관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범위내에 속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책임있는 처리가 요구된다.

그밖에 고유한 경찰관의 임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행하는 특별법상의 부과된 특수한 임무가 있다.

나. 警察의 權限制限

영국경찰의 임무범위가 협소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이는 독일·불란서 등의 대륙법계 국가가 방대한 권한을 갖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 하나는 법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구류·과료의 즉결처분권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행정상의 처분권까지도 거의 없는 이름 그대로 집행기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무부장관이 경찰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실제에 있어서도 대통령령, 부령등 경찰명령은 그 수에서 경찰관계 법률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비교가 된다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내무대신이 법률의 위임에 의거 세칙을 제정하는 이외에는 경찰관리자나 경찰장이 명령을 제정하는 사례는 없다.⁷⁾

따라서 경찰단속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의 형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한 지방의 필요에 따른 것은 지방의회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에 의한다.

또한 구제도하의 독일, 일본에서는 경찰서장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류, 과료에 처하는 권한을 갖고 이에 의거해서 일정기간 인신을 구속하는 것까지 허용되었지만 영국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순회판사가 즉결로 벌금 또는 구류의 선고를 함으로써 경찰서장에게 사법처리권이 없었다.⁸⁾

7) 공공질서법에 의거 경찰총감 등이 다중운동의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한 예외이다.

8) 런던과 같은 도시의 경찰서에서 순회재판소 폐정후에 인도된 범법자는 다음날 아침 순회재판소 인도시까지 경찰서에 유치하는 경우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서도 불가하다. 중요한 범죄 사건의 피의자 유치를 위해서도 일일이 순회재판소의 판결은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는 경찰임무의 중심을 시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와 치안유지에 두고 있으므로 경찰관청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은 극히 드물다.

예로서, 국회주변에서의 금지된 집회를 단속함에 있어 경찰관은 금지된 법률규정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해산명령은 치안판사나 시장이 한다. 영업허가나 단속과 같은 행정경찰부문에 있어서도 치안내지 범죄방지에 직접 관계가 있는 총기의 구입, 소지, 허가, 화약, 폭약의 제조, 저장의 허가 등에 한정되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도 경찰이외의 허가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며, 주류판매점의 영업허가와 취소는 치안판사가 한다.

영국에서도 범법자를 간이재판소 개정시까지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며 또한 최근 자동차의 격증에 따른 경미한 교통단속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일정소액의 벌금을 수취하여 영수증을 건네주고 본인이 불복한 경우에 한하여 즉결재판소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경찰임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20세기 이후 중앙의 통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즉, 영국에서도 「신중앙집권화 현상」이 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3. 政府水準別 警察임무⁹⁾

가. 首都警察과 任務

영국의 중앙경찰은 국가경찰로서의 수도경찰청(The Metropolitan Police : 「런던」경찰청)과 그리고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자치체경찰로서의 「런던」시경찰(Police of London City)이 있다.

수도경찰청은 내무성장관 직속하에 있는 영국의 유일한 국가경찰이다. 전통적으로 자치체경찰인 이 나라에서 수도경찰청만 특별히 국가경찰로 설치한 것은, 「런던

9) 정진환, 「비교경찰제도」(서울: 학문사, 1996), pp. 59-71 참조.

(London)」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국제적 색채가 강하고 왕궁·상하양원·외국대·공사관 등이 있으며, 세계적 외교·경제의 중심지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한 지방의 이해를 초월하여 국가적인 것이 많고, 이를 담당하는 경찰도 정부가 직접으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경찰청은 「템즈(Thames)」강 제방에 있는 「뉴·스코트랜드 야드(New Scotland Yard)」에 가까운 「브로드웨이(Broadway)」의 「빅토리아(Victoria)」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찰총감이 위치하여 각종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수도경찰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수도경찰청은 「런던」수도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일 뿐 아니라 형사, 경비 등 실무부문의 활동에 관하여 전국경찰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제 및 관례에 따라 수도경찰청에는 수도지역의 치안유지에 대략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과되고 있다.

- ① 왕궁, 별궁 및 의사당 등의 경비
- ② 범죄기록·정보의 관리, 조회, 감식자료의 제공,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와의 연락 등.
- ③ 중요 또는 특이한 형사사건의 수사활동, 수도경찰청 관내는 물론 지방 경찰의 요청을 받아 다른 경찰관내에서도 수사활동을 행한다.
- ④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외사범죄 등에 관한 수사 및 정보수집, 연락 등.

나. 「런던」市警察과 任務

「런던」시경찰은 「런던」자치시를 관장하는 자치체경찰이다. 「런던」에는 시티(city)라고 불리우는 특별지역이 있으며 예전부터 몇 가지 정치적 특권을 갖고 있다. 면적은 겨우 2.6km²이며 영국 경제의 중심지로서 주간인구는 60만을 헤아리지만 야간인구는 5천3백명이라는 특수한 지역이다. 여기에는 예전부터 독립된 경찰이 설치되어 있다. 1829년에 수도경찰청이 창설될 무렵, 시경찰을 경찰청에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의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시경찰은 현재까지 그대로 독립된 시경찰로 남아 있다. 예전에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보조금

도 받지 않고, 따라서 감찰관의 감찰도 받지 않았으나, 1919년 이후 다른 경찰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보조금을 받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감찰도 받고 있다.

(1) 「런던」시의회

「런던」시 경찰국의 관리자는 「런던」시의회이다. 시의회는 「런던」시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며,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에 경찰 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찰관리자로서의 시의회는 경찰권을 보유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은 ① 경찰총감의 임면 ② 경찰경비의 의결 ③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및 조례의 제정 등이다.

이와 같은 「런던」시경찰국은 그 관할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는 적지만, 국내경제의 중심지이며, 국제적인 중요 도시이므로, 그 조직의 규모는 적지만, 수도경찰청을 모방하여 그와 아주 유사하다.

(2) 임 무

중앙기구는 3개의 주요 부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부는 경찰구에서의 제복근무자의 업무, 도시교통통제 및 경찰통신 등에 관한 업무 등을 관리하고, 둘째, “B”부는 경찰행정업무와 재정, 신임경찰관의 모집과 훈련 그리고 민방위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셋째, “C”부는 형사부로서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런던」시는 3개의 경찰구로 나뉘어, 각 구에 경찰서를 두고 총경을 서장으로, 경찰업무 일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다만, 수도경찰청의 총경과 같이 독립하여 경찰서구성원을 징계하는 등의 권한은 없으며, 정해진 업무 이외의 것은 경찰국의 지휘를 받아 행동한다. 이와 같은 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좁기 때문에 다시 하부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¹⁰⁾

다. 地方警察과 任務

10) James Cramer, The World's Police(London: Cassell, 1964), p. 27.

수도경찰과 「런던」시경찰을 제외한 영국의 지방경찰은 주경찰(County Police)과 특별시경찰(County Borough Police), 그리고 병합경찰(Combined Police Force)로 나뉘어지고, 이들은 모두 지방자치체경찰이다.

주(County)는 특별시(County Borough)와 보통시(Borough), 읍(Urban District) 및 면(Rural District)을 관할하는 가장 유력한 자치단체이다. 그중 특별시는 주와 대립하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이며 보통시는 주의 광역안에 있는 하급지방자치단체이며, 종래는 다같이 독립된 경찰을 가지고 있었으나, 1946년의 경찰법에 의하여 보통시의 경찰은 주경찰에 원칙적으로 합병되었으며 특별시만이 독립된 경찰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주와 특별시의 성격상 경찰의 통합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주경찰과 특별시 경찰의 총합체로서의 병합경찰(Combined Police Force)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또하나 유의할 것은 이 곳에서 설명되는 지방경찰은 주로 「잉글랜드」·「웨일즈」의 제도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스코트랜드」나,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경찰의 임무는 이미 논한바와 같이 기본기능인 질서유지와 범집행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지방경찰을 정부수준별(경찰종류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경찰

주경찰국은 주의회(County Council)의 내부위원회인 경찰위원회(Police Committee)가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는 주의회의 위원회로서, 주의회의원의 3분의 2와 지방법원판사 3분의 1로 구성되어 있다. 동 경찰위원회에서는 내무성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찰국장(Chief Constable)을 임명한다. 경찰국장은 일단 취임 후에는 주경찰국을 통할하며, 부국장(Assistant Chief Constable) 이하의 경찰관을 임명하고, 일반적으로 경찰업무에 관하여 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며, 동위원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특별시경찰

특별시경찰은 공안위원회(Watch Committee)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과 시의회에서 선임된 3분의 1 이내의 시의원으로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내무성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국장은 제도상,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안위원회의 감독하에 소속 직원을 통솔 운영하며, 중요한 인사행정사안은 공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많은 특별시에서는 기율의 유지와 능률향상을 위하여 소속 경찰관 신분상의 감독권은 경찰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특별시에서도 경찰국장이 제출하는 안에 대하여 형식적인 승인을 하고 있다.

③ 병합경찰

병합경찰(Combined Police Force)은 1946년 경찰합병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1964년 경찰법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Amalgamation Scheme)에 따라 주와 특별시의 통합지역을 관할한다. 주 또는 특별시는 자치단체로서의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함에 있어, 흡수합병에 의하여는 용이하게 목적달성이 곤란하므로, 양자 대등한 입장에서 단일경찰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병합경찰의 관리는 병합경찰위원회(Combined Police Authority)가 담당하며, 그 경찰을 구성할 주 또는 특별시의 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병합경찰이 성립될 때의 경찰국장은 양측 구성 경찰국 중 조직이 큰 경찰국장이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며, 병합경찰은 대부분 주경찰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경찰국 및 경찰서·분서·파출소 등의 배치와 시설, 경찰활동 등은 주경찰과 같다.

라. 「스코트랜드」와 북「아일랜드」警察과 任務

① 「스코트랜드」경찰

「스코트랜드」에 있어서는 「스코트랜드」省이 경찰을 포함한 내정 전반을 통괄하고 있다. 「스코트랜드」경찰도 「잉글랜드」「웨일즈」의 그것과 비슷한 역사를 거쳐 왔지만 「스코트랜드」에 있어서는 「쉐리프(Sheriff)」가 전통적인 지방관사로서 세력을 계속 갖고 있으며 치안판사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의 경찰제도는 1956년의 경찰법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는데 1964년에 중앙

감독강화 등을 위한 비교적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스코트랜드」경찰에는 「카운티」에 설치된 경찰과 특별시에 설치된 경찰, 거기에 약간의 병합경찰의 3가지가 있으며 경찰의 관리방식, 중앙과 지방경찰과의 관계, 경찰관의 임무와 권한·활동 등은 거의 「잉글랜드·웨일즈」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② 북「아일랜드」경찰

「아일랜드」는 영국 본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종래 정부가 파견한 감독관이 통할하는 식민지형 경찰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종교분쟁 및 독립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경찰조직도 몇 차례 변천을 거듭해 왔다.

1822년에 설립되었던 「아일랜드」경찰대는 「아일랜드」독립에 따라 해체되고 영국 본국으로 남게 된 북「아일랜드」지방에 새로 왕립「알스타(Ulster)」경찰대가 설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왕립「알스타」경찰대는 수도경찰청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의 소관하에 있는 국가경찰이다. 이 대의 관리방식, 경찰 내부조직, 경찰관의 임무와 권한·활동 등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그리고 「스코트랜드」와 거의 같다.

마. 기타 警察과 任務

영국의 경찰조직에는 정규의 경찰관 이외의 사무원·기술원 등 일반직원과 교통순시원이 있으며 또한 영국 특유의 제도로서 특별경찰대(Special Constables), 경찰후보생(Cadet) 등이 있다.

교통순시원은 교통정리와 한정된 범위의 경미한 교통단속을 행한다.

특별경찰관이란 비상시에 일반 시민이 천재, 소요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보통의 제복경찰관으로서 직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사회의 치안은 사회의 구성원인 자기들 자신의 손으로 지킨다는 전통적인 견해의 반영으로 볼 수가 있다.

영국에는 이 밖에 軍, 철도, 항만, 하천, 공원, 민간항공, 대학 등에 상근의 경찰

관을 임명할 수 있는 다수의 성문법규가 있으며 이들 규정에 따라 군경찰·철도경찰·항만경찰·운하 및 하천경찰·공원경찰·민간항공경찰·대학경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구역 또는 조직의 특별 기관의 관리와 지휘에 따르며 저마다의 사안, 지역 관할범위 내에 있어서 일반경관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별경찰(Special Police)이라고 총칭된다.

4. 警察任務의 擴充: 警察 및 刑事證據法

위에서 논한 영국경찰의 일반적 임무나 정부수준별 경찰임무는 대체로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종주국으로서, 질서유지와 법의 집행이라는 경찰 본연의 기능을 주축으로 그 임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영국경찰의 임무는 80년대에 들어와 커다란 변혁을 맞이한다. 즉, 영미법계의 기본적 경찰이념인 민주성 내지는 자치성 위에 능률성 내지는 합법성을 추가하는 세계적경향에 따라 경찰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으로서 「경찰 및 형사증거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은 지금까지의 영국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가. 법 제정의 목적

1984년 제정된 경찰 및 형사증거법은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을 합한 규정의 성격으로 경찰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고,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압수, 체포, 출입, 유치 등의 사항은 이 법률에서 최초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법 이외의 특별법과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법률로서 정리,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법규가 본법 및 부칙에 의하여 개폐되거나 追補되었다.

11) 치안본부, 전게서, pp. 58-65 참조.

예컨대 1976년의 경찰법(1964년 경찰법 개정)은 거의 모두가 이 법률에 흡수되었으므로 폐지되었다. 물론, 이 규정은 권한의 한정적 열거가 아니므로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습법상의 권한 모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법 제정 과정

1980년대 들어 영국은 치안상황의 악화추세에 접어들면서 경찰력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국민을 범죄자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과제로 인정하고 수많은 심의와 수정을 거쳐 1984년 10월 30일 여왕의 勅裁를 얻어 경찰 및 형사증거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안의 심의가 이토록 많은 시간과 수정을 겪은 것은 그 내용이 사람이나 차량의 정지명령, 체포, 유치, 토지·건물에서의 출입, 수색 등 개인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경찰간섭의 강화와 그 반작용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苦精(Complaint)과 경찰관 징계처분을 규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의 경찰법이라면 어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불문법 즉,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어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만 특별 입법으로서 그 제한이 인정되었던 영국에서, 이번에는 일반적 제정법으로 경찰관의 집행권을 확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변혁이 아닐 수 없다.

1964년 경찰법이 경찰조직법에 있어서 일대 변혁임에 못지않게 1984년의 이 법률은 경찰실체법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構 成

이 법률은 10개의 장(Parts), 122개의 조(Sections) 및 7개의 부칙(Schedules)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① 정지명령 및 수색, ② 토지건물에서의 출입 및 수색, ③ 토지건물에서의 출입권, ④ 체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警察改革 : 警察 및 治安法院法(1994)

1990년대에 들어와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증가하는 경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경찰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혁의 주된 골자는 경찰 책임자(Chief Officer)의 고정기간 임용, 경찰위원회의 확충, 감찰관(Inspectory of Constabulary)제도의 개선 등 경찰체제의 정비와 치안법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1994년 초에 의회를 통과하여 동년 9월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동법의 내용중 경찰에 관련된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¹²⁾

① 경찰 책임자의 고정기간 임용제

과거 1964년의 경찰법에서는 경찰관리자인 내무부장관 및 경찰국장 등 최고책임자들의 지위와 직무내용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었다. 30년 후인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실무책임자인 경찰장 또는 총경들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로써 이들의 고정기간 임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② 경찰위원회(Police Authorities)의 확충

종전의 州경찰위원회는 주의회(County Council)의 여러개의 위원회 중 한 위원회로써 주의회 의원의 1/3와 지방법원 판사 1/3로 구성되어 총 위원수는 9명 내지는 12명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번 신법에서는 위원수를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에서는 17명으로, 그리고 스코트랜드에서는 17명을 원칙으로 하되 스코트랜드 성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게 하였다.

위원회(17명)의 구성은, 지방의회 의원 9명, 독립적 인물 5명 그리고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그외 3명으로 한다. 17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는 지방의회의원, 독립적 인물은 위원회 정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12) Ian Oliver, Police, Government and Accountability, (Second edition), (London: McMillan Press LTD, 1970), pp. 53-54.

그리고 그 나머지는 행정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외에도 이 법에서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직무, 임기, 자격박탈, 퇴직 기타 관리상의 문제까지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③ 감찰관 제도의 개선

감찰관 제도는 원래 1856년 주와 시의 경찰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작된 제도인데, 이것은 흔히 은퇴한 고급경찰관(대부분 경찰서장)을 감찰관(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으로 임명하여 경찰대와 일선 경찰서의 비리나 비능률을 감찰케 한 제도이다.

현대에 들어와 감찰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64년 경찰법 38조, 그리고 스코트랜드에서는 1967년의 경찰법 33조에 의거하여 임명되며 전통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90년대에 들어와(특히 1992년 부터) 심한 자금압박으로 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경찰 및 치안법원법』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감찰관의 권한과 직무를 보장하여 그 활용을 더욱 확대시키게 되었다.

즉 경찰대나 일선 경찰관서에 대한 감찰 뿐만 아니라, 경찰관리자 및 내무성장관에 까지 치안행정에 관한 전문적 조언(Professional Advice on Policing to Police Authorities and Home Secretary)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警察關係法の 統合 : 新警察法(1996)

1996년의 새 경찰법은 96년 5월 22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 법은 1994년의 경찰법, 1984년의 『警察 및 刑事證據法』의 IX절, 1994년의 『警察 및 治安法院法』의 제 I 장 제1절, 그리고 기타 경찰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새로운 경찰법은, 산재된 여러 현행 경찰법을 정비·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없으며, 다만 1964년의 법조항 중 개정된 부분을 새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第 2 節 美國警察의 任務

1. 警察制度의 概要

미국의 총면적은 938만 5천여㎢이고 인구는 1995년말 현재 약 2억 5천 6백만명이다. 이 같이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각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상이하고 또한 기후풍토도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이며, 획일적인 지방정부제도를 확립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미국의 경찰을 일반적으로 자치체경찰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찰은 지방경찰(Local Police)을 위주로 하고, 그 위에 주경찰(State police), 연방법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을 쌓아 올려서 성립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경찰제도를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¹⁵⁾

미국의 지방행정제도와 관련하여 각급 정부수준(Level of Government)은 크게는 지방정부·주정부·연방정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지방정부는 도시(municipality)·군(county)·읍(town or township)의 정부단위로 구분된다. 따라서 미국의 각급 정부수준은 5체계이며, 경찰도 정부수준에 따라 ① 도시경찰(City Police) ② 군보안관(County Sheriff) ③ 읍치안관(Town or Township Constable) ④ 주경찰(The State Police) ⑤ 연방집행기관(Federal Law-Enforcement Agencies)의 5종류가 있다.

그 외에도 특수경찰로서는 특별구(학교구·대학구·공원구·도로구 etc)경찰, 「인디언」부락경찰, 그리고 민간경찰(Private Police)인 사경비요원이 있다.

미국에서의 경찰자치사상은 전통적인 것으로서 그 개념은 미국사회에 완전히 정착, 그 권한은 세분되어 사회생활 가운데 융화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시민을 치안유지의 임무에 종사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커먼로우(Common Law)」이래의 전통에 의한 것이며, 말하자면 공동의 적으로부터 자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회공동

15) 정진환, 전계서(비교경찰제도), p. 105.

체를 만든다는 발상에서 자치단체가 생겨난 것이므로 미래의 지역사회에 기본적인 경찰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행정체제 가운데 불가분의 것으로 경찰조직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초월해서 경찰조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인식되어져 왔다.

이같은 조직은 사회가 안정되고 범죄가 적었던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회 규모가 확대되고, 인적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동부의 「뉴 잉글랜드(New England)」지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많고, 좁은 지역에 군소경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문제도 많았고, 경계의 벽은 두터워 상호간의 연락이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협력체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군소경찰에서는 복잡하고 미묘한 범죄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전통적인 지방경찰(town의 constable이나 city police)을 대체하여 차츰 「카운티」, 주, 그리고 연방법집행기관이 강화되어 경찰수요에 대응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2. 美國警察의 一般的 任務와 權限

가. 경찰본래의 임무

미국경찰에 관한 가장 기초적 질문은 사회에 있어서의 그의 임무이다. 경찰은 왜 있어야 하는가, 경찰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의 일과로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무엇인가?

미국변호사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는 “경찰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골드스타인(Herman Goldstein)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누구나 경찰업무

16) American Bar Association, Standards Relation to the Urban Police Function(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1973), p. 7.

에 관한 적절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손상된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경찰업무의 복잡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⁷⁾

경찰임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매일 같이 치안행정상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 사건들을 취급하는 것이다.”¹⁸⁾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까지 경찰의 임무¹⁹⁾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경찰관 스스로가 오히려 ‘보호와 봉사(Protect and serve)’라는 막연한 개념을 즐겨 사용하였다. 일반대중도 대중매체가 묘사하는 범죄전사로서의 이미지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찰임무에 관한 토론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3가지 국면(임무)이 있기 때문에 흔히 논란과 혼미를 거듭하여 왔다. 첫째로는 공식적인 법규상의 임무(prescribed role)가 있다. 즉 상이한 법집행기관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이 법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관들이 실제로 그러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로는 당연적 임무(proffered role)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일반대중이 생각하기에 경찰에서 당연히 취급해야 한다고 믿는 일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 따라 상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집행 임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봉사 임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적 업무(the enacted role)가 있다. 그것은 경찰관이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임무이다. 이러한 일상적 임무는 전술한 법규상의 임무나 당연적 임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²⁰⁾

17) Herman Goldstein, *Policing a Free Society*(Cambridge: Ballinger, 1977), p. 21.

18) Samuel Walker, *The Police in America - An Introduction*(New York: Mc Graw-Hill Book Co., 1983), p. 53.

19) Milton Yinger는 임무란 “文化의 한 單位(unit)로서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일정 직책에 있는 사람의 公認된 行動樣式(patterns of behaviour)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 Elmer Tobnson “Police: An Analysis of Role Conflict,” *Police* (January~February, 1970), pp. 47-52.

미국변호사회는 「대도시 경찰기능상의 기본업무(Standards Relating to the run Police Function)」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경찰관의 일상적 임무로서 다음과 같은 11개항을 확인하고 있다.

- ① 범법자나 범죄활동을 확인하고 또 적절한 장소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 후의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
- ② 예방적 순찰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
- ③ 신체적 위험에 처한 개인을 보호하는 것
- ④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
- ⑤ 군중이나 자동차의 이동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
- ⑥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
- ⑦ 분쟁을 해결하는 것
- ⑧ 예견되는 범집행 또는 정부차원의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
- ⑨ 사회에 있어서 안전의식을 도모하고 유지하는 것
- ⑩ 시민사회의 질서를 증진하고 보전하는 것
- ⑪ 비상사태에 적절하고도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

미국변호사회에서 제시한 항목들은 일상적 경찰업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보스턴 전 경찰총감(commissioner) 로버트 디그레이저(Robert DiGrazia)의 지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는 “경찰의 임무란 단 순히 한두 가지의 경찰업무로서 특징지어 질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경찰의 임무는 일반인들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사실 경찰의 임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복잡하고 모호하다.²¹⁾

첫째는, 업무의 다양성(variety)이다. 범집행과 직접으로 관련된 업무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상당량의 업무는 비상사태의 대비나 평상시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임무인 것이다.

21) Robert DiGrazia, “A message from the Commissioner,” Annual Report (Boston Police Department, 1975).

둘째는, 상이한 업무간에 흔히 갈등(conflict)이 있다. 경찰은 시민질서를 유지(10항)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또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4항)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시위사태'에 임하였을 때에는 시위자의 인권과 질서유지라는 양자의 임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함께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느냐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범죄수사과정에 있어서도 경찰관은 충분한 증거의 수집과 혐의자 체포의 필요성(1항)과 한편 용의자는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하다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4항) 사이에서 심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 - 흔히 범죄통제와 정당한 절차 사이에서 일어나는 - 이야말로 경찰임무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쟁점인 것이다.²²⁾ 과연 범죄통제와 헌법상의 권리보호라는 양자의 임무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셋째는, 경찰임무는 정당한 수행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ambiguous)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6항)을 경찰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를 도울 수 있겠는가? 또 경찰은 가끔 고질적인 알콜 중독자를 강도나 동사 등의 어떤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처사는 형법을 적절하게 적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 어려운 것은 분쟁해결의 임무(7항)와 질서의 유지(10항)이다. 이러한 일들의 완전 해결이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양식은 어떤 것인가? 임무를 단순히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의 행동양식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들은 상황에 따라 상이한 행동양식을 보일 것이며, 상황이 특이할수록 스스로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³⁾

나. 警察任務의 分析과 새로운 認識

다양한 경찰업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업무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22) Herbert Racker,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68~69.

23) Samuel Walker, *ibid.*, p. 58.

보는 것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어느 한 주간을 택하여 시라큐스(Syracuse) 시와 뉴욕(New York)시의 경찰순찰차에 무전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들을 정보관계, 경찰봉사, 질서유지 그리고 법집행 등의 범주로 분류해 보았더니, 그 중에서 불과 10.3%만이 법집행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위와 유사한 분류로 조사해 보니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²⁴⁾

이상과 같은 경찰업무에 관한 분석은 경찰업무를 논의하는 데 우리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경찰관서의 부서통제나 인사배치에 관한 효과적인 기획에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훈련프로그램은 신규채용의 경찰관들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따라 적절히 수정 실시될 수도 있다. 또 상이한 각종 업무를 모두 훈련시키기 위하여 훈련만을 담당하는 특별부서를 개발할 수도 있다.

경찰의 임무는 범죄와의 전쟁보다는 ‘평화의 수호’라고 일반인에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평화수호의 임무는 경찰의 업무시간 할애와 특정상황에 대처하는 양식의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직접적으로 법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서는 불과 10%(기타 연구에서는 20% 가까운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밖에 소모하지 않고 있다. 베일리(Bayley)와 멘델슨(Mendelshon)은 “경찰은 그들 대부분의 시간을 처벌방식이 아닌 중재나 협조에 사용하고 있으며, 가급적 사후처벌 보다는 어떤 범법행위를 사전 또는 중도에 중단시키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²⁵⁾

경찰의 평화수호임무를 최초로 확인하고 평가했던 벤톤(Michael Banton)은 경찰의 시간할애가 아닌 범죄에 대응하는 처리양식의 기초 위에서 자기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순찰 경찰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순찰자가 일정사태에 처하여 법집행을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들은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체로 조정하거나 상담에 응하고 관련자들을 경고한다는 것이다.²⁶⁾

24) James Q. Wilson, *Varieties of Police Behavior* (New York: Atheneum, 1973), p. 18.

25) David H. Bayley and Harold Mendelsohn, *Minorities and the Police* (New York: Free Press, 1968), pp. 68~69.

경찰의 평화수호자의 이상은 많은 사람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도 경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범죄전사로서의 경찰관념에 집착하고 있다. 뉴욕 시의 전 경찰총감 머피(Datrick V. Murphy)는 평화수호의 관념을 수긍하고 있다. 그는 '경찰관은 가장 중요한 사회봉사자(social worker)이다. 분쟁을 해결하고, 또 체포보다는 균중을 해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라델피아의 한 경찰감시관은 전통적 견해에 따라 "경찰관이 일단 사회봉사자가 되고 나면 그는 더 이상 훌륭한 경찰관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논평하고 있다.²⁷⁾

다. 政府水準別 警察任務

(1) 도시경찰의 임무

도시경찰(Municipal or City police)은 미국 법집행에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들은 규모, 역할, 대중의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 요제(salience) 등에 의해서 오늘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현재 전문직 총 경찰관의 거의 4분의 3은 도시 경찰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나 "Police"란 단어를 쓴다면, 곧 도시의 거리를 순찰하는 순경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 관한 대부분의 뉴스도 거의 대도시 경찰에 관한 것들이다.

도시경찰의 임무는 다른 법집행기관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그러므로써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된다. 도시경찰은 질서유지, 봉사행정, 법집행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그들은 매일,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도시경찰은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도

26) Michael Banton, *The Policeman in the Community* (New York: Basic Books, 1964), p. 127.

27) Robert Daley, *Target Blue* (New York: Dell Books, 1974), p. 4; President's Commission i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Field Studies IV,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Vol.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p. 139.

항상 평화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언제나 고질적 사회문제의 중심부에서 있는 것이다. 언제나 경찰은, 「알콜」중독, 약품남용, 가정문제, 그 외 갖가지 무질서 행위 등에 일차적으로 대처한다. 경찰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빈곤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문제에 직접으로 접촉하며, 마지막으로 인종간의 문제와 인종 차별문제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경찰관서들은 경찰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의 법집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모두 대도시 경찰에 관한 것들이다. 심지어는 통계자료의 대부분도 New York시, Chicago, L.A, Philadelphia, Boston 그리고 Washington 등에 관한 것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간규모의 관서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없으며, 소규모 기관의 치안행정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개 되지는 않으나 소규모 기관에 관한 연구 중에는 갤리허(Gallihier)가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중서부 주의 인구 50,000명 또는 그 이하의 소사회에 존재하는 경찰기관 269개소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이 조사를 통하여 소사회의 경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의 그것과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에게는 범죄가 주요문제가 아니었다. 즉 교통문제가 25%, 대중질서 문제가 19%, 가정불화 문제 18%, 그리고 분실건 등의 기타가 11%였다.

도시 치안행정의 다양성 때문에 미국경찰의 임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만 몇몇의 상이한 경찰관서들을 따로 고찰함으로써, 그 윤곽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2) 군보안관(The County Sheriff)의 임무

군 보안관은 미국 법집행 제도상 특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 특유성은 그의 법적지위 그리고 기능면에 공히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관은 다른 법집행기관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²⁸⁾

28) John F. Gallihier et, al., "Small-Town Police: Troubles, Tasks, and Public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3 (March 1975), pp. 19-28.

오늘날 미국에는 약 3,340여개소의 군 보안관서가 있다. 도시 경찰관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보안관서는 지방에 존재하며 10명 미만의 선서직 판사를 두고 있다.

보안관의 법적지위는 특유해서, 그 직책은 35개 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 다른 2개주 헌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임기나 선출방법에 관하여도 대부분의 주에서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안관 직책에 관한 그 어떤 중요한 변경은 길고도 복잡한 과정인 헌법 개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보안관 직책의 두 번째 특유성은, 50개의 주 중에서 2개 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직이라는 점이다(Rhode Island주에서는 지사가, Hawaii주에서는 대법원 재판장이 임명한다).

보안관의 임무는 미국 형사재판 제도상의 3가지 기능을 모두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유하다. 첫째로는 전통적 경찰보호의 책임과 함께 법집행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법원사무를 관장한다. 그는 영장이나 소환장을 발부하고 법원 수호의 책임을 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군 감옥사무와 함께 교정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안관의 교정책임 역할은 차츰 변화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보안관은 아직도 군 감옥의 간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Connecticut, Delaware, Hawaii 그리고 Rhode Island 등의 주에서는 주정부가 감옥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의 주 대도시에서는 점차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장케 하는 경향이다. 즉 뉴욕시에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장케 하고, 그리고 오마하(Omaha)에서는 군 교정소가 감옥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3) 그 외 지방경찰기관(Other Local Police Agencies)의 임무

지역사회의 구조는 대집행의 권한이 별개의 몇몇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더욱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별도의 기관이란 치안관(constable), 검시관(coroner) 그리고 각종의 특별구(special district) 경찰기관의 3가지를 의미한다.

① 치안관(The Constable)

보안관과 마찬가지로 치안관은 그 연원을 식민지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보안관

은 과거 촌락(neighborhood)이나, 부락(community) 단위의 사회에서 법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어느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범인체포, 영장발부 등의 권한 등을 가진 점에서는 치안관은 보안관과 많이 흡사하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도시화 또 그에 따른 도시 경찰관서의 급속한 성장으로 치안관은 그 기능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치안관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 불과하다. 「정부간 상호관계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는 치안관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 그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집행기능은 다른 경찰부서에서, 그리고 재판관계 기능은 관련법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② 검시관(The Coroner)

검시관은 그 임무가 「사인조사」라는 점에서 통계국이나 법무성에서는 법집행관으로 간수한다. 현재 미국에는 1,680여종의 검시관 또는 의무관이 있다. 26개주에서 검시관은 선거적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19개주에서 주헌법에 검시관직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간 상호관계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개혁을 확인하였다. 즉, 어떤 주에서는 검시관직을 보유하되 반드시 자격있는 전공인에게 그 직책을 부여하고 있고, 또 어떤 주에서는 검시관직을 폐지하고 대신에 주(혹은 어떤 곳은 지방) 의무관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간 많은 검시관들에게 있어서, 의학 적 전문지식의 간여, 조사능력의 미숙, 법적 훈련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⁰⁾

③ 특별구경찰(Special-District Police)

많은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시설이나 지역의 경찰봉사를 위하여 특별구

29) Pennsylvania, Administrative Office of Pennsylvania Courts, The Constables of Pennsylvania: A Critical Survey, 1976, (Philadelphia: Author, 1977).

30) 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tate and Local Rel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28.

법집행기관이 확립되어져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운송, 주택, 공원, 공립학교 그리고 대학경찰 등이 있다. 1987년 「경비와 고용에 관한 자료(Expenditure and Employment Data)」에서는 총 167개의 특별구 법집행기관과 4, 5개개소의 대학 경찰기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³¹⁾

특별구 경찰 또한 미국 치안행정상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기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수 시설이나 구역에서의 별도의 경찰 봉사를 위하여 존립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제1차적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역시 정보의 교환이나 조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4) 주 경찰기관(State Police Agencies)의 임무

주정부 또한 법집행기능을 수행한다. 명목상으로는 검찰총장이 모든 주에서 법집행의 최고책임자이다. 비록 제한된 수사의무를 지고 있으나 검찰총장은 제1차적 제소권한자이다. 순찰, 조사, 공중안전 등의 기본적 경찰기능은 별도의 기관 즉 「하이웨이」순찰대나 주경찰에 의하여 수행된다.

주 경찰기관은 다른 법집행기관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구성된 것이다. 최초의 근대적 주경찰은 1905년에 설치된 「펜실바니아」주경찰대(Pennsylvania State Constabulary)였다. 초기 형태로는 1835년의 「텍사스」기마대(Texas Rangers)가 있으며, 「뉴 잉글랜드」지방의 몇 개 주에서 소규모의 주 법집행관이 있었다.³²⁾

그리고 주 집행기관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임무 그리고 행정적 구조 등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³³⁾

역할과 임무를 알기 위하여 주법집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2개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첫번째 것은 「하이웨이 패트롤」인데, 국제경찰협회 즉

31) U.S. Department of Justice, Expenditure and Employment Data, 198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7), pp. 399-425.

32) Bruce Smith, The State Police (New York: Macmillan, 1925).

3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Division of State and Provincial Police, Comparative Data Report, 1974(Gaithersburg, Md.: IACP, 1975).

IACP에 의하면, 「제복순찰대를 통한 법집행 담당기관이며, 그 임무는 교통, 자동차 및 고속도로의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거나 집중되어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³⁴⁾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은 「주경찰」이라 불리워지는 것으로, 역시 IACP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제복경찰대도 가지나 주로 일반적 경찰사항에 임무를 지고 있다」.³⁵⁾

요컨대 양자의 기본적인 차이는, 그 기관의 역할이나 임무에 있어서, 주에서의 일반적 경찰사항의 취급이 포함되느냐 혹은 고속도로 및 그에 관련된 업무에만 한정되어 있느냐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는 주법집행제도에 관한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한다. 또한 주 법집행기관의 역할이나 임무는 법규로서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창설함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법집행기관에 반대가 극심하면 자연히 주 경찰의 역할이나 임무는 제한을 받게 되고 또한 어느 특정한 이익집단의 반대도 크게 작용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주경찰은 노동운동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다른 주에 있어서는 노동분쟁에 대하여만은 주경찰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이웨이 패트롤」과 주경찰의 두 범주는 대체적인 분류이다. 왜냐하면 한 범주 내에도 상이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Colorado Highway Patrol은 노동분쟁에 있어서 전연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또 다른 9개주에 있어서는 노동분쟁에 관한 한 제한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7개주에서는 주 경찰의 법집행권을 도시내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법집행업무의 내용을 보면 주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① 일반순찰(General Patrol) ② 교통법규의 집행(Trafficx Enforcement)

34) Ibid, p. 36. 이러한 임무의 「하이웨이 패트롤」을 가진 주는 모두 25개 주인데, Alabama, California, Colorado, Florida, Georgia, Iowa, Kansas,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Washington 그리고 Wyoming주이다.

35) 이러한 주경찰을 가진 주는 모두 23개주인가, Alask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Idaho, Illinois, Indian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ew Mexico,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Virginia 그리고 West Virginia주이다.

③ 범죄조사(Criminal Investigation) ④ 범죄연구(Criminalistics) ⑤ 훈련(Training) 등이다.

(5) 연방 법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의 임무

광범위한 연방의 법집행 업무를 4개의 성에서 분산되어 있는 9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연방조사국인 FBI는 가장 크고 중요한 기관이다. 다음 <표2-2>에서 보듯 그것은 법무성 내의 한 기관이다.

<표 2-2> 주요연방집행기관의 경비와 인력 (Expenditure and Employment data of Major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기관 (Agencies)	경비 (Expenditure)	인력수 (No. employees)
Department of Justice (법무성)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463,750,000	19,310
Drug Enforcement Agency	158,224,000	4,019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64,488,000	3,876
Department of the Treasury (법무성)		
Customs Service	\$ 341,337,000	13,378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118,443,000	3,982
Secret Service	111,611,000	3,574
Internal Revenue Service	109,728,000	4,686
Postal Service (우편국)	113,590,000	5,472
General Services Agency (총무국)		
Office of Federal Protective Service Management	82,949,000	3,401

자료: 미법무성, 사법제도를 위한 경비와 준비에 관한 자료

1990 (Washington, D.C. 1990), pp. 40-41.

재무성에 속해 있는 세관은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우편국과 함께 우편감시과는 개별의 정부관리기관이며 세번째의 규모이다 또 미보안국(The U.S. Marshals Service)은 94명의 집행관(marshals)과 1,800명의 부집행관(deputies)을 두고 있는 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직원은 법집행과 법원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개의 상이한 연방 법원에 배치되어 있다.

연방기관의 역할과 임무는 각기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법은 연방의 특정기관의 직원은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방의 법집행관은 그 역할면에서 도시 경찰관의 그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즉 연방의 법집행관은 도시경찰관과는 달리 모호하고도 어려운 질서유지의 직무가 없는 것이다. 흔히 도시경찰관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출동하여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어려운 재량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연방법집행관은 그같은 초연한 사건에 반드시 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FBI의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는 상당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FBI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08년에 창설되었다. 당시 의회는 국가경찰력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FBI는 「에드가 후버(J. Edgar Hoover: 1924-1972)」의 영도 아래 이미 알려진(Alleged) 파괴범(subversives)을 조사하고 은행강도나 도난차량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비평가들은 FBI가 지식인 범죄(white-collar crime), 조직범죄,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버」가 사망한 후, FBI는 그동안 파괴범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범법행위를 했음을 알았다. 드디어 1970년말 FBI는 「윌리엄 웹스터(William Webster)」의 영도 아래 white-collar crime과 조직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³⁶⁾ 요컨대 한 기관의 역할과 임무라는 것은 단순한 법규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FBI의 경우에서 보듯, 한 기관의 법집행권의 강력한 행사는 행정적 재량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36) Sanford J. Ungar, FBI (Boston: Little Brown, 1976): James O. Wilson, "The Changing FBI-The Road to Abscam," Public Interest 59 (Spring 1980), pp. 3-14.

第 3 節 日本警察의 任務

1. 國家概要와 警察體制

아시아(Asia), 대륙 동쪽, 동해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는 입헌군주국,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고꾸(四國), 규우슈(九州)의 4대섬(島) 및 부속도서로 일본열도를 이루고 있다. 총면적 37만8천Km², 인구 약 1억2천2백만명(세계7위, 1990년), 수도는 동경부이다. 일반적으로 홋카이도·오우(奥羽)·간또(關東)·쥬부(中部)·긴끼(近畿)·쥬고구(中國)·시고꾸(四國)·구우슈의 8지방으로 나누어진다.

일본민족의 기원에 대하여는 정설이 없지만 대체로 「몽고로이드」계로 동「아시아」가지에 사는 다른 인종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세, 전국시대 말기 「오다 노부나가(職田信長)」를 계승한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전국을 통일하였고, 1603년에는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江戸)」幕府를 열었다. 그 후 1868년 명치유신으로 근대화의 기틀을 잡아 봉건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부터 20세기초에 걸쳐 청일·노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일본은 세계열강에 올랐다. 1931년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불러 일으키고 다시 「파시즘」의 독일·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어 영·미와 대립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였으나 미국의 원폭 투하로 1945년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연합국에 의해 무장해제와 민주화가 추진되었고 한국의 6.25사변으로 경제부흥의 계기를 얻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국가원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일본국의 상징」이라 명시되어 있는 천황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체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내각」이 행정권을 가지며 수상과 국가대신으로 구성되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양원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위에 있고 정원은 중의원이 511명에 임기는 4년이며, 참의원은 252명 정원에 임기는 6년, 3년마다 그 반수를 교체한다.

가. 중앙행정체제

일본의 행정조직은 종전 후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개혁의 구체적인 지도원칙은 국민주권의 원리·삼권분립의 원칙·국회의 최고성·의원내각제도·관제대권의 폐지·지방자치의 존중 등이다. 행정조직의 주요 부분은 내각법·국가행정조직법·각성설치법 등의 계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결정에 관한 법률사항의 범위는 확대되어 내각·성·위원회와 그 내부부국으로서의 국·부·부속기관 및 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률사항이 되었다.

(1) 내 각

내각은 행정조직의 정점에 위치하여 최고의 행정기관으로서 국정의 중추가 되고 있으며 합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 내각은 헌법상 행정권이 귀속하는 주체가 되고 있으며 내각의 구성원은 헌법에서 정해지고 있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으로 구성되고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으로서 내각을 대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내각의 직무는 일본 헌법 제73조에 의하면, 일반행정사무 이외에 ①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며, ② 외교관계를 처리하며, ③ 조약을 체결하며, ④ 관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⑤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⑥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며, ⑦ 대사·특사·감형·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내각의 참모·보조기구

일본의 내각은 행정권의 주체로서 최고행정기관이지만 약간의 전관사무 이외에는 주임의 대신인 각 성 대신이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내각이 조정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롭게 각료의 임면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으로서의 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각참모·보조기구가 설치되고 있다.

내각의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부국으로서는 내각공방·내각법제국·인사원·국방의회가 내각법에 근거를 두고 내각에 설치되고 있다. 이 밖에 내각에 대하여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는 행정관리청·경제기획청·과학기술청·대장성주계국 등과 사무차관의회·정무차관의회를 들 수 있다. 또한 총리부의 참모기능적 역할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청·성은 원칙으로 기능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있으며 현재 총리부·법무성·외무성·대장성·문부성·후생성·농림성·통상산업성·운수성·정성·노동성·건설성·자치성 등 1부·12성이다.

총리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 각성의 장은 각성대신이며 헌법 및 내각법에서 말하는 주임의 대신으로서 각각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한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데 국무대신이 모두 주임의 대신 또는 각성 대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하지 않는 대신을 국무대신 혹은 무임소대신이라 한다. 국가공안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과, 행정관리청·북해도개발청·방위청·경제기획청·과학기술청의 각 장관에는 국무대신을 반드시 補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은 총리부의 외국으로 설치되고 있다.

나. 지방행정체제

일본의 지방행정체제는 자치제도를 근간으로 하며, 자치제도상의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나누어진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한 都·道·府·縣 및 市·町·村이 있고, 특별지방공공단체는 특별구와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및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 등으로 조직·사무·권능 등이 아주 특수한 존재이다.

전국에 보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 중 都道府縣은 국가와 시정촌의 중간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특별시·직할시·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都道府縣은 시정촌에서 할 수 없는 사무와 대규모사업 및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업·중앙정부와 시정촌과의 연락 및 시정촌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한다. 1990년 현재 동경부·북해도·경도부·대판부 및 43개현이 이에 해당한다.

시정촌은 기초적 행정단위이자 가장 본질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시읍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都道府縣이 광역적인 단체로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강한 데 비해 시정촌은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警察組織과 一般的 任務

가. 경찰조직

1947년의 구경찰법하에서는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의 이원적 조직구조였는바, 신경찰법³⁷⁾에서는 위의 양자를 都道府縣경찰로 일원화시켰으며, 아울러 국가긴급사태의 포고시 등을 대비하여 중앙에 국가경찰조직을 따로 두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도도부현자치체경찰)의 이원적 조직이나 구경찰법하에서의 이원조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의미의 이원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국가경찰기관으로는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밑에 「경찰청」을 두었으며, 그 산하기관으로 각 「부·현」내에 관구경찰국을 두고 있다. 지방경찰기관으로는 「都·道·府·縣」에 「都·道·府·縣 공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밑에 「경찰본부」를 두었으며 그 밑에 하급기관으로 「경찰청」·「경찰서」·「파출소」 또는 「주재소」를 두고 있다. 그리고 경찰업무는 都·道·府·縣에서 원칙적으로 처리케 하고, 국가는 긴급사태의 포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직접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업무의 성격이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와의 쌍방에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都·道·府·縣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가 都·道·府·縣의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일본경찰기구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7) 일본경찰법, 1954년 6월 8일, 법률 제162호 제정.



<그림 2-1> 일본경찰기구표(1991. 12)

나. 경찰의 임무

(1) 경찰임무

일본경찰의 일반적 임무는 경찰의 기본법인 「경찰법」 제1장 제2조에 「경찰의 책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임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피의자의 확보·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당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한다.

② 경찰의 활동은 엄격하게 전항의 책무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책무의 수행에 당하여서는 부편부당과 공평중정을 지켜야 하고 만일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및 자유의 간섭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2) 국가공안위원회의 임무

1) 구 성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대신으로서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대리할 자를 미리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정하여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가공안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위원회 기능의 계속성 및 안정성과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위원은 재임할 수 있고 보궐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할 수 있다.

2) 임 무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치안유지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특히 중앙기관에서 해야 하는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관장한다. 한편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능률적이고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경찰의 교양·통신·장비·범죄감식·범죄통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 경찰사무의 특성으로 보아 지방기관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

요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하며, 이 경우 조정은 지방기관의 재량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가공안위원회는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을 관리(대강과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것)할 수 있다.

(3) 都道府縣 공안위원회의 임무

1) 구 성

都道府縣 공안위원회는 都·道 및 지정도시³⁸⁾를 포괄하는 부현은 5인, 지정부현 이외의 현과 지역공안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위원은 당해 도도부현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자로서 임명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를 행한 직업적 공무원의 전역이 없는 자 중에서 도도부현 지사가 도도부현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지정도시를 포괄하는 도부현위원회에는 지정도시의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위원 2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는 지정도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고 한 것이다.

2) 임 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경찰을 관리한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경찰에 대한 관리를 경시총감 또는 당해 도부현 경찰본부장을 통하여 행하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위임에 따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아울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 및 다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외에, 경찰법에 정하여져 있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개별적인 권한으로는 지방 경무관의 임면에 관한 동의권, 도도부현경찰의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파면에 관한 권고권, 도도부현경찰의 조직 세목에 관한 제정권, 경찰청 또는 다른 도도부현경찰에 대한 원조 요구권이 있다.

38) 지정도시란 「오오사까」시, 「나고야」시, 「교토」시, 「요코하마」시, 「고베」시, 「북큐슈」시, 「삿또로」, 「가와사끼」시, 「후쿠오까」시, 「히로시마」시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며 당해시가 소속한 都道府縣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치단체적 도시이다.

3. 機能別 警察任務

가. 警務警察

(1) 경무경찰의 임무

경무경찰은 경찰조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한 지원기능으로서 유치장 관리 외에는 우리 나라와 대동소이하게 청거시설·장비·항공대의 관리, 용도 및 회계, 사무능률·공보 및 인사·급여·후생 등 인사관리, 경찰관의 범죄와 비행감찰 등 경찰내부로 향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무경찰의 담당분야는 사무의 합리화와 책임의 명확화 및 조정·통제 등을 기하기 위한 조직관리, 임면·승진·근무조건적 적정화, 급여·표창·징계 등의 인사관리, 복리후생, 교육훈련, 문서관리, 재무관리, 경찰공보, 유치장 관리, 경찰장비사무로 나누어 진다.

(2) 경무경찰 관련법규

- ① 국가공무원법(공시 1949. 1. 21. 개정 1983. 12)
- ② 지방공무원법(공시 1950. 12. 13. 개정 1982. 7)
- ③ 경찰점검규범(공시 1954. 8. 5 경찰청훈령 개정 1960. 4)
- ④ 경찰관등에 대한 특별보상실시요령(제정 1961. 6. 13 각의결정 개정 1978. 4)
- ⑤ 경찰관의 직무에 협력원조한 자의 재해급부에 관한 법률(제정 1952. 7. 개정 1982. 7)
- ⑥ 피의자 유치규칙(제정 1957. 8. 22.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개정 1984. 1.)
- ⑦ 경찰관의 복제 및 복장에 관한 규칙(제정 1956. 12. 19 개정 1978. 6)

나. 형사경찰

(1) 형사경찰의 임무

형사경찰은 시민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살인·강도·방화·상해·절도범죄 뿐만 아니라, 유괴범·지능범·선거범죄·폭력단범죄 등 각종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 조사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그와같은 수사활동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 경찰 활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법규

- ① 형법(제정 1907. 4. 24. 개정(10차) 1980)
- ② 형사소송법(제정 1948. 7. 10. 개정(10차)1979)
- ③ 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제정 1930. 5. 22.)
- ④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1926. 4. 10 개정 1964. 6.)
- ⑤ 폭발물취체벌칙(제정 1884. 12. 17 개정 1918.)
- ⑥ 경범죄법(제정 1948. 5. 1. 개정 1973. 10.)
- ⑦ 범죄수사공조규칙(제정 1957. 7. 11. 개정 1974. 9.)
- ⑧ 이동경찰규칙(제정 1954. 12. 29 개정 1960. 3.)
- ⑨ 국제수사공조법(제정 1980. 5. 29)
- ⑩ 검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제정 1980. 5. 11.)

다. 방법보안경찰

(1) 방법보안경찰의 임무

방법보안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사고의 방지 및 소년의 보도, 보호활동 등 주로 시민생활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려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보안경찰의 임무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형사경찰과 방법보안경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성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건위생관계사범의 단속이라든가 공해사범의 단속, 외국 환어음과 무역관계등 경제사범의 단속 등 범죄보안경

찰의 활동은 그 범위와 질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보안경찰보다는 형사경찰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범보안경찰의 임무는 크게 방범경찰·소년경찰·보안경찰·풍속경찰·외근경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바 절을 바꾸어 소개하기로 한다.

(2) 보안경찰 관련법규

-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48. 7.10 개정 1958. 7.)
- 공중욕장법(제정 1948. 7. 12 개정 1983. 12)
- 여행장법(제정 1948. 7. 12 개정 1983. 12)
- 여관업법(제정 1948. 7. 12 개정 1983. 8)
- 매춘방지법(제정 1950. 5. 24 개정 1985. 5)
- 주취공중에 대한 유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61. 6. 1)
- 경마법(제정 1948. 7. 13 개정 1978. 12)
- 자동차경주법(제정 1948. 8. 1 개정 1983. 12)
- 소형자동차경주법(제정 1950. 5. 27 개정 1984. 5)
- 모타보트 경주법(제정 1951. 6. 18 개정 1984. 5)
- 총포·도검류 소지 등 취체법(제정 1958. 3. 10 개정 1980. 5)
- 무기제조법(제정 1953. 8. 1 개정 1984. 5)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정 1918. 4. 4. 개정 1983. 12)
- 화약류취체법(제정 1953. 8. 1 개정 1984. 5)
- 고압가스취체법(제정 1961. 6. 7 개정 1984. 5)
- 마약취체법(제정 1953. 3. 17 개정 1985. 7)
- 각성제취체법(제정 1951. 6. 30 개정 1973. 10)
- 아편법(제정 1954. 4. 22 개정 1984. 5)
- 대마취체법(제정 1948. 7. 10 개정 1984. 5)
- 독물 및 극물 취체법(제정 1950. 12. 28 개정 1985. 7)
- 식품위생법(제정 1947. 12. 24 개정 1972. 6)

- 정신위생법(제정 1950. 5. 1 개정 1985. 5)
- 경비업무(제정 1972. 7. 5 개정 1982. 7)
- 소년법(제정 1948. 7. 15 개정 1985. 6)
- 아동복지법(제정 1947.12.12 개정 1985)
-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제정 1922. 3. 30 개정 1947. 12)
- 미성년자 흡연금지법(제정 1900. 3. 7 개정 1947. 12)
- 가출인 발견활동 요강(제정 1976. 9. 21)
- 공해대책기본법(제정 1967. 8. 3 개정 1983. 12)
-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1970. 12. 25)
- 대기오염방지법(제정 1969. 6. 10 개정 1974)
- 수질오염방지법(제정 1970. 12. 25 개정 1985. 7)
- 소음규제법(제정 1968. 6. 10 개정 1971. 5)
- 악취방지법(제정 1971. 6. 1)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제정 1970. 12. 25 개정 1983. 5)
-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1957. 6. 10 개정 1983. 5)
- 방사성 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애의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 1957. 6. 10 개정 1982. 7)
- 외근경찰운영규칙(제정 1969. 6. 19)

라. 교통경찰

(1) 교통경찰의 임무

1) 경찰청

교통에 관한 경찰청의 관장 내용은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경찰운영과 경찰에 관한 제도의 기획과 조사”라는 임무에 포함되어 수행되고 있으나 경찰법 이외에 다른 법령상으로도 교통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에 관한 경찰청의 소관사무를 보면 ① 자동차 운전면허의 거부·취소 등에 대하여 도도부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 ②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자동차운전의 금지에 대하여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 차량 등의 최고속도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처리를 지시하는 일, ③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도부현 경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의 시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일, ④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할 도로의 지정 및 건설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 일, ⑤ 도도부현 경찰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시설계획의 변경을 지시하는 일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과학연구소의 교통부연구실에서는 교통사고의 방지 기타 교통경찰에 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구경찰국의 교통업무는 관구경찰국 교통부에서 관장하며 주업무는 전국적인 간선도로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것이다.

2) 道·都·部·縣 경찰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통관계 업무를 관장하며 특히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에 의한 권한으로서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할 도로의 지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과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해서 도로관리자와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획을 작성·실시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도부 경찰본부에는 교통부를 두고 교통업무를 관장하며, 기타 현경찰본부는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기타 도로교통사정에 의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현에 교통부를 두고 있다.

3) 경찰서

일선 경찰서는 교통과(계)에서 교통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교통경찰업무는 도도부현경찰에서 대부분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주차위반단속 등 국지적인 업무에 한하고 있다.

(2) 교통경찰 관련법규

- ① 교통안전대책기본법(제정 1970. 6. 1 개정 1983. 12)
- ② 자동차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62. 6. 1 개정 1971. 6)
- ③ 토사 등을 운반하는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65. 8. 2 개정 1985. 7)
- ④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제정 1966. 4. 1 개정 1981. 3)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도로,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 ⑤ 교통방법에 관한 교칙(제정 1978. 10. 30 개정 1985. 8)
- ⑥ 자동차 안전운반센터법(제정 1975. 7. 10)

마. 경비공안경찰

(1) 경비공안경찰의 임무

경비공안경찰은 경찰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키 위해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에 관한 범죄(내란죄·외환죄·미군 기밀의 탐지 수집누설에 관한 죄·파괴활동방지법·비밀보호법·외국인등록법·출입국관리법 위반죄 등)의 단속과 각종 사회운동에 수반한 불법사안(공산주의운동·우익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대중운동·학생운동 등)의 단속외에 재해 발생시에 있어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비경찰이 맡고 있는 담당분야는 경호경비활동, 경비범죄수사, 재해경비 등이며 공안경찰은 무엇보다도 음지에서 활동하면서 정치단체는 물론 모든 노동조합이나 대중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공산주의 국가(북한 등)의 스파이를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생시위 등 집단사태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이 기동

대 등의 지원을 받아 진압활동을 지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경경시청의 경우는 경비부장 책임하에 500명 단위로 편성된 기동대 대대장이 진압활동을 전담하고 경찰서장은 기본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경비공안 관련법규

- ① 과양활동방지법(제정 1952. 7. 21 개정 1962. 9)
- ② 火災瓶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1972. 4. 24)
- ③ 신동경국제공항의 안전확보에 관한 긴급조치법(제정 1978. 5. 13 개정 1984. 12). 동경 나리따공항의 건설과 관련하여 극좌폭동집단의 반대투쟁 등 폭력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동경국제공항 및 그 주변에서의 폭동주의적 과양활동이 격렬한 상태를 고려하여 당분간 신동경국제공항 및 그 기능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를 방해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이용하는 공작물의 사용금지, 소지품의 일시보관 등을 정한 것이다.
- ④ 경비실시요칙(제정 1963. 11. 14 개정 1966. 3). 경비실험자의 마음가짐, 경비실시 계획수립 및 요령 기타 경비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⑤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1969. 8. 7)

바. 통신경찰

(1) 통신경찰의 임무

통신경찰은 경찰활동에 있어서 지휘·보고·연락 등의 정보전달수단으로서 경찰운영상 중추신경계통과 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치안사안의 광역화 및 스피드화에 따라 도도부현 경찰의 긴밀한 연락과 협력에 의한 경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정보연락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있고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가 대량화하고 음성·문자·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송하는 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통신경찰에서는 제1선 경찰활동의 신속성·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의 정보통신 시스템의 고도화·과학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경찰분야의 발전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과 시행을 중앙관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통신경찰 관련법규

- ① 전파법(제정 1950. 5. 2 개정 1984. 12)
전파의 능률적인 이용과 침해전파 등에 대한 단속근거 규정이다.
- ② 유선전기통신법(제정 1953. 7. 31 개정 1984. 12)
- ③ 전기통신사업법(제정 1984. 12. 25)
- ④ 경찰통신 규칙(제정 1955. 11. 17 개정 1958. 3)
- ⑤ 경찰전화 요칙(제정 1967. 5. 20 경찰청 훈령 개정 1968. 6)
- ⑥ 경찰전보 요칙(제정 1965. 3. 25 개정 1975. 4)
- ⑦ 경찰무선통화 요칙(제정 1965. 3. 15 개정 1966. 4)

第 4 節 韓國警察의 任務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법규는 형식적인 법률 즉,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 제정 공포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국민에게 대한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본질로 하므로 법치주의의 원칙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바 행정권의 일부인 경찰권의 행사는 당연히 일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정한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경찰의 재량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一義的이고 확정적으로 임무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나 모든 치안상황, 여건을 예상하여 이를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기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며 경찰행정의 전문, 기술성에 따른 경찰임무수행의 능률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경찰분야의 발전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과 시행을 중앙관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통신경찰 관련법규

- ① 전파법(제정 1950. 5. 2 개정 1984. 12)
전파의 능률적인 이용과 침해전파 등에 대한 단속근거 규정이다.
- ② 유선전기통신법(제정 1953. 7. 31 개정 1984. 12)
- ③ 전기통신사업법(제정 1984. 12. 25)
- ④ 경찰통신 규칙(제정 1955. 11. 17 개정 1958. 3)
- ⑤ 경찰전화 요칙(제정 1967. 5. 20 경찰청 훈령 개정 1968. 6)
- ⑥ 경찰전보 요칙(제정 1965. 3. 25 개정 1975. 4)
- ⑦ 경찰무선통화 요칙(제정 1965. 3. 15 개정 1966. 4)

第 4 節 韓國警察의 任務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법규는 형식적인 법률 즉,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 제정 공포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국민에게 대한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본질로 하므로 법치주의의 원칙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바 행정권의 일부인 경찰권의 행사는 당연히 일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정한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경찰의 재량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一義的이고 확정적으로 임무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나 모든 치안상황, 여건을 예상하여 이를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기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며 경찰행정의 전문, 기술성에 따른 경찰임무수행의 능률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一般的 任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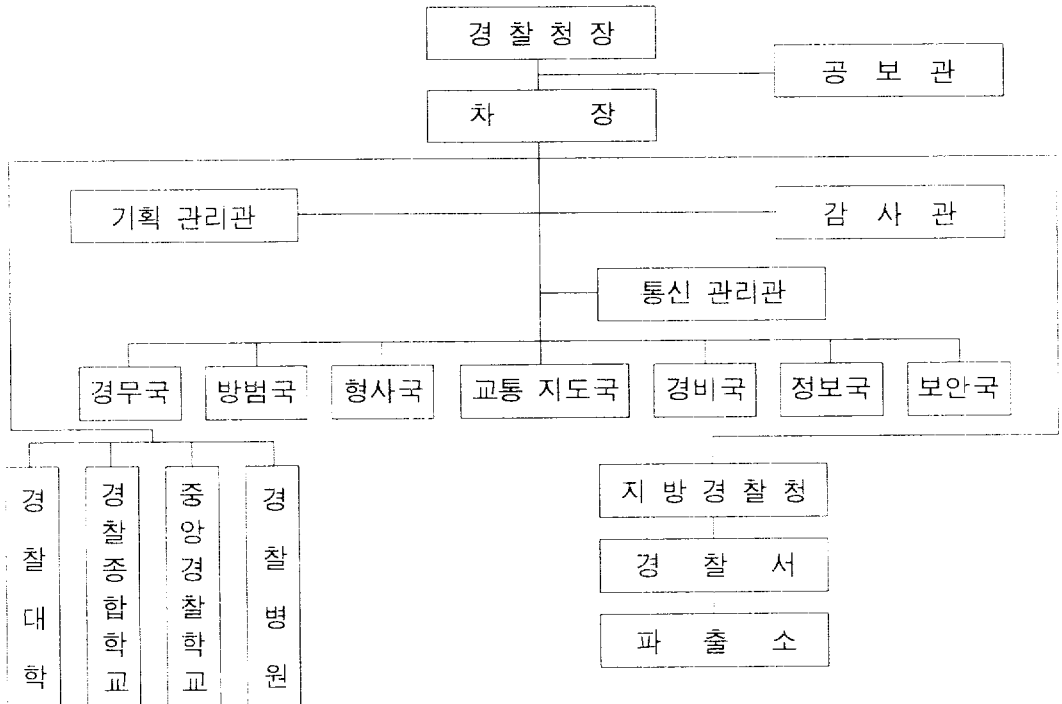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찰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그 동안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때로는 정당성이 없는 정부 아래서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였지만 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 자체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른 경찰청의 독립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외형적 기초를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와 「경찰청사무분장규칙」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와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의하면 경찰관은 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②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임무범위를 예시하고 있는 바, 경찰의 기본적인 직부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임을 알 수 있으며 기타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 내에서만 해석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는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각종 단행법규에 의하여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거의 전 부처에서 요구하는 방대한 양의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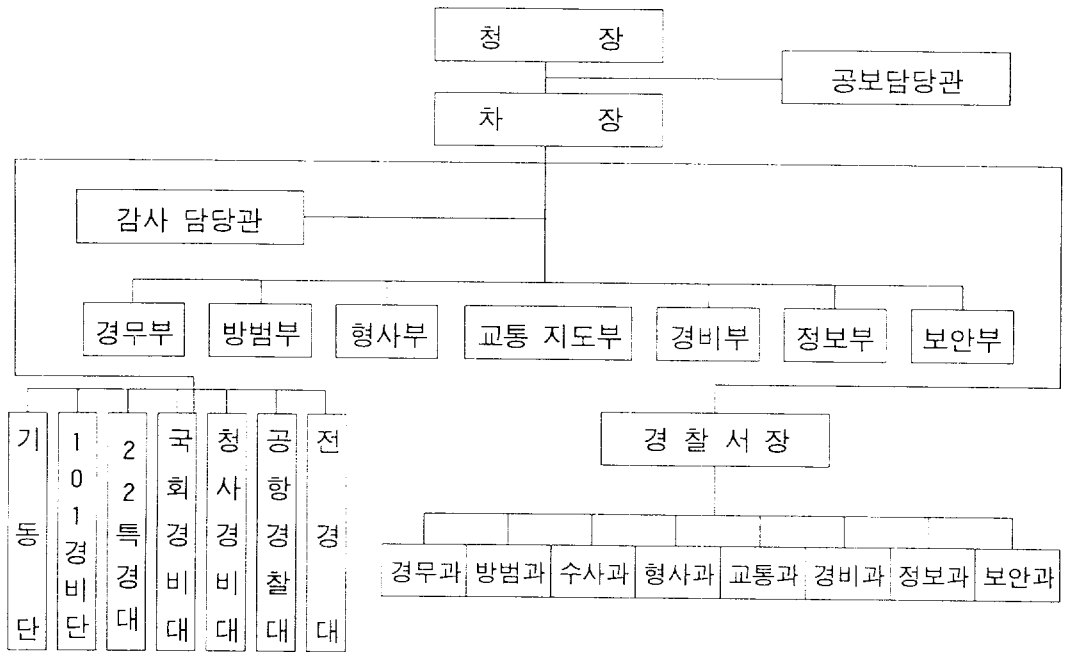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임무」나 「직무의 범위」는 조문 제목의 표현처럼 임무와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 규정이 곧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수권(근거)규정 이라고는 볼 수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확정적 의의를 가지는 개별적 수권조항(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동법 제4조 보호조치 등)은 종국적으로는 그 개별적 수권조항의 법해석문제에 귀착하게 되므로 특히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련된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불확정 개념이기는 하지만 보충적, 제2차적 수권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韓國警察의 機能別 任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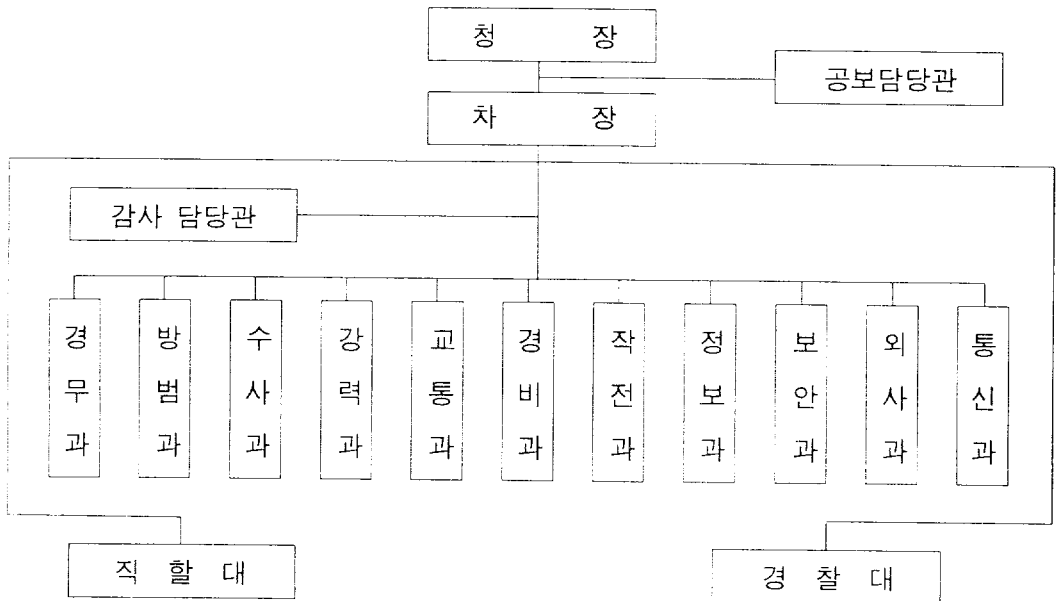
현재의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찰행정의 본질적 업무를 경무,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경찰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다시 경찰임무 중 범죄수사등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구성요건 등)에 충족되었을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효과(형벌 등)를 부과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사후적 임무수행은 법집행기능으로, 순찰등과 같이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거나 교란하리라 예측되는 위험한 행위, 상태 즉, 무질서행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법집행이전에 재량적으로 행하는 현장조치적 임무수행은 질서유지 기능으로, 지리교시 등과 같이 국민에게 편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수행은 봉사행정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경찰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2-2〉 경찰청 기구표 (1991. 8. 1)



<그림 2-3> 서울지방경찰청 기구표 (1991. 8. 1)



<그림 2-4> 시·도 지방경찰청 기구표 (1991. 8. 1.)

가. 경무경찰

경무경찰은 유기적 조직체인 경찰조직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관리적 경찰사무를 담당하며 방법,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의 경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 관리하고 대외적 홍보, 민원업무처리를 주로하는 경찰로 크게 경무, 경리 및 민원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제상 경무, 인사, 경리, 공보·기획, 감사·감찰, 장비과(계)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경 무

경무는 서무, 기획 및 감사, 직무감찰, 후생복지, 인사관리 등을 포함하며 이중 서무업무와 기획, 감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주로 소속 경찰관의 수에 의하여 업무수요가 결정된다. 여기서 ① 서무는 문서의 발송 및 접수, 일일업무보고, 치안일지 작성, 제증명 발급, 청사관리, 보안, 회의 및 행사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② 기획·감사는 주요 업무계획의 작성, 심사분석, 치안행정감사 등의 업무를 ③ 직무감찰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예방적 감찰과 사후감찰을 ④ 후생복지는 연금, 의료보험, 원호, 공제회, 대부, 장학업무 등을 ⑤ 인사관리는 소속경찰관의 전보, 근무평점, 승급, 상훈, 교양 및 직무교육 등을 각각 포함한다.

(2) 경 리

경리업무는 예산집행, 급여계산, 장비관리, 재산관리 등의 업무로 구성되는데 ① 예산집행은 각종 경비의 지급과 결산업무를 ② 급여계산은 봉급 및 수당의 계산과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③ 장비관리는 차량관리, 장비·무기관리, 물품관리, 피복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포함한다.

(3) 민원업무

민원업무는 민원상담,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을 포함한다.

(4) 기 타

경무경찰은 경찰관련 신문, 방송 및 간행물의 분석 등 공보관련 분석업무와 경찰 관련 보도자료의 수집, 배포등 공보,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무선 통신망 구성과 통신장비의 관리등과 같이 통신기능과 통신보안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무경찰은 주로 조직자체의 유지관리기능과 타경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경무경찰의 임무는 대부분이 대 조직적인 봉사과 민원봉사 등 봉사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후감찰 등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법집행기능을 찾아볼 수 있고 예방적 감찰등에서 질서유지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나. 방법경찰

방법경찰은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으로 경찰기능 중 가장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며 방법에 속하는 주요 업무로는 방법계획 수립과 기초질서 저해사범 단속, 풍속영업규제, 불법수렵행위 단속, 윤락행위 단속, 사격장 지도 단속, 사행행위 단속, 자연보호 저해사범 지도단속 등의 단속업무와 청소년 보호관리, 유실물 관리, 보호실관리, 전당포 영업관리, 신용조사업관리, 산림 보호관리, 유원지 풍기관리, 산악구조대 운영지도 등 지도, 관리업무내지 방법순찰, 지·파출소 운영관리업무와 방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무업무가 있다. 이들 업무의 수요와 중요도는 일선 경찰서의 관할구역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한 편이나, 대체로 기초질서 저해사범 단속, 풍속영업규제, 청소년보호, 방법순찰제도 운영, 유실물관리, 방법기획,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관리, 보호실관리 등의 업무가 일상적이며 비중이 큰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제상 방법기획, 방법지도, 소년과(계) 및 지·파출소, 순찰(기동)대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방법기획

방법기획은 민생치안이나 일제검문검색과 같이 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는 치안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 파출소 외근 경찰관, 방법 순찰대,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바, 경찰인력의 배치활동을 방법기획업무와 분리된 단위 업무로 보기보다는 방법기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초질서 저해사범 단속

기초질서 저해사범 단속업무는 1)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의 지도, 단속 2)범칙금 납부통고, 3)즉심청구 및 결과 처리 4)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자의 소재수사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3) 풍속영업규제

풍속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1)풍속영업활동의 규제 2)풍속영업 활동에 대한 지도 3)풍속영업 준수 위반사항의 단속 및 처리 등을 포함한다.

(4)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활동은 1)청소년 유해환경 실태파악, 지도, 단속 2)비행청소년 선도 3)미아, 가출인 보호 및 수배, 4)청소년 상담 및 보고 5) 결인, 불량아 단속 및 보호 등의 업무로 구성되나 이중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비행청소년 선도, 미아, 가출인보호 및 수배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서별 관할구역의 특성에 따라 업무비중에 큰 차이가 있다.

(5) 방법순찰

방법순찰업무는 주로 파출소에서 실제 수행되고 있으나 방법순찰업무에는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지령실 운영 2) 방법순찰기획 및 배치 3) 방법순찰 지도, 감독 등이 포함된다. 6) 유실물 관리

유실물 관리 업무는 습득물의 접수, 보관, 반환, 매각, 국고귀속 등의 활동을 포함하나 경찰서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업무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7) 총포, 도검, 화약류 등 관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관리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규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관장하며,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업무는 주로 경찰서장에 위임되고 있다.

(8) 기타 타기관 협조업무

외근업무 개선을 위한 경찰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법경찰 대상업무는 경찰고유업무보다 타기관 업무에 협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 이는 곧 업무량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방법순찰 및 범죄예방이라는 방법경찰 고유의 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92년 현재 방법경찰업무와 관련된 협조업무는 무려 44종에 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경찰의 업무 중 1)기초질서 저해사범 단속, 풍속영업 위반사범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결인·부랑아 단속, 불법총기소지 단속 등 각종 사범 단속은 법집행 기능으로 2)방법기획에 의한 경력배치 및 방법순찰, 각종사범에 대한 현장지도나 규제(선도)등은 질서유지 기능으로 3)미아, 가출인의 보호 수배, 청소년상담·보호, 순찰중의 지리교시, 유실물관리 및 기타 타기관 협조업무는 경찰차원에서 보면 봉사기능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수사(刑事) 경찰

수사경찰이란 경찰의 여러 기능 가운데서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경찰을 말하며 사범경찰이라고도 하는데 직무상 수사와 형사로 구분되며, 수사와 형사의 구체적인 업무구분은 경찰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수사에 속하는 주요 업무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 사건의 수사, 처리, 유치장관리, 범죄증거감식, 시국사건수사, 범죄경력 전산조회, 변사자 신원조사 등 수사와 직접관련된 업무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사건의 접수 및 배당, 송치서류검토 및 송치, 사건서류 관리, 미제사건기록관리, 범죄통계 및 분석) 및 일반 서무업무(문서수발, 기

획, 인사관리 등) 등이 있으며 형사에 속하는 주요업무는 대체로 강력사건, 폭력사건, 절도사건 및 그밖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서무업무를 포함하며 직제상 수사1, 수사2, 조사, 형사관리, 형사, 강력, 폭력과(계) 등에서 담당하며 기능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조 사

조사업무는 대부분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민원업무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은 사기나 횡령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나 풍속범죄, 폭력범죄와 같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가 많기 때문에 고발, 진정, 탄원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2) 범죄증거 감식

범죄증거 감식업무는 ① 현장감식 자료수집 ② 지문분류 및 감식 ③ 족흔적 ④ 감정자료 관리운영 ⑤ 사진감식 ⑥ 범죄수법 자료수집·관리 ⑦ 수사자료 카드 송부 ⑧ 감식장비 관리운영 등으로 구성되나 현장감식의 주요업무는 주로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 단위에서는 단순증거수집만을 하고 있어 업무수요가 큰 편은 아니다.

(3) 유치장 관리

유치장 관리업무는 ① 피의자의 유치, 면회, 호송 ② 보호실 관리 ③ 영치금 수불 등을 포함한다.

(4) 불법시위사건 조사

불법시위사건 조사는 집단범죄와 관련된 불법시위 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업무를 의미하며, 경찰서별로 업무수요에 큰 차이에 나타내고 있다.

(5) 강력사건

강력사건은 통상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포함하며 변사사건의 수사지

도, 초동수사 및 수사비상배치 업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6) 폭력사건

폭력사건은 ① 조직폭력, 일반폭력 ② 약취, 유인사건 ③ 공갈, 협박사건 ④행불사건 ⑤ 우범자 관찰보호 ⑥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이물질 투입사건 등을 포함한다.

(7) 절도사건

절도사건은 1)특수절도와 일반절도, 다액절도와 소액절도 등 각종도범 2)장물범 3)차량이용범죄 등을 포함한다.

(8) 기소중지자 및 용의자 공조수사

기소중지자와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자서에서 발생한 경우는 물론 타서에서 의뢰받은 경우에도 수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형사활동 수행

경찰의 형사활동은 필연적으로 국가, 사회의 환경 및 국가 시책의 변화에 따라 활동의 초점이 달리 전개되어온 바,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① 캠페인 등 각종 홍보 활동 ② 비리공무원 숙청, 삼청교육 실시 등 80년대의 일련의 사회정화 조리에 따른 불량배소탕, 유흥가 주변 조직 폭력배 집중단속, 비리공무원의 형사입건 활동 ③ 야간통금해제, 중고생 복장 및 두발자유화, 해외여행의 부분적 자율화등 일련의 자율화, 개방화 정책에 따른 범죄증가에의 대처를 위한 각종 형사활동 ④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형사의 주요범죄 소탕활동 등이 특수시책등으로 시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수사(형사)경찰은 주로 범죄행위자에 대한 법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시책 변화에 따라서는 법집행 이전의 질서유지 기능에도 동원되어 왔으며, 특히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에 대한 조사는 법집행적 성격과 봉사행정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업무라 여겨진다.

라. 경비경찰

경비경찰은 각종경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불법행위와 자연적, 인위적 혼란 사태에 대하여 조직적인 부대활동으로서 예방, 경비, 진압하는 경찰로 경비경찰의 업무는 경비, 경호, 경찰작전, 전경관리, 청원경찰운영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경비와 작전업무가 업무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업무이나 지방에서는 업무비중이 매우 낮아, 서울과 지방간의 업무수요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제상 경비, 경호, 작전, 전경관리, 상황실(과, 계) 등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능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경 비

경비업무는 ① 경호경비 ② 일반경비(대상에 따라 치안, 혼잡, 재해, 특수, 선거 경비 등으로 분류됨) ③ 다중범죄진압 등으로 다시 구분되며 업무의 성격상 주로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지방에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찰작전

경찰작전업무에는 ① 국가의 주요작전계획과 연계된 경찰작전계획의 수립 ② 전술교육훈련 ③ 5분대기조 운영 ④ 검문소 관리 ⑤ 예비군 무기, 탄약 관리 ⑥ 상황실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중 경찰작전 계획수립은 일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으며, 검문소의 운영은 본서 경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감독책임은 파출소장에게 있다. 또한 예비군 무기, 탄약 관리도 서울 등 대도시는 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급지, 3급지 경찰서에서만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3) 전경관리

전경관리는 전경의 후생복지, 건강관리, 복무규율, 소원수리, 시위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경비경찰의 임무는 주로 현재의 무질서, 위험한 상태, 행위를 현장

에서 제압하여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기능으로 질서유지기능이 대부분이며 다만 체포 등 신변확보 행위나 전경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는 법 집행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교통경찰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고를 단속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경찰의 임무는 크게 교통안전 관리, 교통사고 조사, 교통장비 관리, 면허관리와 교통관제 센터 운영 등으로 분류되며, 직제상 교통관리, 교통지도, 면허시험장,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교통업무도 경찰서간에 업무수요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일수록 업무수요가 증대되는 경향이 많다.

(1)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리업무는 ① 교통지도, 단속 계획수립 ② 교통기동순찰대 운용 ③ 교통 외근 경찰관 일일근무 지정, 감독 ④ 교통사범 지도, 단속 ⑤ 교통소통 및 통제 ⑥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조치 ⑦ 도로상의 위법공작물 제거조치 ⑧ 도로교통법 칩 납부통고 또는 즉심회부 ⑨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 단속 ⑩ 시위나 경호 등의 행사교통관리 ⑪ 교통전산 자료입력 ⑫ 모범운전자 선발 및 취소 상신 등을 포함하는데 이중 중요성과 비중이 큰 업무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 단속과 교통소통 및 통제업무이다.

(2) 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 처리는 ① 교통사고 현장조사 ② 관계인 조사 ③ 수사서류 작성 ④ 사고차량 수배 ⑤ 전산입력 자료작성 ⑥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통계관리 ⑦ 교통사고 관련 이의 사건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교통장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장비 관리 업무는 음주측정기나 속도 측정기 등의 교통장비의 관리로 주업무는 고장수리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는 6대도시는 지방경찰청에서, 기타 지역은 경찰서에서 담당하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4) 운전면허 관리

운전면허는 지방경찰청에서, 원동기 면허는 경찰서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경찰서에서 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통경찰은 임무 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 불법 주정차차량 강제조치, 도로상의 위험 공작물 제거조치, 도로교통법칙금 납부통고 및 즉심회부, 교통사고 처리업무 등은 법 집행기능으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지도행위나 경호 등 각종행사 관련 교통관리 등은 질서유지 기능으로 그리고 각급 학교에 대한 방문교통지도교육 등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홍보, 계몽활동은 봉사행정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 정보경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모든 위해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정보경찰의 정보업무는 그 업무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업무발생이 불규칙적인 것이 특징이며 정보의 수집, 보고, 전달, 정보사범의 내사, 순화, 검거, 집회 및 시위 처리, 신원조사처리, 회보 등의 업무와 일반서무, 정보운영기획, 예산지급, 정보관리, 기록관리 등의 정보관련 부대업무로 구분되며 직제상 정보1, 정보2, 정보3, 정보4과(계) 내지는 정보분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수집·보고·전달

정보형사는 매일매일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국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여론, 주민집단민원, 주요사회단체 및 인사의 동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의 분석은 주로 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정보사범 내사·순화·검거

국헌유지적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사범은 사안별 편차가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적인 순화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3) 집회, 시위의 처리

여기에는 ①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호 ② 옥외집회의 신고수리, 제한, 금지 ③ 집회 및 시위의 해산명령 ④ 집회, 시위 관련 채증업무 등이 포함된다.

(4) 신원조사 처리, 통보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확인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대인정보자료 수집활동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경찰의 임무는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의 동향을 파악 사전에 각종 정보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설득, 순화를 통한 와해를 주목표로 하므로 질서유지기능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사범의 처리나 집회시위의 금지, 해산명령 등 부분적인 법 집행기능도 고찰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 시위의 적극적 보호활동이나 각종 지역적 민원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결하는 봉사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사. 보안경찰

외세 또는 국내 불순세력인 간첩, 테러, 전복 등으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경찰의 활동은 보안관리, 보안공작수사, 보안시설관리, 보안시찰, 경호안전, 보안첩보수사, 보안분석조 운영 등의 업무로 구성되며 이외에 비밀문서관리, 주요업무 심사분석,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등의 부대업무가 있고 직제상 보안1, 보안2, 보안3, 보안4과(계) 내지는 보안분실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업무는 업무특성상 지역여건에 따라 경찰서별로 업무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 보안관리

보안관리 업무는 ① 주민신고 조직운영 ② 신고제도 요원교육 ③ 불온외국서적 또는 간행물 단속 및 관련사범 검거 ④ 불온선전물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안공작수사

보안공작수사는 ① 좌경의식화 수사공작 ② 방첩공작 ③ 노동현장 위장침투자 색출 등의 업무로 구성된다.

(3) 보안시설관리

보안시설관리에는 전력소, LNG통제소, 저수장 등의 보안시설 및 관계인원에 대한 보안 진단업무를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보안경찰의 임무는 주로 보안공작 수사 등 법집행기능이나 보안관리를 통한 질서유지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아. 외사경찰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단속하는 외사 경찰의 업무에는 외국인, 교포, 외국기관, 외국인 고용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사첩보수집, 외사외사관계 신원조사, 외국 및 교포 범죄수사, 대테러 동향 및 신원특이자 동향관찰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외국인 및 교포범죄수사는 법 집행기능에 속하며, 외사첩보 수집 및 동향 관찰 등은 질서유지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경찰활동과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

우리는 앞장에서 주요 국가들의 법규상의 경찰임무를 나라별로 고찰하였다. 이제는 경찰활동 전체를 놓고 기능별로 분류해 본 다음 나라마다 어느 기능에 치중하는가를 가려 보기로 한다.

경찰활동은 연원적으로 보아 근대 경찰은 질서유지와 법집행이라는 양대 기능으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관 내지는 국가이념이 근대의 입법국가(야경국가)에서 행정국가(복지국가)로 진전됨에 따라 종전의 양대기능 위에 봉사기능과 행정기능 등이 부가되고 있다.¹⁾

한편 경찰활동의 측정은 몇 가지 방법이 혼히 사용된다. 즉, 경찰의 공식적인 임무배치,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동원되는 상황, 경찰활동의 결과 등의 세 가지 방법²⁾이 그것인 바, 본 연구의 초점이 국가별 법규상의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어서 주로 「경찰의 공식적인 업무배치」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경찰임무의 특색과 범위를 고찰하기로 한다.

1. 경찰활동의 주요임무

경찰활동의 내용을 모두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경찰활동의 범위를 분류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어느 분류방법도 경찰활동을 총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 1) 필자는 경찰활동 중 질서유지와 법집행의 양대 기능을 「전통적 기능」으로, 봉사기능과 행정기능을 「현대적 기능」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경찰의 전통적 기능 위에 현대적 기능, 특히 봉사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는 바 어느 기능에 더 치중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국의 사법적 전통, 문화적 배경, 그리고 형사정책 등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 2) 이상현, “경찰의 기능, 구조 및 통제에 관한 비교경찰학적 고찰”, 「서재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서울: 동국대학교 논문집발간위원회, 1989), p. 182.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에서 예시한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질서유지

경찰기능의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질서유지기능이다. '질서'라는 말은 무질서가 없음을 의미하고 무질서라는 말은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거나 교란하리라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둘 이상의 사람들간에 벌어지는 얼굴을 서로 맞댄 갈등을 포함한 행위를 의미한다.³⁾

경찰임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대한 어려움은 상황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수단들이 거의 무한대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윌슨은 체포가 질서유지행위들 중에서 하나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골드스타인은 체포가 질서유지에 종종 사용되는 반면에 재량권에 따른 비체포 결정은 법집행 상황에서 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상황과 질서를 유지할 때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⁴⁾

사실 이 구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비트너가 지적했듯이, 경찰이 하는 일은 시민들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다.(예컨대 정도, 강도,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의 경우 그 임무가 명백하다. 즉, 그 위반자를 체포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위협적이고 불편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예컨대 교통사건, 이웃간의 분쟁, 대중들의 흥분 등) 그 임무가 분명치 않다. 경찰관의 임무는 이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할 어떤 개입 - 그것이 체포든, 경고 장을 내는 것이든, 상담을 하는 것이든,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조치든 간에 -을 선택하는 것이다.⁵⁾

여하간 경찰의 질서 유지 활동은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기능이다. 경찰활동의 또다른 기능인 법집행과 봉사행정도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O. W. Wilson,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 Hill, 1968), p. 16.

4) Herman Goldstein, Policing a Free Society (Cambridge: Ballinger, 1977), p. 39.

5) Egon Bittner,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70), p. 192.

나. 법의 집행

두 번째 경찰기능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찰은 거의 모든 시간을 범법자, 특히 주범자를 체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중범 체포는 형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체포는 일부 극소수의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⁶⁾

1967년 미국대통령의 범죄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의 범인검거는 일반 시민의 협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민협조가 많은 인명피해범 체포에는 재산범의 체포보다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경찰 자신은 절도와 주거침입과 같은 재산범 예방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민의 비협조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교통을 정리하고 도로 규칙을 이행토록 하는 책임을 지고 상당한 시간을 이것을 처리하는데 보내고 있으며 또한 성도덕에 반하는 범죄, 즉 공연음란 행위, 추행행위, 윤락행위, 간통행위 등과 성도덕을 조장하는 범죄, 즉 윤락유인행위, 윤락매개행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풍속범의 단속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을 이루어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장애를 주므로, 범죄를 예방하고 선량한 풍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법칙만으로는 불충분함으로 이에 적절한 행정적 법규를 제정 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고 기타 유해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⁷⁾

다. 사회봉사임무

경찰의 세 번째 기능은 광범위한 사회봉사임무이다.⁸⁾ 경찰의 봉사업무는 집안싸

6) Andrew Hacker, Book Review, Sept. 15, 1977, Rubinstein, op. cit., p. 347; New York Times, Sept. 1977, p. 25.

7) 경찰종합학교, 「보안경찰」(서울: 동아사, 1988), pp. 93-94.

8) 이상현, 전제논문, p. 190.

움이나 이웃간의 분쟁을 가려 주던가, 소음이나 기타 안면방해에 대한 불평이나 대중 앞에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등에 대한 불평등의 시정을 다루는 등의 중재업무(arbitration-mediation)와 가출자를 색출한다던지, 집없는 자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던가, 행려병사자를 처리한다던가, 갑자기 홍수와 같은 재앙이나 조난 같은 주민을 도와주는 봉사업무(service)로 대별할 수 있다.

범죄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더욱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방법을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에 비록 성과는 보잘 것 없지만 범죄예방의 미봉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⁹⁾

라. 행정적 기능

경찰의 행정적 기능은 주로 고물영업, 전당포영업, 신용조사업, 특수물의 취급 등에 관한 인허가 사무와 관내의 일반 가정이나接客업소의 위생시설의 검사, 단속영장 전달, 범죄에 관련된 사람의 출두서 작성 전달 등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여기서 말하는 고물영업, 전당포영업 등의 영업이란 보안경찰상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말하며, 경찰은 이러한 업소 등에서 야기되는 제반 위해를 경찰의 작용으로서 단속하게 된다.¹¹⁾

2. 영국경찰임무의 특색

1829년 수도경찰법(Metropolitan Police Act)이 제정됨에 따라, 로보트 필(Robert Peel)에 의해 두 사람의 공동경찰청장(Co-commissiners)이 임명되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리처드 메인(Richard Mayn) (또 다른 한 사람은 Charles Rowan)은 영국

9) John P. Clark & Richard E. Sykes, "Some Determinants of Police Organization & Practice in A Modern Industrial Democracy", Daniel Gla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4), pp. 462-463.

10) 경찰종합학교, 전계서, pp. 124-133.

11) 상계서, pp. 135-137 및 이상현, 전계논문, p. 191.

움이나 이웃간의 분쟁을 가려 주던가, 소음이나 기타 안면방해에 대한 불평이나 대중 앞에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등에 대한 불평등의 시정을 다루는 등의 중재업무(arbitration-mediation)와 가출자를 색출한다던지, 집없는 자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던가, 행려병사자를 처리한다던가, 갑자기 홍수와 같은 재앙이나 조난 같은 주민을 도와주는 봉사업무(service)로 대별할 수 있다.

범죄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더욱 효과적인 범죄예방의 방법을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에 비록 성과는 보잘 것 없지만 범죄예방의 미봉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⁹⁾

라. 행정적 기능

경찰의 행정적 기능은 주로 고물영업, 전당포영업, 신용조사업, 특수물의 취급 등에 관한 인허가 사무와 관내의 일반 가정이나接客업소의 위생시설의 검사, 단속영장 전달, 범죄에 관련된 사람의 출두서 작성 전달 등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여기서 말하는 고물영업, 전당포영업 등의 영업이란 보안경찰상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말하며, 경찰은 이러한 업소 등에서 야기되는 제반 위해를 경찰의 작용으로서 단속하게 된다.¹¹⁾

2. 영국경찰임무의 특색

1829년 수도경찰법(Metropolitan Police Act)이 제정됨에 따라, 로보트 필(Robert Peel)에 의해 두 사람의 공동경찰청장(Co-commissiners)이 임명되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메인(Richard Mayn) (또 다른 한 사람은 Charles Rowan)은 영국

9) John P. Clark & Richard E. Sykes, "Some Determinants of Police Organization & Practice in A Modern Industrial Democracy", Daniel Gla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4), pp. 462-463.

10) 경찰종합학교, 전계서, pp. 124-133.

11) 상계서, pp. 135-137 및 이상현, 전계논문, p. 191.

경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¹²⁾ 능률적 경찰의 제 1차적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며 제 2차적인 목적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는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같은 목적의 수행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리차드 메인의 경찰목적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영국경찰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현대 경찰에 이르기까지 움직일 수 없는 전통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영국경찰의 전통은 경찰조직이나 임무 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영국경찰체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틀(Frame)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찰조직에 있어서는 제1차적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제복경찰부가, 그리고 제2차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는 형사부가 조직되고 있으며, 경찰임무면에 있어서도, 제복경찰부는 비권력적 작용과 함께 보호적·예방적 임무를 수행하며, 형사부는 권력적 작용과 함께 진압적·사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¹³⁾

영국경찰의 임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비권력적 작용으로서의 질서유지 기능과 권력적 작용으로서의 범집행기능의 양대 기능으로 설명되거니와 이들 임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영국경찰은 정당정치와 분리되어 있다. 영국은 정당정치의 국가이며, 경찰은 보통 정당원인 의회 의원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하고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경찰국장의 선임까지도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원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경찰과 정당과의 관계는 극히 독립적이다. 이같이 경찰과 정당의 정치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영국의 경찰은 치안의 유지와 주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장구한 시일을 통하여 자연히 발달된 제도이며 그 직책의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는 사회가 용인하지 않으며, 경찰관의 지위가

12) Sir richard Mayne(1829) as quoted in Home Office, Police: England and Wales, The Training of Probationary Constables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69), p. 1.

13) 정진환, 「비교경찰제도」(서울: 학문사, 1996), p. 87.

제도 및 관습상으로 보장되어 정당의 당파적인 세력에 의하여 임면되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경찰관도 또한 사회의 비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인 행동은 적극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⁴⁾

영국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들의 법집행의 경우도 동일하다. 즉, 경찰의 법집행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된다는 것이다. 경찰의 중립적인 법집행은 단순히 집행·단속기관으로 규정 한데서도 비롯된다. 영국경찰은 오락실영업허가권 등 행정처분권을 갖지 않는다. 그 같은 권한 행사와 관련된 규칙제정권도 없다. 이것은 경찰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업무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당사자간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¹⁵⁾

물론 영국경찰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분배받고 정부가 경찰청장의 임면 등 인사권을 갖고 있어 국가정책을 외면한 경찰권 행사는 하지 않는다. 국가경찰(대런던경찰과 북아일랜드 경찰)의 경우 내무부로부터 100% 예산 지원을 받고 지방자치경찰은 내무성으로부터 예산의 51%를 지원 받는다. 국가경찰인 런던의 수도경찰청은 예산업무를 전담하는 재무관을 두고 있다. 재무관의 연봉은 총리보다 높다. 이 재무관은 과학적인 예산집행과 세입·세출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입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경찰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막고 예산집행을 감시한다. 경찰위원회는 2/3가 당적을 가진 여야의원들로, 1/3은 치안판사들로 구성되어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경찰청장 임면권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무부, 49%의 예산을 심의하고 경찰청장 임면 추천권 등을 행사하는 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정책의 집행권을 갖는 경찰청장 3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영국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⁶⁾

14) 정진환, 전계서, p. 8.

15) 경찰의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국경찰은 경찰관 선발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즉, 경찰관 지원생은 물론 배우자·부모형제 등 친인척이 경찰단속 대상업소(나이트 클럽, 주류업소 등)를 경영하면 선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나. 경찰의 고유임무로서의 사법업무

영국경찰은 그 임무 범위에 있어 질서유지 외에 사법사무도 또한 경찰의 고유임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경찰은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추권을 행사한다. 이 점은 대륙법계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불의 제도와는 판이한 것이다.

한편 검찰과의 관계를 보면 1879년 범죄소추법이 제정되어 「런던」에 검찰청이 설치되고 직권수추를 임무로 하는 검찰제도가 출현하였는 바 검사의 임무(동법 제 2조)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정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 또는 인수하고 또 이것을 속행한다. 그 외에 어떠한 사건이고 형사소송에 관하여 경찰의 장·법원서기 및 기타 관계자에게 조언과 원조를 주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경찰은 그 고유임무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지니고 있으며 한편 검찰과의 관계에서 조언과 원조를 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다. 경찰권의 강화와 임무범위의 확대

영국경찰은 연원적으로 자치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대륙법계경찰에 비하여 집행력이 약한, 즉 능률성이 떨어지는 경찰권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식민지 통치에서 야기되는 각종 분규를 수습하기 위하여 차츰 경찰권의 강화가 요청되기에 이르고 2차대전 이후에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서 경찰체계의 새로운 집권화¹⁶⁾와 조직의 정비로서 경찰권을 정비해 나가더니 급기야 1984년

16) 중앙일보, 1994년 3월 12일 자. 「경찰과 시민사회」(16), 영국 수도경찰청 워블던 경찰서의 한 간부는 영국경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가 세계 경찰의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는 무려 3백여 년이 걸렸다. 그 기간 중에 경찰조직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한 간부가 없었다는 전통이 영국경찰의 자랑거리이다.”- 중앙일보, 94. 3. 12.-

17) 전계서(비교경찰제도), p. 83.

어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경찰 및 형사증거법」을 제정하여 경찰권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 같은 경찰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경찰임무의 범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근대 자유주의시대 이래의 소극 목적적 경찰임무의 범위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제불황에 따른 사회혼란과 동서간의 이념대결에 따른 국제적인 긴장 등으로 영국경찰의 임무는 규제적 측면은 물론 적극목적적 급부기능에 이르기까지 상당 범위로 확대 증가되었다. 1970년대 이후 영국경찰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특이한 현상으로서 법집행 진수가 15% 이상, 그리고 봉사행정 내지는 지원행정 분야의 임무가 10% 이상 증가된 사실¹⁹⁾ 등은 경찰권 강화와 임무범위의 확대경향을 아울러 설명한다고 하겠다.

라. 전통적 기능에의 충실과 봉사기능의 증가추세

영국경찰기능이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몇가지 측정 방법이 있기는 하나 공식적인 임무배치의 비율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영국경찰임무에 관한 배치비율 단위: (%)

업무별	법집행	순찰	교통	봉사	행정	기타
비율	9.82	20.20	16.36	27.54	4.99	15.09

자료 : Paul G. Shame, *Police and People: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ST. Louis : The C. V. Mosby company, 1980), passim 및 이상현, 전제논문, p. 183에서 발췌.

18) 1947년에는 지방 경찰장 임명에 대한 내무성장관의 승인제로 강화, 1962년에는 왕립경찰연구위원회(Royal Commission on Police)가 설치되어 영국경찰조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1964년에는 「경찰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경찰을 어느정도까지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조직으로 개편하였다.

19) Albert Reiss, *The police and the public* (New Havens: Yale Univ. Press, 1979), p. 210.

구라과 대륙경찰 중 불란서와 독일의 경찰은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벨지움과 화란(和蘭)이 이에 따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적게 부수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수적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국가간의 차이를 정부의 철학과 사법의 전통의 차이로서 설명하고 있다.²³⁾ 즉 대륙국가들은 로마법의 영향으로 역사적으로 정부에 대한 온정주의적 철학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왕제국들은 각 지역사회의 적절한 운영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한 협의의 국가책임에 의존하여 Anglo-Saxon계의 정부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국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지 않았다. Anglo-Saxon의 전통으로는 가장 통치를 덜 하는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로서, 반면에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통치하는 정부를 최악의 정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 대륙계의 각 국가경찰이 언제나 필요하다면 국가의 남아도는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3국의 경찰은 명시된 부수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전통적 차이 외에도 경찰의 부수적 임무 수행과 관련된 요소로서는 경찰병력에 대한 도시의 인구규모를 들기도 한다.²⁴⁾

3. 미국경찰임무의 특색

미국의 법체제가 영국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째로 추구했던 바는 「자유」였기에 모든 제도와 문화는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찰제도가 빚어내는 특색도 영국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첫째는 다원적 분산체계라는 것이다.

즉, 미국경찰은 연원적으로 보아 도시경찰, 군보안관과 치안관, 읍·면경찰, 주경찰, 그리고 연방법집행기관 등 정부수준 별로 경찰이 5종이나 되는 다원성을 제1의 특징으로 한다. 위에 예시한 공경찰 외에도 사경비요원, 즉, 민간경찰(Private

23) Fosdick, op. cit., John Catman, Pol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참조.

24) 이상현, 전계논문, p. 184.

25) 정진환, 전계서(비교경찰제도), p. 171.

구라과 대륙경찰 중 불란서와 독일의 경찰은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벨지움과 화란(和蘭)이 이에 따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적게 부수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수적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국가간의 차이를 정부의 철학과 사법의 전통의 차이로서 설명하고 있다.²³⁾ 즉 대륙국가들은 로마법의 영향으로 역사적으로 정부에 대한 온정주의적 철학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왕제국들은 각 지역사회의 적절한 운영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한 협의의 국가책임에 의존하여 Anglo-Saxon계의 정부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국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지 않았다. Anglo-Saxon의 전통으로는 가장 통치를 덜 하는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로서, 반면에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통치하는 정부를 최악의 정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 대륙계의 각 국가경찰이 언제나 필요하다면 국가의 남아도는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3국의 경찰은 명시된 부수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전통적 차이 외에도 경찰의 부수적 임무 수행과 관련된 요소로서는 경찰병력에 대한 도시의 인구규모를 들기도 한다.²⁴⁾

3. 미국경찰임무의 특색

미국의 법체제가 영국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째로 추구했던 바는 「자유」였기에 모든 제도와 문화는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찰제도가 빚어내는 특색도 영국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첫째는 다원적 분산체계라는 것이다.

즉, 미국경찰은 연원적으로 보아 도시경찰, 군보안관과 치안관, 읍·면경찰, 주경찰, 그리고 연방법집행기관 등 정부수준 별로 경찰이 5종이나 되는 다원성을 제1의 특징으로 한다. 위에 예시한 공경찰 외에도 사경비요원, 즉, 민간경찰(Private

23) Fosdick, op. cit., John Catman, Pol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참조.

24) 이상현, 전계논문, p. 184.

25) 정진환, 전계서(비교경찰제도), p. 171.

Police)이 있다.

미국경찰의 다원성이 종종 업무상의 중복 또는 복잡성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고유영역을 확보, 독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경찰의 임무는 영국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경찰임무의 특색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집행 위주의 경찰임무

미국에서는 「Police」보다는 「Law-Enforcement Agency」 즉, 「법집행기관」이란 용어를 더 잘 사용한다. 위에서 보았던 미국경찰의 다원적 제기관들을 한마디로 「법집행기관」이라 부르며 특히 FBI 등의 연방법집행기관들은 예방적·봉사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Police」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 그리고 법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를 환언하면 전자는 사전적·예방적 경찰활동이며 후자는 사후적·진압적 경찰활동이라 할 것인 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식민지시대 이래, 물론 초창기에는 그 어떤 뚜렷한 임무상의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차츰 전자는 사설경비원(Private Watchman), 이른바 민간경찰(Private Police: Security Industry)이 담당하고, 후자는 공경찰((Public Police)이 담당하는 추세로 발전하여 왔다.²⁶⁾

전자에 대하여는 결코 법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기에 「법집행기관」= 「공경찰」의 등식은 상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에서의 경찰관 행사는 「법집행」이 주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미국경찰업무의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법집행업무」는 일상적 업무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한다고 하는 통계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역시 미국 공경찰의 주임무는 「법의 집행」이다. 따라서 미국 경찰은 건국이래 꾸준히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하여 전문화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러한 가운데 경찰의 비리나 병폐성 그리고 잔인성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경험하였다. 그때마다 경찰은

26) 정진환, 전계서, p. 171.

법집행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물리적인 힘을 더해 갔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대민관계 즉 소수민족(흑인) 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마찰이 심각해 갔으며 급기야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월남전과 관련된 반전시위와 맞물려 미국 역사상 유래 없는 경찰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960년대의 경찰 위기는 미국경찰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 전기가 되었다. 즉 종전의 「강력한 법집행체제」는 「인권적 법집행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결단은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²⁷⁾

법집행의 체제라 하면, 법집행의 방식이나 절차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체제상의 변화에 불구하고 미국경찰 임무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기능은 법집행기능이다. 물론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과 공식적인 업무배치 비율이나 실제적 업무량 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경찰임무의 형성요인의 다양성

미국경찰의 임무는 구라과 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많은 경우에 있어 그 어떤 합리적 계획 없이 지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

형성요인도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임무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별다른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그 특수임무를 떠맡게 된 것이다. 오늘날 경찰임무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법적 그리고 행정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미국 변호사회(ABA)가 확인한 주요한 5개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

27) 미국에서 법집행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사건은 1961년 오하이오(Ohio)주의 맵(Mapp) 사건, 1964년 일리노이 (Illinois)주 에스코베도(Escobedo)사건, 그리고 1966년 아리조나 (Arizona)주의 Miranda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맵사건을 계기로 비합리적 수단이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는 곤란에 이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배타적 규칙(Exclusionary Rule)이 선언되고, 에스코베코 사건은 범죄 용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이, 그리고 미란다 사건은 범죄용 의자의 묵비권과 그 고지의무등이 선언되기에 이르러 이러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들은 미국의 법집행체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정진환, 전계서 「비교경찰제도」, p. 172 참조.

28) Samuel Walker,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 Hill Books Co., 1983), p. 59.

면 다음과 같다.²⁹⁾

(1) 법적 위임사항

경찰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정부기관의 하나이다. 경찰임무의 이해를 위한 논리적 시발점은 법집행기관을 창설하고 있는 법규상의 규정이다. 법의 위임은 인간행위의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찰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질서유지를 위한 위임사항은 광범위하다. 범죄는 특정적 행위이나 질서는 하나의 조건이다. 질서와 무질서와의 차이는 너무나도 모호한 점이 있다. 이것은 경찰로 하여금 스스로가 택하는 일정상황에의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무질서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조차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경찰이 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 무력사용권

무력(force)에는 몇 가지 상이한 권한이 포함된다. 극단적으로는 치명적인 무력, 즉 타인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고 있다. 물리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체적으로는 심문하고 체포하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비트너(Bittner)의 지적과 같이 경찰의 무력사용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Potential)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게 그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사람이나 혹은 경찰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경찰행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⁰⁾

29) American Bar Association, Standards Relating to the Urban Police Function (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1973), pp. 46-47 및 정진환, 「미국경찰론」(서울: 양영각, 1994), pp. 175-181.

30) Egon Bittner, The Function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70), p. 40.

(3) 경찰의 수사능력

경찰에게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 다른 사회기관과는 달리, 민감하거나 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차 수사할 수 있는 훈련과 체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권력자는 그 어떤 정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례히 경찰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그같은 수사가 비합법적인 경우에 있어서 조차 가끔 있을 수 있다. 가장 최악의 권력남용은 경찰의 수사력을 정치 문제에 이용하는 것이다.

(4) 경찰수요와 활용성의 증대

경찰은 흔히 어떤 사회기관이나 혹은 사회문제에 최초로 접촉한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소요사태(disturbance)'는 우선 경찰에 신고되고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그들은 그것이 정신질환, 알콜중독 그리고 또 다른 사회문제 등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찰은 사건을 분류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기관으로 이첩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질서의 회복 외에 아무 일도 남지 않는 때도 있다. 경찰은 다른 기관이 그 어떤 이유로 해서 활용될 수 없는 경우의 문제들, 아직 사건 자체가 분류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분류는 되었으나 적절한 취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취급하게 된다.

경찰임무가 이같이 점점 더 복잡해진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의 활용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1930년대이래 경찰개혁과정에서 항상 시민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새로운 의사전달의 과학기술(전화, 무전기, 순찰자 등)은 경찰의 즉각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5) 지역사회의 압력

경찰의 임무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압력은 몇 가지 형태의 양상을 보여준다. 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은 경찰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영향력의 결과는, 우리가 소도시(또는 외곽도시)와 수도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많은 소도시나 외곽도시 사회에는 대도시와 있어서와 같은 사회적·경제적문제들이 없다. 이에 반하여 대도시에는 이 나라의 모든 사회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빈곤과 또 그와 관련돼 사회악 즉 범죄·가정파탄·정신질환·약물남용 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대도시에서의 경찰임무는 주로 이러한 사회악들과 싸우는 것이다.

다. 사회통제적 역할의 담당

경찰의 임무수행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사회통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그러나 134개의 상이한 민족집단으로 형성된 미국에서는 경찰의 그같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은 따지고 보면, 이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통제망(Social-Control Network)의 한 부분이다. 제노윳츠(Morris Janowitz)는 사회통제란 바람직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따라 스스로 조절해 나가야 하는 사회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사회통제란 억제(Repression)나 강요된 획일성(enforced conformity)과는 다른 것이다. 또 제노윳츠는 논평하기를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통제가 사회적 전환과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과연 계속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느냐”³¹⁾ 하는 것이라 하였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경찰은 사회적 변화의 진전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ABA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임무의 하나라고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위를 한다든지, 자유로이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권리의 보호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사회통제능력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순찰업무의 효과성, 즉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경찰의 순찰행위가 과연 범죄의 발생을 저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필(Robert Peel)의 원칙에

31) Morris Janowitz, "Sociological Theory and Social Contro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July 1975), pp. 82-85.

서 비롯한 전통적 순찰이론은 순찰행위는 효과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며, 많은 현대의 경찰관리 전문가(예를 들면 O. W. Wilson)들도 이 같은 견해를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찰 순찰업무의 효과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캔사스시의 예방순찰실험(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도 그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³²⁾

경찰행위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통제를 받는 일반시민의 의지(willingness)에 좌우된다. 이 점은 1977년 뉴욕시의 정전사태에서 극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당시의 정전은 7월 13일 오후 9시 35분에 시작되어 25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었는데, 그 시간동안에 야만적 파괴행위와 약탈행위가 뉴욕시 전체를 휩쓸었다. 경찰에서는 3,800명을 체포하였으나 전반적 무법상태를 진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태에 관하여 두 사람의 언론인은 “이 사건은 지배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³³⁾라고 논평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업무의 이해는 경찰의 사회통제능력 한계성을 먼저 인식함으로써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많은 상이한 수단에 의해서 사회통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 제1차적 사회통제기관과 제2차적인 것간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제1차적 사회통제기구이다.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개인은 적절한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개인은 (2차적 통제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 사회 그리고 종교조직 등에 의하여 한 걸음 더 사회성을 띠게 된다. 경찰의 역할 또한 이러한 복합적 사회요소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찰은 여러 가지의 사회통제 작용중 그 하나를 담당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경찰은 형사재판제도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다. 범인을 체포하기로 또는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후속업무는 크게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경찰은 ‘정의의 실현’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즉시 기각된 경우에도 그 개인은 이미 모욕적인 체포, 일반적 자유의 속박, 개인 사생활의 중단 그리고 체포사실의

32) Samuel Walker, Ibid., chap. 5.

33) Police Magazine 2(January, 1979), pp. 35-44.

기록 등에 의하여 이미 사실상의 그 어떤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반면에 그 어떤 불법적 사건이 야기되었을 때 그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곧 공식적으로 그 행동을 용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경찰과 형사재판제도상의 타 구성요소(기관)와의 상호작용은 비교적 복잡하다. 경찰은 타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그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경찰관은 흔히 검사나 판사의 관용에 좌절을 느낄 때가 있다. 이 같은 좌절은 곧 경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처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형사소추(공소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되도록 범인의 체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라. 행정기능 등의 부수적 임무는 거의 없다.

미국경찰임무의 기능별 고찰을 위하여 앞에서 본 영국경찰임무에 관한 배치비율을 나타냈던 동일 자료에서 미국경찰의 공식적 배치 비율을 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3-3> 미국경찰임무에 관한 배치비율 단위:(%)

업무별	법집행	순찰	교통	봉사	행정	기타
비율	23.3	20.2	14.9	39.9	0	1.5

자료 : Paul G. Shane, *Police and People: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S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1980), *passim*.

위의 표를 토대로 경찰의 임무의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을 보기 위하여 앞의 영국의 경우처럼 기능별 배치 비율의 표를 다시 만들어 보자. 이때 영국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국에서는 순찰과 교통임무에 있어 주어진 배치 비율중 각기 3분의 1이 법집행 업무로 계산되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보다 적게 약 20% 정도만이 법집행업무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미국은 앞에서 논한

34) Ibid(Police and People), p. 210.

것처럼 경찰임무는 법집행이 위주이어서 영국보다 법집행의 비율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형법」의 적용의 경우이며 순찰이나 교통업무의 경우는 임무의 상당 부분이 민간경비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에 이양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법집행 비율은 영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순찰과 교통업무의 비율중 20%를 법집행에 가산하여 <표3-4>를 다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별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부수업무
비율	30.4	28.2	39.9	1.5

위의 표는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는 법집행 위주의 경찰임무를 제1의 특색으로 하는 미국에서 공식적인 업무배치비율은 봉사업무가 39.9%로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행정기능이나 부수업무는 모두 합해야 1.5%에 불과하여 미국경찰은 3대 임무 외에는 다른 임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미국의 치안정책의 방향은 봉사업무는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질서유지 기능은 더욱더 민간경비산업으로 이양되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4. 일본경찰임무의 특색

일본의 경찰제도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경찰체제(명치유신)에서 미국형 경찰체제(1947년 구경찰법)로, 다시 일본형 절충체제(1954년 신경찰법<현행>)로 변천·변천 발달해 왔다. 이 점에서 제 2차대전 후 대륙법체제에서 미국식체제를 도입하였다가 대륙법체제로 되돌아간(영미식의 제도를 많이 가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경찰체제와 구별되며, 경찰체제의 전환이란 점에서 보면, 영미법체제에서 대륙법체제로 변천한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찰체제와도 구별된다.³⁶⁾

35) Ibid(Police and People), p. 212.

36) 정진환, 전계서(비교경찰제도), p. 234.

것처럼 경찰임무는 법집행이 위주이어서 영국보다 법집행의 비율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형법」의 적용의 경우이며 순찰이나 교통업무의 경우는 임무의 상당 부분이 민간경비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에 이양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법집행 비율은 영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순찰과 교통업무의 비율중 20%를 법집행에 가산하여 <표3-4>를 다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별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부수업무
비율	30.4	28.2	39.9	1.5

위의 표는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는 법집행 위주의 경찰임무를 제1의 특색으로 하는 미국에서 공식적인 업무배치비율은 봉사업무가 39.9%로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행정기능이나 부수업무는 모두 합해야 1.5%에 불과하여 미국경찰은 3대 임무 외에는 다른 임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미국의 치안정책의 방향은 봉사업무는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질서유지 기능은 더욱더 민간경비산업으로 이양되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4. 일본경찰임무의 특색

일본의 경찰제도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경찰체제(명치유신)에서 미국형 경찰체제(1947년 구경찰법)로, 다시 일본형 절충체제(1954년 신경찰법<현행>)로 변천·변천 발달해 왔다. 이 점에서 제 2차대전 후 대륙법체제에서 미국식체제를 도입하였다가 대륙법체제로 되돌아간(영미식의 제도를 많이 가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경찰체제와 구별되며, 경찰체제의 전환이란 점에서 보면, 영미법체제에서 대륙법체제로 변천한 「덴마크」나 「스웨덴」의 경찰체제와도 구별된다.³⁶⁾

35) Ibid(Police and People), p. 212.

36) 정진환, 전계서(비교경찰제도), p. 234.

신경찰법의 기본목표는 양대체계의 조직원리를 절충·조화하는 것이었으니,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분권성과 집권성의 균형, 그리고 중립성과 책임성의 구현 등이었다. 따라서 중앙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그대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고, 지방은 대단위(都道府縣) 자치체경찰로서 각기 道都府縣公安委員會 관리하에 두게함으로써 경찰구조상의 균형(집권성과 분권성)을 이루게 하였으며, 한편 능률화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에 있어 종전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하여 자치체경찰로 일원화 하였으며, 아울러 국가 치안책임의 명확화도 강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道都府縣」경찰로 하여금 국가적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성격을 필요한 한도에서 부여하고 있다.³⁷⁾

이상과 같은 일본경찰의 조직원리는 그 임무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의 강제력과 주민의 자치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을 유지코저 노력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70년대 이후 사전적·예방적 기능을 중시하며 법집행 기능 보다는 질서유지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질서유지 기능에 민간경비회사를 통한 차치력 활용이 돋보인다.

가. 법집행상의 독자적 수사권³⁸⁾

일본의 수사제도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찰제도의 개혁과 같이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기조인 민주화 방책의 하나로 출발하여 1948년의 경찰법 제정(구경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신형소법)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구형소법 시대에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관계 또는 지배복종관계의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검사주재 수사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새로운 민주헌법을 제정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공안위원회제도를 채택하면서 영미법체제를 대폭 반영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주재 수사체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검찰은 제2차적이고 보충·보정적 수

37) 大律英男, 「警察行政」(동경: 양서보급회, 1958), pp. 25-26. 및 일본경찰청장관 관방, 「경찰법 해설」, 전정관, (동경: 경찰도서출판주식회사, 1967), p. 3.

38) 법무부, 「일본경찰」(서울: 치안본부, 1987), pp. 49-62 참조.

사기관으로 되어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서게 되었다.

실정법상 구경찰법과 신경찰법이 모두 제2조(경찰의 책무)에서 「경찰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에 當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9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신형소법)도 제189조에서「경찰관은 각각 다른 법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道都府縣 公安委員會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수사가 경찰의 고유 권한이고 경찰이 수사의 주체자 임을 명확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2조 1항에「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여 검찰관도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2차적이고 보충·조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법에서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및 경찰관과 검찰관과의 관계는 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국가공안위원회 및 장관은 검사총장과 언제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검찰관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및 사법경찰직원과는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³⁹⁾

따라서 검찰관은 형사에 관하여 공소를 행하는 공소관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단,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지시와 지휘는 일반적인 지시와 지휘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지휘는 검찰관이 스스로 하는 수사에만 한하며, 사법경찰직원이 검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이 공안위원회 또는 기타의 감독기관에 그 징계 또는 파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수사의 적정화 및 인권옹호의 보다 적절한 실현을 위한 것이다.⁴⁰⁾

39) 이황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서울: 경찰고시사, 1985), 참조.

40) 1949년에 구형소법에서 신형소법으로 바뀌는 동안 신형소법의 잠정조치법 시대가 있었고, 이 시기의 수사관은 여전히 검사의 보좌역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1949년의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는데 수사요원들은 좀처럼 새로운 수사권에 익숙해지지 못하였고 사법경찰요원의 체포장 청구는 형사라면 수사부장이든 警部補(경위)이든 할 수 있게 되

나.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윤리교사적 성격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들에 있어서는 정부와 사회가 각기 별개의 것으로 인식된다.⁴¹⁾ 이들 국가에서의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결정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사회는 경찰관이 시민의 뜻에 따라 사회의 대표들이 합의하여 제정한 법률에만 근거된 법률집행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미국사회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경찰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술자의 역할을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경찰관은 단순히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법률집행 기술자로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숭상하는 윤리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가 요구하여 왔다. 즉 일본에서는 경찰관의 기능이 선도하고 실현시키며, 가르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일본사회가 경찰관들을 법집행관이라기 보다 윤리담당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일본경찰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법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민주의식과 도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경찰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단순한 사법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 그 결과 영장 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1953년의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에서 「체포장의 청구권은 警部(경감) 이상」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逮捕狀(구속영장)이나 搜索差押狀(압수수색영장)의 청구권을 갖는 警部(경감)를 각 서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경부를 급조한 시대가 있었다.

그 후 1954년에 9월 신형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규정으로서 1957년에는 「犯罪搜查規範」과 「犯罪搜查共助規則」이, 1958년에는 「檢屍規則」과 「身體取扱規則」이 각각 제정되어 형사경찰의 기반을 정비하였다.

또한 우수한 수사관의 육성과 지휘능력 향상 면에서는 「刑事選拔要領準則」, 「刑事任用教養基準」, 「新任刑事育成指導基準」, 「刑事教養官·刑事教養係設置基準」, 「新任刑事課長 實務研修基準」 등이 제정되었고, 1985년 경찰대학교에 국제수사연구소가 창설되었다; 정진환, 전게서 「비교경찰제도」, pp. 231-234 참조.

41) A. C. German, Frank D. Day, and Robert R. R. J. Gallati, Introduction to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1973), pp. 157-173.

언행에 있어서도 윤리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점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⁴²⁾ 또 이같은 점은 일본경찰의 기능(임무)이나 체제면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통제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경찰이 정치인들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연합군은 일본에서 강력하였던 내무부를 2차대전 이후에 폐지하고 그 대신 경찰과 선거직 공무원 사이에 완충적 장치인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공안위원회는 관료조직도 아니고 정치조직도 아닌 혼합형이며, 미국에 있어서의 각종 독립적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와 비슷하다.⁴³⁾ 책임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는 일본인들의 전략은 특정한 사회적 압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경찰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경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규범적·관리적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표준의 성과를 경찰에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실제로 공안위원회와 같은 경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감독은 경찰 스스로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에만 행사된다. 사실상 공안위원회는 언론이나 법원, 그리고 공익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예비적인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항상 선도적인 역할은 경찰 자체내에서 행해지며, 공안위원들은 경찰의 정책건의를 시민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⁴⁴⁾

다. 질서유지기능의 확대와 민간조직의 활용

이미 지적인 타와 같이 일본경찰의 임무는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는 법집행 기능이 위주였으나 7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과 영미경찰의 영향으로 사전적·예방적 기능이 중시되어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질서유지 기능이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42) 구광모, "경찰관행과 경찰관의 행태", 「서재근박사 화갑기념 논문집」(서울: 동국대학교 논문집발간위원회, 1989), pp. 145-146.

43) Congressional Quarterly Inc., Regulation: Process and Politics (Washington, D. C.: CQI, 1982), pp. 47-60.

44) 구광모, 전계논문, p. 164.

앞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처럼 공식적인 임무배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일본경찰임무의 배치비율 단위: (%)

업무별	법집행	순찰	교통	봉사	행정	기타
비율	8.51	20.05	22.10	22.75	17.05	9.54

위의 〈표3-5〉를 기초로하여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기능별 배치 비율의 표를 작성해 본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일본경찰의 순찰과 교통임무에 있어서 법집행 업무로 계상되는 비율이 미국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순찰과 교통임무중 대략 20%가 법집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⁴⁵⁾

〈표 3-6〉 일본경찰의 기능별 배치비율 단위: (%)

기능별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부수업무
비율	16.94	33.72	22.75	26.59

위의 〈표3-6〉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질서유지 기능이 33.72%로서 경찰임무의 1/3을 넘고 있으며, 법집행+질서유지 = 50.66%, 봉사업무 부수업무 = 49.34로서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부수적 업무가 26.59%로서, 영국의 20.08%, 미국의 1.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 경찰체제가 대륙법계가 원형이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부수적 업무(행정기능, 기타)가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맺는 시민체제의 산물이며 또 이러한 임무수행에는 친절과 봉사를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다.⁴⁶⁾

45) 大律英男, 전계서, p. 82.

46) 일본경찰의 시민체제는 그들의 이른바 「이웃 중심의 지·파출소」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지·파출소가 단위가 되어 「이웃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력이 미국에 비해 훨씬 강하다. 특히 일본경찰은 주민과의 공식적인 것 보다는 일상적이고 탈권 위적이며 인권적인 접촉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들의 침투력은 확산적이지만 은밀하고 은근하면서도 봉사적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호구조사는 조사가 목적이 아니다. 주민과의 접촉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순경이 관내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아주므로써, 경찰이 그들을 염려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다.

한편 일본경찰의 질서유지기능과 관련하여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민간 조직의 활용이다. 민간 조직 즉 민간 경비(사경비)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1964년 동경 올림픽과 1970년 오오사카 만국박람회에, 민간경비 회사로 하여금 행사장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상당부분 담당케하여 이들 민간회사들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치안행정 당국은 이후 민간조직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80년대 이후 민간경비회사의 활용영역 즉, 경비업무의 내용은 상주 경비, 교통 유도경비, 운반경비, 신변경호 그리고 기계경비등이며, 이들의 업무영역은 더욱 확대되어질 전망이다.⁴⁷⁾

이같이 일본경찰의 임무는 기능적 측면에서 질서 유지기능이 단연 일위로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질서유지기능에는 민간조직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5. 한국 경찰임무의 특색

한국경찰은 1894년 갑오개혁이래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집권적 국

일본경찰의 이러한 자세는 「교통단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교통위반자에 대하여 교통경찰관에 의한 경고와 훈시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동경에서 교통경찰관은 극단의 의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티커」발부 보다는 「친절한 경고」를 주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또 다른 질서유지 기능인 순찰이 유용한 것은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며, 불법주차 등과 같은 불편을 해소시키고, 주민들과 친숙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찰할 때의 경찰의 태도는 군인처럼 과시하는 권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최소한의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최대한의 권위를 지키려는 모범적 시민자세인 것이다: 구광모, 전계논문, pp. 164-168 참조.

47) 정진환, 「정해용역경비업법」(서울: 학문사, 1996), pp. 50-53 참조.

일본의 민간경비업은 불과 30여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최첨단 전자기술을 경비업에 응용함으로써 전후 일본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일본 민간경비업의 현황은 1971년에 전국적으로 불과 550개 경비업체와 33,110명의 경비원이, 95년 말 현재 8,154개 경비업체와 358,415명의 경비원, 741개 기계경비업체 그리고 전체 연간 총매출액이 2조 3,511억엔(환화 19조 9,844억원)으로 약 25년 동안 15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와 매년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성장을하여 왔다.

이러한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은 일본경찰의 사전적·예방적 기능인 질서유지위주의 치안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경찰의 질서유지기능과 관련하여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민간 조직의 활용이다. 민간 조직 즉 민간 경비(사경비)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1964년 동경 올림픽과 1970년 오오사카 만국박람회에, 민간경비 회사로 하여금 행사장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상당부분 담당케하여 이들 민간회사들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치안행정 당국은 이후 민간조직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80년대 이후 민간경비회사의 활용영역 즉, 경비업무의 내용은 상주 경비, 교통 유도경비, 운반경비, 신변경호 그리고 기계경비등이며, 이들의 업무영역은 더욱 확대되어질 전망이다.⁴⁷⁾

이같이 일본경찰의 임무는 기능적 측면에서 질서 유지기능이 단연 일위로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질서유지기능에는 민간조직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5. 한국 경찰임무의 특색

한국경찰은 1894년 갑오개혁이래 대륙법계 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집권적 국

일본경찰의 이러한 자세는 「교통단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교통위반자에 대하여 교통경찰관에 의한 경고와 훈시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동경에서 교통경찰관은 극단의 의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티커」발부 보다는 「친절한 경고」를 주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또 다른 질서유지 기능인 순찰이 유용한 것은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며, 불법주차 등과 같은 불편을 해소시키고, 주민들과 친숙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찰할 때의 경찰의 태도는 군인처럼 과시하는 권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최소한의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최대한의 권위를 지키려는 모범적 시민자세인 것이다: 구광모, 전개논문, pp. 164-168 참조.

47) 정진환, 「정해용역경비업법」(서울: 학문사, 1996), pp. 50-53 참조.

일본의 민간경비업은 불과 30여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최첨단 전자기술을 경비업에 응용함으로써 전후 일본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일본 민간경비업의 현황은 1971년에 전국적으로 불과 550개 경비업체와 33,110명의 경비원이, 95년 말 현재 8,154개 경비업체와 358,415명의 경비원, 741개 기계경비업체 그리고 전체 연간 총매출액이 2조 3,511억엔(환화 19조 9,844억원)으로 약 25년 동안 15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와 매년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성장을하여 왔다.

이러한 일본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은 일본경찰의 사전적·예방적 기능인 질서유지위주의 치안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가 경찰제로 일관해왔다. 1910년 한일 합병후 일제는 불란서식 헌병경찰제도를 그리고 1919년 삼일 운동 이후에는 독일식 비밀 경찰제(고등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후 미군정시대에는 부분적으로 미국식 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으며, 1948년 8월 정부수립후에는 치안국, 치안본부, 그리고 1991년 경찰청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찰체제나 임무면에서 능률성 위주의 집권적 국가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1년의 경찰법 제정으로 분산되어 있던 경찰조직에 관한 법령이 일원화되고 경찰임무도 새로이 규정되었다. 그 외에도 자치성 내지는 민주성의 가미라는 경찰제도상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경찰위원회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에는 민간조직의 활용을 위한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에는 용역경비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민간경비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립경찰 창설 5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경찰의 임무의 특징적인 면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찰임무의 모호성

경찰의 임무에 대하여 현행법규에서는 임무, 직무, 사명 등으로 규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도 축소 또는 확대되어왔다. 따라서 경찰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하며 자칫 경찰이 만능인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어 과도하게 경찰력에 의존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고유업무가 소홀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에서 경찰의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논한바와 같이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법 제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②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

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서는 경찰사명을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는 사회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서⁴⁸⁾ 실정법상 한국경찰임무의 내용과 범위는 모호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 보위 임무

영·미·일 등 많은 나라의 경찰이 경찰 본연의 임무인 사회치안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 경찰은 사회치안은 물론 남북 분단, 대치로 인하여 국가보위와 직결되는 분야인 국가치안에도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있다. 국가보위활동으로서의 국가치안은 국가목적적치안⁴⁹⁾이라고도 하며 대간첩작전과 간첩색출 및 대 간첩태세의 확립, 주요시설의 경비, 용공좌경분자의 검거, 불법집단행동의 억제 그리고 국가원수등 요인경호 등의 임무를 말한다. 이같은 임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찰에 주어지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없지는 않으나⁵⁰⁾ 그것은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데 반하여 한국에 있어서 경찰의 국가보위임무는 경찰임무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위임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⁵¹⁾

(1) 대간첩 작전 업무

48) 이황우, "경찰정신사와 경찰상 정립, 경찰창설 50주년과 경찰의 좌표", (치안정책세미나), (서울: 치안연구소, 1995), pp. 41-42 참조.

49) 구광모, 전계논문, p. 146.

50) John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New York: McGraw-Hill Books Co., 1977), p. 29. 즉 미국 FBI의 안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검거활동, 불란서 국토감시국의 정보채집 및 간첩색출활동, 그리고 독일 국경수비대의 국경 3km 이내의 치안업무관장 등은 모두 경찰의 국가치안활동이라 할 수 있다.

51) 경찰대학, 「경찰학 개론」(용인: 경찰대학, 1991), pp. 223-232 참조.

경찰상의 대간첩작전이라 함은 경찰책임하에 전술적인 부대 운용으로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를 거부하고 이를 포착하여 섬멸하는 작전업무를 말한다.

여기서 간첩이라 함은 타국에 대한 전복이나, 태업, 첩보채집행의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침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거나 협조한 자를 말하며, 무장공비라 함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유격대로서 주로 상대국의 중요산업시설을 파괴하거나 요인암살 등을 목적으로 침투하는 소부대를 말한다.

이러한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등의 경찰임무는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한국의 안보상의 특수여건에 따른 대단히 중요한 경찰임무이며 한국경찰은 광복이후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2) 방첩업무

현대국가의 존립과정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소산으로 우호단계 또는 적대관계를 상호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국가상호간에는 각기 자기 국가이익을 위해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첩보채집활동 다시말해서 비밀공작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이와는 반대로 자기 국가의 첩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활동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즉 첩보에 대한 공격과 방어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같은 첩보채집활동에 대한 방어활동인 방첩은 곧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3) 국가원수의 경호업무

경호라 함은 피경호자의 신변을 각종 위해로부터 방지하는 경찰활동으로서 피경호자가 통과하는 연도와 숙박장소, 열차 및 선박, 항공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경계하며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활동이다.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존을 보위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한국경찰임무의 특징의 하나로써 국가보위임무의 내용은 이상과 같거니와 한가

가장 낮은 것은 순찰업무가 2.02%에 불과한데 이것은 1994년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고정순찰활동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하간 우리나라 경찰임부의 공식적 배치비율은 앞의 영·미·일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대조를 이룬다. 위의 <표3-7>를 전례대로 다시 기능별로 표시해보자.

순찰과 교통은 합하여 질서유지기능으로 표시하되 그 중 1/3은 범집행기능으로 이어진다.⁵³⁾ 이 비율은 영국과 동일하다. 또 보안 경찰업무는 이미 논란바와 같이 주로 보안공작, 수사 등 범집행기능이 대부분이다. 보안관리를 통한 질서유지 기능은 보안 업무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 모든 점들을 감안하여 기능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8> 한국경찰의 기능별 배치비율 단위:(%)

기능별	범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부수업무
비율	34.78	19.78	5.30	40.14

위의 <표3-8>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부수업무(행정협조 및 기타)가 무려 40.14%를 차지 하고 있고 봉사업무는 5.30%로서 영·미·일에 비하여 너무 낮다.

부수업무의 내용은 방법경찰 대상업무 중에 많고⁵⁴⁾ 또 타행부처에 대한 협조 업무가 있다. 92년 말 현재 방법경찰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무려 44종에 달하며 그 현황은 다음 <표3-9>와 같다. 또 타부처협조업무는 12개 부처 60여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 현황은 뒤의 <표3-10>와 같다.

53) 상계논문, p. 391.

54) 방법경찰업무와 관련된 협조업무는 경찰입장에서 보면 봉사기능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경찰수요자 즉,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업무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수업무로 분류하였다.

<표 3-9> 세부적 방범경찰 협조업무 현황(1992. 12. 31. 현재)

주관부처	업 무 명	경 찰 관 여 사 항	문 제 점	근거법규
법무부	사실조사	①국가배상에 관한 사실조사 ②재소자의 신원 및 환경조사	경찰의 재산평가무 지로 객관성 결여	①국가배상법 ②행형법
	강제집행업무협 조	집달리의 강제집행 시 입회 및 항거 제지	민사사건에 관여	민사소송법
	가석방자 신원 파악 및 동향의 감시	통보된 가석방자 신원 파악 및 동향 감시	가석방자 증가로 경찰의 업무량 폭 증	행형법시행령
	벌과금 징수	벌과금 징수 및 미납자 소재 확인·집행	업무량 과중	검찰징수사무규 칙
	소년원, 교도소 수감자 호송		업무량 과중	수형자 등 호송 규칙
	감정유치자, 구 속 집행정지자 병원 감시			검찰사무규칙
보건복지부 (구보건 사회부)	식품위생법 위 반 및 풍속영업 단속	요식업소, 숙박업소, 목욕탕 등 단속(시인서만 첨부, 고발되면 경찰은 신병 확보 및 즉심 처 리)	①지원인력 및 수 용시설의 불비 ②사생활 침해 유 발	①식품위생법 ②숙박업법 ③목욕장업법
	윤락여성의 선 도 및 단속	①주택가 윤락행위의 단속 ②특정 지역 윤락여성의 선도	인권침해 및 사생 활 간섭	윤락행위 등 방 지법
	걸인, 부랑아 등 단속	①걸인, 부랑아 단속·수용조치 의뢰 ②정신병자, 행려병자 보호조치	수용시설의 미비로 방면 경향	부랑인 선도시 설운영 규정
	아동복지 및 미 성년자 보호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자 및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자 단 속 처리	법률무지로 인 한 침해 및 부정의 소 지	①아동복지법 ②미성년자 보 호법
	유기장 단속	유기장 위반자 단속 처리	부정행위의 가능성	공중위생법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사범 단속	①마약법 위반자 단속 처리 ②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자 단속	전문지식의 결여	①의료법 ②약사법 ③보건범죄처벌 에 관한 특례법 ④습관성의약품 관리법 ⑤마약법
	의료약사법 단 속	무면허 의료업자, 업체위반, 부 정행위 단속처리 및 행정조치		①의료법 ②약사법
	전염병 예방	각종 전염병 발생상황 및 통제	경찰에 책임 전가	전염병예방법

주관부처	업 무 명	경 찰 관 여 사 항	문 제 점	근거법규
통상산업부 (구상공부)	도량형기의 단 속		부정의 소지	계량법
재정경제원 (재무부)	사실조사	①국세체납자 소재 및 재산과 악 통보 ②인·허가사항 확인조사 ③재해조사의 통보	경찰에 책임전가	①조세범처리법 ②관세법
	조세사범 및 관 세사범 단속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세탈사범 의 단속처리	경찰과 세무관리의 권한 대립	①조세범처리법 ②관세법
	전매사범의 단 속	전매법률위반자 단속처리	경찰과 전매청간의 업무충돌	①전매법
	밀조주의 단속	주류밀조행위자 단속		①조세범처리법 ②양곡관리법
	강제집행업무의 협조	체납처분집행시 입회 및 항거 제지	업무량증가	국세징수법
	보험료징수대상 자 소재수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시행령
	물가단속			물가안정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부	집업소개소 단 속	무허가업소 및 업태위반 단속 처리, 기타 행정조치 의뢰	여론 악화시 경찰 에 책임 전가	집업안정법
농림수산부	임산물단속	①부정임산물 반출행위 단속 ②도벌, 무허가 벌목, 기간의 단속	민사사건 관여	①임산물단속법 ②사방사업법
	양곡관리법위반 사범 단속	무허가 도정업자 단속		양곡관리법
	수렵행위 단속	불법수렵행위자단속		조수보호 및 수 렵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처리 단속			축산물위생처리 법
	산림위반단속			산림법
국방부	병무사범의 단 속	①병역기피자 단속처리 ②탈영병 검거 이첩 및 입영불 참자의 단속처리 ③신검불응자 단속처리	①국방부업무와의 충돌 ②일시 대량 고발로 업무과중 및 소홀	병역법 군·경찰 사무 운영규정
	군 보석자의 시 찰			

주관부처	업 무 명	경 찰 관 여 사 항	문 제 점	근거법규
	군형법위반 단속 향토예비군, 무기탄약관리			군사법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건설교통부 (구건설부)	무허가건축물 단속	①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철거시 경비 협조 ②고발사건의 처리	①민사사건 관여 ②영세민의 비난대상	①건축법 ②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
문화부	공연장 단속 불온간행물 단속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 문화재 보호관리	무허가 및 법률위반자 단속		공연법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교육부	사설강습소 단속	무허가 및 법률위반자 단속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 (구채신부)	통신요금미납자 소재수사			공중전기통신사업법
환경부	자동차매연 단속 대기오염 단속			환경보전법
각부처 공통	신원조사 및 사실조사 즉심처리	신규채용공무원, 해외여행자, 원호대상자 등의 생활실태 조사 각종 행정법 위반자 고발접수 및 즉심의 회부	특별경찰이 존재함에도 경찰에 의존	보안업무규정 각종행정법규
기타	금융기관 현금수송시 호송			

〈표 3-10〉 방범경찰 협조업무 개황(1992. 12. 31. 현재)

소관부처	협조업무내용
법 부 부	벌과금징수, 미납자소재확인, 가석방자신원파악·동향파악, 집달리 강제집행시 입회 및 항거제지, 미결수용실 운용, 국가배상에 대한 사실조사, 소년원 등 수간자 호송, 재소자 신원 파악 및 환경조사 통보, 민사사건의 사실탐지 통보, 감정유치자 병원 감시
국 방 부	징병검사불응자 소재확인, 탈영병 검거 및 이첩, 입영불참자 단속처리, 병역기피자 단속처리, 군보석자 시찰, 균형법위반 단속, 향토예비군 무기·탄약관리
보건복지부	부정·불량식품 단속, 유키장 단속, 숙박업소·목욕장 단속, 유해업소 단속,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단속, 윤락여성 선도, 윤락행위 단속, 의료·약사사범 단속, 걸인·부랑아 단속, 아동 및 미성년자 관련 법규 위반 단속처리, 전염병 발생상황 통보 및 출입통제
재정경제원	조세사범 및 관세사범 처리, 국세채납자 소재확인, 재산 및 사실확인 조사 통보, 재해조사 통보, 부동산투기사범 단속, 산재보험료 징수대상자 소재 확인, 조세채납처분 집행시 입회 및 항거 제지, 부정임산물·도벌·무허가벌채·무허가계간 단속
교 육 부	시설강습소 단속
문 화 부	불온 간행물 단속, 불법 음반·비디오 단속, 공연장 단속, 문화재 발굴·유실시 처리
농림수산부	축산물 위생처리 위반 단속, 양곡관리위반 단속, 불법수렵 단속, 불법어로 단속, 어로활동 보호, 산림법 위반 단속
통상산업부	도량형기 관련 단속
건설교통부	무허가건물 철거시 경비
노 동 부	직업안정법위반 단속
환 경 부	공해방지법 위반 단속, 자동차매연 단속, 대기오염 단속
기 타	각종 신원조사 및 사실조사(신규채용 공무원, 해외여행자),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접수, 즉심회부, 각 정당 당사의 경비업무, 주한 외국공관 경비, 프로야구 및 각종 체육 행사 경비, 금융기관 현금수송시 협조 등

제 4 장 국가별 치안상태

일국의 치안상태라 함은 국민생활의 안전도를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방과 치안이라는 기본적 책무를 수한다. 국방상의 문제가 있다면 치안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대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문란해 지게 되면 국방에도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처럼 국방과 치안은 상호작용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같은 상호작용은 남북의 대치상태로 전쟁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우리의 경우에 너무도 뚜렷하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국방과 치안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마땅하지만 본 연구는 경찰임무와 관련성을 주안점으로 하기에 내부적 치안질서에 국한하기로 한다. 내부적 치안질서의 유지정도 즉 치안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국가목표나 가치기준의 설정이 어려워서 그리 쉽지 않으며 더구나 수개의 국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자는 각국의 치안상태를 각종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치안상태 즉 통계적 치안상태와,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거나 느끼고 있는 치안상태 즉 체감적 치안상태로 나누어 접근해 보기로 한다.

1. 통계적 치안상태

통계적 치안상태를 고찰하기 위하여는 말할 것도 없이 각종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의 공적 통계자료를 입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는 유니타드킹덤(United Kingdom)의 네 지역중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지역의 것들뿐이다.

한편 치안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는 형법범뿐 아니라 행정범의 통계자료도 필요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국가에 따라 종류나 범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주로 전자인 형법범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또 이 경우에도 국가마다

범죄구성 요건을 달리 하고 또 통계과اک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중범죄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측정해 보기로 한다.

또한 치안상태의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범죄의 발생이나 인지건수 및 발생율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같은 범법에 대한 국가의 대응 즉 검거건수 및 검거율 그리고 범죄동향의 과اک과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범죄발생에 대하여 국가의 대응이 완벽하다면 치안상태는 양호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며 반대로 범죄발행이 많지 않더라도 국가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치안상태는 혼란에 빠져 국민은 불안에 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 영국의 통계적 치안상태

영국에 관한 통계자료는 영국 내무성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통계 즉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1995)와 이 자료를 토대로 국가간의 비교를 위하여 재구성한 일본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발행의 「平成 8年 犯罪白書」(흉악범죄의 현상과 대책, 1996)의 각종 통계를 재인용하였다.⁵⁵⁾

(1) 살인 및 강도의 발생상황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1970년 · 1975년 · 1980년 · 1985년 및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살인 및 강도사범의 인지건수 및 발생율(인지건수의 인구 10만 명당의 비율)은 다음의 <표4-1>와 같다.

55) 따라서 법률적인 용어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 모살(謀殺), 고살(故殺)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료의 인용 특성상 그대로 인용하였음.

〈표 4-1〉 살인 및 강도의 인지건수·발생율(1970-1994)

區分	1970年	1975年	1980年	1985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殺人 認知件數	733	1,014	775	771	1,145	1,280	1,255	1,331	1,375
發生率	1.5	2.1	1.6	1.5	2.3	2.5	2.5	2.6	2.7
強盜 認知件數	6,273	11,311	15,006	27,463	36,195	45,323	52,894	57,845	60,016
發生率	12.9	23.0	30.5	55.2	71.6	89.4	103.5	112.8	116.7

자료: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및 「平成 8年 범죄백서(흉악범죄의 현상과 대책)」

(동경: 일본법무성 범죄종합연구소, 1996), p. 366.

흉악범죄의 발생율은 어느 쪽이나 상승경향에 있고, 특히 강도사범 발생율은 1970년과 비교하면, 1994년에는 약 9배가 증가되었다. 강도 중에서도 특히 노상강도사범에 관해서는 최근 젊은 여성사이에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표 4-2〉 살인 및 강도에 있어서 총기가 사용되는 비율

영국(1990-1994)

罪名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殺人	9.0	7.6	8.2	11.0	9.1
強盜	10.9	11.7	11.0	10.2	6.8

자료: 상계서(범죄백서), p. 367.

한편, 흉악범죄 발생에 있어서 총기사용사범의 상황을 보면, 〈표3-78〉과 같다. 1994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감소했다. 한편, 총기사용 強盜事犯 발생장소를 보면, 빌딩, 은행 등에서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公道上에서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4-3〉는 흉악범죄의 검거건수, 검거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4-3〉 살인 및 강도의 검거건수·검거율

영국(1970년·1980년·1985년·1990-1994)

年次	殺 人		强 盜	
	檢 舉 件 數	檢 舉 率	檢 舉 件 數	檢 舉 率
1970 年	707	96.5	2,634	42.0
1980	742	95.7	4,322	28.8
1985	734	95.2	6,000	21.8
1990	1,053	92.0	9,574	26.5
1991	1,176	91.9	10,617	23.4
1992	1,182	94.2	11,703	22.1
1993	1,215	91.3	12,532	21.7
1994	1,233	89.7	13,053	21.7

자료: 상계서(범죄백서), p. 367.

(2) 가해자와 피해자

〈표4-4〉은 살인 및 강도에 관계된 재판에서 유죄가 된 인원의 남녀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1994년중에 유죄가 된 자는 연령별 구성을 보면, 살인에 관해서 18세미만은 5.9%, 18세 이상은 94.1%이고 강도에서는 각각 33.9%, 66.1%이다.

〈표 4-4〉 살인 및 강도범의 남녀별 구성비

영국(1990-1994년)

罪 名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殺 人					
男 子	89.9	90.7	90.0	89.7	90.6
女 子	10.1	9.3	10.0	10.3	9.4
强 盜					
男 子	94.9	93.9	94.7	94.3	92.5
女 子	5.1	6.1	5.3	5.7	7.5

자료: 상계서(범죄백서), p. 367.

(3) 量刑狀況

흉악사범의 양형상황은 <표4-5>과 같다. 살인죄 중, 謀殺에 대한 형벌은 무기형 뿐이다. 고살, 영아살해, 및 강도의 최고형은 무기형이다.

<표 4-5> 살인 및 강도범의 양형상황¹⁾

영국(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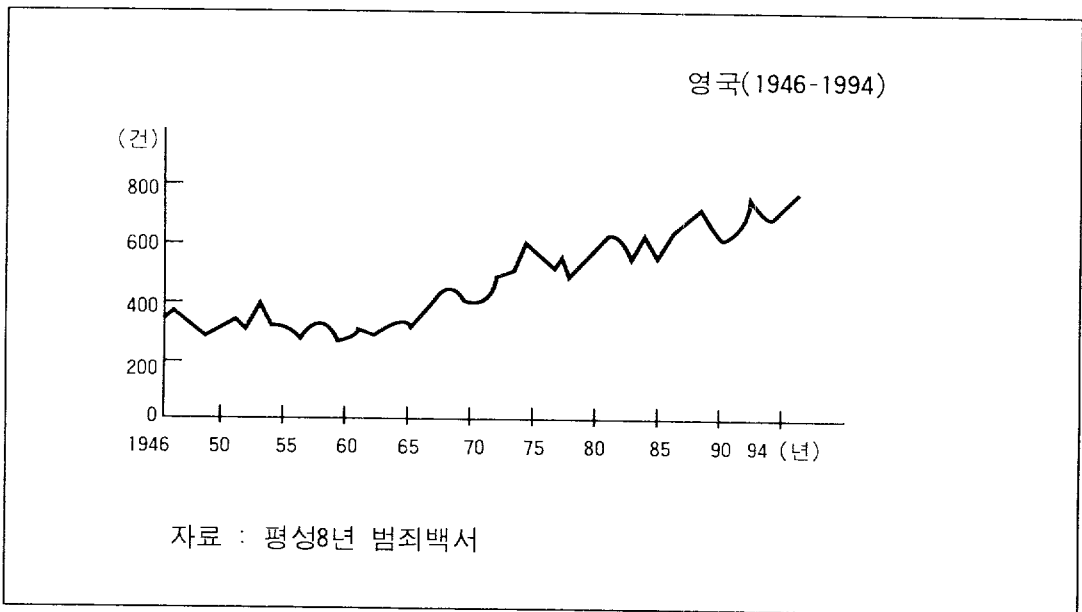
判 決	전 체 범 죄					
		謀 殺	故 殺	環 兒 殺	謀殺未遂	強 盜
總 數	1,407,057	192	197	3	65	4,9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實 刑	69,185(4.9)	175(91.1)	175(88.8)	—	50(76.9)	3,172(64.7)
無 期 刑	233(0.0)	175(91.1)	5(2.5)	—	3(4.6)	—
10年 超 過	221(0.0)	—	2(1.0)	—	9(13.8)	77(1.6)
1 年 超 過	2,494	—	97	—	28	751
10年 以 下	(0.2)		(49.2)		(43.1)	(15.3)
4 年 以 下	66,237(4.7)	—	71(36.0)	—	10(15.4)	2,344(47.8)
保 護 觀 察 命 令	50,535(3.6)	—	7(3.6)	3(100.0)	1(1.5)	219(4.5)
監 督 命 令	9,190(0.7)	—	—	—	—	451(9.2)
社 會 奉 仕 命 令	49,469(3.5)	—	—	—	—	175(3.6)
結 合 命 令	12,399(0.9)	—	—	—	—	85(1.7)
기타 判 決	1,216,279	17	15	—	14	800
	(86.4)	(8.9)	(7.6)		(21.5)	(16.3)

자료: 상계서(범죄백서), p. 369. ※ ()안은 구성비

- 1) <표4-5>중에서, [보호관찰명령][감독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받는 명령을 말한다.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노인시설의 보수공사 등 공공적 근로에 무상으로 종사하는 명령을 말한다.
[결합명령]이라는 것은 보호관찰명령이나 감독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를 병과하는 명령을 말한다.

모살에 대한 사형이 폐지된 1965년 전후의 살인 인지건수의 상황은, 그림 4-1과 같다. 모살에 대한 무기형도 가석방이 가능한데, 재판관은 무기형의 선고에 있어서 형무소 구금의 최저기간(통상 tariff라고 한다.)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무대신은 사법으로부터의 의견에 구속됨이 없이 구금의 최저기간을 결정한다.

즉 18세이상 21세미만의 모살 범죄자에게는 1982년 [형사재판법]8조2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있는 무기구금이 과해진다. 18세미만의 모살 범죄자에 관해서는 1933년 [청소년법]53조1항에 의해 부정기적인 구금이 선고된다.



〈그림 4-1〉 살인인지건수의 추이²⁾

1994년 6월 30일 현재,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인원은 3만 5,763명이다. 여기에는 3,192명의 무기형 수형자가 포함되고, 그 중 82%(2,618명)는 모살사범수형자이다. 1994년 있어서 무기형 수형자의 입소인원은 222명이다. 18세 이상의 무기형 수형자는 형무소에 수용되었는데, 18세가 되지 않은 자는 청소년 형무소 또는 지방구금 시설에 수용된다. 흉악사범수형자의 수용상황은 <표4-6>과 같다.

2) 살인 인지건수를 세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복수 일때에는 피해자 한 사람당 한건으로 계산한 것임.

즉 1994년에 석방된 모살 사범 무기형 수형자 75명의 평균 재소기간은 15.5년이 고, 1991년, 1992년 및 1993년 각각, 11.9년, 12.4년 및 14.5년과 비교해 장기화 경향이 인정된다.

〈표4-6〉

살인 및 강도사범 수형자의 수용인원

영국(1985년-1994년 각6월30일 현재)

罪 名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殺 人	2,348	2,539	2,714	3,010	3,286	3,297	3,308	3,354	3,522	3,667
強 盜	3,028	3,430	3,848	3,998	4,233	4,103	4,036	4,230	4,933	5,185

자료: 상계서(범죄백서), p. 371.

(4) 범죄 및 피해자 대책

테러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강도 불법행위목적침입 등의 범죄가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고, 한편 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연속해서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어, 1994년 11월 [형사사범및 공공질서법]이 제정됐다. 그 내용은 범죄자의 검거 및 그 처벌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흉악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벌칙을 정하고, 일반시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포괄적 대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12세에서 14세까지의 연소 범죄자에 대해서, 성인이라면 형무소에 수용할 수 있는 범죄를 3개이상 범해 유죄가 된 경우 등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일정기간 수용훈련시설에 수용되어, 그 후에는 계속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총기대책으로 총기불법소지 등의 법정형량을 무겁게 하였다(157조 5항).

총기를 사용한 강도는 감소경향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간 4000건을 넘고 있다. 또 [총기법]이 규제하는 총기의 위법소지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무성은 1년중 일정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에 위법총기 소지자가 임의신고하면 소추하지 않는 제도를 취하는 등, 총기범죄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1964년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하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4년 4월에 운용규정이 변경되어, 피해자의 직업, 수입 등에 관계없이 입은 상해 정도에 대응한 定率에 따라 보상금이 지불되게 되어, 보상은

보다 신속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정해진 보상 최고액은 25만 파운드이다.

1974년이후에는 민간조직인 전국 피해자원조협회에 의한 폭넓은 피해자 원조도 행해지고 있다. 이 협회는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협회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부 아일랜드에 378의 지방조직을 갖고, 본부 및 각지역에서 총계 811명의 유급직원과 약 1만 11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원조 대상은 연간 100만건 이상인데, 그 반수는 불법행위 목적침입에 관한 것이고, 살인은 725건이다. 이 조직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원조를 받아,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단,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에 한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의 승낙 후에) 받을 수 있다. 원조 내용은 원조협회에 소속한 유급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전화, 문서 또는 면접에 의한 정신적인 원조, 증인이 된 경우에 법정에서의 출두 등의 실천적 원조 등이다. 특히 살인피해 유족 등에 대해, 장기적인 전문적 지원제도를 확립했다.

정부가 1990년 2월에 발표한 피해자 헌장에는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재판 수속에 있어서 실시해야만 하는 피해자 보호 원칙이 제시되어 왔다. 이 헌장 외에도, 재판소, 검찰청, 경찰 등의 각 기관에 있어서 독자적인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이 피해자 헌장에 의하면, 무기형 수형자의 석방에 있어서, 보호관찰소에 대해, 특히 무기형 수형자가 석방 후에 취업할 장소, 주거, 외출 청에 관해서 조건을 붙이는 일이 적당한지 어떤지 검토할 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기회를 봐서 접촉하고, 가해자의 석방에 대해 불안을 품고있지 않을까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6년 6월에는 신피해자 헌장이 발표되어, 형사사법에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가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즉 형사재판소 권한법 35조 1항에 의하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를 결정할 재판소는 범죄에서 발생한 신체적 상해,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해서 유죄가 된 가해자에 대해서 보상명령을 명할 수 있다. 더욱이 동4항에 있어, 법원은 보상명령에 적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알 수 있는 한, 유죄가 된 가해자의 재력에 관해서 고려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통계적 치안상태의 평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국가에 있어 내부적 치안질서의 유지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국가목표나 가치기준과의 관련성에 기인하여 매우 힘든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비교를 위하여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대입해 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통계적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본다.

① 1994년의 흉악범죄(살인강도)의 발생률과 검거율로 평가하되 양자 모두 살인과 강도의 평균비율로 계상한다.(1970년도 이후의 증가율이나 범죄추세는 뒤에서 논하는 체감적 치안상태에서 나타날 것임)

② 치안상태를 편의상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나쁜 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양호, 평온, 보통, 불안, 공포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발생율은 20%까지는 양호, 40%까지는 평온, 60%까지는 보통, 80%까지는 불안, 그리고 81% 이상은 공포로 표시한다.

④ 검거율은 발생율과 반대로 100%까지는 양호, 80%까지는 평온, 60%까지는 보통, 40%까지는 불안, 그리고 20%까지는 공포로 표시한다.

위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영국의 흉악범죄의 평균발생율은,

$$2.7\% + 116.7\% = 119.4\%,$$

$119.4\% \div 2 = 59.7\%$ 로서 발생율의 평가는 「보통」, 다음 검거율은,

$$89.7\% + 21.7\% = 111.4\%$$

$111.4\% \div 2 = 55.7\%$ 로서 검거율의 평가는 「보통」.

따라서 영국의 1994년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발생율과 검거율이 모두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평가가 국가목표나 가치기준과는 무관하게 국가간의 비교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치안상태의 평가와 그에 따른 치안정책의 수립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미국의 통계적 치안상태

미국에 관한 통계자료는 미 연방 법무성에서 매년 발생하는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6에서 대부분 가려냈고, 아울러 위에서 제시한 일본의 「平成 8년 犯罪白書」로 참고하였다.

(1) 살인 및 강도의 발생상황

〈표4-7〉은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및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살인 및 강도의, 각각의 인지건수와 발생율을 본 것이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25년간의 살인발생율을 보면, 1980년과 1991년을 피크로, 대체로 8%에서 10%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비슷하게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25년간의 강도 발생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증가해 왔다. 그 중에서 1975년과 1981년(발생율 250.6)이 두 개의 피크가 되고 있다. 그후 1991년에 이르러 27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1992년 이후 감소로 전환했다.

〈표 4-7〉 살인 및 강도 인지건수·발생율
미국(1970년·1975년·1980년·1985년·1990년 - 1994년)

구 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살 인 인지건수	15,812	20,505	23,044	18,976	23,438	24,703	23,760	24,526	23,305
발생율	7.8	9.6	10.2	7.9	9.4	9.8	9.3	9.5	9.0
강 도 인지건수	348,380	464,973	548,809	497,874	639,271	687,732	672,478	659,870	618,817
발생율	171.5	218.2	243.5	208.5	257.0	272.7	263.6	255.9	237.7

자료: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6.³⁾

〈표4-7〉은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 1994년까지의 살인 및 강도의 각각의 검거인원 및 검거율의 추이를 본 것이다.

3) [살인]은 모살 및 고살이고, 미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강도]는 미수를 포함한다.

[발생율]은 인지건수의 인구 10만 명당 비율이다.

〈표 4-8〉

살인 및 강도의 검거인원 · 검거율

미국(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 - 1994년)

年 次	殺 人		強 盜	
	檢 舉 件 數	檢 舉 率	檢 舉 件 數	檢 舉 率
1970年	15,230	86.5	98,210	29.1
1975	20,180	78.3	158,870	27.0
1980	20,040	72.3	146,270	23.8
1985	18,330	72.0	136,870	25.3
1990	22,990	67.2	167,990	24.9
1991	24,059	67.2	173,820	24.3
1992	22,510	64.6	173,310	24.0
1993	23,400	65.6	173,620	23.5
1994	22,100	64.4	172,290	24.4

자료: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6.

(2) 가해자와 피해자

〈표4-9〉는 1991년부터 1994까지의 살인사범 검거인원의 연령층별 및 남녀별 구성비를 본 것이다. 살인으로 검거된 자 중 소년(18세 미만)의 비율은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9〉

살인으로 검거된 자의 연령층별 및 남녀별 구성비

미국(1994 - 1994)

區 分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年 齡 別	少年(18歲未滿)	13.1	14.2	15.4	16.4
	成人(18歲以上)	86.9	85.8	84.6	83.6
男 女 別	남 자	90.0	90.3	90.6	90.6
	여 자	10.0	9.7	9.4	9.4

자료: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6.

1994년에 있어서, 살인 피해자가 된 자의 연령층별 및 남녀별 구성비를 보면, 연령층별에서는 20세대의 비율(33.8%)이 가장 높고, 남녀별에서는 남자비율(78.5%)이 높다.

(3) 量刑狀況

미국 各州, 콜롬비아 특별구 및 연방(계 52)의 관할구역(jurisdictions)에서는, 법정형에 관해서도 각각 다르다. 즉 연방법은, 제1급 謀殺에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제2급 謀殺에는 무기형, 또는 유기형(any term of years)을 정하고 있다.(18 USC1111) 한편, 강도에는 15년이하의 구금형(18 USC2111), 은행강도에는 20년이하의 구금형 또는 25만달러이하의 벌금(벌금 병과의 경우도 있다)(18 USC2113), 우체국 강도에는 10년이하의 구금형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벌금 병과의 경우도 있다.)(18 USC2114)를 정하고 있는데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더 형이 가중된다.

즉 1996년 6월 현재 52 관할구역 중 39개의 관할구역이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1994년에 캔자스가, 1995년에 뉴욕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켰다.

<표 4-10> 미연방지방재판소의 살인 및 강도의 量刑狀況

미국(1994년 회계연도)⁴⁾

區 分	殺 人	強 盜 故 殺 謀 殺		
		強 盜	故 殺	謀 殺
有 罪 認 定 者	153(100.0)	104(100.0)	49(100.0)	1,740(100.0)
拘 禁 刑	138(90.2)	101(97.1)	37(75.5)	1,695(97.4)
無 期 刑	13(8.5)	13(12.5)	—	3(0.2)
5年 超 過	68(44.4)	64(61.5)	4(8.2)	981(56.4)
3年 以 上 5年 未 滿	32(20.9)	21(20.2)	11(22.4)	487(28.0)
1年 以 上 3年 未 滿	13(8.5)	1(1.0)	12(24.5)	177(10.2)
1年 以 下	10(6.5)	1(1.0)	9(18.4)	39(2.2)
其 他	2(1.3)	1(1.0)	1(2.0)	8(0.5)
保 護 觀 察	15(9.8)	3(2.9)	12(24.5)	45(2.6)

자료: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4) 사형판결을 받은 자는 없으며, ()안은 구성비이다.

〈표4-10〉는 1994년(회계연도)에 연방지방법원에 있어서의 살인 및 강도의 과형상황을 본 것이다. 1994년 쏘美에서의 사형집행수는 31명이었다.

〈표4-10〉은 살인과 강도에 관해서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주의 구금시설에 있어서, 각 년말 현재의 수용인원(추계)의 추이를 본 것이다.

〈표4-11〉 살인 및 강도의 구금시설 수용인원의 추이⁵⁾

미국(1984 - 1993)

罪 名	1984年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殺 人	46,800	50,600	54,300	59,100	63,600	67,600	72,000	77,200	85,000	90,200
強 盜	89,800	94,000	94,500	95,200	96,000	97,900	99,200	107,800	113,400	119,100

자료: Correctional Populations, United States.

(4) 범죄 및 피해자대책

미국에서는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자세를 표방하고 있고, 아울러 많은 범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들 몇 개에 관해서, 주로 연방법을 중심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근년에는 1994년의 폭력범죄단속 및 범집행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에 있어서, 살인과 강도를 포함하는 어떤 범위의 중죄로 유죄가 된 연방법 위반자 중, 연방과 주에서 과거에 2회이상 살인과 강도를 포함한 어떤 범위의 중죄로 유죄가 된 자들에게,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부과하는 소위 삼진법("Three strikes and you're out" Law)를 제정했다. 또한, 많은 주에서도 동종류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증가하는 총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993년에 성립된 소위 브래디법에 의한 권총구입에 관해서, 時效期間을 정하고, 구입 희망자의 범죄여부 등을 경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업자들에게 의무화하도록 했다. 더욱이 [1994년의 폭력범죄단속 및 범집행법]에서는 특정 무기의 제조, 거래 및 소지를 제한하고, 또한 위력이 있는 탄환을 장정할 수 있는 부품의 거래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5) [살인]은 故殺을 포함하며 각 년말 현재의 주의 구금시설 피수용자의 추계치로, 미결을 포함한다.

범죄피해자 대책은, 주와 민간 조직 수준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한편, 연방에서는 [1984년총합범죄규제법]의 14장에서 [1984년범죄피해자규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모으고, 연방법위반에 의해 유죄가 된 자로부터 징수한 거의 모든 벌금, 과, 몰수된 출두보증금 등을 사용해서, 주가 행하는 범죄피해자 보상계획과 범죄피해자 원조계획에 보조하기로 했다.

또 [1994년의 폭력범죄단속 및 법집행법]에서는 폭력범죄 등의 피해자가 형선고에 앞서서 재판소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이어서 [1996년 테러리즘 대책법]2편에서는 [1996년 피해자보상법규정]을 제정하여, 연방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5) 통계적 치안상태의 평가

위의 영국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 1994년도의 흉악범죄, 살인 및 강도의 발생을 <표3-70>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9.0\% + 237.7\% = 247.6\%$$

$247.6\% \div 2 = 123.4\%$ 로서 발생율의 평가는 「공포」상태이다.

한편 검거율은,

$$64.4\% + 24.4\% = 88.8\%$$

$88.8\% \div 2 = 44.4\%$ 로서 검거율의 평가는 「보통」상태이다.

미국의 흉악범죄발생율이 123.4%, 즉 「공포」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력이나 민주화의 수준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52개의 서로 다른 법력과 134개의 민족이 몰려사는 거대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기도 한다.

다. 일본의 통계적 치안 상태

일본에 관한 통계자료는 일본경찰청편 일본경찰백서(1995)와 위의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서도 참고했던 일본 법무성 법무연구소 발생의 「平成 8 犯罪白書」(흉악

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6)의 통계자료들을 인용하겠다.

(1) 刑法犯 概況

위의 범죄백서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통계자료와 도표가 제시되어 있어서 살인 및 강도의 발생상황을 보기 전에 일본형법범 전반에 관한 개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표 4-12〉 일본 1995년 형법범 개황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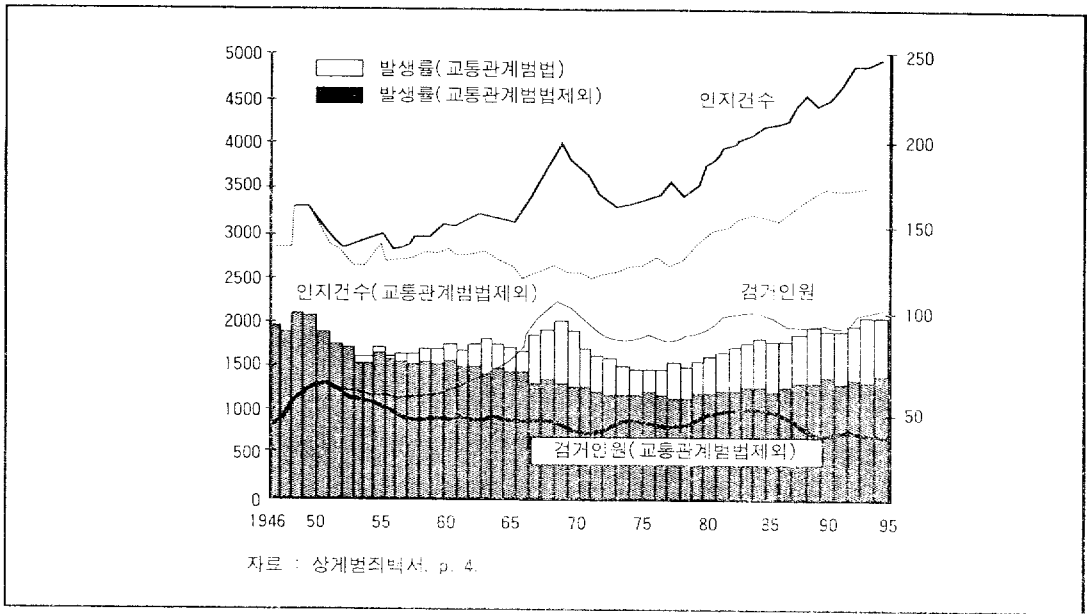
구분	건수(또는 %)	전년대비
인 지 건 수	2,435,983건	9,289건 증
검 거 건 수	1,406,213건	3,893건 감
검 거 인 원	970,179건	3,979건 감
발 생 율	1.94%	1% 감
검 거 율	57.7%	0.4% 감

자료 : 평성8년 범죄백서(흉악범죄의 현상과 대책) (동경: 법무성 범무종합연구소, 1996), p. 3.

형법범(교통관계 범법자 포함)의 인지건수는 1970년의 193만 2,401건으로 피크에 달했었고 그 후 잠시 감소하다가 1975년 이래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여 위의 〈표 4-12〉에 보듯 1995년에는 전년대비 9,289건(0.4%)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46년부터 1995년까지 50년간 일본의 형법범의 인지건수·검거인원·발생율의 추이를 보면 다음 〈그림4-2〉와 같다.

5) 〈표4-2〉의 형법범에는 교통관계 사범건수가 포함된 것임. 그리고 발생율은 인지건수의 10만 명당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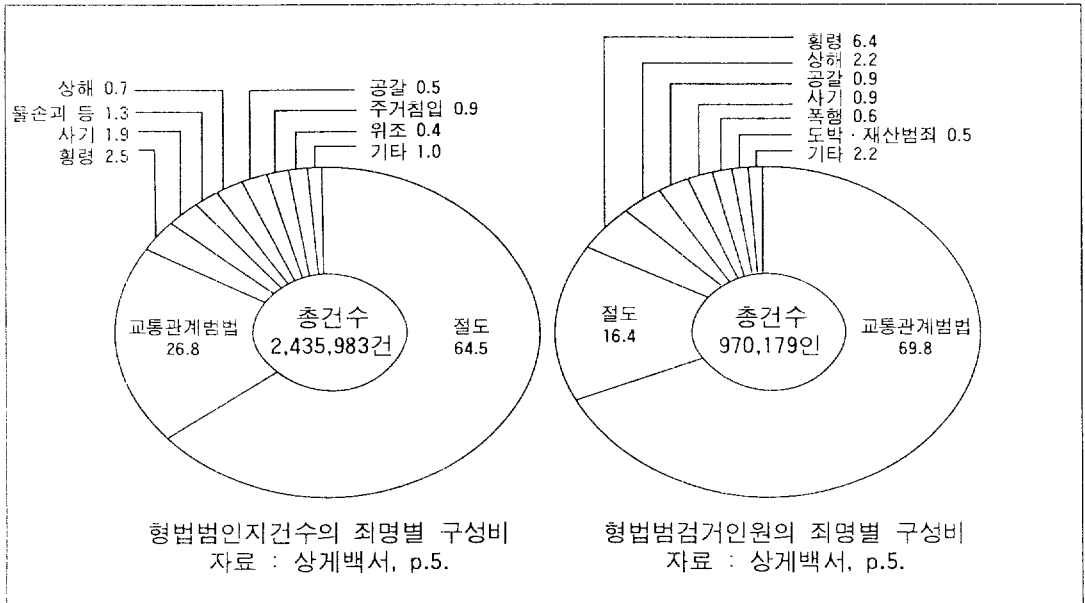
〈그림 4-2〉 형법범의 인지건수·검거인원·발생률의 추이

위의〈그림4-2〉에서 보면 형법범의 인지건수 및 검거인원이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발생률(교통관계범법 및 제외)은 대체로 평행선, 그리고 교통관계사범을 제외한 형법범 검거인원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5년의 형법범 인지건수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4-3〉과 같다. 즉 절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통관계사범, 횡령(유산물횡령포함), 사기, 기물손괴 등, 상해 그리고 공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형법범의 검거인원은 1970년의 107만 3,470명인데 그 후 다소 감소하는 듯 하더니 1980년부터 88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1989년부터 점차 다시 감소경향을 보이고 1995년에는 3,979명(0.4%)이 감소하고 있다. 1995년의 형법범 검거인원을 죄명별로 보면, 아래 〈그림4-3〉과 같다. 즉 교통관계사범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 횡령(유산물횡령포함), 상해, 공갈 그리고 사기의 순이다.

형법범의 발생률은 1948년의 2.0%로서 가장 높았는데 1951년부터 차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더니 1970년에는 1.8%로서 다시 올라갔으며 1977년에는 다시 내려가서 1.4%가 되더니 그후에는 조금씩 상승하여 1995년에는 1.94%로 나타나고 있다.

형법범의 검거율은 근년에 와서 다소 부진한 듯 하더니 1993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57.7%를 기록하고 있다. 또 1995년의 검거율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96.5%(전년대비 0.7% 상승), 방화가 96.2%(전년대비 4.0% 상승), 강간이 94.0%(전년대비 2.4% 상승), 그리고 절도가 37.4%(전년대비 0.3%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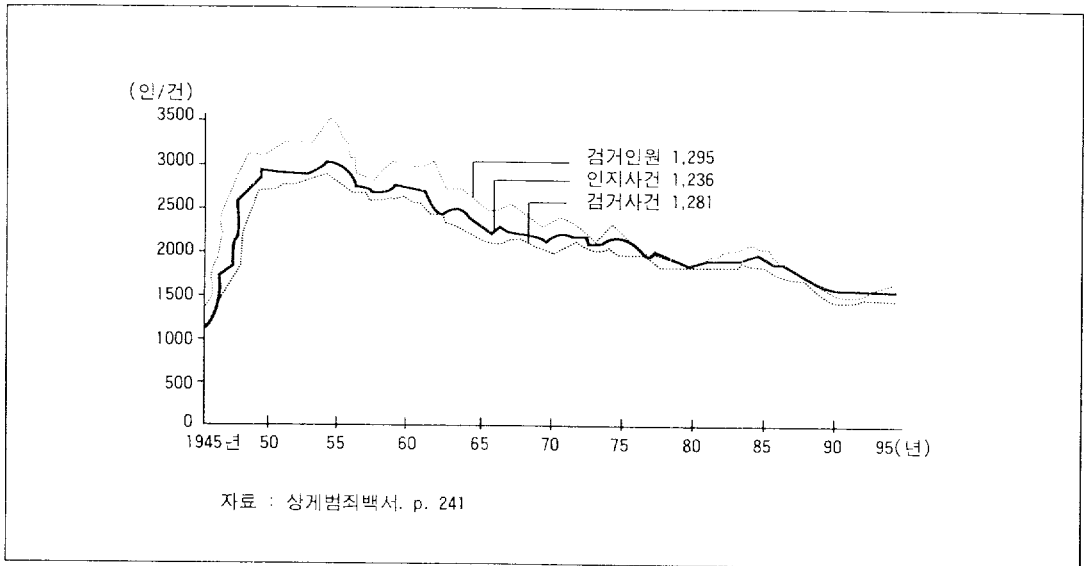
〈그림 4-3〉 형법범의 인지건수·검거인원의 죄명별 구성비

(2) 흉악범죄의 동향과 현황

일본의 흉악범죄는 종전직후 10수년간은 증가경향을 보였다. 1955년을 정점으로 그후로는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최근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약간의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범죄, 총기사용범죄 등의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기인하는 듯 하다.

1) 살인의 동향

아래 〈그림4-4〉는 1945년 이래 살인범죄에 관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바, 1955년 이후로 대체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 살인의 인지건수·검거율·발생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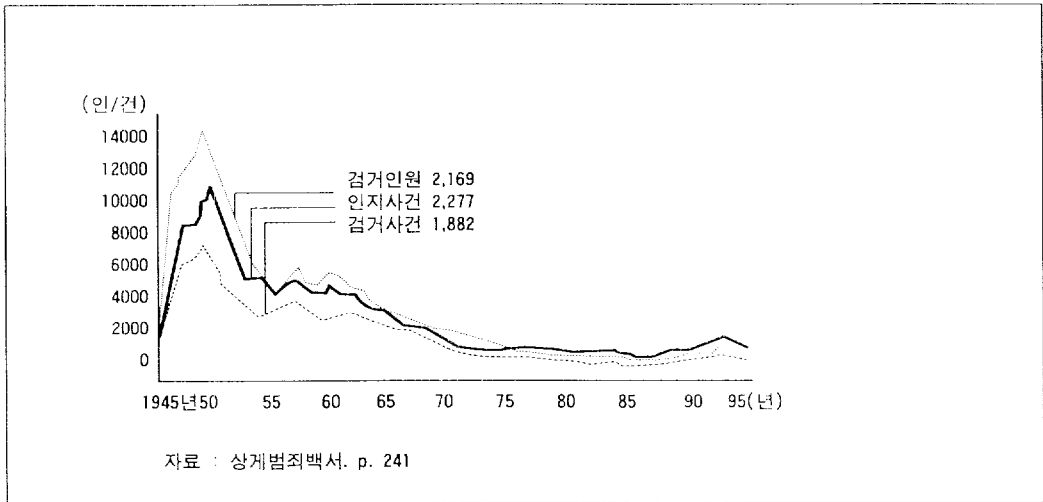
살인의 인지건수는 1954년 3081건으로 정점을 이루어 전후 혼란상태를 엿보게 한다. 그 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 1975년 이후는 1000건대로 내려왔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1992년(平成 4年) 이후는 다소 증가하는 기미를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의 추이를 보면 96%에서 98%선 까지 달하고 있다.

2) 강도의 경향

다음 〈그림4-5〉는 1945년 이래 강도의 인지건수,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의 추이를 보여준다.

강도의 인지건수는 1948년(소화 23년)의 1만 854건이 피크로서 가장 많았다. 5년 후인 195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55년경부터는 반으로 감소하여 계속해서 줄었다. 1960년대 말부터는 2000건대로, 1985년부터는 1000건대까지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는 다시 약간의 증가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4년에는 25년만에 피크를 이루어 1,684건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강도검거율을 보면 1992년에는 60%밖에 되지 않다가 이듬해부터 차츰 나아져 70% 내지 80%까지 상승하여 1995년에는 82.7%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4-5> 강도의 인지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의 추이

3) 1994년의 흉악범죄 현황

위에서 일본의 형법범 전반에 걸친 통계와 동향 그리고 흉악범죄인 살인과 강도의 동향을 살펴 보았다. 이로서 일본의 통계적 치안 상태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겠으나 국가간의 비교를 위하여 영국·미국의 경우, 1994년의 살인과 강도의 수치를 비교하였으므로 일본의 경우도 같은해의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 본다.

<표 4-13> 살인 및 강도의 인지건수·발생율·검거율(1994)

구 분	살 인	강 도
인 지 건 수	1,277건	2,684건
발 생 율	1.0%	2.1%
검 거 율	95.8%	78.2%

위의 <표4-13>에 따라, 일본의 흉악범죄(살인·강도)의 평균 발생율은,

$$1.0\% + 2.1\% = 3.1\%$$

3.1% 2 = 1.55%로서 발생율의 평가는 「양호」,

다음 검거율은,

$$95.8\% + 78.2\% = 174.0\%$$

174.0% 2 = 87.0%로서 검거율의 평가도 「양호」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의 흉악범죄 현황은 통계적으로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흉악범죄의 특질에 관하여 일본인 스스로가 논평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

1995년의 검거인원을 기초로, 살인과 강도와의 비교하는 뜻에서 따로 살펴보면, 범행 때의 연령층별 구성비는 살인에서는 20세대부터 30세대로 전체의 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강도에서는 약 4할을 20세미만인 자가 차지하고 있다.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살인에서는 20%에 가까운데 반해, 강도에서는 4%에 지나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원인을 보면, 살인에서는 원한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데, 약물의 작용 등에 의한 것도 많고,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이 비율(약물)이 남자의 3배 이상이다. 강도의 동기원인은 유희비충당, 생활충당 및 그외 사욕으로 전체의 약 8할을 차지한다. 공범형태를 보면, 살인에서는 약 9할이 단독범인 것에 반해, 강도에서는 약 6할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의 樣態를 보면, 살인에서는 같은 국적인 외국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도에서는 일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것이 8할을 넘고 있다. 또 이 특질을 1995년에 있어서의 검거건수를 기초로, 피해자측에서 보면, 살인피해자는 40세대인 자가 비교적 많은 약 2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도피해자는 20세대가 가장 많은 약 3할을 차지한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보면, 살인에서는 친족등이 약 4할, 지인·친구 등이 약 3할 가까이 차지하는데 강도에 있어서는 면식이 없는 경우가 약 9할이다.

(3) 검찰의 흉악사범 처리상황

검찰의 흉악사범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면, 전체 흉악사범중 기소인원과 기소유예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에 살인은 대략 95%전후를, 강도치상등은 94%대에서 96%대 사이를, 강도는 대략 89%대에서 94%대 사이를 각각 추어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모든사건에 관해서의 이 비율은 63%대에서 70%대 사이를, 그리

7) 상계범죄백서, p. 391

고 교통관계사범을 제외한 형법범에 대해서도 이 비율은 62% 전후를, 각각 추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흉악사범이 기소되는 비율은 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즉 1995년을 예로 들면, 살인에 있어서 起訴猶豫인원 35명은 살인 예비에 의한 자 및 자살관여에 따른 자 등이고, 강도에 있어서의 同人원 60명은 준강도(사후강도)에 의한 자 및 강도예비에 의한 자 등이다. 최근 5년간의 불기소처분인원을 이 유별로 보면 살인에 있어서는, 강도 및 강도치상 등과 비교해서 혐의없음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처분 인원이 많다. 전자가 많은 것은 고소·고발에 관계된 사건중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주장이 충분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보면, 1991년부터 95년까지의 5년간에, 모든 사건의 누계에서 1957명의 정신장애자가 同처분이유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흉악사범의 量刑狀況

1955년 이후 40년간 제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인원의 누계는 423명이고, 그중 살인이 129명, 강도치사는 287명이다. 1994년의 죄명별로 본 유죄판결선고 총인원수 중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살인에서는 총수 583명중 0.3%(2명), 강도치사에서는 강도치상 등의 총수 386명중 1.6%(6명)이다.

1985년 이후 10년간 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인원의 누계는 385명이고, 그 중 살인은 115명, 강도치상등은 254명이다. 1994년의 죄명별로 본유죄판결을 선고한 총인원수 중에 차지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인원의 비율은, 살인에서는 총수 583명중 2.2%(13명), 강도치상 등에서는 총수 386명 중 8.3%(32명)이다. 1994년에 종료된(이송에 따라 종료된 것을 포함한다), 흉악범죄에 관계되는 제1심 공판사건의 심리기간을 보면, 살인에서는 약 51%, 강도치상 등에서는 약 53%, 강도에서는 약 88%가 모두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있다. 공판개정회수를 보면, 살인·강도치상 등, 강도 모두 3회로 가장 많고, 10회이상의 공판개정을 거듭한 것은 살인에서는 약 17%, 강도치상 등에 관해서는 약 13%, 강도에 관해서는 약 2%이다.³¹⁾

(5) 흉악범죄의 피해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구제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지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뜻밖의 죽음을 당한 자의 유족 또는 실명 등의 중장애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급부금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 대해 지급되는 유족급부금 및 장애자가 중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해 지급되는 장애급부금의 2종류가 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한 새로운 동향으로서 경찰청에서는 최근 장애인대책 기본방침을 제정하고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설치했다. 또 근년에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조직·단체가 설립되어, 피해자가 안고 있는 고통 등의 상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카운셀링 활동과 각종정보의 제공 등의 원조·지급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⁸⁾

라. 한국의 통계적 치안 상태

한국의 통계자료는 주로 경찰청련 경찰통계연보(1996)에 의존하였으나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1996)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1996) 그리고 대검찰청의 범죄분석(1995)등도 참고하였다.

(1) 살인 및 강도의 발생상황

<표4-14>는 1970, 1975, 1980, 1985년 및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한국에서의 살인 및 강도에 관한 각각의 발생건수 및 발생율의 추이를 본 것이다.

살인에서는 발생건수는 1993년, 1994년을 제외하고 600건을 전후로 오르내리고있고, 또 발생율은 커다란 변화없이, 거의 일정하다. 강도에서는 발생건수와 발생율이 다 함께, 1990년과 1994년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8) 상계서, p. 392.

9) 상계서, p. 396.

〈표 4-14〉

살인 및 강도 발생건수·발생율¹⁰⁾

한국(1970,1975,1980,1985,1990-1994)

區 分	1970年	1975年	1980年	1985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殺人 發生件數	570	566	536	600	666	630	615	806	705
強盜 發生件數	929	1,600	1,400	1,500	1,600	1,500	1,400	1,800	1,600
發生率	1.8	1,588	2,374	4,195	4,195	2,766	2,549	2,876	4,469
發生率	4.5	4.5	6.2	7.7	9.8	6.4	5.8	6.5	10.1

자료: 범죄백서 (서울:법무연수원, 1996)

〈표4-15〉는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및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살인 및 강도에 관해서 각각의 검거건수 및 검거율의 추이를 본 것이다. 살인 검거건수는, 1993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1994년에는 감소했다. 한편 강도 검거건수는 1991년, 1992년에 감소했는데 그후에는 증가로 전환하고 있다.

〈표 4-15〉

살인 및 강도 검거건수·검거율¹¹⁾

한국(1970년,1975년,1980년,1985년,1990-1994년)

年 次	殺 人		強 盜	
	檢 舉 件 數	檢 舉 率	檢 舉 件 數	檢 舉 率
1970 年	450	78.9	925	99.6
1975	474	83.7	1,496	94.2
1980	584	109.0	2,134	89.9
1985	600	100.0	3,135	100.0
1990	609	91.4	3,938	93.9
1991	577	91.6	2,916	105.4
1992	620	100.8	2,826	110.9
1993	877	108.8	3,873	134.7
1994	720	102.1	4,432	99.2

자료: 범죄백서 (서울:법무연수원, 1996)

〈표4-16〉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살인 및 강도범행때에 사용된 흉기에 관해서 본 것이다.

〈표 4-16〉 살인 및 강도 검거건수에 있어서 흉기사용 유무¹²⁾

한국(1990년-1994년)

分 析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살 인	總 數	577(100.0)	620(100.0)	877(100.0)	720(100.0)
	凶器使用	210 (36.4)	202(32.6)	266(30.3)	494(68.6)
	刀 劍	114 (19.8)	102(16.5)	127(14.5)	312(43.3)
	銃 器	4 (0.7)	5(0.8)	4(0.5)	36(5.0)
	기 타	92 (15.9)	95(15.3)	135(15.4)	146(20.3)
	흉기사용없음	367 (63.6)	418(67.4)	611(69.7)	226(31.4)
강 도	總 數	2,916(100.0)	2,826(100.0)	3,873(100.0)	4,803(100.0)
	凶器使用	1,020 (35.0)	930(32.9)	1,054(27.2)	2,450(51.0)
	刀 劍	469 (16.1)	390(13.8)	456(11.8)	1,579(32.9)
	銃 器	5 (0.2)	6(0.2)	8(0.2)	23(0.5)
	기 타	546 (18.7)	534(18.9)	590(15.2)	848(17.7)
	凶器使用없음	1,896 (65.0)	1,896(67.1)	2,819(72.8)	2,353(49.0)

자료: 범죄백서(서울: 법무연수원, 1996)

10) [발생건수]는 범인을 특정 입건한 사건수이다.

[발생율]은 발생건수의 인구10만 명당의 비율이다.

[살인]은 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囑託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 및 미수, 예비, 陰謀를 포함한다.

[강도]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略取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 또는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및 미수, 예비, 음모를 포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습강도, 재범가도상해, 특수강도강간 등을 제외한다.

11) [검거율]은 검거건수인 표3-98의 주2의 발생건수에 대한 비율이고, 인지건수에 대한 비율과는 다르다. 또한 검거율에 있어 100%가 넘는 것은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한 범죄가 검거되어 포함된 숫자임.

12) ()는 구성비이다. 또 1994년의 「강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습강도, 재범강도,상해 그리고 특수강간강도 등을 포함한다.

살인, 강도 검거건수 중, 흉기가 사용된 비율은 1993년까지는 하강경향에 있었지만, 1994년에는 급상승하고 있다. 사용된 흉기는 살인, 강도 모두, 도검이 가장 많고 총기는 적다. 그러나 1994년에는 살인, 강도 모두 실수(實數)는 적으면서도 총기사용건수의 증가가 보인다.

(2) 가해자와 피해자

표3-101은 1994년의 살인 및 강도 가해자를 연령층별, 남녀별 및 국적별로 본 것이다. 연령층별에서는 강도 가해자의 약 80%를 25세 이하가 차지하고 있고, 20세 미만인 소년에서는 58%에 달하고 있다. 또한 강도를 차지하는 여자 비율은 全犯罪에 있어서의 그것에 비하면 극히 낮다. 게다가 국적별에서는 살인, 강도 모두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는 극히 적다.

<표 4-17> 살인 및 강도가해자의 속성별 인원¹³⁾

한국(1994년)

① 연령층별

罪 名	年 齡 層 別						
	20歲未滿	20歲-25歲	26歲-30歲	31歲-40歲	41歲-50歲	51歲-60歲	61歲以上
全 犯 罪	108,342 (6.7)	210,169 (13.1)	275,305 (17.1)	577,182 (35.9)	288,856 (18.0)	118,291 (7.4)	29,326 (1.8)
殺 人	62 (8.9)	126 (18.1)	106 (15.2)	239 (34.2)	98 (14.0)	44 (6.3)	23 (3.3)
強 盜	3,464 (58.0)	1,400 (23.4)	534 (8.9)	454 (7.6)	95 (1.6)	20 (0.3)	5 (0.1)

13) ()은 구성비이다. 그리고 연령층은 범행당시의 연령에 의한것임.

② 남녀별

罪 名	男 女 別	
	男 子	女 子
全 犯 罪	1,419,005 (86.4)	224,118 (13.6)
殺 人	633 (88.5)	82 (11.5)
強 盜	6,184 (98.6)	87 (1.4)

자료: 상계 범죄백서.

③ 국적별

罪 名	男 女 別	
	男 子	女 子
全 犯 罪	1,658,460 (99.8)	2,513 (0.2)
殺 人	724 (99.6)	3 (0.4)
強 盜	6,505 (99.7)	18 (0.3)

〈표4-18〉는 1994년에 있어서 살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본 것이다. 피해자는 친족등 가해자와 먼식이 있는 자가 많다.

〈표 4-18〉 살인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¹⁴⁾

한국(1994년)

區分	總數	同居 親族	기타 親族	戀人	職場의 同僚	友人	隣人	知人	其他
人員	671 (100.0)	140 (20.9)	40 (6.0)	54 (8.0)	40 (6.0)	24 (3.6)	42 (6.3)	61 (9.1)	270 (40.2)

자료: 상계 범죄백서

(3) 과형상황 등

1994년에 있어서 살인 및 강도의 검찰청 처리인원을 본 것이 〈표4-19〉이다. 전범죄에 비해 살인·강도 모두 처리인원 총수 중에 차지하는 기소인원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14)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안은 구성비이다. 미상은 제외한다.

<표 4-19>

살인 및 강도의 검찰 처리인원

한국(1994년)

罪名	總數	起訴	不起訴	少年部送致
全犯罪	1,760,642 (100.0)	856,374 (50.2)	839,719 (49.2)	10,549 (0.6)
殺人	720 (100.0)	554 (76.9)	164 (22.8)	2 (0.3)
強盜	6,465 (100.0)	4,584 (70.9)	1,383 (21.4)	498 (7.7)

자료: 상계 범죄백서

1994년에 있어서 살인 및 강도의 제1심공판사건 처리인원은 <표4-20>과 같다.

<표 4-20>

살인 및 강도의 제1심 공판사건 처리인원

한국(1994년)

判決	全犯罪	殺人	強盜	強盜傷害 ·致傷	強盜殺人 ·致死	強盜強姦
總數	145,960(100.0)	542 (100.0)	1,940(100.0)	2,084(100.0)	84 (100.0)	457 (100.0)
死刑	35 (0.0)	20 (3.7)	—	—	14 (16.7)	—
拘禁刑						
無期	76 (0.1)	47 (8.7)	—	1 (0.0)	18 (21.4)	1 (0.2)
10年以上	392 (0.3)	169 (31.2)	8 (0.4)	23 (1.1)	15 (17.9)	18 (3.9)
5年以上	1,363 (0.9)	131 (24.2)	74 (3.8)	152 (7.3)	17 (20.2)	104 (22.8)
3年以上	3,425 (2.3)	69 (12.7)	274 (14.1)	447 (21.4)	12 (14.3)	164 (35.9)
1年以上	11,742 (8.0)	18 (3.3)	359 (18.5)	376 (18.0)	3 (3.6)	121 (26.5)
1年未滿	15,215 (10.4)	1 (0.2)	188 (9.7)	—	—	—
執行猶豫	70,445 (48.3)	53 (9.8)	497 (25.6)	369 (17.7)	—	9 (2.0)
不定期刑	2,599 (1.8)	31 (5.7)	147 (7.6)	347 (16.7)	1 (1.2)	8 (1.8)
罰金	22,319 (15.3)	—	—	—	—	—
少年部送致	8,229 (5.6)	—	359 (18.5)	361 (17.3)	4 (4.8)	29 (6.3)
その他	10,121 (6.9)	3 (0.6)	34 (1.8)	8 (0.4)	—	3 (0.7)

자료: 사법연감 (서울: 법무부, 1995) * ()은 구성비임.

한국에 있어서는 살인 및 존속 살해 및 강도살인 또는 치사의 최고형은, 모두 다 사형(교수형)이다. 즉 한국에서는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법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그리고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의 형(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표4-21〉은 최근 10년간의 한국의 구금시설에 있어서의 살인 및 강도의 수용인원(연말인원)을 본 것이다.

수용인원총수는 거의 3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1990년 이후는 증가경향에 있다. 수용자의 비율을 보면 살인이 1992년까지 대체로 상승경향에 있고 강도도 이 10년간 거의 상승경향에 있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의 수용인원은 3만 3,706명(그 중 여자 1,025)이고, 그중 살인이 2,878명(8.5%), 강도가 6,683명(1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1〉 살인 및 강도의 구금시설 수용인원의 추이¹⁵⁾

한국(1985-1994년)

罪 名	1985年	1986年	1987年	1988年	1989年	1990年	1991年	1992年	1993年	1994年
總 數	30,094	30,790	30,386	28,012	26,223	29,013	30,532	31,449	33,294	33,706
女 子	1,058	1,035	903	810	672	691	787	892	1,005	1,025
殺 人	2,042	2,180	2,135	2,062	1,998	2,252	2,464	2,720	2,641	2,878
	(6.8)	(7.1)	(7.0)	(7.4)	(7.6)	(7.8)	(8.1)	(8.6)	(7.9)	(8.5)
強 盜	3,830	3,924	3,678	4,209	3,956	5,133	5,547	5,382	6,016	6,683
	(12.7)	(12.7)	(12.1)	(15.0)	(15.1)	(17.7)	(18.2)	(17.1)	(18.1)	(19.8)

자료: 범죄백서(서울: 법무연수원, 1996)

15) 각기 연말 현재의 미결을 제외한 수용자 수이다. 또 ()은 총수에 대한 구성비이다.

(4) 피해자대책

한국에서의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제제도로서는 1988년7월1일에 시행된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따른 것이 있다.

이 법정은 생명, 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망한 자의 유족과 중한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규정한 것이다. 범죄피해의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해당자가 피해자 구조심의회에 신청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 지급이 결정된다.

한국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이미 고찰 한 바와 같이 영국이나 미국 등에 비해 미비한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보완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5) 통계적 치안 상태의 평가

위의 영·미·일과 같은 방식으로 1994년의 통계로써 치안 상태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의 흉악범죄(살인·강도)의 평균발생율은,

$1.6\% + 10.1\% = 11.7\%$, $11.7\% \div 2 = 5.85\%$ 로서 발생율의 평가는 「양호」,

다음 검거율은,

$102.1\% + 99.2\% = 201.3\%$,

$201.3\% \div 2 = 100.6\%$ 로서 검거율의 평가는 「양호」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의 1994년의 통계적 치안 상태는 발생율과 검거율이 모두 「양호」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하게도 흉악범죄인 살인·강도의 경우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아주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 체감적 치안상태

체감적 치안상태란 글자 그대로 일반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치안상태이다. 이것은 주관적이며 의식적(내면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르며 지역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난다.

치안상태 뿐만 아니라 경찰임무나 기능 면에 있어서도 법규상의 그것과 일반국민이 느끼는(또는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체감적 치안상태나 경찰임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피해자대책

한국에서의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제제도로서는 1988년7월1일에 시행된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따른 것이 있다.

이 법정은 생명, 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망한 자의 유족과 중한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규정한 것이다. 범죄피해의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해당자가 피해자 구조심의회에 신청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 지급이 결정된다.

한국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이미 고찰 한 바와 같이 영국이나 미국 등에 비해 미비한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보완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5) 통계적 치안 상태의 평가

위의 영·미·일과 같은 방식으로 1994년의 통계로써 치안 상태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의 흉악범죄(살인·강도)의 평균발생율은,

$1.6\% + 10.1\% = 11.7\%$, $11.7\% \div 2 = 5.85\%$ 로서 발생율의 평가는 「양호」,

다음 검거율은,

$102.1\% + 99.2\% = 201.3\%$,

$201.3\% \div 2 = 100.6\%$ 로서 검거율의 평가는 「양호」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의 1994년의 통계적 치안 상태는 발생율과 검거율이 모두 「양호」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하게도 흉악범죄인 살인·강도의 경우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아주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 체감적 치안상태

체감적 치안상태란 글자 그대로 일반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치안상태이다. 이것은 주관적이며 의식적(내면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르며 지역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난다.

치안상태 뿐만 아니라 경찰임무나 기능 면에 있어서도 법규상의 그것과 일반국민이 느끼는(또는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체감적 치안상태나 경찰임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2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설문내용	응답자신상	체감치안	경찰임무	경찰기능	인력및이미지	계
분항수	1	5	5	2	3	15

조사시기는 4개국 모두 1997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행하여 졌으며 조사지역은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대도시를 택하여 현지에서 이루어졌다. 즉 영국은 런던, 미국은 뉴욕, 일본은 동경 그리고 한국은 인천에서 실시하였다.¹⁵⁾

한편 설문 응답자의 현황은 다음의 〈표4-23〉와 같다.

〈표 4-23〉 설문지 응답 현황

구 분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계
성 별	남	46	70	58	82	256
	여	54	80	42	118	294
연 령 별	10대	26	42	57	11	136
	20대	42	66	38	50	196
	30대	13	20	1	30	64
	40대	11	13	3	67	94
	50대이상	8	9	1	42	60
거 주 지 역 별	대도시	46	55	64	172	337
	소도시	33	82	35	23	173
	농어촌	18	2	1	4	25
	공업단지	3	11	0	1	15
계		100	150	100	200	550

15) 런던에서는 천지항공의 유재신부장이 뉴욕에서는 유학생인 정양균이, 동경에서는 인천대 조교였다가 유학간 이명주양이 그리고 인천에서는 필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영국의 체감적 치안상태

위의 <표4-22>에서의 설문내용 중 체감치안에 관한 5문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방법체계, 경찰활동, 치안상태, 범죄율 그리고 80년대와 비교한 현재의 치안상태 등 5문항이다. 이 5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문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의 통계적 치안상태의 경우처럼, 영·미·일·한국의 순서로 살펴본다.

(1) 당신이 사는 곳은 방법체계(파출소·경비·순찰 등)가 어떠한가?

<표 4-24> 방법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영국: 1997. 9)

구분		잘되어 있다	보통이다	가끔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2	38	4	2	46	X' = 5.97 DF = 3 P = 0.1132
		%	4.3	82.6	8.7	4.3	100	
	여	N	9	41	4	0	54	
		%	16.7	75.9	7.4	0	100	
연령별	10대	N	1	23	1	1	26	X' = 12.70 DF = 12 P = 0.3910
		%	3.8	88.5	3.8	3.8	100	
	20대	N	8	28	5	1	42	
		%	19.0	66.7	11.9	2.4	100	
	30대	N	0	13	0	0	13	
		%	0	100	0	0	100	
	40대	N	1	8	2	0	11	
		%	9.1	72.7	18.2	0	100	
50대 이상	N	1	7	0	0	8		
	%	12.5	87.5	0	0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8	31	5	2	46	X' = 8.11 DF = 9 P = 0.5231
		%	17.4	67.4	10.9	4.3	100	
	중도시	N	2	29	2	0	33	
		%	6.1	87.9	6.1	0	100	
	농어촌	N	1	16	1	0	18	
		%	5.6	88.9	5.6	0	100	
	공업단지	N	0	3	0	0	3	
		%	0	100	0	0	100	
계	N	11	79	8	2	100		
	%	11.0	79.0	8.0	2.0	100		

방법체계에 관한 영국인의 느낌은 「보통이다」가 79.0%, 「잘 되어 있다」가 11.0%, 합 90.0%가 보통이상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방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신뢰도가 가장 높고, 거주지별로는 도시이건 농어촌이건 다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떻게 느껴지는가?

<표 4-25> 범죄율에 대한 느낌 조사내용(영국: 1997. 9)

구분		너무 높다	약간더높은편이다	비슷하다	낮은편이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15	8	19	4	46	$X^2 = 6.74$ DF = 3 P = 0.1080	
		%	32.6	17.4	41.3	8.7	100		
	여	N	7	15	25	7	54		
		%	13.0	27.8	46.3	13.0	100		
연령별	10대	N	5	4	11	6	26		$X^2 = 18.89$ DF = 12 P = 0.0912
		%	19.2	15.4	42.3	23.1	100		
	20대	N	12	12	15	3	42		
		%	28.6	28.6	35.7	7.1	100		
	30대	N	1	5	7	0	13		
		%	7.7	38.5	53.8	0	100		
	40대	N	1	0	8	2	11		
		%	9.1	0	72.7	18.2	100		
	50대 이상	N	3	2	3	0	8		
		%	37.5	25.0	37.5	0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13	13	19	1	46	$X^2 = 14.70$ DF = 9 P = 0.0994	
		%	28.3	28.3	41.3	2.2	100		
	소도시	N	7	4	16	6	33		
		%	21.2	12.1	48.5	18.2	100		
	농어촌	N	2	4	8	4	18		
		%	11.1	22.2	44.4	22.2	100		
	공업단지	N	0	2	1	0	3		
		%	0	66.7	33.3	0	100		
계	N	22	23	44	11	100			
	%	22.0	23.0	44.0	11.0	100			

범죄율에 대한 느낌은 흥미롭다. 위에서 방법체계에 대하여는 높은 신뢰도를 보인 영국인들은 자기나라의 범죄율이 외국에 비하여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5.0%(너무 높다 22.0%, 약간 더 높은 편이다 23.0%)로서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44.0%와 맞먹는다.

(3) 치안상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표 4-26〉 치안상태(체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영국: 1997. 9)

구분		아주 좋다	보통 이다	불안 하다	매우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0	33	10	3		X ² =6.08 DF=3 P=0.1078
		%	0	71.7	21.7	6.5	100	
	여	N	5	34	14	1	54	
		%	9.3	63.0	25.9	1.9	100	
연 령 별	10대	N	0	18	7	1	X ² =12.71 DF=12 P=0.3905	
		%	0	69.2	26.9	3.8		100
	20대	N	4	27	8	3		42
		%	9.5	64.3	19.0	7.1		100
	30대	N	0	8	5	0		13
		%	0	61.5	38.5	0		100
	40대	N	1	6	4	0		11
		%	9.1	54.5	36.4	0		100
	50대 이상	N	0	8	0	0		8
		%	0	100	0	0		100
거 주 지 역 별	대 도시	N	2	29	12	3	X ² =2.94 DF=9 P=0.9666	
		%	4.3	63.0	26.1	6.5		100
	소 도시	N	2	22	8	1		33
		%	6.1	66.7	24.2	3.0		100
	농 어촌	N	1	14	3	0		18
		%	5.6	77.8	16.7	0		100
공업 단지	N	0	2	1	0	3		
	%	0	66.7	33.3	0	100		
계	N	5	67	24	4	100		
	%	5.0	67.0	24.0	4.0	100		

영국인의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은 「아주 좋다」가 5.0%, 「보통이다」가 67.0%, 합 72%의 국민이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체감적 치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치안상태와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위에서 방법체계, 범죄율 그리고 치안상태에 관한 영국인의 느낌을 알아본 결과, 방법체계나 치안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여 별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다만 자국의 범죄율은 외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영국인들은 영국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여러 가지 경찰활동 중 어느 부분을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아래의 <표4-27>는 중요한 사실을 한가지 시사하고 있다.

<표 4-27>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영국: 1997. 9)

구분		범죄 수사	질서 유지	사회 봉사	교통 정리	데모 진압	간첩 작전	방법 순찰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15	8	6	5	2	3	7	46	$X^2 = 11.49$ DF = 6 P = 0.0743		
		%	32.6	17.4	13.0	10.9	4.3	6.5	15.2	100			
	여	N	15	19	7	10	1	1	1	54			
		%	27.8	35.2	13.0	18.5	1.9	1.9	1.9	100			
연 령 별	10대	N	11	2	3	6	2	0	2	26	$X^2 = 25.85$ DF = 24 P = 0.3608		
		%	42.3	7.7	11.5	23.1	7.7	0	7.7	100			
	20대	N	9	14	7	3	1	3	5	42			
		%	21.4	33.3	16.7	7.1	2.4	7.1	11.9	100			
	30대	N	3	3	2	4	0	0	1	13			
		%	23.1	23.1	15.4	3.8	0	0	7.7	100			
	40대	N	5	4	0	1	0	1	0	11			
		%	45.5	36.4	0	9.1	0	9.1	0	100			
	50대 이상	N	2	4	1	1	0	0	0	8			
		%	25.0	50.0	12.5	12.5	0	0	0	100			
	거 주 지 역 별	대 도시	N	13	10	6	9	2	3	3		46	$X^2 = 19.62$ DF = 18 P = 0.3546
			%	28.3	21.7	13.0	19.6	4.3	6.5	6.5		100	
소 도시		N	12	7	5	4	1	1	3	33			
		%	36.4	21.2	15.2	12.1	3.0	3.0	9.1	100			
농 어촌		N	5	9	0	2	0	0	2	18			
		%	27.8	50.0	0	11.1	0	0	11.1	100			
공업 단지		N	0	1	2	0	0	0	0	3			
		%	0	33.3	66.7	0	0	0	0	100			
계	N	30	27	13	15	3	4	8	100				
	%	30.0	27.0	13.0	15.0	3.0	4.0	8.0	100				

즉 앞의 제Ⅲ장 경찰활동과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을 논함에 있어, 영국에서는 법규상 공식적인 업무배치비율이 대체로 전통적 기능인 법집행 기능과 질서유지 기능에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현대적 기능 중 봉사업무는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다.(<표4-27>기능별 배치비율 참조)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영국국민의 느낌(평가)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즉 범죄수사를 잘한다는 비율이 30.0%, 질서유지가 27.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는 공식적 배치비율은 앞의 <표4-27>에서 27.54%로 높이 나타나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13.0%에 불과하다. 봉사활동이 높이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 80년대에 비하여 현재 영국의 치안상태는 어떻다고 느끼는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8>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영국: 1997. 9)

구 분		많이 좋아졌다	좀나아진 편이다	달라진 것이없다	더 나빠졌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5	24	9	8	X ² = 3.89 DF = 3 P = 0.2736	
		%	10.9	52.2	19.6	17.4		
	여	N	2	29	17	6		X ² = 25.09 DF = 12 P = 0.0144
		%	3.7	53.7	31.5	11.1		
연 령 별	10대	N	4	16	2	4	X ² = 11.53 DF = 9 P = 0.2409	
		%	15.4	61.5	7.7	15.4		
	20대	N	2	26	12	2		
		%	4.8	61.9	28.6	4.8		
	30대	N	1	6	4	2		
		%	7.7	46.2	30.8	15.4		
	40대	N	0	3	6	2		
		%	0	27.3	54.5	18.2		
50대 이상	N	0	2	2	4			
	%	0	25.0	25.0	50.0			
저 주 지 역 별	대도시	N	1	27	13	5	X ² = 11.53 DF = 9 P = 0.2409	
		%	2.2	58.7	28.3	10.9		
	소도시	N	4	18	8	3		
		%	12.1	54.5	24.2	9.1		
	농어촌	N	2	6	4	6		
		%	11.1	33.3	22.2	33.3		
	공업단지	N	0	2	1	0		
		%	0	66.7	33.3	0		
계	N	7	53	26	14	100		
	%	7.0	53.0	26.0	14.0			

80년대에 비하여 90년대에는 영국의 치안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가 7.0%, 「좀 나아졌다」가 53.0%, 합계 60%가 나아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20대·30대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여하간 영국의 치안상태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미국의 체감적 치안상태

(1) 당신이 사는 곳은 방범체계(파출소·경비·순찰 등)가 어떠한가?

〈표 4-29〉 방범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미국: 1997. 6)

구분		잘되어 있다	보통이다	가끔 불안	항상 불안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17	42	8	3		$X^2 = 1.87$ DF = 3 P = 0.6000	
		%	24.3	60.0	11.4	4.3	70		
	여	N	24	44	6	6	80		
		%	30.0	55.0	7.5	7.5	100		
연령별	10대	N	9	28	3	2	$X^2 = 12.82$ DF = 12 P = 0.3819		
		%	21.4	66.7	7.1	4.8			42
	20대	N	18	38	6	4			66
		%	27.3	57.6	9.1	6.1			100
	30대	N	4	13	1	2		20	
		%	20.0	65.0	5.0	10.0		100	
	40대	N	5	5	3	0		13	
		%	38.5	38.5	23.1	0		100	
	50대 이상	N	5	2	1	1		9	
		%	55.6	22.2	11.1	11.1		100	
거주지역별	도시	N	20	25	6	4	$X^2 = 8.18$ DF = 9 P = 0.5160		
		%	36.4	45.5	10.9	7.3		55	
	소도시	N	19	52	6	5		82	
		%	23.2	63.4	7.3	6.1		100	
	농촌	N	0	2	0	0		2	
		%	0	100	0	0		100	
	공업단지	N	2	7	2	0		11	
		%	18.2	63.6	18.2	0		100	
계	N	41	82	15	9	150			
	%	27.3	57.3	9.3	6.0	100			

방법체계에 관한 미국인의 느낌은 「보통이다」가 57.3%, 「잘 되어 있다」가 27.3%, 합계 84.6%가 보통이상 이라고 응답함으로서 영국의 90.0%와 별 차이 없이 방법체계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2)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떻게 느껴지는가?

〈표 4-30〉 범죄율에 대한 느낌 조사내용(미국: 1997. 6)

구분		너무 높다	약간 더 높다	비슷하다	낮은 편이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17	23	23	7		$X^2 = 0.93$ DF = 3 P = 0.8188	
		%	24.3	32.9	32.9	10.0	100		
	여	N	18	32	22	8	80		
		%	22.5	40.0	27.5	10.0	100		
연령별	10대	N	7	23	9	3	$X^2 = 16.65$ DF = 12 P = 0.1632		
		%	16.7	54.8	21.4	7.1			100
	20대	N	15	22	21	8			66
		%	22.7	33.3	31.8	12.1			100
	30대	N	5	4	10	1		20	
		%	25.0	20.0	50.0	5.0		100	
	40대	N	4	5	3	1		13	
		%	30.8	38.5	23.1	7.7		100	
	50대 이상	N	4	1	2	2		9	
		%	44.4	11.1	22.2	22.2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12	18	19	6	$X^2 = 4.95$ DF = 9 P = 0.8389		
		%	21.8	32.7	34.5	10.9		100	
	중도시	N	19	33	21	9		82	
		%	23.2	40.2	25.6	11.0		100	
	농어촌	N	0	1	1	0		2	
		%	0	50.0	50.0	0		100	
	공업단지	N	4	3	4	0		11	
		%	36.4	27.3	36.4	0		100	
계	N	35	55	45	15	150			
	%	23.3	36.7	30.0	10.0	100			

미국인은 대체로 자기 나라가 범죄율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즉 「너무 높다」고 느끼는 사람이 23.3%, 「약간 더 높다」고 느끼는 사람이 36.7%로서 합계 60.0%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범죄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 30.0%의 쪽 곱절이다.

(3) 치안상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표 4-31〉 치안상태(체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미국: 1997. 6)

구분			아주 높다	보통 이다	불안 하다	매우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7	40	19	4	70		X ² = 1.52 DF = 3 P = 0.6776
		%	10.0	57.1	27.1	5.7	100		
	여	N	5	45	22	8	80		
		%	6.3	56.3	27.5	10.0	100		
연 령 별	10대	N	2	28	10	2	42	X ² = 18.24 DF = 12 P = 0.1085	
		%	4.8	66.7	23.8	4.8	100		
	20대	N	5	42	14	5	66		
		%	7.6	63.6	21.2	7.6	100		
	30대	N	3	10	5	2	20		
		%	15.0	50.0	25.0	10.0	100		
	40대	N	1	4	7	1	13		
		%	7.7	30.8	53.8	7.7	100		
	50대 이상	N	1	1	5	2	9		
		%	11.1	11.1	55.6	22.2	100		
거 주 지 역 별	대 도시	N	4	28	19	4	55	X ² = 6.70 DF = 9 P = 0.6678	
		%	7.3	50.9	34.5	7.3	100		
	소 도시	N	8	48	18	8	82		
		%	9.8	58.5	22.0	9.8	100		
	농 어촌	N	0	2	0	0	2		
		%	0	100	0	0	100		
	공업 단지	N	0	7	4	0	11		
		%	0	63.6	36.4	0	100		
계	N	12	85	41	12	150			
	%	8.0	56.7	27.3	8.0	100			

미국인의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 역시 「아주 좋다」가 8.0%, 「보통이다」가 56.7%,
합계 64.7%가 보통이상으로서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
주지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체감치안상태는 양호하다.

(4) 치안상태와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방법체계나 치안상태에 대하여 대체로 긍

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영국과 흡사하다. 다만 미국인들은 자국내의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고(60%)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인들은 미국경찰활동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설문조사는 주경찰이 아닌 자치경찰(뉴욕시 경찰)을 염두에 둔 조사와 응답이다.

미국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즉 어느 부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가는, 질서유지(29.3%), 교통정리(28.0%), 범죄수사(24.0%) 그리고 방범·순찰(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수사가 1위(30.0%)로 나타난 영국과는 대조적이다.

<표 4-32>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미국: 1997. 6)

구분		범죄수사	질서유지	사회봉사	교통정리	데모진압	간첩작전	방법순찰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남	N	21	19	7	14	1	2	6	70	$X^2 = 8.75$ DF = 6 P = 0.1880
		%	30.0	27.1	10.0	20.0	1.4	2.9	9.6		
별	여	N	15	25	4	28	1	0	7	80	
		%	18.8	31.3	5.0	35.0	1.3	0	8.8		
연령	10대	N	6	15	2	13	1	1	4	42	
		%	14.3	35.7	4.8	31.0	2.4	2.4	9.5		
	20대	N	18	16	6	15	1	1	9	66	
		%	27.3	24.2	9.1	22.7	1.5	1.5	13.6		
	30대	N	7	7	0	6	0	0	0	20	
		%	35.0	35.0	0	30.0	0	0	0		
	40대	N	3	4	3	3	0	0	0	13	
		%	23.1	30.8	23.1	23.1	0	0	0		
50대 이상	N	2	2	0	5	0	0	0	9		
	%	22.2	22.2	0	55.6	0	0	0		100	
거주지역	대도시	N	15	15	5	11	0	1	8	55	$X^2 = 15.03$ DF = 18 P = 0.6601
		%	27.3	27.3	9.1	20.0	0	1.0	14.5		
	중소도시	N	18	26	6	24	2	1	5	82	
		%	22.0	31.7	7.3	29.3	2.4	1.2	6.1		
	농어촌	N	0	0	0	2	0	0	0	2	
		%	0	0	0	100	0	0	0		
	공업단지	N	3	3	0	45.5	0	0	0	100	
		%	27.3	27.3	0	45.5	0	0	0		
계		N	36	44	11	42	2	2	13	150	
		%	24.0	29.3	7.3	28.0	1.3	1.3	8.7		100

다음, 80년대에 비하여, 현재 미국의 치안상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다음의 <표4-33>과 같다.

<표 4-33>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미국: 1997. 6)

구분		잘되어 있다	보통이다	가끔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6	34	18	12		X ² = 3.21 DF = 3 P = 0.3600			
		%	8.6	48.6	25.7	17.1	70				
	여	N	13	34	24	9	X ² = 15.02 DF = 12 P = 0.2403				
		%	16.3	42.5	30.0	11.3			80		
연령별	10대	N	7	20	10	5		X ² = 15.02 DF = 12 P = 0.2403			
		%	16.7	47.6	23.8	11.9			42		
	20대	N	6	35	19	6	X ² = 7.51 DF = 9 P = 0.5837				
		%	9.1	53.0	28.8	9.1			66		
	30대	N	5	7	4	4			X ² = 7.51 DF = 9 P = 0.5837		
		%	25.0	35.0	20.0	20.0				20	
	40대	N	1	3	5	4				X ² = 7.51 DF = 9 P = 0.5837	
		%	7.7	23.1	38.5	30.8					13
	50대	N	0	3	4	2					X ² = 7.51 DF = 9 P = 0.5837
		%	0	33.3	44.4	22.2					
이상	N	9	24	12	10	X ² = 7.51 DF = 9 P = 0.5837					
	%	16.4	43.6	21.8	18.2			55			
거주지역별	도시	N	10	36	27		9	X ² = 7.51 DF = 9 P = 0.5837			
		%	12.2	43.9	32.9		11.0				
	농어촌	N	0	2	0		0		X ² = 7.51 DF = 9 P = 0.5837		
		%	0	100	0		0				
	공업단지	N	0	6	3		2			X ² = 7.51 DF = 9 P = 0.5837	
		%	0	54.5	27.3		18.2				
계	N	19	68	42	21		X ² = 7.51 DF = 9 P = 0.5837				
	%	12.7	45.3	28.0	14.0			15			

미국의 90년대의 치안상태는 80년대에 비하여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많이 좋아졌다」가 12.7%, 「좀 나아진 편이다」가 45.3%로서 합계 58.0%가 나아졌다고 답하고 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80년대와 비교한 90년대의 치안상태는 영국의 그것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달라진 것이 없다」의 28.0%(영국은 26.0%), 「더 나빠졌다」의 14.0%(영국도 14.%)가 그러하다.

다. 일본의 체감적 치안상태

(1) 당신이 사는 곳은 방범체계(파출소, 경비, 순찰등)가 어떠한가?

<표 4-34> 방범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일본: 1997. 6)

구분		잘되어 있다	보통이다	가끔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11 % 19.0	37 63.8	6 10.3	4 6.9	58 100	
	여	N 8 % 19.0	23 54.8	8 19.0	3 7.1	42 100	
연령별	10대	N 10 % 17.5	35 61.4	10 17.5	2 3.5	57 100	X ² =6.51 DF=12 P=0.8883
		20대	N 8 % 21.1	21 55.3	4 10.5	5 13.2	
	30대	N 0 % 0	1 100	0 0	0 0	1 100	
		40대	N 1 % 33.3	2 66.7	0 0	0 0	
	50대 이상	N 0 % 0	1 100	0 0	0 0	1 100	
		60대 이상	N 0 % 0	1 100	0 0	0 0	
거주지역별	도시	N 16 % 25.0	33 51.6	10 15.6	5 7.8	64 100	X ² =20.18 DF=6 P=0.0025
		소도시	N 3 % 8.6	27 77.1	4 11.4	1 2.9	
	농어촌	N 0 % 0	0 0	0 0	1 100	1 100	
		공업단지	N 0 % 0	0 0	0 0	0 0	
	계	N 19 % 19.0	60 60.0	14 14.0	7 7.0	100 100	

자기가 사는 곳의 파출소·경비·순찰등의 방범체계에 관하여 일본인들은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보통이다」가 60.0%, 「잘되어 있다」가 19.0%, 합, 79.0%가 보통 또는 그 이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영국(90%)이나, 미국(84.6%)보다는 떨어지는 수치이다.

(2)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떻게 느껴지는가?

〈표 4-35〉 범죄율의 느낌에 관한 조사내용(일본: 1997. 6)

구 분			너무 높다	약간더높 은편이다	비슷 하다	낮은 편이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1	7	5	45	58	
		%	1.7	12.1	8.6	77.6	100	
	여	N	0	5	10	27	42	
		%	0	11.9	23.8	64.3	100	
연 령 별	10대	N	1	6	9	41	57	X ² =15.71 DF=12 P=0.2047
		%	1.8	10.5	15.8	71.9	100	
	20대	N	0	4	5	29	38	
		%	0	10.5	13.2	76.3	100	
	30대	N	0	0	0	1	1	
		%	0	0	0	100	100	
	40대	N	0	2	0	1	3	
		%	0	66.7	0	33.3	100	
	50대 이상	N	0	0	1	0	1	
		%	0	0	100	0	100	
거 주 지 역 별	대 도시	N	1	7	10	46	64	X ² =1.18 DF=6 P=0.9777
		%	1.6	10.9	15.6	71.9	100	
	소 도시	N	0	5	5	25	35	
		%	0	14.3	14.3	71.4	100	
	농 어촌	N	0	0	0	1	1	
		%	0	0	0	100	100	
	공업 단지	N	0	0	0	0	0	
		%	0	0	0	0	0	
계	N	1	12	15	72	100		
	%	1.0	12.0	15.0	72.0	100		

「범죄율에 대한 일본인의 느낌」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편이하다. 외국에 비하여 자기 나라의 범죄율은 「낮은 편이다」가 무려 72.0%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0%,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0%에 불과하다.

(3) 치안상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표 4-36〉 치안상태(체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일본: 1997. 6)

구분			아주 좋다	보통 이다	불안 하다	매우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22	29	6	1	58	$X^2 = 5.20$ $DF = 3$ $P = 0.1579$		
		%	37.9	50.0	10.3	1.7	100			
	여	N	8	29	5	0	42			
		%	19.0	69.0	11.9	0	100			
연 령 별	10대	N	16	31	9	1	57		$X^2 = 8.73$ $DF = 12$ $P = 0.7262$	
		%	28.1	54.4	15.8	1.8	100			
	20대	N	13	23	2	0	38			
		%	34.2	60.5	5.3	0	100			
	30대	N	1	0	0	0	1			
		%	100	0	0	0	100			
	40대	N	0	3	0	0	3			
		%	0	100	0	0	100			
	50대 이상	N	0	1	0	0	1			
		%	0	100	0	0	100			
	거 주 지 역 별	대 도시	N	16	41	7	0	64		$X^2 = 5.59$ $DF = 6$ $P = 0.4702$
			%	25.0	64.1	10.9	0	100		
소 도시		N	14	16	4	1	35			
		%	40.0	45.7	11.4	2.9	100			
농 어촌		N	0	1	0	0	1			
		%	0	100	0	0	100			
공업 단지		N	0	0	0	0	0			
		%	0	0	0	0	0			
계	N	30	58	11	1	100				
	%	30.0	58.0	11.0	1.0	100				

일본인의 체감치안은 무척 양호하다.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아주 좋다」가 30%, 「보통이다」가 58.0%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88.0%)이 자기나라는 범죄가 없는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4) 치안상태와 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

일본인들은 자기나라 방범체계에 관한 신뢰도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다소 떨어져지만, 범죄율에 대한 느낌이나 치안상태에 관한 느낌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

이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기나라가 제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고 있다. 다음, 일본인들은 자기나라 경찰활동중 어떤 부분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4-37〉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일본: 1997. 6)

구분		범죄 수사	질서 유지	사회 봉사	교통 정리	데모 진압	간첩 작전	방법 순찰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24	14	1	7	1	5	6	58	X ² = 14.33 DF = 6 P = 0.0261
		%	41.4	24.1	1.7	12.1	1.7	8.6	10.3	100	
	여	N	10	22	2	6	1	0	1	42	
		%	23.8	52.4	4.8	14.3	2.4	0	2.4	100	
연 령 별	10대	N	12	23	2	11	1	4	4	57	X ² = 15.63 DF = 24 P = 0.9011
		%	21.1	40.4	3.5	19.3	1.8	7.0	7.0	100	
	20대	N	18	12	1	2	1	1	3	38	
		%	47.4	31.6	2.6	5.3	2.6	2.6	7.9	100	
	30대	N	1	0	0	0	0	0	0	1	
		%	100	0	0	0	0	0	0	100	
	40대	N	2	1	0	0	0	0	0	3	
		%	66.7	33.3	0	0	0	0	0	100	
	50대	N	1	0	0	0	0	0	0	1	
		%	100	0	0	0	0	0	0	100	
거 주 지 역 별	대 도시	N	24	23	1	8	2	3	3	64	X ² = 23.81 DF = 12 P = 0.0216
		%	37.5	35.9	1.6	12.5	3.1	4.7	4.7	100	
	소 도시	N	10	13	2	5	0	1	4	35	
		%	28.6	37.1	5.7	14.3	0	2.9	11.4	100	
	농 어촌	N	0	0	0	0	0	1	0	1	
		%	0	0	0	0	0	100	0	100	
	공업 단지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34	36	3	13	2	5	7	100		
	%	34.0	36.0	3.0	13.0	2.0	5.0	7.0	100		

일본인들의 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는 색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앞의 제Ⅲ장 경찰활동과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경찰의 공식적 임무배치에 있어서 전통적 기능(법집행·질서유지)과 현대적 기능(봉사·부수업무)을 거의 비슷하게 반반씩 나누어 전자에 50.66%, 후자에 49.34%로 배치하고 있

으나 일본인들의 체감적 평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질서유지가 단연 36.0%, 그리고 범죄수사가 34.0%, 합 70.0%가 전통적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봉사활동이나 기타 행정적 부수업무는 그 활동양에 비하여 평가는 신통치 못하다. 다음, 80년대에 비하여 현재 일본의 치안상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8〉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일본: 1997. 6)

구분		많이 좋아졌다	좀나아진 편이다	달라진 것이없다	더 나빠졌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2	13	18	25		X ² = 4.63 DF = 3 P = 0.2013					
		%	3.4	22.4	31.0	43.1	100						
	여	N	2	3	18	19	X ² = 11.60 DF = 12 P = 0.4783						
		%	4.8	7.1	42.9	45.2			100				
연령별	10대	N	3	13	20	21		X ² = 10.38 DF = 6 P = 0.1097					
		%	5.3	22.8	35.1	36.8			100				
	20대	N	1	3	15	19	X ² = 10.38 DF = 6 P = 0.1097						
		%	2.6	7.9	39.5	50.0			100				
	30대	N	0	0	1	0			X ² = 10.38 DF = 6 P = 0.1097				
		%	0	0	100	0				100			
	40대	N	0	0	0	3				X ² = 10.38 DF = 6 P = 0.1097			
		%	0	0	0	100					100		
	50대 이상	N	0	0	0	1					X ² = 10.38 DF = 6 P = 0.1097		
		%	0	0	0	100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4	7	22						31	X ² = 10.38 DF = 6 P = 0.1097
			%	6.3	10.9	34.4						48.4	
소도시		N	0	8	14	13		X ² = 10.38 DF = 6 P = 0.1097					
		%	0	22.9	40.0	37.1						100	
농어촌		N	0	1	0	0	X ² = 10.38 DF = 6 P = 0.1097						
		%	0	100	0	0						100	
공업단지		N	0	0	0	0			X ² = 10.38 DF = 6 P = 0.1097				
		%	0	0	0	0						0	
계	N	4	16	36	44	100							
	%	4.0	16.0	36.0	44.0								

80년대와 비교한 90년대의 치안상태를 어떻게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위에서 본 영국과, 미국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영·미는 두 나라가 다 비

슷하게 「나아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 일본인은 「달라진 것이 없다」가 36.0%, 「더 나빠졌다」가 무려 44.0%이다. 80년대가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였던 모양이다.

라. 한국의 체감적 치안상태

(1) 당신이 사는 곳은 방범체계(파출소·경비·순찰등)가 어떠한가?

<표 4-39> 방범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한국: 1997. 6)

구분		잘되어 있다	보통이다	가끔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남	N	9	38	23	12	82	$X^2 = 1.40$ DF = 3 P = 0.7058	
		%	11.0	46.3	28.0	14.6	100		
별	여	N	16	61	28	13	118		
		%	13.6	51.7	23.7	11.0	100		
연령	10대	N	0	8	0	3	11		$X^2 = 11.84$ DF = 12 P = 0.4587
		%	0	72.7	0	27.3	100		
	20대	N	6	28	12	4	50		
		%	12.0	56.0	24.0	8.0	100		
	30대	N	4	13	10	3	30		
		%	13.3	43.3	33.3	10.0	100		
	40대	N	10	29	17	11	67		
		%	14.9	43.3	25.4	16.4	100		
	50대 이상	N	5	21	12	4	42		
		%	11.9	50.0	28.6	9.5	100		
거주지역	도시	N	24	81	44	23	172	$X^2 = 13.98$ DF = 9 P = 0.1229	
		%	14.0	47.1	25.6	13.4	100		
	소도시	N	1	16	5	1	23		
		%	4.3	69.6	21.7	4.3	100		
	농어촌	N	0	2	2	0	4		
		%	0	50.0	50.0	0	100		
	공업단지	N	0	0	0	1	1		
		%	0	0	0	100	100		
	계	N	25	99	51	25	200		
		%	12.5	49.5	25.5	12.5	100		

방범체계 대한 한국인의 느낌은, 영·미·일의 경우처럼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잘되어있다」가 12.5%, 「보통이다」가 49.5%, 합 62.0%가 보통 또는 그 이상이라고 답하고 있다.

(2)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떻게 느껴지는가?

<표 4-40> 범죄율에 대한 느낌 조사내용(한국: 1997. 6)

구분		너무 높다	약간 더 높은편이다	비슷하다	낮은 편이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24	34	17	7	82	$X^2 = 2.21$ DF = 3 P = 0.5299
		%	29.3	41.5	20.7	8.5	100	
	여	N	37	40	24	17	118	
		%	31.4	33.9	20.3	14.4	100	
연령별	10대	N	4	3	2	2	11	$X^2 = 12.81$ DF = 12 P = 0.3829
		%	36.4	27.3	18.2	18.2	100	
	20대	N	14	16	14	6	50	
		%	28.0	32.0	28.0	12.0	100	
	30대	N	5	14	6	5	30	
		%	16.7	46.7	20.0	16.7	100	
	40대	N	18	29	13	7	67	
		%	26.9	43.3	19.4	10.4	100	
	50대 이상	N	20	12	6	4	42	
		%	47.6	28.6	14.3	9.5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49	67	36	20	172	$X^2 = 9.77$ DF = 9 P = 0.3698
		%	28.5	39.0	20.9	11.6	100	
	소도시	N	11	5	4	3	33	
		%	47.8	21.7	17.4	13.0	100	
	농어촌	N	1	2	0	1	4	
		%	25.0	50.0	0	25.0	100	
	공업단지	N	0	0	1	0	1	
		%	0	0	100	0	100	
계	N	61	74	41	24	200		
	%	30.5	37.0	20.5	12.0	100		

한국인의 「범죄율에 대한 느낌」은 「높다」가 조사대상국인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45.0%, 미국은 60.0%, 일본은 13.0% 그리고 한국은 67.5%(너무 높다 30.5%, 약간 더 높은 편이다 37.0%)이다. 한국인은 평소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징표라 하겠다.

(3) 치안상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표 4-41〉 치안상태(체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한국: 1997. 6)

구 분		아주 좋다	보통 이다	불안 하다	매우 불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0	31	43	8	X ² =6.28 DF=2 P=0.0433		
		%	0	37.8	52.4	9.8		100	
	여	N	0	27	70	21		118	
		%	0	22.9	59.3	17.8		100	
연 령 별	10대	N	0	3	6	2		X ² =5.19 DF=8 P=0.7375	
		%	0	27.3	54.5	18.2			100
	20대	N	0	16	26	8			50
		%	0	32.0	52.0	16.0			100
	30대	N	0	10	15	5	30		
		%	0	33.3	50.0	16.7	100		
	40대	N	0	15	45	8	67		
		%	0	20.9	67.2	11.9	100		
	50대	N	0	15	21	6	42		
		%	0	35.7	50.0	14.3	100		
	이상	N	0	49	96	27	172		
		%	0	28.5	55.8	15.7	100		
거 주 지 역 별	도시	N	0	8	14	1	X ² =3.30 DF=6 P=0.7699		
		%	0	34.8	60.9	4.3		100	
	농 어촌	N	0	1	2	1		4	
		%	0	25.0	50.0	25.0		100	
	공업 단지	N	0	0	1	0		1	
		%	0	0	100	0		100	
	계	N	0	58	113	29		200	
		%	0	29.0	56.5	14.5		100	

한국인의 체감치안상태는 위의 「범죄율」의 경우처럼 가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하다」가 56.5%, 「매우 불안하다」가 14.5%, 합 71.0%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강력범죄인 살인·강도 등에 있어서는 발생율이나 검거율 모두 좋은 수치를 보여 주었는데 「체감」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향후 풀어야 과제이다.

(4) 치안상태와 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인들은 이웃나라인 일본인들과 비교하여 치안상태에 관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방범체제에 대하여는 그런 대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면서도 범죄율이나 치안상태에 관하여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또다른 사회불안적 요소가 존재하거나 또는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하기때문일 것이다.

다음, 한국인들은 한국경찰활동 중 어느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알아보자.

<표 4-42>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한국: 1997. 6)

구분		범죄 수사	질서 유지	사회 봉사	교통 정리	대모 진압	간첩 작전	방법 순찰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	남	N	5	5	3	10	50	1	8	82	X ² =4.13 DF=6 P=0.6596	
		%	6.1	6.1	3.7	12.2	61.0	1.2	9.8			100
별	여	N	9	9	5	25	57	1	12	118		
		%	7.6	7.6	4.2	21.2	48.3	0.8	10.2	100		
연	10대	N	0	0	0	3	5	1	2	11		X ² =36.33 DF=24 P=0.0509
		%	0	0	0	27.3	45.5	9.1	18.2	100		
령	20대	N	1	2	1	6	36	0	4	50		
		%	2.0	4.0	2.0	12.0	72.0	0	8.0	100		
별	30대	N	3	1	2	4	16	0	4	30		
		%	10.0	3.3	6.7	13.3	53.3	0	13.3	100		
40대	N	9	7	2	10	34	1	4	67			
	%	13.4	10.4	3.0	14.9	50.7	1.5	6.0	100			
50대	N	1	4	3	12	16	0	6	42			
	%	2.4	9.5	7.1	28.6	38.1	0	14.3	100			
지	대	N	13	11	7	32	90	2	17	172	X ² =7.43 DF=18 P=0.9860	
		%	7.6	6.4	4.1	18.6	52.3	1.2	9.9	100		
주	소	N	1	2	1	2	15	0	2	23		
		%	4.3	8.7	4.3	8.7	65.2	0	8.7	100		
지	농	N	0	1	0	1	1	0	1	4		
		%	0	25.0	0	25.0	25.0	0	25.0	100		
역	어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별	공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계	단	N	14	14	8	35	107	2	20	230		
		%	7.0	7.0	4.0	17.5	53.5	1.0	10.0	100		

한국인들은 경찰활동이 평가에 있어서는 영·미·일과는 대조적이며 판이한 반응은 보이고 있다. 영·미·일 제국에서는 모두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대체로 30%선 내외의 지지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는 각기 7%에 불과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일 잘한다고 여기는 활동은 「테모진압」이 53.5%로 첫째요, 「교통정리」가 17.5%로 둘째, 그리고 「방법·순찰」이 10.0%로 셋째이다.

한국의 경찰 활동이 민생치안이 아닌 시국치안에 주력하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표 4-43〉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한국: 1997. 6)

구분		많이 좋아졌다	좀나어진 편이다	달라진 것이없다	더 나빠졌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4	29	28	21		82
		%	4.9	35.4	34.1	25.6	100	
	여	N	5	34	57	22	118	
		%	4.2	28.8	48.3	18.6	100	
연령별	10대	N	0	3	5	3	11	
		%	0	27.3	45.5	27.3	100	
	20대	N	1	17	14	18	50	
		%	2.0	34.0	28.0	36.0	100	
	30대	N	0	9	16	5	30	
		%	0	30.0	53.3	16.7	100	
	40대	N	4	21	31	11	67	
		%	6.0	31.3	46.3	16.4	100	
	50대	N	4	13	19	6	42	
		%	9.5	31.0	45.2	14.3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8	53	75	36	172
			%	4.7	30.8	43.6	20.9	100
중도시		N	1	9	9	4	23	
		%	4.3	39.1	39.1	17.4	100	
농어촌		N	0	0	1	3	4	
		%	0	0	25.0	75.0	100	
공업단지		N	0	1	0	0	1	
		%	0	100	0	0	100	
계		N	9	63	85	43	200	
		%	4.5	31.5	42.5	21.5	100	

그 동안의 고찰로 80년대와 비교한 90년대의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은, 영·미에 있어서는 대체로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고, 일본은 「더 나빠졌다」가 44%였는데, 한국은 「달라진 것이 없다」가 42.5%로 단연 우세하다. 「더 나빠졌다」도 21.5%나 된다.

제 5 장 경찰임무 및 치안상태의 비교

우리는 그동안 본장을 위하여 주요국가의 경찰의임무, 경찰활동과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 그리고 국가별 치안상태등을 고찰해왔다. 이제 이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때가 왔다.

먼저 경찰임무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미 고찰해 온 경찰임무의 특색, 공식적 배치비율, 기능별 배치비율 등을 그 골자나 숫치 등을 비교할 것이며 아울러 경찰임무와 기능에 관한 설문조사의 내용도 검토할 것이다.

한편 주요국가의 치안상태는 역시 통계적 치안상태와 체감적 치안상태 나누어 가급적 그림이나 대조표를 만들어 볼 것이다.

끝으로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경찰임무와 치안상태는 과연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것인지를 가려 보기로 한다.

1. 경찰임무의 비교

이미 보아온 것처럼 경찰활동이나 임무는 영미법체계의 국가이건, 대륙법체계의 국가이건 질서유지, 법의 집행, 사회봉사 그리고 부수적(행정적)활동 등을 감당하고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어느활동에 더 치중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적 배경이나 치안정책에 의존하여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주요국가의 경찰임무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측면들이 우선 중요하다 할 것이다.

가. 경찰임무의 특색

제3장에서 고찰한 주요국가의 경찰임무의 특색은 그 골자만을 정리해보면 <표 5-1>과 같다.

위에 제시한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간 비교를 위한 상대적인 특색들이다. 즉 영국경찰이 고유업무로서 사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영미법계 자치경찰의 고유업무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대륙법계와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것이며, 일본에 있어서 독자적 수사권이나 민간조직의 활용 등은 역시 자치경찰제하에서는 특징적인 것들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본경찰제도과정(대륙법계 → 미국식자치경찰 → 절충식체제)상에 나타난 새로운 측면들이어서 특히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위하여 특색으로 꼽았다.

〈표 5-1〉 국가별 경찰임무의 특색

국 가 별	경찰임무의 특색
영 국	①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② 경찰의 고유업무로서의 사법업무 ③ 경찰권의 강화경향과 임무범위의 확대 ④ 전통적기능에의 충실과 봉사기능의 증가추세
미 국	① 범집행 위주의 경찰임무 ② 경찰임무의 형성요인의 다양성 ③ 사회통제적 역할의 담당 ④ 행정기능등의 부수적 임무는 거의 없음
일 본	① 범집행상의 독자적 수사권 ②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윤리교사적 성격 ③ 질서유지기능의 확대와 민간조직의 활용
한 국	① 경찰임무의 모호성 ② 국가분위 임무 ③ 과다한 행정 협조업무

나. 경찰임무의 공식적 배치비율

이 부분도 이미 제 3장에서 설명한 내용중 대표적 수치만을 가려내어 비교표를 만들어 본다.

<표 5-2> 주요국가 경찰임무의 공식적 배치비율 (단위: %)

업무별 국가별	법 집행	순찰	교통	봉사	행정	기타
영국	9.82	20.20	16.36	27.54	4.99	15.09
미국	23.30	20.20	14.90	39.90	0	1.50
일본	8.51	20.05	22.10	22.75	17.05	9.54
한국	12.21	2.02	22.22	5.30	35.13	23.12

자료: 이 표는 다음의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① Paul G.Shame, Police and People: A Comparison of give countries (ST, Louis: The C.V. Mosby Co., 1980)
- ② U.C.R. Crime in the United States(1995); ③ 일본경찰청, 일본경찰백서(1995)
- ④ 경찰청, 경찰백서(1994, 1995, 1996)

위의 공식적 배치비율은 국가별로 범규상 경찰에게 부과된 업무의 배치비율인만큼 치안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 경찰활동의 양적 측면이나 임무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다. 경찰임무의 기능별 배치 비율

기능별 배치비율은 위의 공식적 배치비율을 토대로 재작성한다. 즉 순찰과 교통은 국가에 따라 일정비율(제3장 참조) 범집행기능으로 돌리고 그 나머지를 합하여 질서유지기능으로, 그리고 행정과 기타는 합하여 부수적기능으로 표시한다.

<표 5-3> 주요국가의 경찰기능별 배치비율 (단위 %)

업무별 국가별	법 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부수업무
영국	25.01	28.37	27.54	20.08
미국	30.4	28.2	39.90	1.50
일본	16.94	33.72	22.75	26.59
한국	34.78	19.78	5.30	40.14

자료: 위의 <표5-2> 의 자료와 같음.

위의 <표5-3> 에서 처럼 기능별로 배치비율이 가장 높은 기능만 국가별로 가려 보면, 영국은 질서유지가 28.37%, 미국은 봉사업무가 39.90%, 일본은 질서유지가 33.72%, 한국은 부수업무가 40.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만으로도 각국의 치안정책의 방향을 어느정도 짐작케 한다.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경찰업무

위에서는 제도상·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경찰업무를 비교해 보았거니와 이제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국민의식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설문 조사는 앞장의 체감적 치안상태의 조사시 함께 이루어진 것임)

① 경찰업무의 범위

<표 5-4> 경찰업무의 범위에 대한 견해(1997.9)

구 분 국 가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제한되어있다	보통이다	축소 시켜야한다	계
영 국	24.0	24.0	43.0	9.0	100
미 국	11.3	30.0	48.0	10.7	100
일 본	11.0	19.0	66.0	4.0	100
한 국	36.0	21.0	32.5	10.5	100

<참고> 본표의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분포와 내용은 본 연구의 권말 부록에 게재하였음.

위의 <표5-4> 에서 「보통이다」는 경찰업무의 범위가 적절한가를 묻는 것인바, 영·미·일의 경우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일본은 66.0%가 「보통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너무 광범위하다」가 36.0%로서 가장 많다. 「보통이다」는 32.5%로서 그 다음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공식적인 부수업무가 너무 많아서(40.14%) 국민들의 눈에는 경찰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듯하다.

② 경찰업무와 경찰권행사

〈표 5-5〉 경찰업무의 수행과 경찰권에 대한 견해(1997.9)

구 분 국 가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지금 이대료가 좋다	약화 되어야한다	시민에게봉사토 록교육해야한다	계
영 국	29.0	11.0	31.0	29.0	100
미 국	30.7	23.3	26.0	20.0	100
일 본	35.0	40.0	2.0	23.0	100
한 국	36.5	2.0	0.5	61.0	100

참고: 국가별 조사내용은 권말 부록을 참조할 것.

경찰권행사에 대한 국민의식은 국가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대료가 좋다」즉, 적절하다로 느끼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의 40.0%가 가장 높다. 봉사에 대한 수요 즉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에 있어서는 한국의 61.0%가 가장 높아서, 한국경찰은 봉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지금 이대료가 좋다」에 대하여는 2.0%만이 지지하고 있어 한국 경찰권행사에겐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제시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경찰관의 임무수행능력

〈표 5-6〉 경찰관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1997.9)

구 분 국가별	아주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모자란다	많이 모자란다	계
영 국	1.0	16.0	66.0	14.0	3.0	100
미 국	0.7	15.3	58.0	19.3	4.7	100
일 본	4.0	33.0	44.0	18.0	1.0	100
한 국	0.5	6.5	53.5	29.0	10.5	100

참고: 국가별 조사내용은 권말부록을 참조할 것.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경찰관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4개국 모두 자기나라 경찰관의 능력을 「보통」또는 「그 이상」이라고 받고 있다. 즉 보통과 그 이상을 모두 합해보면, 영국은 83.0%, 미국은 74.0%, 일본은 81.0% 그리고 한국은 60.5%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도 한국경찰은 「모자란다」가 39.5%로 최하위이다. 교육·훈련의 강화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④ 경찰기능의 재조정

〈표 5-7〉 경찰기능 중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할 부분(1997.9)

구분 국가별	범죄 수사능력	범죄 예방능력	사회 봉사기능	행정 협조기능	대간첩 작전기능	정보 수집기능	계
영국	22.0	45.0	16.0	6.0	3.0	8.0	100
미국	24.0	42.0	18.0	3.3	2.0	10.7	100
일본	27.0	41.0	14.0	11.0	1.0	5.0	100
한국	14.0	57.0	22.5	4.5	1.0	1.0	100

참고: 국가별 조사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경찰기능 중 시급하게 보강하여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4개국 모두 「범죄예방능력」을 첫째로 꼽고 있어서, 현대 국가의 치안정책 내지는 형사정책은 「범죄의 사전 예방」을 제1의 목표로 하여야 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영·미·일에 있어서는 범죄수사능력을 들고 있고, 유독 한국만은 사회봉사기능을 꼽고 있다. 앞의 〈표5-7〉에서 대시민 「봉사교육」의 필요성이 61.0%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의 의식이라 하겠다.

⑤ 봉사행정에 있어서의 근무생태

대민 봉사행정에 있어서의 근무행태는 조사결과가 대단히 흥미롭다. 제일 많은 비율로 나타난 항목을 보면, 영국은 「친절하다」가 50.0%, 미국은 역시 「친절하다」가 41.3%, 일본은 「사무적이다」가 58.0% 그리고 한국은 「고압적이다」가 48.5%로 나타나 있다.

〈표 5-8〉 경찰의 대민봉사행정에 있어서의 근무행태(1997.9)

구 분 국 가	매우 고압적이다	고압적이다	사무적이다	친절하다	계
영 국	5.0	26.0	19.0	50.0	100
미 국	7.3	23.3	28.0	41.3	100
일 본	9.0	22.0	58.0	11.0	100
한 국	10.0	48.5	37.5	4.0	100

참고 : 국가별 조사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영·미의 경찰은 대체로 친절하다는 것이며,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척 친절할 듯 싶은데, 일본경찰의 친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친절하다」는 11.0%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고압적이다」가 「매우 고압적이다」를 합하여 58.5%로 나타나있고 「친절하다」는 4.0%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길 수 밖에 없으며 무엇인가 장기적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2. 치안상태의 비교

치안상태의 비교는 위의 「제4장 국가별 치안상태」에서 나라별로 따로 고찰한 바를 함께 몰아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며 대비하기로 한다. 통계적 치안상태를 먼저 비교하고 다음으로 체감적 치안상태 비교해 본다.

가. 통계적 치안상태의 비교

통계적 치안상태는 당연히 형법범 전체를 놓고 공식적 통계상의 수치를 다루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의 통계나 자료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제4장에서 제시되었던 흉악범죄 즉 살인과 강도에 관한 수치로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행히 1985년 이래 10년간의 공적자료를 통한 인지건수의 추이표가 있어서 이를 먼저 참고키로 한다.

〈표 5-8〉 경찰의 대민봉사행정에 있어서의 근무행태(1997.9)

구 분 국 가	매우 고압적이다	고압적이다	사무적이다	친절하다	계
영 국	5.0	26.0	19.0	50.0	100
미 국	7.3	23.3	28.0	41.3	100
일 본	9.0	22.0	58.0	11.0	100
한 국	10.0	48.5	37.5	4.0	100

참고 : 국가별 조사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영·미의 경찰은 대체로 친절하다는 것이며,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척 친절할 듯 싶은데, 일본경찰의 친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친절하다」는 11.0%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고압적이다」가 「매우 고압적이다」를 합하여 58.5%로 나타나있고 「친절하다」는 4.0%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길 수 밖에 없으며 무엇인가 장기적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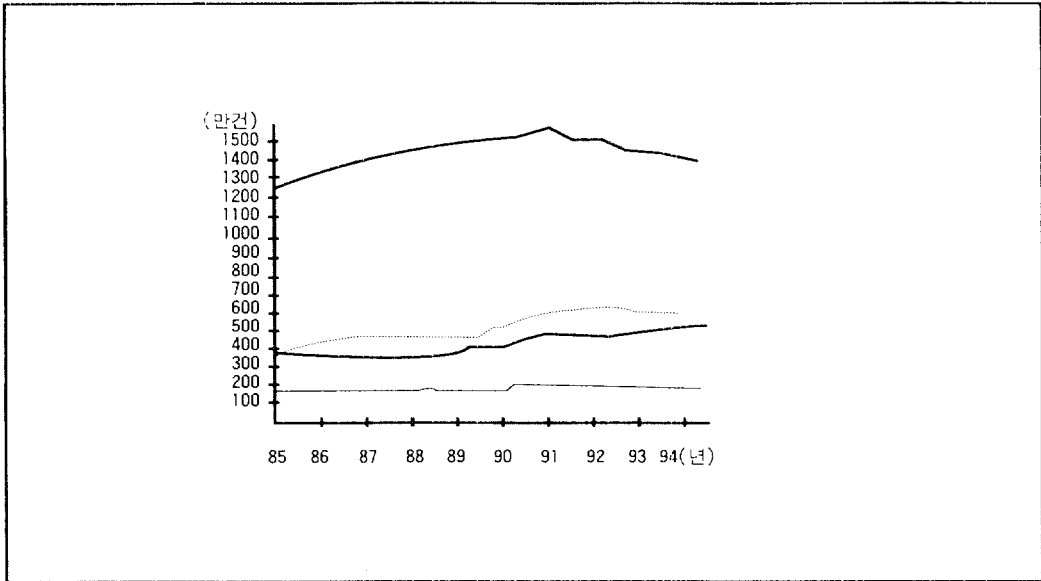
2. 치안상태의 비교

치안상태의 비교는 위의 「제4장 국가별 치안상태」에서 나라별로 따로 고찰한 바를 함께 몰아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며 대비하기로 한다. 통계적 치안상태를 먼저 비교하고 다음으로 체감적 치안상태 비교해 본다.

가. 통계적 치안상태의 비교

통계적 치안상태는 당연히 형법범 전체를 놓고 공식적 통계상의 수치를 다루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의 통계나 자료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제4장에서 제시되었던 흉악범죄 즉 살인과 강도에 관한 수치로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행히 1985년 이래 10년간의 공적자료를 통한 인지건수의 추이표가 있어서 이를 먼저 참고키로 한다.

① 최근 10년간의 범죄인지건수의 추이



〈그림 5-1〉 형법범 범죄인지건수의 추이(1985-1994)

자료 : 「평년 8년 범죄백서(흉악범죄의 현상과 대책)」(동경: 일본법무성 범죄종합연구소, 1996) 및 우리나라 경찰청 발생「범죄백서」를 참고로 작성한 것임.

위의 〈그림5-1〉을 토대로 먼저, 1985년의 인지건수를 100으로 하는 지수(指數)에서 1994년의 인지건수를 보면 영국이 147, 미국이 113, 일본이 109, 그리고 한국이 118로 나타나 있다. 영국이 가장 높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순이다.

② 살인 및 강도의 인지건수·발생율·검거율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각국의 형사사법제도가 다르고 또 그 통계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수개의 국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점들을 전제로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공적자료에 의한 수치들을 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9〉 살인 및 강도의 인지건수·발생율·검거율(1994)

구	분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살 인	인지건수	1,375	23,305	1,279	705
	발 생 율	2.7	9.0	1.0	1.6
	검 거 율	89.7	64.4	95.8	102.1
강 도	인지건수	60,016	618,817	2,689	4,469
	발 생 율	116.7	237.7	2.1	10.1
	검 거 율	21.7	24.4	78.2	99.2

자료 : 영국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1996.

미국 :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6.

일본 : 일본경찰청 통계, 평년 8년(1996)

한국 : 범죄백서(경찰청), 1996(단, 한국의 경우 인지건수는 발생건수이며, 검거율은 검거 건수의 발생건수에 대한 비율임. 그외 3국의 경우 발생율은 인지건수의 인구 10만명당의 비율임.)

위의 〈표5-9〉에서 먼저 살인의 경우를 보면, 인지건수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많고 한국이 가장 적다. (발생건수), 발생율은 역시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다. 검거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다. 한국의 검거율 102.1%은 완벽 이상의 수치이나 위에서 참가한 대로 인지건수가 아닌 발생건수에 대한 비율이어서 초과달성된 숫자인 듯 하다.”

다음 강도의 경우를 보면, 인지건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적다. 발생율도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다. 검거율은 살인의 경우처럼 한국이 99.2%로서 가장 높고 영국이 가장 낮다.

③ 살인 및 강도의 발생율·검거율에 대한 평균치

위의 〈표5-9〉를 토대로 살인과 강도의 발생율과 검거율을 합쳐 평균치를 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흉악범죄로 묶어서 대조해 보기 위함이다.

1) 일본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 평년8년 범죄백서(흉악범죄의 현상과 대책), (동경: 법무종합연구소, 1996), p. 398.

〈표 5-10〉 살인 및 강도의 발생율·검거율에 대한 평균치(1994)

구 분	국가별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발 생 율	59.5	123.4	1.6	5.9
검 거 율	55.7	44.4	87.0	100.6

자료 : 위의 〈표5-9〉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이 표는 이미 제4장에서 나라별로 고찰된 바 있으며, 비교표를 만들어 본것에 불과하다.

위의 〈표5-10〉을 제4장 국가별 치안상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양호·평온, 보통·불안, 공포의 5단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1〉 발생율·검거율의 평가표시 비교

구 분	국가별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발 생 율	보 통	공 포	양 호	양 호
검 거 율	보 통	보 통	양 호	양 호

다시 위의 표를 가지고 통계적 치안상태의 순위를 매겨보면, 발생율은 일본이 가장 적고 한국, 영국, 미국의 순이다. 검거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 영국, 미국의 순이다. 통계적 치안상태를 논할때 발생율과 검거율 중 어느것이 더 의미있는 것일까를 놓고 보면, 범죄건수나 발생율 자체가 적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4개국의 통계적 치안상태의 순위는, 일본이 가장 양호하고 그 다음이 한국, 그리고 영국, 미국의 순이라 하겠다.

나. 체감적 치안상태의 비교

체감적 치안상태의 경우도 국가별로는 이미 제4장에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찰한 바 있다. 이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추출하기 위하여 국가별 수치나 평가를 종합하여 항목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① 방법체계

〈표 5-12〉 방법체계의 비교

구 분 국 가 별	잘 되어 있다	보통이다	가끔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다	계
영 국	11.0	79.0	8.0	2.0	100
미 국	27.3	57.3	9.3	6.0	100
일 본	19.0	60.0	14.0	7.0	100
한 국	12.5	49.5	25.5	12.5	100

자료 : 제4장 국가별 설문조사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위의 〈표5-12〉에서 「잘 되어 있다」와 「보통이다」를 합하여 방법체계의 양호 순위를 매겨 보면, 첫째는 영국(90.0%), 둘째는 미국(84.0%), 일본(79.0%) 그리고 한국이 맨끝(62.0%)이다

② 범죄율

〈표 5-13〉 체감적 범죄율의 비교

구 분 국 가 별	너무 높다	약간 더 높은 편이다	비슷하다	낮은 편이다	계
영 국	22.0	23.0	44.0	11.0	100
미 국	23.3	36.7	30.0	10.0	100
일 본	1.0	12.0	15.0	72.0	100
한 국	30.5	37.0	20.5	12.0	100

자료: 제 4장 국가별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위의 〈표5-13〉을 놓고, 자기나라의 범죄율이 외국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라고 느끼는 비율은 결국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한다」로 보아 그 항목을 합하여 순위를 매겨 보면, 일본이 87.0%로서 가장 불안을 느끼지 않은 나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이 영국이 55.0%, 미국이 40.0% 그리고 한국이 32.5%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한국사람은 약 3분의 1만이 불안을 별로 느끼지 않고 3분의 2는 불안을 늘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치안상태

〈표 5-14〉 체감적 치안상태의 비교

구분 국가별	아주좋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계
영국	5.0	67.0	24.0	4.0	100
미국	8.0	56.7	27.3	8.0	100
일본	30.0	58.0	11.0	1.0	100
한국	0	29.0	56.5	14.5	100

자료: 제4장 국가별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위의 〈표5-14〉에서 「아주 좋다」와 「보통이다」를 합하여 치안상태가 양호한 순서대로 적어보면, 첫째가 일본(88.0%), 둘째가 영국(72.0%), 셋째가 미국(69.7%) 그리고 한국은 넷째로서 29.0%에 불과하다

이같은 체감적 치안상태의 순위는 위의 범죄율에 대한 느낌과 그대로 일치한다. 즉 체감적 치안상태(범죄율에 대한 느낌을 포함하여)는 일본이 가장 양호하고 한국이 가장 나쁜 상태이다.

④ 경찰활동의 평가

‘여러가지 경찰활동 중 가장 잘 한다고 여겨지는 활동은 어느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5-15〉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구분 국가별	범죄 수사	질서 유지	사회 봉사	교통 정리	데모 진압	간첩 작전	방법 순찰
영국	30.0	27.0	13.0	15.0	3.0	4.0	8.0
미국	24.0	29.0	7.3	28.0	1.3	1.3	8.7
일본	34.0	36.0	3.0	13.0	2.0	5.0	7.0
한국	7.0	7.0	4.0	17.5	53.5	1.0	10.0

자료: 제4장 국가별 설문조사에서 발췌하였음.

위의 <표5-15>에서 국가별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경찰활동을 보면, 영국에서는 범죄수사, 미국과 일본은 똑같이 질서유지 그리고 한국은 데모진압이 53.5%로서 가장 우세하다. 한국에 있어서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범죄수사와 질서유지는 공히 7.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순찰 · 인력 · 이미지에 관한 비교

우리는 지금까지 주요국가의 공식적인 경찰임무, 그리고 치안상태(통계적·체감적)등을 비교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여 경찰임무의 개선책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 양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위의 사항들 외에도 지역순찰에 대한 필요성 여부, 경찰인력수요에 관한 의견,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앞의 제4장 체감적 치안상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시에 아울러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가. 지역순찰의 필요성 여부

<표 5-16> 지역순찰에 대한 인식조사 (1997. 9.)

구 분 국 가 별	꼭필요하다	우범지역만 필요하다	하나마나 이다	비상시에만 필요하다	계
영 국	61.0	26.0	10.3	3.0	100
미 국	59.3	27.1	12.7	7.3	100
일 본	73.0	17.0	9.0	1.0	100
한 국	78.0	6.0	15.5	0.5	100

참고 : 국가별 조사내용(성별·연령별·거주지별)은 권말부록을 참조할 것.

순찰은 경찰의 외근활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근무이다. 범죄예방, 범죄진압, 주민보호, 대민봉사 등의 면에서 순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범죄기회의 사전차단 내지 봉쇄와 범죄기회의 존재에 대한 확신의 제거를 통

위의 <표5-15>에서 국가별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경찰활동을 보면, 영국에서는 범죄수사, 미국과 일본은 똑같이 질서유지 그리고 한국은 데모진압이 53.5%로서 가장 우세하다. 한국에 있어서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범죄수사와 질서유지는 공히 7.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순찰 · 인력 · 이미지에 관한 비교

우리는 지금까지 주요국가의 공식적인 경찰임무, 그리고 치안상태(통계적·체감적)등을 비교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여 경찰임무의 개선책을 모색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 양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위의 사항들 외에도 지역순찰에 대한 필요성 여부, 경찰인력수요에 관한 의견,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앞의 제4장 체감적 치안상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시에 아울러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가. 지역순찰의 필요성 여부

<표 5-16> 지역순찰에 대한 인식조사 (1997. 9.)

구 분 국 가 별	꼭필요하다	우범지역만 필요하다	하나하나 이다	비상시에만 필요하다	계
영 국	61.0	26.0	10.3	3.0	100
미 국	59.3	27.1	12.7	7.3	100
일 본	73.0	17.0	9.0	1.0	100
한 국	78.0	6.0	15.5	0.5	100

참고 : 국가별 조사내용(성별·연령별·거주지별)은 권말부록을 참조할 것.

순찰은 경찰의 외근활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근무이다. 범죄예방, 범죄진압, 주민보호, 대민봉사 등의 면에서 순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범죄기회의 사전차단 내지 봉쇄와 범죄기회의 존재에 대한 확신의 제거를 통

한 범죄행위의 표출을 억제하여 범죄의 예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순찰은 어느 경찰활동 보다도 효과가 높다.²⁾

위의 <표5-16>은 지역순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조사 대상국 모두 60% 이상(미국은 59.0%)이 순찰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꼭 필요하다」가 78.0%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3월부터 순찰·방법단속 등의 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순찰(구역순찰)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파출소 소내근무자 1명을 지정하여 대기근무역할까지 부과하는 등 순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저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³⁾

나. 경찰인력에 대한 인식

<표 5-17> 경찰인력에 대한 인식조사(1997. 9.)

(경찰인력은 인구에 비례하여 적절한다)

구 분 국가별	너무 많다	많은 편이다	적절 하다	모자란다	너무 모자란다	계
영 국	0	13.0	31.0	43.0	13.0	100
미 국	3.3	6.0	40.0	34.7	16.0	100
일 본	1.0	12.0	55.0	30.0	2.0	100
한 국	3.5	4.5	15.5	63.5	13.0	100

참고: 국가별 조사내용은 권말부록 참조.

2) 경찰의 순찰(특히 정기순찰) 및 진압활동 강화가 실제로 범죄예방효과를 지니느냐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경찰의 순찰 및 진압활동이 강화되면 우선 범죄의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잠재적 범인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체포의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범죄실행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경찰력의 집중배치는 범죄예방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Thomas F. Adams, Police Patrol: Tactics and Techniques (New Jersey: Preutice-Hall, Inc., 1971), pp. 2-8.

3) 정진한 외 4인,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제 연구」(서울: 치안연구소, 1996), p. 23.

인구에 비례하여 자기나라의 경찰인력은 적절하다고 여기는가 하는 질문에 적절하다고 답한 국민은 일본이 55%, 미국이 40.0%로서 가장 많다. 반면에 부족「모자란다」는 한국이 63.5%, 영국이 43.0%로 나타나 있다. 체감치안이 양호한 일본에서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한국의 경우 모자란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은 체감치안이 불안함으로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다. 경찰상(경찰이미지)에 대한 인식

〈표 5-18〉 경찰상에 대한 인식(1997. 9.)

구분 국가별	대단히 민주적이다	비민주적	과거와 동일	권위주의적	계
영국	18.0	23.0	27.0	32.0	100
미국	16.7	19.3	31.3	32.7	100
일본	28.0	14.0	25.0	33.0	100
한국	2.0	20.0	36.5	41.5	100

참고: 국가별 조사내용은 권말 부록 참조.

경찰상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미·일 3개국 모두 국민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 경찰을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41.5%나 된다.

반면에 자기나라 경찰을 「대단히 민주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이 28.0%, 영국은 18.0%, 미국은 16.7% 그리고 한국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라. 경찰상의 개선

앞의 ③ 경찰상에 대한 인식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자기나라의 경찰을 「권위주의적」이라고 답하고 있었는데, 경찰상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같은 인식에서 답하고 있다. 즉 영국·일본·한국이 모두 「근무태도의 개선」을 첫째로 꼽고 있다. 미국만이

「경찰임무의 확대」가 39.0%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인의 자구사상(自救思想: Vigilantism)이 국가의존사상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한국의 경우 「근무태도의 개선」요구가 61.0%로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표 5-19〉 경찰상 개선을 위한 방안(1997. 9.)

구 분 국 가	수사능력의	근무태도의	교육훈련	경찰임무	경찰임무	계
	보강	개선	강화	확대	축소	
영 국	15.0	40.0	30.0	13.0	2.0	100
미 국	20.7	33.3	28.0	39.6	4.0	100
일 본	33.0	44.0	12.0	9.0	2.0	100
한 국	8.0	61.0	22.5	5.0	3.5	100

참고 : 국가별 조사내용은 권말부록 참조.

4.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

경찰임무는 경찰에게 주어진 공적인 업무내용이다. 그 업무내용은 법체계, 국가정책, 사회환경 그리고 국민정서 등 여러가지 배경이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마다 그 배경이나 요인이 상이하므로 경찰임무의 내용이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치안상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의 안전도를 의미한다. 이것 또한 전통, 지역적 특성, 공권력의 강약 그리고 시민의 협조체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안전도의 평가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기에 확일적 판단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경찰임무는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고 또 치안상태의 평가로 시각이나 기준에 따라 엇갈릴 수도 있을 것임으로, 먼저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 보기로 한다.

「경찰임무의 확대」가 39.0%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인의 자구사상(自救思想: Vigilantism)이 국가의존사상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한국의 경우 「근무태도의 개선」요구가 61.0%로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표 5-19〉 경찰상 개선을 위한 방안(1997. 9.)

구 분 국 가	수사능력의	근무태도의	교육훈련	경찰임무	경찰임무	계
	보강	개선	강화	확대	축소	
영 국	15.0	40.0	30.0	13.0	2.0	100
미 국	20.7	33.3	28.0	39.6	4.0	100
일 본	33.0	44.0	12.0	9.0	2.0	100
한 국	8.0	61.0	22.5	5.0	3.5	100

참고 : 국가별 조사내용은 권말부록 참조.

4.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

경찰임무는 경찰에게 주어진 공적인 업무내용이다. 그 업무내용은 법체계, 국가정책, 사회환경 그리고 국민정서 등 여러가지 배경이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마다 그 배경이나 요인이 상이하므로 경찰임무의 내용이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치안상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의 안전도를 의미한다. 이것 또한 전통, 지역적 특성, 공권력의 강약 그리고 시민의 협조체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며 안전도의 평가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기에 확일적 판단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경찰임무는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고 또 치안상태의 평가로 시각이나 기준에 따라 엇갈릴 수도 있을 것임으로, 먼저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 보기로 한다.

가.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논점

(1) 경찰임무의 논점

경찰임무와 관련된 공통된 논점으로는 치안정책과 임무의 범위,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치안정책은 경찰기능과 그에 따른 임무의 내용을 결정한다. 치안정책은 대별하면 영미법계 제국은 경찰의 전통적 기능(법집행과 질서유지)에 치중하여 왔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차츰 봉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륙법체계의 제국들은 당초부터 전통적 기능과 병행하여 한정적 기능(부수 업무)을 중요시 해 왔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제2차대전 때까지는 대륙법체계의 경향을 따르고 있었으나 대전종료후에는 양체계의 절충식(1954년 신경찰법이후)제도를 택하고 경찰기능도 다분히 영미형을 따르고 있다.

경찰임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치안정책에 따른 경찰기능에 충실하도록 경찰인력이 공식적으로 비율을 달리하여 배치된다. 임무의 내용은 대체로 ① 법집행 ② 순찰 ③ 교통 ④ 봉사 ⑤ 행정 ⑥ 기타의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인력이나 장비의 배치비율은 치안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공식적인 임무배치의 비율이 실제의 경찰활동의 양적 측면이나 임무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치안정책은 가장 중요한 경찰임무 내용의 결정요소이다.

둘째, 경찰임무의 범위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공공복리와 깊이 관련이 있다.

경찰임무의 범위에 관하여로 먼저 행정법학자들의 주장을 소개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경찰활동의 범위와 영역을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의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경제적인 새로운 문제의 출현은, 국가가 소극적인 야경임무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

4) 이상규, 「신행정법론(하)」(서울: 법문사, 1985), p. 38.

가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의 활동분야를 넓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행 행정의 발전은 소극적작용으로서의 근대적인 행정작용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은 경찰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나아가 그 변화의 내용에 관하여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복리행정기능의 발전은 행정작용의 영역과 행정작용법의 내용을 현저히 확대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근대 행정작용법은 소극목적에 위한 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데 반하여, 현대 행정작용법은 적극목적에 위한 급부작용 내지 규제작용에 그 바탕을 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한편에서는 행정작용법에 있어서의 경찰영역의 비중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종래의 경찰영역의 확대 내지 다른 분야와의 유기적인 교섭 관계의 발생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행정의 발전 및 경찰행정과 급부행정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목적에 위한 권력작용(주로 규제작용)을 경찰의 개념속에 포함시킨다거나⁵⁾ 공공의 질서작용기능을 급부기능에 포함시켜 경찰을 급부행정에 포용하려는 주장⁶⁾이 나타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논리에서 행정법학자들은 현대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이나 그 임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경찰행정과 급부행정을 엄격히 제한지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근대자유주의시대 이래의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과 현대의 적극목적적 행정작용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원칙에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진대, 경찰의 개념은 여저히 공안의 유지를 위한 소극적 작용으로, 그리고 그 임무의 범위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⁷⁾

5) 柳瀨良幹, 행정법교과서(재정판), 183면: 綿貫芳源, 행정법서설, 326면: 土屋正三, '급부행정의 주체としての경찰,' 경찰연구 1972년 12월호.

6) G. Beinhardt, Das Rech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in seinem Verhältnis zur Eingriffs- und Leistungsverwaltung, DVBl. 1961. S. 608 ff.: E. Becker,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sprechung, VVDStRL Heft 14, 1965, S. 109 f.

7) 이상규, 앞의 책, p. 39: 김도창, 「신고행정법론(하)」(서울: 청운사, 1973), p. 175: 윤세창, 「행정법각론」(서울: 박영사, 1969), pp. 19-20.

요컨대, 행정법학자들은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로서 행정권의 확대·강화는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경찰개념이나 임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근대국가 이래의 자유주의원칙하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고 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개인이 자유와 현대행정작용의 적극적 목적(급부작용 내지 규제작용)의 양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자에 치중하면 경찰임무의 범위는 자연히 축소되어야 하고 후자에 치중하면, 그 범위는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영미법계 제국에서는 전자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후자에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치안상태의 논점

치안상태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데는 주로 시민 개개인의 심리적 안전감과 경찰의 대응력이 초점이 되고 있다.

첫째, 심리적 안전감은 치안상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이다.

일국의 치안상태란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현황」이다.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의 확립상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 사회의 안전도가 측정된다. 또 치안상태는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인위적 상태로서 무규범의 자연상태와는 구별된다. 인위적 제약이나 질서속에서도 자유롭고 평온하게 공동생활이 영위될때 치안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것이며, 그 인위적 상태(질서유지)를 그대로 「현상유지」토록 하는 거시 경찰의 임무이다.⁸⁾

그리고 이같은 치안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측정치인 이른바 통계적 치안상태와, 이와는 별개로 시민 개개인의 주관적이며 경험적 판단인 체감적 치안상태가 있다. 통계적 치안상태에는 매년 발생하는 형법범이나 행정사범에

8) T. Parsons는 정치조직이 목표를 설정하는 조직이라면 사법기관이나 경찰조직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일탈방지에 종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Talcott Parsons,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0), pp. 48-58 참조.

관한 인지건수·발생율·검거율 그리고 전년도와의 대비표 등 각종의 다양한 통계 수치가 기재된다. 그러나 체감적 치안 상태에는 외형적인 또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내면적(심리적)이고 불가시적인 각자의 느낌이다.

통계적 치안상태는 정부의 치안정책의 수집과 경찰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체감적 치안상태는 시민생활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안전도의 측정에 있어서 전자는 정부의 공식적판단이요, 후자는 시민의 비공식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 양자가 모두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양자의 측정과정은 어떠한가, 전자에 있어서는 자료의 수집과정이 어렵고, 통계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할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수치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객관성을 지니며 판단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는 체험을 통한 심리적·의식적 상태이어서 숫자로서 표현되기 어렵고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개개인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법이 고작이다. 따라서 우리가 치안상태를 논할 때 보다는 직접적으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체감적 치안상태인 것이다.

둘째, 치안상태와 경찰의 대응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국의 방법체계(파출소·경비·순찰 등)가 양호하고 시민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투철한 경우에도 서양의 속담(Accidents will happen.)처럼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다. 즉 범법행위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의 안전을 과무로 하는 경찰의 대응력(질서회복과 범의 집행)이 완벽하다면 치안상태는 평온을 유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치안상태는 불안을 조성하여 사회적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의 제4장 국가별 치안상태의 고찰에서 특히 체감적 치안상태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방법체계는 훌륭하다고 느끼면서도 범죄율이 높다고 느끼고 있어서(영국·미국), 방법체계가 훌륭함으로서 치안상태가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일본)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 즉, 실제 공식적 통계(통계적 치안상태)로는 범죄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경찰의 대응력이 미진하여(다른 업무에 몰두함으로서) 치안상태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한국)도 경찰의 대응력과 치안상태는 중요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할 것은 경찰의 대응력에는 적절한 집행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대응: Correspondence)은 '현실적 상황에 즉각적으로 관여' 하는 것이며 집행(집행: Enforcement)은 '실천에 옮기는' 힘을 뜻한다. 대응력에는 대체로 집행력이 따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영·미의 자치경찰에 있어서는 대응력은 훌륭하지만 집행력이 약한 경우(1992년, 미국 L.A사태시 경찰의 집행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방위군이 동원되었음)가 있으며, 독·불이나 우리 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경찰에 있어서는 대응력보다는 집행력이 강해서 그 강한 집행력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과거 독일의 Gestapo, 한국의 3·15 부정선거 등)가 있다.

이 같이 경찰의 대응력과 집행력은 다른 것이어서 치안상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에는 「적절한 정도」의 집행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나.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호작용

양자의 상호작용관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개념상의 정리가 필요하다. 경찰임무는 이미 제Ⅱ장에서 논한 것처럼 법규상의 임무(prescribed role), 당면적 임무(preferred role), 그리고 일상적 임무(enacted role) 등이 있으며, 치안상태의 경우에도 제Ⅳ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계적 치안상태(Statistical Security condition)와 체감적 치안상태(Sensuous Security condition)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세부적 사항끼리의 상호관계는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와의 관계를 가려보기로 한다. 즉 경찰임무가 치안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며 그 반대로 치안상태는 경찰임무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찰임무가 치안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경찰임무의 배치비율과 치안상태

경찰임무의 공식적 배치비율이 기능별로 균형을 이룰 때 치안상태는 양호하다. 즉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법집행과 질서유지 그리고 현대적 기능인 봉사업무와 부

수업무 등 네 가지 분야에 균형 있게 배치될 때 치안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위의 <표5-1> 과 <표5-2>에서와 같이 일본이나 영국은 대체로 4분1씩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봉사업무가 39.90%, 부수 업무는 1.50%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봉사업무 5.30%, 부수업무는 40.14%로서 불균형상태이다.

② 법집행력의 강화와 치안상태

법집행 분야를 강화한다고 해서 치안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정책으로 범죄에 대하여 과거의 온정주의에서 엄벌주의 내지는 중형주의 경향을 띄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삼진법(Strike-out-law)이나 우리나라의 범죄와의 전쟁선포(1990.10)등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정책상의 엄벌주의나 그에 따른 경찰의 법집행력의 강화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 지 모르나 범죄상황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삼진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보고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범죄와의 전쟁 또한 결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사실은 수치로도 나타나 있다. 위의 <표5-2>에서 법집행분야에 대한 경찰임무의 배치비율은 일본이 16.94%, 영국은 25.01%, 미국은 30.4%, 그리고 한국은 34.78%인데 치안상태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나, 양호한 순위가 위의 배치 순위와 일치한다. 즉 배치비율이 가장 낮은 일본이 치안상태가 가장 좋고, 배치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이 치안상태가 가장 나빴던 것은 위의 제4장 국가별 치안상태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법집행분야에 배치비율이 낮을 수록 좋다는 뜻은 아니며, 경찰의 법집행 임무의 강화가 치안상태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그 보다는 치안상태의 개선을 위하여는 사전적·예방적 기능인 질서유지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의미이다.

(2) 치안상태가 경찰임무에 미치는 영향

① 치안상태의 악화와 경찰임무

치안상태의 악화는 경찰의 법집행력을 자극하지만 다른 임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국의 불안정, 경제불황, 노사분규, 인종분쟁 그리고 국제적 분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치안상태가 악화되면 경찰의 법집행력을 자극하게 된다. 경찰권이 강화되어 법집행력은 비례적으로 상응한다. 그러나 이 경우 경찰임무 상에는 인력의 배치비율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임무의 범위나 수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경찰의 전통적 기능이나 현대적 기능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수행되고 다만 질서유지임무에 또다른 힘(군대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992년 미국 LA사태 당시 군대의 동원, 우리나라의 광복적후나 4·19혁명때의 민간단체의 역할 등은 중요한 예이다. 요컨대 사회적 변동이나 비상시에도 경찰의 임무는 축소나 부분적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치안상태의 안정과 경찰임무

치안상태가 안정되면 현대적 기능인 봉사임무의 영역이나 활동이 확대된다. 치안상태의 안정이란 통계적 치안이나 체감적 치안상태나 상당기간 범죄건수, 검거율 등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거나 호전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에는 공식적 배치비율 즉 경찰활동의 공급적 측면과, 시민의 경찰수요가 모두 봉사업무를 확대시켜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국가별로 나타난 공식적 경찰임무배치비율에서 봉사업무부분의 높은 수치는 치안사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위의 <표5-3>에서 봉사업무배치비율은 미국이 39.90%, 영국이 27.54%, 일본이 22.75%, 그리고 한국은 5.30%에 불과하다.

다. 경찰임무와 통계적 치안상태의 관계

우리는 위에서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양자의 개념, 논점 그리고 상호작용관계등을 고찰하였다. 이제는 양자와의 관계를 좀더 깊이 알기 위하여 경찰임무와 통계적 치안상태, 그리고 경찰임무와 체감적 치안상태로 나

누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고려할 것은 통계적치안상태와 체감적 치안상태는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별개의 것이지만 치안상태가 평온하거나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서로 근접하여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비상시에는 체감적 치안상태에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1) 형사 정책적 연관성

이미 논한바와 같이 경찰임무가 통계적 치안상태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공식적인 경찰업무의 배치율이 균형을 이룰 때 대체로 치안상태가 양호하며, 또 범집행임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치안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양자의 상호작용관계의 결과, 통계적 치안상태가 경찰임무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경찰임무 전반에 걸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통계자료와 분석을 형사정책의 방향은 물론 그에 따른 경찰임무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2) 공식적 통계자료의 한계성

통계적 치안상태는 형사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공식적 통계자료⁹⁾에는 통계의 방법이나 정확성에 따른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¹⁰⁾

첫째, 공식통계는 ‘숨은범죄’를 나타내주지 못한다. 실제 경찰에 인지된 범죄건

9)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분석자료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① 대검찰청 : 『범죄백서』, 『범죄분석』, ② 치안본부 : 『수사백서』, 『경찰연보』, ③ 법원행정처 : 『법원통계연보』, 『사법연감』, ④ 법무부교정국, 『비행소년총계』 등이 있다. 그런데 『범죄분석』은 1964년부터 발간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는 신문과 각종 연감을 활용해야 하며, 나머지 세 개는 『범죄분석』을 재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통계는 완전히 신뢰할만 한 것이 못된다. 서덜랜드는 자신의 책에서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는 아마 모든 사회통계 중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엑스너는 암수(숨은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범죄통계의 커다란 급소라고 말한 바 있다: E. H. Sutherland and D. R. Cressy,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1966), p. 25; Exener, Kriminologie, (1949), S. 15.

10) 이수성, “한국사회의 변동과 범죄 현상변화에 대한 분석,” 형사정책 제6호(서울: 형사정책학회, 1992), p. 145.

수는 실제로 발생한 건수보다 더 적다. 이것은 어느나라에나 있는 공통된 사실이다. ‘숨은범죄’의 발견과 분석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범죄통계는 경찰정책, 법원정책, 여론 등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수치이므로 범죄지수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먼저 경찰정책의 변화, 특히 정치적 의도에 따라 범죄통계는 많이 동요한다. 실제 정치가는 자신의 집권 중에 범죄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치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나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이 좋은 예이다. 범죄검거건수가 급증되도록 통계상의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공식통계만이 유일한 전국적인 통계라는 점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범죄발생의 예고성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종 통계는 사회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정책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적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통계자료가 활용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물가의 동향을 예고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을 도와주고, 매일 매일 발표되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농작물의 관리는 물론 개인의 옷차림에 까지 사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찬가지로 통계적 치안상태 즉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는 범죄동향과 유사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찰관의 임무수행을 도와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라. 경찰업무와 체감적 치안상태와의 관계

경찰업무와 통계적 치안상태와의 관계가 장기적·간접적 관계라면, 단기적·직접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경찰업무의 배치비율, 집행력 그리고 근무행태 등을 시민의 체감적 치안상태를 좌우하여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같은 사실은

사회적 격변기나 비상시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1) 치안정책적 연관성

경찰 임무와 통계적 치안상태 간에는 형사정책적 관계가 있다면, 경찰임무와 체감적 치안상태간에는 치안정책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사회변동과 시국변화가 급격하고 특히 제 3공화국 말기 이래 정치적 불안정을 경찰력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이른바 시국치안의 임무가 부각되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치안상태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뿐만아니라 경찰이 시국치안이 아닌 민생치안 업무에 주력하는 경우에도 치안정책적 차원에서 폭력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거나, 학원폭력근절을 위한 특수임무가 주어진다거나 하게되면 이 경우에도 국민이 느끼는 치안상태는 다르게 비쳐질 것이다. 특별한 상황에서 전례에 없던 검문검색이 실시된다든지, 순찰이 강화된다든지 또는 기동경찰의 이동상황이 평소와 다르다든지 하는 경찰의 움직임 모두가 시민들의 의식이나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같이 경찰임무와 체감적 치안상태간에는 치안정책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2) 방법체제와의 연관성

체감치안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기사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직접 체험하는 안전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전을 도모하는 파출소, 경비, 순찰 등의 방법체제는 체감적 치안상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체감온도」가 생활환경과 관련성이 있고, 또 「체감물가」는 매일매일 구입하는 생필품의 가격(장바구니 물가)과 직결되어 있듯이 자기생활 주변의 방법체제는 체감치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최근의 새로운 파출소의 운영체제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며 중단위 지구경찰서모형을 개발하자는 제안¹¹⁾이 있는가 하면, 경비체제의 발전적 모습으로서의 민간경비

11) 이상원·최용열,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제에 관한 연구」(서울: 치안연구소, 1996), p. 22-27.

제도의 활용¹²⁾, 그리고 순찰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¹³⁾가 진행되는 등 방법체제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는바,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체감적 치안상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3) 근무행태와의 관련성

경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태도 즉, 근무상태 또한 체감치안과 관련이 있다. 경찰임무의 속성상 근무행태가 고압적인 경우가 많은 것은 이미 위에서〈표5-8〉 본바와 같으나, 영미의 경우처럼 「친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영국 50.0%, 미국 41.3%) 자연히 치안상태에 관한 느낌도 호의적으로 느낄 것이며, 일본처럼 「사무적이다」가 58.0%일때는 적어요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에 나쁜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고압적이다」가 48.5%나 될 때에는 체감치안에는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근무행태의 체감 치안상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언할 것은 경찰관의 근무행태는 체감치안 뿐만아니라 경찰이미지에 대하여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부분도 이미 논한 바와 같이 〈5-18〉, 자기나라 경찰의 근무행태가 친절하다고 믿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자기나라 경찰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권위주의적이다」가 32.0%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1.5%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압적인 근무행태가 크게 작용하여 경찰 전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12) 1996년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으로 민간경비영역이 확대되고, 경찰의 주관부서도 종전의 경비국에서 방법국으로 바뀌었다.

13) 과거의 「정선순찰제」가 1995년에는 「자율순찰제」로 바뀌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양자를 병행해가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제 6 장 要約 및 結論

이제 본연구의 마무리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고찰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의 경찰임무, 치안상태 그리고 양자와의 관계중에서 핵심부분과 특징적인 면만을 간추려 본 다음 결론으로서는 바람직한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1. 要 約

가. 경찰임무

(1) 영 국

영국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종주국으로서 자치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The Greater London)과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으며 스코트랜드는 형식상 자치경찰제이나 중앙의 내무성장관이 아닌 스코트랜드성 장관의 지휘하에 있다. 경찰체제상의 특색으로는 관리기구로서 경찰위원회가 존재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

경찰임무를 보면 사법사무도 경찰의 고유임무이며 임무의 배치는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그리고 부수적 업무등 기능별로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다.

경찰임무와 관련된 변화로는, 첫째는 제2차 대전이후 봉사적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능률화의 추구(경찰기관의 통합, 1984년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 셋째는 경찰통제의 강화(1994년의 경찰 및 치안법원법) 등을 들 수 있다.

(2) 미 국

미국경찰은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타운(또는 타운십)경찰(Constable), 도시경찰(City police), 군 보안관(County sheriff), 주경찰(State police) 그리고 연방법집행기관(Federal Law-Enforcement agency)의 5종류의 경찰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로서의 도시경찰이 주축이며, 주경찰과 연방법집행기관은 국가경찰 또는 국가의 법집행기관이다. 이러한 공경찰 외에도 미국에서는 민간 경비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이 크게 발전되어 있어서 질서유지기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임무는 법집행 업무를 우선으로 하나 실제 공식적인 임무배치 비율은 봉사업무가 가장 많고 이것은 미국시민들의 봉사업무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특이한 것은 미국경찰에게는 행정적인 부수업무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다.

경찰임무와 관련된 변화현상으로는 첫째 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 둘째 사회통제적 역할의 증대, 셋째는 법집행력의 강화(60년대의 범죄와의 전쟁, 80년대의 마약과의 전쟁, 90년대의 삼진법<三振法 : Three-strike-out Law>등)를 들 수 있다.

(3) 일 본

일본경찰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륙법체제로 출발하여 2차대전 직후에는 미국식 자치경찰제(1947년의 구경찰법)를 취하였다가 다시 절충식체제(1954년의 신경찰법)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都道府縣의 대단위 자치경찰 조직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찰을 병행운영하는 이원적조직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관리기구로서는 영국식 공안위원회 제도를 택하고 있다.

경찰임무는 질서유지업무에 배치된 비율이 가장 높고 영미의 경우와는 달리 봉사업무나 부수적인 행정업무에도 높은 비율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법집행에 있어서는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다.

경찰임무의 특색으로는, 첫째 60년대 이래로 봉사적 임무가 계속해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경찰임무의 수행방식은 윤리교사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술선수범」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70년대 이래 사전적 예방적 업무에 「민간조직(경비회사)」활용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4) 한 국

한국은 1894년 갑오경장기에 근대경찰이 도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륙법 체계의 일원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일제하에서는 헌병경찰제도와 비밀경찰제(고등계)를 체험하였으며, 광복이후 군정경찰, 그리고 국립경찰시대를 맞아 치안국, 치안본부 시대를 거쳐, 1991년 경찰법제정과 함께 경찰청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임무는 전형적인 대륙법체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능률성과 합법성의 추구를 주된 이념으로 하여 왔으며 특히 일제하에서 횡행하였던 「정치 행정의 경찰의존성」은 아직도 그 잔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행정지원 등의 부수적 업무가 너무 많고 「시국치안」이니 「전경시대」니 하는 용어들도 모두 그같은 인상을 질게하고 있다.

경찰임무와 관련된 변화현상으로는, 첫째 자치성 내지는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내무부 외청으로의 독립, 경찰위원회 제도의 도입 등), 둘째 방법체제의 개선(파출소 운영의 효율화, 순찰방식의 변화), 셋째 민간조직의 활용범위 확대(용역경비법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나. 치안상태

(1) 영 국

통계적 치안상태를 보면 흉악범죄(살인 강도)의 발생율은 최근 20여년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1970년과 비교하면, 1994년에는 약 9배가 증가하였다. 강도중에서도 특히 노상강도 사범이 늘고 있어서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범죄가 증가하여, 경찰력의 강화를 위해서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을 제정하더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테러범죄, 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 등이 날로 늘어나 급기야는 1994년 11월에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에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용,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시민보호를

위한 포괄적 대책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수치상으로 보아 발생율과 검거율 모두 다섯단계 (양호·평온·보통·불안·공포)중 중간인 「보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감적 치안상태를 보면 방법체계에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으며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도 좋아서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다.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는 조사대상자의 60%가 「나아졌다」고 답하고 있다.

(2) 미 국

먼저 통계적 치안상태에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25년간의 살인발생율을 보면, 1980년과 1991년을 피크로 대체로 8%에서 10% 사이에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다. 강도의 발생률도 그와 비슷하게 1970년 이래 25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 중에서도 1975년과 1981년(발생율 250.6%)이 두개의 피크가 되고 있다. 그 후 1991년에 이르러 27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1992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가지 범죄대책중 두드러진 것은 80년대 이후의 중벌주의이다. 연방법으로서의 1984년의 「총합범죄규제법」, 1994년의 「폭력범죄단속및 법집행법(Violent Crime and Law Enforcement Act)」 그리고 1996년의 「테러리즘 대책법」등은 모두 중벌주의의 산물이며 또한 연방뿐만아니라 많은 주에서도 중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국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흉악범죄를 기준으로 123.4%의 발생율로서 「공포」상태이며, 검거율은 44.4%로서 「보통」상태이다.

한편 미국의 체감적치안상태는, 방법체계에 대하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높은 범죄 발생율에도 불구하고 치안상태에 대하여는 별다르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다. 거주지 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치안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80년대에 비하면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의 치안정책과 경찰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3) 일 본

통계적 치안상태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흉악범죄는 종전 직후 10수년간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1955년을 정점으로 그 후로는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최근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약간의 상승기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근래 외국인에 의한 범죄, 총기사범의 증가 등 새로운 양상에 기인하는 듯 하다.

살인과 강도를 나누어 요약해 보면 먼저 살인의 경우 인지건수는 1954년 3081건을 정점을 이루어 전후 혼란상태를 엿보게 했다. 그 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 1975년 이후는 1000건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기미를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의 추이를 보면 96%에서 98%선까지 달하고 있다.

강도의 인지건수는 1948년의 1만 854건이 피크로서 가장 많았다. 195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1000건대로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는 다시 약간의 증가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10년간의 강도 검거율을 보면 1992년에는 60%밖에 되지 않았다가 이듬해부터 차츰 나아져 70%내지는 80%까지 상승하여 1995년에는 82.7%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통계적 치안상태는 흉악범죄 기준으로, 발생율 1.55%로서 「양호」, 검거율도 87.0%로서 「양호」로 평가된다. 영미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좋은 수치이다.

한편 치안상태를 보면, 방법체계에 대해서는 영·미보다 떨어지지만 대체로 높은 신뢰도(79.0%)를 보이고 있으나, 범죄율에 대한 느낌이나 치안상태에 관한 느낌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자기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고 있다. 다만 80년대에 비하여는 조사대상자의 80%가 「달라진 것이 없다」, 「더 나빠졌다」로 답하여 현재보다는 80년대가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였던 모양이다.

(4) 한 국

먼저 통계상으로 치안상태의 내용을 요약한다.

흉악범죄의 발생상황은, 살인에서 발생건수는 1993년의 806건, 94년의 705건을 제외하고는 600건을 전후로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발생율을 보면 1.6%내외로 거의 일정하다. 강도에서는 발생건수와 발생율이 다함께 1990년과 1994년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94년의 강도 발생건수는 4,469건, 발생율 10.1%이다.

다음 흉악범죄의 검거내용은, 살인의 경우 93년에는 877건 (검거율 108.8%)이었으나 94년에는 720건(검거율 102.1%)으로 감소하였다. 강도의 경우는 93년에 3,873건(검거율 99.2%)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와 같은 통계수치를 놓고 살인과 강도의 평균치로 평가할 때, 1994년의 경우 흉악범죄의 평균 발생율은 5.85%로서 「양호」하며, 검거율도 100.6%로서 역시 「양호」하다. 이같은 수치는, 발생율은 일본다음으로 우리가 양호하며, 검거율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양호한 수치이다.

한편 체감적 치안상태는 다음과 같다.

방법체계에 대하여는 영·미·일의 경우처럼 높은 신뢰도 (62.0%)를 보이나, 범죄율이나 치안상태에 대한 느낌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도 편이하게 많은 사람들(71.1%)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80년대와 비교한 치안상태의 느낌도 「달라진 것이 없다」가 42.5%로서 사회적 불안 심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활동의 평가에 있어서도 영·미·일과는 대조적이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미·일 제국에서는 모두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대체로 30%선 내외의 지지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 부분은 각기 7%에 불과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일 잘한다고 여기는 활동은 「대모진압」이 53.5%로 첫째요, 「교통정리」가 17.5%로 둘째이다.

다.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관관계

(1)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논점

경찰임무와 관련된 주요 국가의 공통된 논점으로는 첫째, 치안정책은 경찰기능과 그에 따른 임무의 내용을 결정하며 둘째로는, 경찰임무의 범위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공공복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항상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따라서 치안정책은 행정목적의 의식해야 하며, 임무의 범위는 행정법학자들의 주장(소극적작용)을 참고하게 된다.

치안상태의 논점은 첫째, 시민 개개인의 심리적 안전감은 치안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점 즉, 시민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둘째는 치안상태와 경찰의 대응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바, 즉 범법행위가 있을 때 사회의 안전을 책무로 하는 경찰의 대응력(질서 회복과 법의 집행)이 어느 정도이나 따라 치안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안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측정치인 이른바 통계적 치안상태와, 이와는 별개로 시민 개개인의 주관적이며 경험적 판단인 체감적 치안상태가 있다.

(2)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상호작용

1) 경찰임무가 치안상태에 미치는 영향

i) 경찰임무의 배치비율과 치안상태 : 경찰임무의 공식적 배치비율이 기능별로 균형을 이룰 때 치안상태는 양호하다.

ii) 법집행력의 강화와 치안상태 : 법집행 분야를 강화한다고 해서 치안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2) 치안상태가 경찰임무에 미치는 영향

i) 치안상태의 악화와 경찰임무 : 치안상태의 악화는 경찰의 법집행력을 자극하지만 임무의 범위나 수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ii) 치안상태의 안정과 경찰임무 : 치안상태가 안정되면 현대적 기능인 봉사임무의 영역이나 활동이 확대된다.

(3) 경찰임무와 통계적 치안상태와의 관계

- 1) 형사정책적 연관성 : 통계적 치안상태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통계자료와 분석결과는 형사정책의 방향은 물론 그에 따른 경찰임무의 조정이 가능하다.
 - 2) 공식적 통계자료의 한계성 : 공식적 통계는 ‘숨은범죄’를 나타내 주지 못한다. 경찰에 인지된 범죄건수는 실제로 발생한 건수보다 더 적다. 또한 범죄통계는 치안정책, 법원정책, 여론 등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수치임으로 범죄지수로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3) 범죄발생의 예고성 : 범죄에 관한 통계자료는 범죄동향과 유사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찰관의 임부수행을 도와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와 사회 안전을 도모한다.
- (4) 경찰임무와 체감적 치안상태와의 관계
- 1) 치안정책적 연관성 : 경찰임무와 통계적 치안상태간에는 형사정책적 연관성이 있다면, 경찰임무와 체감적 치안상태간에는 치안정책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에 경찰력을 이용하려는 이른바 시국치안의 임무가 부각되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치안상태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 2) 방법체제와의 연관성 : 체감치안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기 사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직접체험하는 안전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전을 도모하는 파출소, 경비, 순찰 등의 방법체제는 체감적 치안상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 3) 근무행태와의 관련성 : 경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태도 즉 근무행태 또한 체감치안과 관련이 있다. 근무행태가 「친절」할 때 느끼는 감정과 「고압적」일 때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를 것이며 그같은 감정은 체감치안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結 論

위의 「요약」부분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과 분석결과가 어느정도 정리되었을 것이나, 끝으로 궁극적 목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찰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경찰임무의 내용 범위 수행방법 그리고 치안상태의 특성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바람직한 경찰임무

① 경찰임무의 내용과 배치비율

‘경찰임무의 내용은 전통적기능이 우선해야 하며 임무배치비율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경찰임무는 기능상으로 보면 전통적기능인 질서유지와 법의 집행 그리고 현대적기능인 봉사임무와 부수적임무로 분류된다. 양대기능 중에서 어느 부분에 치중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치안정책에 좌우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영국이나 일본 등 비교적 치안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의 예를보면 전통적기능 중 질서유지 임무에 치중(기능별배치비율이 영국은 28.37%, 일본은 33.72%)하면서도 현대적기능인 봉사업무나 부수업무에도 균형있게 업무가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봉사업무 39.90%, 부수업무 1.50%에 불과하며 또 한국의 경우는 봉사업무 5.30%, 부수업무 40.14%로써, 미국은 봉사업무쪽에, 한국은 부수업무쪽에 쏠려 있다. 요컨대 바람직한 업무배치비율은 법집행, 질서유지, 봉사업무 그리고 부수업무의 4가지 기능에 대체로 4분의 1씩 균형있게 나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경찰임무의 범위

‘소극적 야경 목적을 위한 임무외에 적극적 복리목적을 위한 임무도 어느정도까지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논한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행정법 학자들이 「현대국가에 있어서 경찰행정과 급부행정(급부작용 내지는 규제작용)과를 엄격히 제한 지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근대 자유주의시대 이래의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과 현대의 적극목적적 행정작용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원칙에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진대, 경찰의 개념은 여전히 공안의 유지를 위한 소극적 작용으로, 그리고 그 임무도 야경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¹⁾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하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자칫하면 남용되기 쉬운 공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자유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행정국가적 국가목적(복지국가 봉사국가)에 따라 일반 행정이나 경찰행정 모두가 「어느정도」까지의 적극적 복리목적을 위한 임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정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나 하는 것은 역시 행정목적이나 치안정책에 의존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자유주의를 지상 이념으로 하는 영·미에 있어서도 급부작용 내지는 규제작용이 증가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경찰의 임무범위는 소극적 야경목적을 위한 임무에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제작용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경찰임무의 범위에 관한 행정학적 논리는 행정법학적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경찰작용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주축으로 20개 가까운 법령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이들 법령을 하나의 작용법으로 체계화하여 통합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바, 새로운 경찰작용법 제정시에는 위에서 제시한 경찰임무의 범위가 실정법상에 반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임무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바로 「一般的(概括的) 授權規定」의 설치문제이다.

일반적 수권규정에 관한 행정법학적 논리는 다음과 같다.²⁾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법규에 의한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률의 우위 및 법률의 유보원칙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행정중에서도

1) 윤세장, 「행정법각론」(서울: 박영사, 1969), pp.19-20 ; 김도창, 「신고행정법론」(하), (서울: 청운사, 1973), p.175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서울: 법문사, 1985), p. 38.

2) 정진환, “우리나라 경찰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인천대 논문집」, 제14집(인천 : 인천대학교, 1989), pp. 453-454.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고 개인에 대한 명령 강제권을 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경찰권이야말로 법률유보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이 경찰권 발동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조항을 통하여 아무리 구체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하여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우발적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미리 예측하며 그에 대비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며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경찰권 발동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반조항(개괄조항)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울러 오늘날 여러나라의 경찰법이 임무조항외에 수권조항을 두고 있고 개별조항을 메우는 보충적 수권조항으로서 일반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미구에 제정될 우리나라의 경찰작용법에도 제2차적, 보충적 수권규정으로 일반조항을 설치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반조항은 경찰의 소극적 임무수행뿐만 아니라 적극적 임무수행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기능적 측면에서의 경찰임무의 재조정

‘질서유지기능은 민간조직의 활용을 확대하고, 법집행 기능에는 독자적 수사권이 필요하다. 또 봉사기능은 늘려야하며 반대로 부수적기능은 줄여가야 한다.’

i) 민간조직의 활용 : 영미법계의 여러나라들은 원래 자구사상(自救思想 : Vigilantism,의 원리아래 자치경찰로서 출발한 나라들로서 일찍부터 민간조직으로서의 私警備制度(Private Security System) 또는 민간경비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이 발달하였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전 1740년경부터 상인들이 상품보호를 위하여 사경비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1849년 이른바 「골드러쉬(Gold Rush)」⁴⁾를 계기로 민간경비제도가 탄생하여 그 후 크게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질서유지 기능에는 없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3)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로 「직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일반조항(개괄조항)으로 보는 견해로 있으나 이 입장은 통설적 위치에 있지 못하며 임무조항을 수권 조항으로 보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에서도 최근 1960년대부터 동경올림픽에 민간조직을 활용함을 계기로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대 6.25동란 직후 미군에 의한 용역경비에서 비롯하여 70년대에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되더니 199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활동의 영역도 확대되고 「경비지도사」제도도 탄생하였다. 1996년말 현재 민간경비회사의 숫자가 1000개를 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과 정부당국의 소극적 배려로 인해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경찰의 양대기능 중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질서유지기능에는 되도록 민간조직을 활용하고 정규경찰은 좀더 전문화하여 범집행기능이나 봉사기능에 전념토록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좀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질서유지기능중 경비 방법 순찰업무의 상당부분은 그 임무를 민간조직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ii) 독자적 수사권 : 범집행은 경찰의 기본적기능이다.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필요하다.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의 지위는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는 수사기관과의 권력분립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수사기관마다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상호협조체제를 이룬다. 이에 반하여 국가권위주의 절대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화되는 경향을 띄게 되므로 권력자의 명을 받들어 획일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검찰총수를 정점으로 하여 일선 사법경찰 직원에까지 수직적 상명하복관계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의 임무가 질서유지외에 사법사무도 경찰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추권을 행사한다.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언과 원조를 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범죄수사 구조상의 제도적 기구적 특징으로서는 50개주의 독

4)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많은 동부인들이 서부로 이동하였다. 금광을 캐러가는 이들의 이동을 「골드러쉬」라고 하고, 이들을 「49년에 간사람」이란 뜻에서 「Forty niners」라고 불렀다. 이 시기 서부로 가는 길에 마땅한 경찰력이 없었으므로 1850년부터 민간 경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경찰대학(1992).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1988). 보안경찰. 서울: 동아사.
- 김도창(1973). 신고행정법론(하). 서울: 청운사.
- 법무부(1987). 일본경찰. 서울: 치안본부.
- 윤세창(1969). 행정법각론. 서울: 박영사.
- 이상규(1985). 신행정법론(하). 서울: 법문사.
- 이상원·최용열(1996).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 치안연구소.
- 이황우(1985). 경찰의 수사권 독립. 서울: 경찰고시사.
- 정진환(1996). 비교경찰제도. 서울: 학문사.
- _____ (1994). 미국경찰론. 서울: 양영각.
- 정진환 외 4인(1996).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제 연구. 서울: 치안연구소.
- 차용석(1992). 적정한 수사법이론과 수사구조론,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제8회 학술발표회 자료). 서울: 동국대公安행정연구소.
- 치안본부(1989). 구주경찰. 서울: 치안본부.

논 문

- 구광모(1989). 경찰관행과 경찰관의 행태, 「서재근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서울: 동국대학교 논문집발간위원회.

- 이상현(1989). 경찰의 기능, 구조 및 통제에 관한 비교경찰학적 고찰, 「서재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서울: 동국대학교 논문집발간위원회.
- 이수성(1992). 한국사회의 변동과 범죄 현상변화에 대한 분석, 「형사정책」, 제6호. 서울: 형사정책학회.
- 이황우(1995). 경찰정신사와 경찰상 정립, 경찰창설 50주년과 경찰의 좌표, 「치안정책세미나 자료」서울: 치안연구소.
- 정진환(1995). 한국질서행정 발달에 관한 연구(Ⅱ), 「인천대논문집」, 제20집. 인천: 인천대학교.
- _____ (1980). 영국의 경찰제도, 「치안문제」, 10월호. 서울: 치안연구소.

기타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1994, 1995, 1996)
- 경찰청. 범죄백서(1996)
- 대검찰청. 범죄백서.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치안본부. 수사백서.
- 치안본부. 경찰연보.
-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법무부교정국. 비행소년총계.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6)
- 법무부. 사법연감(1995)
- 중앙일보, 1994년 3월 12일 자.

2. 외국문헌

일본문헌

大律英男(1958). 警察行政. 동경: 양서보급회.

柳瀬良幹. 행정법교과서(재정판).

綿貫芳源. 행정법서설.

上屋正三(1972). “금부행정的主체 としての경찰,” 경찰연구 1972년 12월호.

일본경찰법, 1954년 6월 8일, 법률 제162호 제정.

일본법무성(1996). 平成 8年 범죄백서(흉악범죄의 현상과 대책). 동경: 일본법무성
범죄종합연구소.

일본경찰청장관 관방(1967). 경찰법해설, 전정판. 동경: 경찰도서출판주식회사.

일본경찰청(1995). 일본경찰백서.

일본경찰청 통계, 평년 8년(1996)

영문문헌

Adams T. F.(1971). *Police Patrol: Tactics and Techniques*. New Jersey:
Preutice-Hall, Inc.

American Bar Association.(1973). *Standards Relating to the Urban Police
Function*. New York: ABA.

American Bar Association.(1973). *Standards Relation to the Urban Police
Function*. 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Banton M.(1964). *The Policeman in the Community*. New York: Basic Books.

Bayley D. H. and Mendelsohn H.(1968). *Minorities and the Police*. New
York: Free Press.

Bayley D. H.(1975). The police & political development in Europe,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ley R.(1974). *Target Blue*. New York: Dell Books.

Beinhardt G.(1961). *Das Rech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in
seinem Verhältnis zur Eingriffs-und Leistungsverwaltung*. DVBI.

Becker E.(1965).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sprechung*. VVDStRL Heft

14.

- Bittner E.(1970).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Catman J.(1959). *Pol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ongressional Quarterly Inc(1982). *Regulation: Process and Politics*. Washinton D. C.: CQI.
- DiGrazia R.(1975). A message from the Commissioner. *Annual Report*. Boston Police Department.
- Exener(1949). *Kriminologie*.
- Fosdick R. B.(1968). *European Police Systems*. Montclair, N. J.: Patterson Smith.
- Galliher J. F.(1975). Small-Town Police: Troubles, Tasks, and Public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3 (March 1975).
- Goldstein H.(1977). *Policing a Free Society*. Cambridge: Ballinger.
- German A. C, Frank D. Day, and Robert R. R. Gallati J(1973). *Introduction to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International Associoaion of Chiefs of Police, Division of State and Provincial Plice(1975). *Comparative Data Report, 1974*. Gaitherburg, Md.: IACP.
- Goldstein H.(1977). *Policing a Free Society*. Cambridge: Ballinger.
- Hacker A.(1977). *Book Review*. Sept. 15. 1977.
- James Cramer J.(1964). *The World's Police*. London: Cassell.
- Mayne S. R.(1969). *Police: England and Wales, The Training of Probationary Constables*.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 Morris Janowitz M.(1975). Sociological Theory and Social Contro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July 1975).
- Oliver Ian.(1970). *Police, Government and Accountability*(Second edition). London: McMillan Press LTD.
- Parsons T.(1960).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Pennsylvania, Administrative Office of Pennsylvania Courts(1977). *The Constables of Pennsylvania: A Critical Survey*, 1976. Philadelphia: Author.

Pound R.(1985). *Arrest : The Decision to take a Suspect into Custody*. Boston : Little Brown.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 New York: Avon Books.

President's Commission i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1967). *Field Studies IV,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Vol.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Reiss A.(1979). *The police and the public*. New Havens: Yale Univ. Press.

Shame P. G.(1980). *Police and People: A Comparison of give countries*. ST. Louis: The C.V. Mosby Co.

Smith B.(1925). *The State Police*. New York: Macmillan.

Sullivan J. L.(1977). *Introduction to Police Sience*. New York: McGreaw-Hill Books Co.

Sutherland E. H. and Cressy D. R.(1966).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Tobnson E.(1970). *Police: An Analysis of Role Conflict*. *Police*. January-February.

Ungar S. J.(1976). *FBI*. Boston: Little Brown.

U. S.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Police*.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Justice, *Expenditure and Employment Data*, 1987.(198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lker S.(1983).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 Hill Books Co.

- Wilson J. O.(1980). The Changing FBI-The Road to Abscam. *Public Interest* 59. Spring 1980.
- Wilson J. Q.(1973). *Varieties of Police Behavior*. New York: Atheneum.
- 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1971). *State and Local Rel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ashington, D.C.: U.S. Governmenta Printing Office.
- Wilson O. W.(1968).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 Hill.
- Police Magazine* 2(January, 1979).
-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Correctional Poupulations, United States.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 U.C.R. Crime in the United States(1995):
-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1996).
- Crime in the United States(1996).
- New York Times. Sept. 197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Police Role and Security Condition in Major Countries

CHONG, CHIN-WHAN

(Professor, University of Inche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commendations in redefining an optimum level of the nation's police and ways to improve its level in Korea by examin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police role and its effectiveness in public safety in major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U.S.A. and Japan.

The study is based on released documents on polic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published statistics along with actual written polls conducted in each country are used to assess each country's level of security conditions.

(1) Police Role

① United Kingdom : Law enforcement is Police's unique duties and the Police is organized in functional branches to carry out its duties in public orders, law enforcement, public services and government related affairs.

② U. S. A. : Law enforcement is the Polices's primary responsibilities but it puts more emphasis on public services in actual manpower allocation. U. S. Police is noted for carrying out little duties in administrative affairs.

③ Japan : Japan puts high emphasis on public orders and unlike U.K. or U.S.A. it uses police forces in public services and related governmental administrative works.

④ Korea : Maintain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Continental - Law - System putting emphasis on efficiency in police duties. The police role is similar to other countries but it is overly burdened by government-related services.

(2) Security Condition

① United Kingdom : Statistics puts the country in the middle grade of 'Average' on the scale of 5 grades (Superior Peaceful Average Fearful Paranoid). Public has perceived feeling of safeness and high regards for Police's crime prevention systems.

② U.S.A. : Released figures on public safety is not good. It has high occurrence rate on extremely violent crimes and shows an average level of arrests. However the public does not feel unsafe and no one really expresses fear.

③ Japan : Published numbers show better-than average on crime rate and arrests, and it is much better than U.K or U.S.A. People have high confidence in public safety and firmly believe that Japan is most safe country to live in the world.

④ Korea : Published figures show high marks next to Japan in public safety but general public feels rather unsafe and majority expresses fear. Peoples' feeling on public safety is much different than statistical numbers.

(3) Desired Improvements in Police Roles

① Functional allocation of police duties : The traditional responsibilities of police should be the primary duties and its forces must be accordingly allocated.

② Responsibilities of police : It should put more emphasis on proactive duties on public services rather than merely carrying out given duties.

③ Restructuring Police Functions : Utilize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to handle civic orderliness and police must have exclusive law enforcement right. It

must devote itself more on public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it must reduce its effort on other unessential duties.

④ Improvement in Police Activities : Police activities in its nature accompanies a forceful execution of duties but it must at least adhere to its standard procedure although it must exercise its own judgment at times.

(4) Improvement of Security Condition

① An improvement must be made to bring poor public safety level to match its publicized low crime rate figures.

② Improvement in public safety requires improved lives of general public.

③ Perceived public safety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Police Officers' conduct and publics' perceived police figure.

④ Korea's statistical level of public safety is excellent. It has lower figures on most violent crime rate next to Japan. The climbing crime rate is the problem.

⑤ The Korea's crime figures show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endency in crimefighting in certain areas and it needs to expand its activity in all crimes categories.

⑥ Korea should adopt the commonly practiced police activities in other countries to improve its own public safety ; police's duties and its effectiveness on public safety, statistical crime figures and publics' perceived safety of the community, police's ability in law enforcement and its effect on public safety, etc.. And the police's concentrated effort comprehensive crime prevention that affects on overall crime rate, should be required at the same time.

부 록

「체감적치안상태에 관한 설문조사내용」
= 한국 · 영국 · 미국 · 일본 =

◆ 본 설문조사는 1997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뉴욕 · 런던 ·
동경 · 서울 등 현지에서 실시된 것임

설문조사 질문내용

【한 국】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치안연구소의 용역연구(주요국가의 경찰임무와 치안상태의 비교)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느끼신대로 (V)표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 별 () ○ 연 령 () ○ 직 업 ()

1. 당신이 사는 곳은?

- | | |
|-------|--------|
| ① 대도시 | ② 소도시 |
| ③ 농어촌 | ④ 공업단지 |

2. 당신이 사는 곳은 방범체계(파출소, 경비, 순찰 등)가 어떠한가?

- | | |
|------------|------------|
| ① 잘되어 있다. | ② 보통이다. |
| ③ 가끔 불안하다. | ④ 항상 불안하다. |

3. 우리나라 경찰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 | | | | |
|--------|--------|--------|--------|
| ① 범죄수사 | ② 질서유지 | ③ 사회봉사 | ④ 교통정리 |
| ⑤ 데모진압 | ⑥ 간첩작전 | ⑦ 방범순찰 | |

4. 우리나라 경찰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② 지금대로가 좋다.
- ③ 약화되어야 한다.

- ③ 순찰은 하나하나 마찬가지로이다. ④ 비상시에만 필요하다.
13. 우리나라 경찰인력은 인구에 비례하여,-----
- ① 너무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모자란다. ⑤ 너무 모자란다.
14.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 ① 수사능력의 보강 ② 근무태도의 개선 ③ 교육훈련의 강화
④ 경찰임무의 확대 ⑤ 경찰임무의 축소
15. 우리나라 경찰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 ① 대단히 민주적이다. ② 비민주적이다.
③ 과거나 차이가 없다. ④ 권위주의적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 미국】

Survey on Ploice Roles and its effectiveness in the community

This survey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a study project conducted by the Police Service Research Institute, 'A Comparative Study on Community Policing and its effectiveness in Different Countries'. Your cooperation will be appreciated.

Please check appropriate answer in each question.

Male() Female () Your age : _____ Your occupation :

1. You live in a :

() Big city () Small city () Farming/Fishing Community () Industrial Site

2. The level of crime prevention measures in your community(Police station, Guards, Police patrol, etc):

() Is pretty high () Is an average () Makes me uncomfortable

() Makes me very uncomfortable

3. In your mind, the police of England(America) is best in:

() Crime investigation () Maintaining community orders () Social services

() Traffic control () Riot control () Surveillance on spy infiltration

() Police patrol on crime prevention

4. English Police must do the following to carry out its roles:

() Must be reinforced () Is good as is () Must improve

() Must be educated to serve better

-
5. Your perception on Police's roles in England(America) is:
 Too big a duty Too limited OK as is Must be reduced
6. Your perception on Police's effectiveness is:
 Very good Good Makes me uncomfortable
 Makes me very uncomfortable
7. What area in English(American) Police roles do you think needs most urgent improvement in?
 Ability in crime investigation Effort in crime prevention
 Social services Help in Government services
 Surveillance on spy infiltration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8. Your perception on crime rate in this country compared to other country is:
 Too high Slightly higher About the same Lower
9. Ability of English(American) Police in carrying out its roles is:
 Superior Excellent Average Below average Inferior
10. Police's effectiveness compared to that of 1980s is:
 Improved very much Improved somewhat Nothing different
 Became worse
11. Attitude of English(American) Police in handling civilian affairs is:
 Very uncooperative Uncooperative Unfriendly Friendly
12. In your judgment, Police's community patrol is:
 Absolutely necessary Only necessary in crime-ridden area
 Not doing any good Only necessary in an emergency
13. The size of English(American) Police compared to our population is:
 Too big On the high side Just right Small Too small

14. What does English(American) Police need most to improve its image?
- Reinforcement of investigative skills
 - Improvement in Police attitude
 - Better education and training
 - Expanding Police's role
 - Reducing Police responsibilities
15. In one word English(American) Police is:
- Very democratic
 - Not democratic
 - Has not changed from the past
 - Authoritative

Thank you for your help.

【일 본】

警察任務と治安状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本アンケート調査は 治安研究の備役研究(主要な國家の警察任務と治安状態の比較)の参考資料に活用されます 感じたまま()で答えてください

性別 () 年齢 () 職業 ()

1. あなたの住んでいる所は

- | | |
|-------|--------|
| ① 大都市 | ② 小都市 |
| ③ 農漁村 | ④ 工業園地 |

2. あなたの住居の防犯体制は

- | | |
|-----------|--------|
| ① いい | ② 普通 |
| ③ あまりよくない | ④ よくない |

3. 日本の警察の優れている点は

- | | | | |
|--------|---------|--------|--------|
| ① 犯罪調査 | ② 秩序維持 | ③ 社会奉仕 | ④ 交通整理 |
| ⑤ デモ鎮壓 | ⑥ スパイ作戦 | ⑦ 防犯巡察 | |

4. 日本の警察はその任務を遂行するために

- | | |
|---------------|-------------------|
| ① もっと強化されるべきだ | ② いまのままでいい |
| ③ 弱体化されるべきだ | ④ 國民に奉仕するよう教育すべきだ |

5. 日本の警察任務の範囲に関するあなたの考えは

- | | |
|-----------|--------------|
| ① とても廣範囲だ | ② とても制限されている |
| ③ 普通だ | ④ 縮小させるべきだ |

6. 日本の治安に関するあなたの考えは

설문조사 응답내용

1. 당신이 사는 곳은 방법체계가 어떠한가?

- ⊙ 영국은 '보통이다'에 79.0%,
- ⊙ 미국은 '보통이다'에 57.3%, '잘 되어있다'에 27.3%,
- ⊙ 일본은 '보통이다'에 60.0%,
- ⊙ 한국은 '보통이다'에 49.5%, '가끔 불안하다'에 25.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찰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 ⊙ 영국은 '범죄수사' 30.0%, '질서유지' 27.0%,
- ⊙ 미국은 '질서유지' 29.3%, '교통정리' 28.0%, '범죄수사' 24.0%,
- ⊙ 일본은 '질서유지' 36.0%, '범죄수사' 34.0%,
- ⊙ 한국은 '데모진압' 53.5%, '교통정리'에 17.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 영국은 '약화되어야 한다' 31.0%,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9.0%,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교육을 한다'에 29.0%,
- ⊙ 미국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0.7%, '약화되어야 한다' 26.0%,
'지금 이대로가 좋다' 23.3%,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교육을 한다' 20.0%,
- ⊙ 일본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 40.0%,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5.0%,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교육을 한다' 23.0%,
- ⊙ 한국은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교육을 한다' 61.0%,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에 36.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찰임무의 범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 영국은 '보통이다' 43.0%, '너무 광범위하다'와 '너무 제한되어 있다'에 24.0%,
 - ⊙ 미국은 '보통이다' 48.0%, '너무 제한되어 있다' 30.0%,
 - ⊙ 일본은 '보통이다' 66.0%,
 - ⊙ 한국은 '너무 광범위하다' 36%, '보통이다' 32.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치안상태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 ⊙ 영국은 '보통이다' 67.0%, '불안하다' 24.0%,
 - ⊙ 미국은 '보통이다' 56.7%, '불안하다' 27.3%,
 - ⊙ 일본은 '보통이다' 58.0%, '아주 좋다' 30.0%,
 - ⊙ 한국은 '불안하다' 56.5%, '보통이다' 29.0%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경찰기능 중 가장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 ⊙ 영국은 '범죄예방기능' 45.0%, '범죄수사능력' 22.0%, '사회봉사기능' 16.0%,
 - ⊙ 미국은 '범죄예방기능' 42.0%, '범죄수사능력' 24.0%, '사회봉사기능' 18.0%,
 - ⊙ 일본은 '범죄예방기능' 41.0%, '범죄수사능력' 27.0%, '사회봉사기능' 14.0%,
 - ⊙ 한국은 '범죄예방기능' 57.0%, '사회봉사기능' 22.5%, '범죄수사능력' 14.0%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당신이 느끼기에...
- ⊙ 영국은 '비슷하다' 44.0%, '약간 더 높은 편이다' 23.0%, '너무 높다' 22.0%,
 - ⊙ 미국은 '약간 더 높은 편이다' 36.7%, '비슷하다' 30.0%, '너무 높다'

23.3%,

- ⊙ 일본은 '낮은 편이다' 72.0%,
- ⊙ 한국은 '약간 더 높은 편이다' 37.0%, '너무 높다' 30.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경찰관들의 임무수행능력은?

- ⊙ 영국은 '보통이다' 66.0%,
- ⊙ 미국은 '보통이다' 58.0%,
- ⊙ 일본은 '보통이다' 44.0%, '우수하다' 33.0%,
- ⊙ 한국은 '보통이다' 53.5%, '모자란다' 29.0%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치안상태는 80년대에 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

- ⊙ 영국은 '좀 나아진 편이다' 53.0%, '달라진 것이 없다' 26.0%,
- ⊙ 미국은 '좀 나아진 편이다' 45.3%, '달라진 것이 없다' 28.0%,
- ⊙ 일본은 '더 나빠졌다' 44.0%, '달라진 것이 없다' 36.0%,
- ⊙ 한국은 '달라진 것이 없다' 42.5%, '좀 나아진 편이다' 31.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경찰의 대민 봉사행정에 있어서 경찰관의 근무행태는?

- ⊙ 영국은 '친절하다' 50.0%, '고압적이다' 26.0%, '사무적이다' 19.0%,
- ⊙ 미국은 '친절하다' 41.3%, '사무적이다' 28.0%, '고압적이다' 23.3%,
- ⊙ 일본은 '사무적이다' 58.0%, '고압적이다' 22.0%,
- ⊙ 한국은 '고압적이다' 48.5%, '사무적이다' 37.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경찰관의 지역순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 영국은 '꼭 필요하다' 61.0%, '우범지역에만 필요' 26.0%,
- ⊙ 미국은 '꼭 필요하다' 59.3%, '우범지역에만 필요' 20.7%,

- ⊙ 일본은 ‘꼭 필요하다’ 73.0%, ‘우범지역에만 필요’ 17.0%,
- ⊙ 한국은 ‘꼭 필요하다’ 78.0%, ‘하나마나이다’ 15.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경찰인력은 인구에 비례하여...

- ⊙ 영국은 ‘모자란다’ 43.0%, ‘적절하다’ 31.0%,
- ⊙ 미국은 ‘적절하다’ 40.0%, ‘모자란다’ 34.7%,
- ⊙ 일본은 ‘적절하다’ 55.0%, ‘모자란다’ 30.0%,
- ⊙ 한국은 ‘모자란다’ 63.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 ⊙ 영국은 ‘근무태도의 개선’ 40.0%, ‘교육훈련의 강화’ 30.0%,
- ⊙ 미국은 ‘경찰업무의 확대’ 39.6%, ‘근무태도의 개선’ 33.3%, ‘교육훈련의 강화’ 28.0%,
- ⊙ 일본은 ‘근무태도의 개선’ 44.0%, ‘수사능력의 보강’ 33.0%,
- ⊙ 한국은 ‘근무태도의 개선’ 61.0%, ‘교육훈련의 강화’ 22.5%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경찰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 ⊙ 영국은 ‘권위주의적이다’ 32.0%, ‘과거와 차이가 없다’ 27.0%,
‘비민주적이다’ 23.0%, ‘대단히 민주적이다’ 18.0%,
- ⊙ 미국은 ‘권위주의적이다’ 32.7%, ‘과거와 차이가 없다’ 31.3%,
- ⊙ 일본은 ‘권위주의적이다’ 33.0%, ‘대단히 민주적이다’ 28.0%, ‘과거와 차이가 없다’ 25.0%,
- ⊙ 한국은 ‘권위주의적이다’ 41.5%, ‘과거와 차이가 없다’ 36.5%, ‘비민주적이다’ 20.0%로 응답하였다.
- 국가간의 통계적 유의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 및 통계현황

구 분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계
성 별	남	46	70	58	82	256
	여	54	80	42	118	294
연 령 별	10대	26	42	57	11	136
	20대	42	66	38	50	196
	30대	13	20	1	30	64
	40대	11	13	3	67	94
	50대	8	9	1	42	60
거 주 지 역 별	대도시	46	55	64	172	337
	소도시	33	82	35	23	173
	농어촌	18	2	1	4	25
	공업단지	3	11	0	1	15
계		100	150	100	200	550

1. 당신이 사는 곳은 방법체계(파출소, 경비, 순찰 등)가 어떠한가?

구분	방법체계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방법체계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잘되어 있다	보통 이다	가끔불 안하다	항상불 안하다					잘되어 있다	보통 이다	가끔불 안하다	항상불 안하다					
영역	성별	남	N 2	38	4	2	46	X ² =5.97 DF=3 P=0.1132	성별	남	N 11	37	6	4	58	X ² =1.65 DF=3 P=0.6478	X ² =54.23 DF=9 P=0.0000
		%	13	82.6	8.7	4.3	100			%	19.0	63.8	10.3	6.9	100		
	연령	여	N 5	41	4	0	54	X ² =12.70 DF=12 P=0.3910	연령	여	N 8	23	8	3	42	X ² =6.51 DF=12 P=0.8883	
		%	16.7	75.9	7.4	0	100			%	19.0	54.8	19.0	7.1	100		
	10대	N	1	23	1	1	26	X ² =8.11 DF=9 P=0.5231	10대	N	10	35	10	2	57	X ² =20.18 DF=6 P=0.0025	
		%	3.6	88.5	3.8	3.8	100			%	17.5	61.4	17.5	3.5	100		
	20대	N	8	28	5	1	42	X ² =8.18 DF=9 P=0.5160	20대	N	8	21	4	5	38	X ² =11.84 DF=12 P=0.4587	
		%	19.0	66.7	11.9	2.4	100			%	21.1	55.3	10.5	13.2	100		
	30대	N	0	13	0	0	13	X ² =1.40 DF=3 P=0.7058	30대	N	0	1	0	0	1	X ² =13.98 DF=9 P=0.1229	
		%	0	100	0	0	100			%	0	100	0	0	100		
	40대	N	1	8	2	0	11	X ² =1.40 DF=3 P=0.7058	40대	N	1	2	0	0	3	X ² =1.40 DF=3 P=0.7058	
		%	9.1	72.7	18.2	0	100			%	33.3	66.7	0	0	100		
50대	N	1	7	0	0	8	X ² =1.40 DF=3 P=0.7058	50대	N	0	1	0	0	1	X ² =1.40 DF=3 P=0.7058		
	%	12.5	87.5	0	0	100			%	0	100	0	0	100			
이상	N	8	31	5	2	46	X ² =1.40 DF=3 P=0.7058	이상	N	0	1	0	0	1	X ² =1.40 DF=3 P=0.7058		
	%	17.4	67.4	10.9	4.3	100			%	0	100	0	0	100			
거주지역	도시	N 2	29	2	0	33	X ² =1.40 DF=3 P=0.7058	거주지역	도시	N 3	27	4	1	35	X ² =1.40 DF=3 P=0.7058		
	%	6.1	87.9	6.1	0	100			%	8.6	77.1	11.4	2.9	100			
농촌	N 1	16	1	0	18	X ² =1.40 DF=3 P=0.7058	농촌	N 0	0	0	0	1	1	X ² =1.40 DF=3 P=0.7058			
	%	5.6	88.9	5.6	0			100	%	0	0	0	100		100		
공업단지	N 0	100	0	0	100	X ² =1.40 DF=3 P=0.7058	공업단지	N 0	0	0	0	0	0	X ² =1.40 DF=3 P=0.7058			
	%	0	100	0	0			100	%	0	0	0	0		0		
소계	N 11	79	8	2	100	X ² =1.40 DF=3 P=0.7058	소계	N 19	80	14	7	100	X ² =1.40 DF=3 P=0.7058				
	%	11.0	79.0	8.0	2.0			100	%	19.0	80.0	14.0		7.0	100		
국가	성별	남	N 17	42	8	3	70	X ² =1.87 DF=3 P=0.6000	성별	남	N 9	38	23	12	82	X ² =1.40 DF=3 P=0.7058	X ² =54.23 DF=9 P=0.0000
		%	24.3	60.0	11.4	4.3	100			%	11.0	46.3	28.0	14.6	100		
	연령	여	N 21	44	6	6	80	X ² =12.82 DF=12 P=0.3819	연령	여	N 16	61	28	13	118	X ² =11.84 DF=12 P=0.4587	
		%	30.0	55.0	7.5	7.5	100			%	13.6	51.7	23.7	11.0	100		
	10대	N 9	28	3	2	42	X ² =8.18 DF=9 P=0.5160	10대	N 0	8	0	3	11	X ² =1.40 DF=3 P=0.7058			
		%	21.4	66.7	7.1	4.8			100	%	0	72.7	0		27.3	100	
	20대	N 18	38	6	4	66	X ² =8.18 DF=9 P=0.5160	20대	N 6	28	12	4	50	X ² =11.84 DF=12 P=0.4587			
		%	27.3	57.6	9.1	6.1			100	%	12.0	56.0	24.0		8.0	100	
	30대	N 4	13	1	2	20	X ² =8.18 DF=9 P=0.5160	30대	N 4	13	10	3	30	X ² =1.40 DF=3 P=0.7058			
		%	20.0	65.0	5.0	10.0			100	%	13.3	43.3	33.3		10.0	100	
	40대	N 5	5	3	0	13	X ² =8.18 DF=9 P=0.5160	40대	N 10	29	17	11	67	X ² =1.40 DF=3 P=0.7058			
		%	38.5	38.5	23.1	0			100	%	14.9	43.3	25.4		16.4	100	
50대	N 5	2	1	1	9	X ² =8.18 DF=9 P=0.5160	50대	N 5	21	12	4	42	X ² =1.40 DF=3 P=0.7058				
	%	55.6	22.2	11.1	11.1			100	%	11.9	59.0	28.6		9.5	100		
이상	N 20	25	6	4	55	X ² =8.18 DF=9 P=0.5160	이상	N 24	81	44	23	172	X ² =1.40 DF=3 P=0.7058				
	%	36.4	45.5	10.9	7.3			100	%	14.0	47.1	25.6		13.4	100		
거주지역	도시	N 29	52	6	5	82	X ² =8.18 DF=9 P=0.5160	거주지역	도시	N 1	10	5	1	23	X ² =13.98 DF=9 P=0.1229		
	%	23.2	63.4	7.3	6.1	100			%	4.3	69.6	21.7	4.3	100			
농촌	N 0	2	0	0	2	X ² =8.18 DF=9 P=0.5160	농촌	N 0	2	2	0	4	X ² =1.40 DF=3 P=0.7058				
	%	0	100	0	0			100	%	0	50.0	50.0		0	100		
공업단지	N 2	7	2	0	11	X ² =8.18 DF=9 P=0.5160	공업단지	N 0	0	0	1	1	X ² =1.40 DF=3 P=0.7058				
	%	18.2	63.6	18.2	0			100	%	0	0	0		100	100		
소계	N 11	82	15	9	152	X ² =8.18 DF=9 P=0.5160	소계	N 25	99	51	25	200	X ² =1.40 DF=3 P=0.7058				
	%	27.3	57.3	9.3	6.6			100	%	12.5	49.5	25.5		12.5	100		

2. 경찰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구분		범죄수사	질서유지	사회봉사	교통정리	데모진압	간첩작전	방법순찰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	성별	남	N 15	8	6	5	2	3	7	46	X ² = 11.49 DF = 6 P = 0.0743	X ² = 255.80 DF = 18 P = 0.0000	
		여	N 15	19	7	10	1	1	1	54			
	연령별	10대	N	11	2	3	6	2	0	2	26		X ² = 25.85 DF = 24 P = 0.3608
			%	42.3	7.7	11.5	23.1	7.7	0	7.7	100		
		20대	N	9	14	7	3	1	3	5	42		
			%	21.4	33.3	16.7	7.1	2.4	7.1	11.9	100		
		30대	N	3	3	2	4	0	0	1	13		
			%	23.1	23.1	15.4	3.8	0	0	7.7	100		
	40대	N	5	4	0	1	0	1	0	11			
		%	45.5	36.4	0	9.1	0	9.1	0	100			
	50대 이상	N	2	4	1	1	0	0	0	8			
		%	25.0	50.0	12.5	12.5	0	0	0	100			
국	거주지역별	대도시	N 13	10	6	9	2	3	3	46	X ² = 19.62 DF = 18 P = 0.3546		
		%	28.3	21.7	13.0	19.6	4.3	6.5	6.5	100			
		소도시	N 12	7	5	4	1	1	3	33			
		%	36.4	21.2	15.2	12.1	3.0	3.0	9.1	100			
농어촌	N	5	9	0	2	0	0	2	18				
	%	27.8	50.0	0	11.1	0	0	11.1	100				
공업단지	N	0	1	2	0	0	0	0	3				
	%	0	33.3	66.7	0	0	0	0	100				
소계	N	30	27	13	15	3	4	8	100				
	%	30.0	27.0	13.0	15.0	3.0	4.0	8.0	100				
미	성별	남	N 21	19	7	14	1	2	6	70	X ² = 8.75 DF = 6 P = 0.1880		
		여	N 15	25	4	28	1	0	7	80			
	연령별	10대	N	6	15	2	13	1	1	4	42	X ² = 22.47 DF = 24 P = 0.5515	
			%	14.3	35.7	4.8	31.0	2.4	2.4	9.5	100		
		20대	N	18	16	6	15	1	1	9	66		
			%	27.3	24.2	9.1	22.7	1.5	1.5	13.6	100		
		30대	N	7	7	0	6	0	0	0	20		
			%	35.0	35.0	0	30.0	0	0	0	100		
	40대	N	3	4	3	3	0	0	0	13			
		%	23.1	30.8	23.1	23.1	0	0	0	100			
	50대 이상	N	2	2	0	5	0	0	0	9			
		%	22.2	22.2	0	55.6	0	0	0	100			
국	거주지역별	대도시	N 15	15	5	11	0	1	8	55	X ² = 15.03 DF = 18 P = 0.6601		
		%	27.3	27.3	9.1	20.0	0	1.0	14.5	100			
		소도시	N 18	26	6	24	2	1	5	82			
		%	22.0	31.7	7.3	29.3	2.4	1.2	6.1	100			
농어촌	N	0	0	0	2	0	0	0	2				
	%	0	0	0	100	0	0	0	100				
공업단지	N	3	3	0	5	0	0	0	11				
	%	27.3	27.3	0	45.5	0	0	0	100				
소계	N	36	44	11	42	2	2	13	150				
	%	24.0	29.3	7.3	28.0	1.3	1.3	8.7	100				

구분		범죄수사	질서유지	사회봉사	고동정리	데모진압	간첩작전	방법순찰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성별	남	N	24	14	1	7	1	5	6	58	X ² = 14.33 DF = 6 P = 0.0261
		%	41.4	24.1	1.7	12.1	1.7	8.6	10.3	100	
	여	N	10	22	2	6	1	0	1	42	
		%	23.8	52.4	4.8	14.3	2.4	0	2.4	100	
연령별	10대	N	12	23	2	11	1	4	4	57	X ² = 15.63 DF = 24 P = 0.9011
		%	21.1	40.4	3.5	19.3	1.8	7.0	7.0	100	
	20대	N	18	12	1	2	1	1	3	38	
		%	47.4	31.6	2.6	5.3	2.6	2.6	7.9	100	
	30대	N	1	0	0	0	0	0	0	1	
		%	100	0	0	0	0	0	0	100	
40대	N	2	1	0	0	0	0	0	3		
	%	66.7	33.3	0	0	0	0	0	100		
50대 이상	N	1	0	0	0	0	0	0	1		
	%	100	0	0	0	0	0	0	100		
거주지역별	내도시	N	24	23	1	8	2	3	3	64	X ² = 23.81 DF = 12 P = 0.0216
		%	37.5	35.9	1.6	12.5	3.1	4.7	4.7	100	
	소도시	N	10	13	2	5	0	1	4	35	
		%	28.6	37.1	5.7	14.3	0	2.9	11.4	100	
농어촌	N	0	0	0	0	0	1	0	1		
	%	0	0	0	0	0	100	0	100		
공업단지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소계		N	34	36	3	13	2	5	7	109	
		%	34.0	36.0	3.0	13.0	2.0	5.0	7.0	100	
성별	남	N	5	5	3	10	50	1	8	82	X ² = 4.13 DF = 6 P = 0.6596
		%	6.1	6.1	3.7	12.2	61.0	1.2	9.8	100	
	여	N	9	9	5	25	57	1	12	118	
		%	7.6	7.6	4.2	21.2	48.3	0.8	10.2	100	
연령별	10대	N	0	0	0	3	5	1	2	11	X ² = 36.33 DF = 24 P = 0.0509
		%	0	0	0	27.3	45.5	9.1	18.2	100	
	20대	N	1	2	1	6	36	0	4	50	
		%	2.0	4.0	2.0	12.0	72.0	0	8.0	100	
	30대	N	3	1	2	4	16	0	4	30	
		%	10.0	3.3	6.7	13.3	53.3	0	13.3	100	
40대	N	9	7	2	10	34	1	4	67		
	%	13.4	10.4	3.0	14.9	50.7	1.5	6.0	100		
50대 이상	N	1	4	3	12	16	0	6	42		
	%	2.4	9.5	7.1	28.6	38.1	0	14.3	100		
거주지역별	내도시	N	13	11	7	32	90	2	17	172	X ² = 7.43 DF = 18 P = 0.9860
		%	7.6	6.4	4.1	18.6	52.3	1.2	9.9	100	
	소도시	N	1	2	1	2	15	0	2	23	
		%	4.3	8.7	4.3	8.7	65.2	0	8.7	100	
농어촌	N	0	1	0	1	1	0	1	4		
	%	0	25.0	0	25.0	25.0	0	25.0	100		
공업단지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소계		N	14	14	8	35	107	2	20	200	
		%	7.0	7.0	4.0	17.5	53.5	1.0	10.0	100	

3.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분		더욱강화되어야한다	지금이대로가좋다	약화되어야한다	시민에게봉사하도록교육한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더욱강화되어야한다	지금이대로가좋다	약화되어야한다	시민에게봉사하도록교육한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	성별	남	N 12 % 26.1	9 19.6	10 21.7	15 32.6	X ² =8.67 DF=3 P=0.0340	성별	남	N 16 % 27.6	28 48.3	2 3.4	12 20.7	X ² =6.30 DF=3 P=0.0978	X ² =193.03 DF=9 P=0.0000		
		여	N 17 % 31.5	2 3.7	21 38.9	14 25.9			54 100	여	N 19 % 45.2	12 28.6	0 0			11 26.2	42 100
	연령	10대	N 7 % 26.9	3 11.5	9 34.6	7 26.9	X ² =9.20 DF=12 P=0.6854	연령	10대	N 22 % 38.6	21 36.8	2 3.5	12 21.1	X ² =7.29 DF=12 P=0.8331			
		20대	N 9 % 21.4	7 16.7	14 33.3	12 28.6			42 100	20대	N 12 % 31.6	17 44.7	6 9			9 23.7	100
		30대	N 4 % 30.8	0 0	5 38.5	4 30.8			13 100	30대	N 0 % 0	1 100	0 0			0 100	1 100
		40대	N 5 % 45.5	0 0	2 18.2	4 36.4			11 100	40대	N 1 % 33.3	1 33.3	0 0			1 33.3	3 100
		50대	N 4 % 50.0	1 12.5	1 12.5	2 25.0			8 100	50대	N 0 % 0	0 0	0 0			1 100	1 100
		이상	N 4 % 50.0	1 12.5	1 12.5	2 25.0			8 100	이상	N 0 % 0	0 0	0 0			1 100	1 100
	거주지역	대	N 13 % 28.3	6 13.0	14 30.4	13 28.3	X ² =8.13 DF=9 P=0.5216	거주지역	대	N 21 % 32.8	24 37.5	2 3.1	17 26.6	X ² =6.68 DF=6 P=0.3519			
		도시	N 7 % 21.2	4 12.1	12 36.4	10 30.3			33 100	도시	N 14 % 20.0	16 45.7	0 0			5 14.3	35 100
		소	N 9 % 50.0	1 5.6	3 16.7	5 27.8			18 100	농	N 0 % 0	0 0	0 0			1 100	1 100
		동	N 0 % 0	0 0	2 66.7	1 33.3			3 100	어촌	N 0 % 0	0 0	0 0			0 0	0 0
공업		N 0 % 0	0 0	2 66.7	1 33.3	3 100			단지	N 0 % 0	0 0	0 0	0 0		0 0		
단지		N 0 % 0	0 0	2 66.7	1 33.3	3 100			소계	N 35 % 35.0	40 40.0	2 2.0	23 23.0		100 100		
소계		N 29 % 29.0	11 11.0	31 31.0	29 29.0	100			소계	N 28 % 34.1	5 5.7	1 1.2	50 61.0		82 100		
성별	남	N 24 % 34.3	15 21.4	14 20.0	17 24.3	X ² =3.79 DF=3 P=0.2854	성별	남	N 28 % 34.1	5 5.7	1 1.2	50 61.0	X ² =3.56 DF=3 P=0.3129				
	여	N 22 % 27.5	20 25.0	25 31.3	13 16.3			80 100	여	N 45 % 38.1	1 0.8	0 0		72 61.0	118 100		
연령	10대	N 11 % 30.2	8 19.0	17 48.5	6 14.3	X ² =17.05 DF=12 P=0.1479	연령	10대	N 2 % 18.2	1 9.1	0 0	8 72.7	X ² =13.86 DF=12 P=0.3067				
	20대	N 24 % 36.4	15 22.7	16 15.2	17 25.8			66 100	20대	N 15 % 30.0	1 2.0	0 0		34 68.0	50 100		
	30대	N 4 % 20.0	7 35.0	6 30.0	3 15.0			20 100	30대	N 13 % 43.3	0 0	0 0		17 56.7	30 100		
	40대	N 4 % 30.8	5 38.5	2 15.4	2 15.4			13 100	40대	N 23 % 34.3	0 0	1 1.5		43 64.2	67 100		
	50대	N 3 % 33.3	0 0	4 44.4	2 22.2			9 100	50대	N 20 % 47.6	2 4.8	0 0		20 47.6	42 100		
	이상	N 3 % 33.3	0 0	4 44.4	2 22.2			9 100	이상	N 47.6 % 47.6	4.8 4.8	0 0		47.6 47.6	100 100		
거주지역	대	N 15 % 27.3	14 25.5	13 23.6	13 23.6	X ² =6.80 DF=9 P=0.6583	거주지역	대	N 59 % 34.3	4 2.3	1 0.6	108 62.8	X ² =5.70 DF=9 P=0.7692				
	도시	N 24 % 29.3	18 22.0	24 29.3	16 19.5			82 100	도시	N 10 % 43.5	0 0	0 0		13 56.5	23 100		
	소	N 1 % 50.0	0 0	1 50.0	0 0			2 100	농	N 3 % 75.0	0 0	0 0		1 25.0	4 100		
	동	N 6 % 54.5	3 27.3	1 9.1	1 9.1			11 100	어촌	N 1 % 100	0 0	0 0		0 0	1 100		
	공업	N 6 % 54.5	3 27.3	1 9.1	1 9.1			11 100	단지	N 1 % 100	0 0	0 0		0 0	1 100		
	단지	N 6 % 54.5	3 27.3	1 9.1	1 9.1			11 100	소계	N 73 % 36.5	4 2.0	1 0.5		122 61.0	200 100		
	소계	N 46 % 30.7	35 23.3	69 26.0	30 20.0			150 100	소계	N 73 % 36.5	4 2.0	1 0.5		122 61.0	200 100		

4. 경찰임무의 범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구분	범위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범위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너무 광범위 하다	너무 제한 되어 있다	보통 이다	축소 시켜야 한다					너무 광범위 하다	너무 제한 되어 있다	보통 이다	축소 시켜야 한다						
영역별	성남	N	1	11	25	6	X ² =12.41 DF=3 P=0.0061	성남	N	8	9	38	3	58	X ² =2.34 DF=3 P=0.5048			
		%	8.7	23.9	54.3	13.0			100	%	13.8	15.5	65.5	5.2			100	
	성여	N	20	13	18	3	54	X ² =9.47 DF=12 P=0.6622	성여	N	3	10	28	1	42		X ² =8.48 DF=12 P=0.7464	
		%	37.0	21.1	33.3	5.6	100			%	7.1	23.8	66.7	2.4	100			
	연령별	10대	N	4	6	14	2	26	X ² =1938 DF=9 P=0.3206	10대	N	6	8	42	1		57	X ² =55.43 DF=9 P=0.0000
			%	15.1	23.1	53.8	7.7	100			%	10.5	14.9	73.7	1.8		100	
		20대	N	12	8	17	5	42		20대	N	4	10	21	3		38	
			%	28.6	19.0	40.5	11.9	100			%	10.5	26.3	55.3	7.9		100	
		30대	N	5	3	3	2	13		30대	N	6	6	1	0		1	
			%	38.5	23.1	23.1	15.4	100			%	0	0	100	0		100	
	40대	N	2	4	5	0	11	40대	N	1	1	1	0	3				
		%	18.2	36.4	45.5	0	100		%	33.3	33.3	33.3	0	100				
50대 이상	N	1	3	4	0	8	50대 이상	N	0	0	1	0	1					
	%	12.5	37.5	50.0	0	100		%	0	0	100	0	100					
거주지역별	도시	N	14	10	16	6	46	X ² =2.79 DF=3 P=0.4245	도시	N	8	13	39	4	64	X ² =7.31 DF=9 P=0.6048		
		%	30.4	21.7	34.8	13.9	100			%	12.5	20.3	60.9	6.3	100			
	소도시	N	6	8	18	1	33		소도시	N	3	6	26	0	35			
		%	18.2	24.2	54.5	3.0	100			%	8.6	17.1	74.3	0	100			
	농촌	N	4	6	6	2	18		농촌	N	0	0	1	0	1			
		%	22.2	33.3	33.3	11.1	100			%	0	0	100	0	100			
공업단지	N	0	0	3	0	3	공업단지	N	0	0	0	0	0					
	%	0	0	100	0	100		%	0	0	0	0	0					
소계	N	24	24	43	9	100	소계	N	11	19	66	4	100					
%	24.0	24.0	43.0	9.0	100	%	11.0	19.0	66.0	4.0	100							
연령별	성남	N	11	19	32	8	70	X ² =18.77 DF=12 P=0.0943	성남	N	29	12	29	12	82	X ² =5.31 DF=3 P=0.1504		
		%	15.7	27.1	45.7	11.4	100			%	35.4	14.6	35.4	14.6	100			
	성여	N	6	26	46	8	86	성여	N	43	30	36	9	118				
		%	7.5	32.5	50.0	10.0	100		%	36.1	25.4	29.5	7.6	100				
	10대	N	5	17	18	2	42	10대	N	4	0	6	1	11				
		%	11.5	46.5	42.9	4.8	100		%	36.4	0	54.5	9.1	100				
	20대	N	10	14	37	5	66	20대	N	17	8	19	6	50				
		%	15.2	21.2	56.1	7.6	100		%	34.6	16.0	38.0	12.0	100				
	30대	N	0	6	11	3	20	30대	N	13	8	6	3	30				
		%	0	30.0	55.0	15.0	100		%	43.3	26.7	20.0	10.0	100				
	40대	N	1	5	4	3	13	40대	N	27	16	21	3	67				
		%	7.7	38.5	30.8	23.1	100		%	40.3	23.9	31.3	4.5	100				
50대 이상	N	1	3	2	3	9	50대 이상	N	11	10	13	8	42					
	%	11.1	33.3	22.2	33.3	100		%	26.2	23.8	31.0	19.0	100					
거주지역별	도시	N	10	15	24	6	55	X ² =12.87 DF=9 P=0.1684	도시	N	61	38	56	17	172	X ² =731 DF=9 P=0.6048		
		%	18.2	27.3	43.6	10.9	100			%	35.5	22.1	32.6	9.9	100			
	소도시	N	6	26	44	6	82		소도시	N	10	3	7	3	23			
		%	7.3	31.7	53.7	7.3	100			%	43.5	13.0	31.4	13.0	100			
	농촌	N	0	1	0	1	2		농촌	N	1	0	2	1	4			
		%	0	50.0	0	50.0	100			%	25.0	0	50.0	25.0	100			
공업단지	N	1	3	4	3	11	공업단지	N	0	1	0	0	1					
	%	9.1	27.3	36.4	27.3	100		%	0	100	0	0	100					
소계	N	17	45	72	16	150	소계	N	72	42	65	21	200					
%	11.3	30.0	48.0	10.7	100	%	36.0	21.0	32.5	10.5	100							

5. 치안상태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구분	이주 좋다	보통 이다	불안 하다	매우 불안 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이주 좋다	보통 이다	불안 하다	매우 불안 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원	성남	N	0	33	10	3	46	X ² =6.08 DF=3 P=0.1078	성남	N	22	29	6	1	58	X ² =5.20 DF=3 P=0.1579
		%	0	7.7	21.7	6.5	100			%	37.9	50.0	10.3	1.7	100	
	여	N	5	31	14	1	54	X ² =12.71 DF=12 P=0.3905	여	N	8	25	5	0	42	X ² =8.73 DF=12 P=0.7262
		%	9.3	63.0	25.9	1.9	100			%	19.0	69.0	11.9	0	100	
	10대	N	0	18	7	1	26	X ² =12.71 DF=12 P=0.3905	10대	N	16	31	9	1	57	X ² =166.48 DF=9 P=0.0000
		%	0	69.2	26.9	3.8	100			%	28.1	54.1	15.8	1.8	100	
	20대	N	4	27	8	3	42	X ² =12.71 DF=12 P=0.3905	20대	N	13	23	2	0	38	X ² =166.48 DF=9 P=0.0000
		%	9.5	64.3	19.0	7.1	100			%	34.2	66.5	5.3	0	100	
	30대	N	0	8	5	0	13	X ² =12.71 DF=12 P=0.3905	30대	N	1	0	0	0	1	X ² =166.48 DF=9 P=0.0000
		%	0	61.5	38.5	0	100			%	100	0	0	0	100	
	40대	N	1	6	4	0	11	X ² =12.71 DF=12 P=0.3905	40대	N	0	3	0	0	3	X ² =166.48 DF=9 P=0.0000
		%	9.1	54.5	36.4	0	100			%	0	100	0	0	100	
50대	N	0	8	0	0	8	X ² =12.71 DF=12 P=0.3905	50대	N	0	1	0	0	1	X ² =166.48 DF=9 P=0.0000	
	%	0	100	0	0	100			%	0	100	0	0	100		
이상	N	0	0	0	0	0	X ² =12.71 DF=12 P=0.3905	이상	N	0	0	0	0	0	X ² =166.48 DF=9 P=0.0000	
	%	0	100	0	0	100			%	0	100	0	0	100		
국	대	N	2	29	12	3	46	X ² =2.94 DF=9 P=0.9666	대	N	16	41	7	0	64	X ² =6.28 DF=2 P=0.0433
		%	4.3	63.0	26.1	6.5	100			%	25.0	64.1	10.9	0	100	
	도시	N	2	22	8	1	33	X ² =2.94 DF=9 P=0.9666	도시	N	14	16	4	1	35	X ² =5.19 DF=8 P=0.7375
		%	6.1	66.7	24.2	3.0	100			%	40.0	45.7	11.4	2.9	100	
	농	N	1	14	3	0	18	X ² =2.94 DF=9 P=0.9666	농	N	0	1	0	0	1	X ² =3.30 DF=6 P=0.7659
		%	5.6	77.8	16.7	0	100			%	0	100	0	0	100	
	어촌	N	0	2	1	0	3	X ² =2.94 DF=9 P=0.9666	어촌	N	0	0	0	0	0	X ² =3.30 DF=6 P=0.7659
		%	0	66.7	33.3	0	100			%	0	0	0	0	100	
	공업	N	0	0	0	0	0	X ² =2.94 DF=9 P=0.9666	공업	N	0	0	0	0	0	X ² =3.30 DF=6 P=0.7659
		%	0	66.7	33.3	0	100			%	0	0	0	0	100	
	단지	N	0	0	0	0	0	X ² =2.94 DF=9 P=0.9666	단지	N	0	0	0	0	0	X ² =3.30 DF=6 P=0.7659
		%	0	66.7	33.3	0	100			%	0	0	0	0	100	
소계	N	5	67	24	4	100	X ² =2.94 DF=9 P=0.9666	소계	N	30	58	11	1	100	X ² =3.30 DF=6 P=0.7659	
	%	5.0	67.0	24.0	4.0	100			%	30.0	58.0	11.0	1.0	100		
미	성남	N	7	40	19	4	70	X ² =1.52 DF=3 P=0.6776	성남	N	0	21	43	8	82	X ² =6.28 DF=2 P=0.0433
		%	10.0	57.1	27.1	5.7	100			%	0	37.8	52.4	9.8	100	
	여	N	5	45	22	8	80	X ² =1.52 DF=3 P=0.6776	여	N	0	27	70	21	118	X ² =5.19 DF=8 P=0.7375
		%	6.3	56.3	27.5	10.0	100			%	0	22.9	59.3	17.8	100	
	10대	N	2	28	10	2	42	X ² =18.24 DF=12 P=0.1085	10대	N	0	3	6	2	11	X ² =3.30 DF=6 P=0.7659
		%	4.8	66.7	23.8	4.8	100			%	0	27.3	54.5	18.2	100	
	20대	N	5	42	14	5	66	X ² =18.24 DF=12 P=0.1085	20대	N	0	16	25	8	56	X ² =3.30 DF=6 P=0.7659
		%	7.6	63.6	21.2	7.6	100			%	0	32.0	52.0	16.0	100	
	30대	N	3	10	5	2	20	X ² =18.24 DF=12 P=0.1085	30대	N	0	10	15	5	30	X ² =3.30 DF=6 P=0.7659
		%	15.0	50.0	25.0	10.0	100			%	0	33.3	50.0	16.7	100	
	40대	N	1	4	7	1	13	X ² =18.24 DF=12 P=0.1085	40대	N	0	15	45	8	67	X ² =3.30 DF=6 P=0.7659
		%	7.7	30.8	53.8	7.7	100			%	0	20.9	67.2	11.9	100	
50대	N	1	1	5	2	9	X ² =18.24 DF=12 P=0.1085	50대	N	0	15	21	6	42	X ² =3.30 DF=6 P=0.7659	
	%	11.1	11.1	55.6	22.2	100			%	0	35.7	50.0	14.3	100		
이상	N	0	0	0	0	0	X ² =18.24 DF=12 P=0.1085	이상	N	0	0	0	0	0	X ² =3.30 DF=6 P=0.7659	
	%	0	0	0	0	0			%	0	0	0	0	100		
국	대	N	4	28	19	4	55	X ² =6.70 DF=9 P=0.6678	대	N	0	49	96	27	172	X ² =3.30 DF=6 P=0.7659
		%	7.3	50.9	34.5	7.3	100			%	0	28.5	55.8	15.7	100	
	도시	N	8	48	18	8	82	X ² =6.70 DF=9 P=0.6678	도시	N	0	8	14	1	23	X ² =3.30 DF=6 P=0.7659
		%	9.8	58.5	22.0	9.8	100			%	0	34.8	60.9	4.3	100	
	농	N	0	2	0	0	2	X ² =6.70 DF=9 P=0.6678	농	N	0	1	2	1	4	X ² =3.30 DF=6 P=0.7659
		%	0	100	0	0	100			%	0	25.0	50.0	25.0	100	
	어촌	N	0	7	4	0	11	X ² =6.70 DF=9 P=0.6678	어촌	N	0	0	1	0	1	X ² =3.30 DF=6 P=0.7659
		%	0	63.6	36.4	0	100			%	0	0	100	0	100	
	공업	N	0	0	0	0	0	X ² =6.70 DF=9 P=0.6678	공업	N	0	0	0	0	0	X ² =3.30 DF=6 P=0.7659
		%	0	63.6	36.4	0	100			%	0	0	100	0	100	
	단지	N	0	0	0	0	0	X ² =6.70 DF=9 P=0.6678	단지	N	0	0	0	0	0	X ² =3.30 DF=6 P=0.7659
		%	0	63.6	36.4	0	100			%	0	0	100	0	100	
소계	N	12	85	41	12	150	X ² =6.70 DF=9 P=0.6678	소계	N	0	58	113	29	200	X ² =3.30 DF=6 P=0.7659	
	%	8.0	56.7	27.3	8.0	100			%	0	29.0	56.5	14.5	100		

6. 경찰기능 중 가장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구분		범죄 수사 능력	범죄 예방 기능	사회 봉사 기능	행정 협조 기능	대첩 작전 기능	정보 기능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성	남	N 11 % 23.9	21 45.7	5 10.9	4 8.7	1 2.2	1 8.7	46	X ² =2.83 DF=5 P=0.7265	X ² =39.93 DF=15 P=0.0005
	여	N 11 % 20.4	24 44.4	11 20.4	2 3.7	2 3.7	4 7.4	54		
연령	10대	N 3 % 11.5	13 50.0	4 15.4	0 0	2 7.7	4 15.1	26	X ² =23.93 DF=20 P=0.2454	
		N 7 % 16.7	17 40.5	10 23.8	4 9.5	1 2.4	3 7.1	42		
	20대	N 6 % 46.2	4 30.8	1 7.7	2 15.4	0 0	0 0	13		
		N 4 % 36.4	6 54.5	0 0	0 0	0 0	1 9.1	11		
	30대	N 2 % 25.0	5 62.5	1 12.5	0 0	0 0	0 0	8		
		N 12 % 26.1	19 41.3	7 15.2	4 8.7	1 2.2	3 6.5	46		
	40대	N 5 % 15.2	15 45.5	7 21.2	1 3.0	1 3.0	4 12.1	33		
		N 4 % 22.2	9 50.0	2 11.1	1 5.6	1 5.6	1 5.6	18		
50대 이상	N 1 % 33.3	2 66.7	0 0	0 0	0 0	0 0	3			
	N 22 % 22.0	45 45.0	16 16.0	6 6.0	3 3.0	8 8.0	100			
거주지역	대도시	N 5 % 15.2	15 45.5	7 21.2	1 3.0	1 3.0	4 12.1	33	X ² =6.12 DF=15 P=0.9776	
	소도시	N 4 % 22.2	9 50.0	2 11.1	1 5.6	1 5.6	1 5.6	18		
농어촌	N 1 % 33.3	2 66.7	0 0	0 0	0 0	0 0	3			
	N 22 % 22.0	45 45.0	16 16.0	6 6.0	3 3.0	8 8.0	100			
성	남	N 12 % 17.1	35 50.0	11 15.7	1 1.4	1 1.4	10 14.3	70	X ² =8.21 DF=5 P=0.1452	
	여	N 24 % 30.0	28 35.0	16 20.0	4 5.0	2 2.5	6 7.5	80		
연령	10대	N 9 % 21.4	19 45.2	7 16.7	3 7.1	1 2.4	3 7.1	42	X ² =12.72 DF=20 P=0.8889	
		N 14 % 21.2	30 45.5	11 16.7	0 0	2 3.0	9 13.6	66		
	20대	N 6 % 30.0	7 35.0	5 25.0	1 5.0	0 0	1 5.0	20		
		N 4 % 30.8	5 38.5	2 15.4	1 7.7	0 0	1 7.7	13		
	30대	N 3 % 33.3	2 22.2	2 22.2	0 0	0 0	2 22.2	9		
		N 14 % 25.5	22 40.0	9 16.4	3 5.5	0 0	7 12.7	55		
	40대	N 19 % 23.2	36 43.9	14 17.1	2 2.4	3 3.7	8 9.8	82		
		N 6 % 0	1 50.0	1 50.0	0 0	0 0	0 0	2		
50대 이상	N 3 % 27.3	4 36.4	3 27.3	0 0	0 0	1 9.1	11			
	N 36 % 24.0	63 42.0	27 18.0	5 3.3	3 2.0	16 10.7	150			
거주지역	대도시	N 19 % 23.2	36 43.9	14 17.1	2 2.4	3 3.7	8 9.8	82	X ² =7.00 DF=15 P=0.9575	
	소도시	N 6 % 0	1 50.0	1 50.0	0 0	0 0	0 0	2		
농어촌	N 3 % 27.3	4 36.4	3 27.3	0 0	0 0	1 9.1	11			
	N 36 % 24.0	63 42.0	27 18.0	5 3.3	3 2.0	16 10.7	150			

구분		범죄 수사 능력	범죄 예방 기능	사회 봉사 기능	행정 협조 기능	대안적 접근 기능	정보 기능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국	성별	남	N 11	25	9	8	1	4	58	X ² =5.57 DF=5 P=0.3507		
		%	19.0	43.1	15.5	13.8	1.7	6.9	100			
	여	N	16	16	5	3	0	2	42			
		%	38.1	38.1	11.9	7.1	0	4.8	100			
	연령별	10대	N	18	21	10	5	0	3	57		X ² =18.91 DF=20 P=0.5279
			%	31.6	36.8	17.5	8.8	0	5.3	100		
		20대	N	8	17	3	6	1	3	38		
			%	21.1	44.7	7.9	15.8	2.6	7.9	100		
		30대	N	0	0	1	0	0	0	1		
			%	0	0	100	0	0	0	100		
	40대	N	0	3	0	0	0	0	3			
		%	0	100	0	0	0	0	100			
	50대 이상	N	1	0	0	0	0	0	1			
		%	100	0	0	0	0	0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18	24	10	7	1	4	64		X ² =9.86 DF=10 P=0.4528
			%	28.1	37.5	15.6	10.9	1.6	6.3	100		
		소도시	N	9	17	4	3	0	2	35		
			%	25.7	48.6	11.4	8.6	0	5.7	100		
농어촌		N	0	0	0	1	0	0	1			
		%	0	0	0	100	0	0	100			
공업단지	N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소계	N	27	41	14	11	1	5	100				
	%	27.0	41.0	14.0	11.0	1.0	5.0	100				
미국	성별	남	N 11	49	18	4	0	0	82	X ² =3.06 DF=5 P=0.6905		
		%	13.4	59.8	22.0	4.9	0	0	100			
	여	N	17	65	27	5	2	2	118			
		%	14.4	55.1	22.9	4.2	1.7	1.7	100			
	연령별	10대	N	1	7	3	0	0	0	11	X ² =23.30 DF=20 P=0.2742	
			%	9.1	63.6	27.3	0	0	0	100		
		20대	N	8	22	17	1	1	1	50		
			%	16.0	44.0	34.0	2.0	2.0	2.0	100		
		30대	N	3	19	6	2	0	0	30		
			%	10.0	63.3	20.0	6.7	0	0	100		
	40대	N	4	45	13	3	1	1	67			
		%	6.0	67.2	19.4	4.5	1.5	1.5	100			
	50대 이상	N	12	21	6	3	0	0	42			
		%	28.6	50.0	14.3	7.1	0	0	1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21	99	41	8	1	2	172	X ² =12.40 DF=15 P=0.6487	
			%	12.2	57.6	23.8	4.7	0.6	1.2	100		
		소도시	N	5	13	3	1	1	0	23		
			%	21.7	56.5	13.0	4.3	4.3	0	100		
농어촌		N	1	2	1	0	0	0	4			
		%	25.0	50.0	25.0	0	0	0	100			
공업단지	N	1	0	0	0	0	0	1				
	%	100	0	0	0	0	0	100				
소계	N	28	114	45	9	2	2	200				
	%	14.0	57.0	22.5	4.5	1.0	1.0	100				

7.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당신이 느끼기에...

구분	너무 높다	약간 더높은 편이다	비슷 하다	낮은 편이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너무 높다	약간 더높은 편이다	비슷 하다	낮은 편이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	성남	N	15	8	19	4	46	성남	N	1	7	5	45	58	X ² =5.07 DF=3 P=0.1668
		%	32.6	17.4	41.3	8.7	100		%	1.7	12.1	8.6	77.6	100	
	별여	N	7	15	25	7	54	별여	N	0	5	16	27	42	
		%	13.9	27.8	46.3	13.0	100		%	0	11.9	23.8	64.3	100	
	10대	N	5	4	11	6	26	10대	N	1	6	9	41	57	
		%	19.2	15.4	42.3	23.1	100		%	1.8	10.5	18.3	71.9	100	
	20대	N	12	12	15	3	42	20대	N	0	4	5	29	38	
		%	28.6	28.6	35.7	7.1	100		%	0	16.5	13.2	76.3	100	
	30대	N	1	5	7	0	15	30대	N	0	0	0	1	1	
		%	7.7	38.5	53.8	0	100		%	0	0	0	100	100	
	40대	N	1	0	8	2	11	40대	N	0	2	0	1	3	
		%	9.1	0	72.7	18.2	100		%	0	66.7	0	33.3	100	
50대	N	3	2	3	0	8	50대	N	0	0	1	0	1		
	%	37.5	25.0	37.5	0	100		%	0	0	100	0	100		
이상	N	13	13	19	1	46	이상	N	1	7	10	46	64		
	%	28.3	28.3	41.3	2.2	100		%	1.6	10.9	15.6	71.9	100		
도시	N	7	4	16	6	33	도시	N	0	5	5	25	35		
	%	21.2	12.1	48.5	18.2	100		%	0	14.3	14.3	71.4	100		
농촌	N	2	4	8	4	18	농촌	N	0	0	0	1	1		
	%	11.1	22.2	44.4	22.2	100		%	0	0	0	100	100		
기업	N	0	2	1	0	3	기업	N	0	0	0	0	0		
	%	0	66.7	33.3	0	100		%	0	0	0	0	0		
단지	N	22	23	44	11	100	단지	N	1	12	15	72	100		
	%	22.0	23.0	44.0	11.0	100		%	1.0	12.0	15.0	72.0	100		
소계	N	17	23	23	7	70	소계	N	24	34	17	7	82		
	%	24.3	32.9	32.9	10.0	100		%	29.3	41.5	20.7	8.5	100		
한	성남	N	18	32	22	8	80	성남	N	37	40	24	17	118	X ² =2.21 DF=3 P=0.5299
		%	22.5	40.0	27.5	10.0	100		%	31.4	33.9	20.3	14.4	100	
	10대	N	7	23	9	3	42	10대	N	4	3	2	2	11	
		%	16.7	54.8	21.1	7.1	100		%	36.4	27.3	18.2	18.2	100	
	20대	N	15	22	21	8	66	20대	N	14	16	14	6	50	
		%	22.7	33.3	31.8	12.1	100		%	28.0	32.0	28.0	12.0	100	
	30대	N	5	4	10	1	20	30대	N	5	14	6	5	30	
		%	25.0	20.0	50.0	5.0	100		%	16.7	46.7	20.0	16.7	100	
	40대	N	4	5	3	1	13	40대	N	18	29	13	7	67	
		%	30.8	38.5	23.1	7.7	100		%	26.9	43.3	19.4	10.4	100	
	50대	N	4	1	2	2	9	50대	N	20	12	6	4	42	
		%	44.1	11.1	22.2	22.2	100		%	47.6	28.6	14.3	9.5	100	
이상	N	12	18	19	6	55	이상	N	49	67	36	20	172		
	%	21.8	32.7	34.5	10.9	100		%	28.5	39.0	20.9	11.6	100		
도시	N	19	33	21	9	82	도시	N	11	5	4	3	33		
	%	23.2	40.2	25.6	11.0	100		%	47.8	21.7	17.4	13.0	100		
농촌	N	0	1	1	0	2	농촌	N	1	2	0	1	4		
	%	0	50.0	50.0	0	100		%	25.0	50.0	0	25.0	100		
기업	N	4	3	4	0	11	기업	N	0	0	1	0	1		
	%	36.4	27.3	36.4	0	100		%	0	0	100	0	100		
단지	N	35	55	45	15	150	단지	N	61	74	41	24	200		
	%	23.3	36.7	30.0	10.0	100		%	30.5	37.0	20.5	12.0	100		
소계	N	17	23	23	7	70	소계	N	24	34	17	7	82		
	%	24.3	32.9	32.9	10.0	100		%	29.3	41.5	20.7	8.5	100		
국	성남	N	18	32	22	8	80	성남	N	37	40	24	17	118	X ² =9.77 DF=9 P=0.3698
		%	22.5	40.0	27.5	10.0	100		%	31.4	33.9	20.3	14.4	100	
	10대	N	7	23	9	3	42	10대	N	4	3	2	2	11	
		%	16.7	54.8	21.1	7.1	100		%	36.4	27.3	18.2	18.2	100	
	20대	N	15	22	21	8	66	20대	N	14	16	14	6	50	
		%	22.7	33.3	31.8	12.1	100		%	28.0	32.0	28.0	12.0	100	
	30대	N	5	4	10	1	20	30대	N	5	14	6	5	30	
		%	25.0	20.0	50.0	5.0	100		%	16.7	46.7	20.0	16.7	100	
	40대	N	4	5	3	1	13	40대	N	18	29	13	7	67	
		%	30.8	38.5	23.1	7.7	100		%	26.9	43.3	19.4	10.4	100	
	50대	N	4	1	2	2	9	50대	N	20	12	6	4	42	
		%	44.1	11.1	22.2	22.2	100		%	47.6	28.6	14.3	9.5	100	
이상	N	12	18	19	6	55	이상	N	49	67	36	20	172		
	%	21.8	32.7	34.5	10.9	100		%	28.5	39.0	20.9	11.6	100		
도시	N	19	33	21	9	82	도시	N	11	5	4	3	33		
	%	23.2	40.2	25.6	11.0	100		%	47.8	21.7	17.4	13.0	100		
농촌	N	0	1	1	0	2	농촌	N	1	2	0	1	4		
	%	0	50.0	50.0	0	100		%	25.0	50.0	0	25.0	100		
기업	N	4	3	4	0	11	기업	N	0	0	1	0	1		
	%	36.4	27.3	36.4	0	100		%	0	0	100	0	100		
단지	N	35	55	45	15	150	단지	N	61	74	41	24	200		
	%	23.3	36.7	30.0	10.0	100		%	30.5	37.0	20.5	12.0	100		

8. 경찰관들의 임무수행능력은?

구 분			아주 탁월하다	우수 하다	보통 이다	모자 란다	많이 모자 란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	성 별	남	N	0	10	30	5	1	46	$X^2 = 3.40$ $DF = 4$ $P = 0.4927$					
			%	0	21.7	65.2	10.9	2.2	100						
	여	N	1	6	36	9	2	54							
		%	1.9	11.1	66.7	16.7	3.7	100							
	연 령 별	10대	N	0	2	17	5	2	26		$X^2 = 24.11$ $DF = 16$ $P = 0.0871$				
			%	0	7.7	65.4	19.2	7.7	100						
		20대	N	0	6	31	4	1	42						
			%	0	14.3	73.8	9.5	2.4	100						
		30대	N	0	1	8	4	0	13						
			%	0	7.7	61.5	30.8	0	100						
		40대	N	1	4	5	1	0	11						
			%	9.1	36.4	45.5	9.1	0	100						
		50대 이상	N	0	3	5	0	0	8						
			%	0	37.5	62.5	0	0	100						
		국	거 주 지 역 별	대도시	N	0	6	31	7			2	46	$X^2 = 7.11$ $DF = 12$ $P = 0.8505$	
					%	0	13.0	67.4	15.2			4.3	100		
	소도시			N	0	6	22	4	1		33				
				%	0	18.2	66.7	12.1	3.0		100				
농어촌	N			1	3	11	3	0	18						
	%		5.6	16.7	61.1	16.7	0	100							
공업단지	N		0	1	2	0	0	3							
	%		0	33.3	66.7	0	0	100							
소 계	N		1	16	66	14	3	100	$X^2 = 62.42$ $DF = 12$ $P = 0.0000$						
	%		1.0	16.0	66.0	14.0	3.0	100							
비	성 별	남	N	3	11	36	17	3		70	$X^2 = 3.99$ $DF = 4$ $P = 0.4080$				
			%	4.3	15.7	51.4	24.3	4.3		100					
	여	N	1	12	51	12	4	80							
		%	1.3	15.0	63.8	15.0	5.0	100							
	연 령 별	10대	N	2	5	28	7	0		42		$X^2 = 13.51$ $DF = 16$ $P = 0.6351$			
			%	4.8	11.9	66.7	16.7	0		100					
		20대	N	0	13	36	14	3		66					
			%	0	19.7	54.5	21.2	4.5		100					
		30대	N	1	3	12	2	2		20					
			%	5.0	15.0	60.0	10.0	10.0		100					
		40대	N	1	1	7	3	1		13					
			%	7.7	7.7	53.8	23.1	7.7		100					
		50대 이상	N	0	1	4	3	1		9					
			%	0	11.1	44.4	33.3	11.1		100					
		국	거 주 지 역 별	대도시	N	3	9	31		9			3	55	$X^2 = 8.26$ $DF = 12$ $P = 0.7647$
					%	5.5	16.4	56.4		16.4			5.5	100	
	소도시			N	1	14	45	18	4	82					
				%	1.2	17.1	54.9	22.0	4.9	100					
농어촌	N			0	0	2	0	0	2						
	%		0	0	100	0	0	100							
공업단지	N		0	0	9	2	0	11							
	%		0	0	81.8	18.2	0	100							
소 계	N		4	23	87	29	7	150							
	%		0.7	15.3	58.0	19.3	4.7	100							

구		구		아주	우수	보통	모자	많이	계	집단간의	국가간의	
분		분		탁월하다	하다	이다	란다	모자란다				차이분석
영	성	남	N	4	22	22	9	1	58	$X^2=6.27$ DF=4 P=0.1801		
			%	6.9	37.9	37.9	15.5	1.7	100			
	여	N	0	11	22	9	0	42				
		%	0	26.2	52.4	21.4	0	100				
	연령	10대	N	1	16	28	12	0	57			$X^2=13.95$ DF=16 P=0.8125
			%	1.8	28.1	49.1	21.1	0	100			
		20대	N	3	13	15	6	1	38			
			%	7.9	34.2	39.5	15.8	2.6	100			
		30대	N	0	1	0	0	0	1			
			%	0	100	0	0	0	100			
	40대	N	0	2	1	0	0	3				
		%	0	66.7	33.3	0	0	100				
	50대 이상	N	0	1	0	0	0	1				
		%	0	100	0	0	0	100				
	주거지역	대도시	N	2	23	29	9	1	64			$X^2=5.44$ DF=8 P=0.7191
			%	3.1	35.9	45.3	14.1	1.6	100			
		소도시	N	2	9	15	9	0	35			
			%	5.7	25.7	42.9	25.7	0	100			
농어촌		N	0	1	0	0	0	1				
		%	0	100	0	0	0	100				
공업단지		N	0	0	0	0	0	0				
		%	0	0	0	0	0	0				
소 계		N	4	33	44	18	1	100				
		%	40	33.0	44.0	18.0	1.0	100				
성	남	N	1	8	45	21	7	82	$X^2=4.82$ DF=4 P=0.3067			
		%	1.2	9.8	54.9	25.6	8.5	100				
여	N	0	5	62	37	14	118					
	%	0	4.2	52.5	31.4	11.9	100					
연령	10대	N	0	0	5	5	1	11	$X^2=18.53$ DF=16 P=0.2937			
		%	0	0	45.5	45.5	9.1	100				
	20대	N	0	3	19	17	11	50				
		%	0	6.0	38.0	34.0	22.0	100				
	30대	N	0	2	19	6	3	30				
		%	0	6.7	63.3	20.0	10.0	100				
40대	N	1	5	39	17	5	57					
	%	1.5	7.5	58.2	25.4	7.5	100					
50대 이상	N	0	3	25	13	1	42					
	%	0	7.1	59.5	31.0	2.4	100					
주거지역	대도시	N	1	11	95	46	19	172	$X^2=7.28$ DF=12 P=0.8382			
		%	0.6	6.4	55.2	26.7	11.0	100				
	소도시	N	0	2	11	9	1	23				
		%	0	8.7	47.8	39.1	4.3	100				
	농어촌	N	0	0	1	2	1	4				
		%	0	0	25.0	50.0	25.0	100				
	공업단지	N	0	0	0	1	0	1				
		%	0	0	0	100	0	100				
소 계		N	1	13	107	58	21	203				
		%	0.5	6.5	53.5	29.0	10.5	100				

9. 치안상태는 80년대에 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

구분		많이 좋아졌다	좀 나아진 편이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나빠졌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많이 좋아졌다	좀 나아진 편이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나빠졌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역	성별	남	N 5	24	9	8	46	X ² =3.33 DF=3 P=0.2736	성별	남	N 2	13	18	25	58	X ² =4.53 DF=3 P=0.2013	
		%	10.9	52.2	19.6	17.4	100			%	3.4	22.4	31.0	43.1	100		
	연령	여	N 2	29	17	6	54	X ² =21.09 DF=12 P=0.0144	10대	남	N 3	13	20	21	57	X ² =11.60 DF=12 P=0.4780	
		%	3.7	53.7	31.5	11.1	100			%	4.8	7.1	42.9	45.2	100		
	성별	10대	N 4	16	2	4	26	X ² =11.53 DF=9 P=0.2409	20대	남	N 1	3	15	19	38	X ² =70.23 DF=9 P=0.0000	
		%	15.4	61.5	7.7	15.4	100			%	5.3	22.8	35.1	36.8	100		
	연령	20대	N 2	26	12	2	42	X ² =3.21 DF=3 P=0.3600	30대	남	N 0	0	1	2	1	X ² =16.23 DF=12 P=0.1807	
		%	4.8	61.9	28.6	4.8	100			%	2.6	7.9	39.5	50.0	100		
	성별	30대	N 1	6	1	2	10	X ² =7.51 DF=9 P=0.5837	40대	남	N 0	0	0	3	3	X ² =10.01 DF=9 P=0.3500	
		%	7.7	46.2	30.8	15.4	100			%	0	0	100	0	100		
	연령	40대	N 0	3	6	2	11	X ² =10.97 DF=9 P=0.2807	50대	남	N 0	0	0	1	1	X ² =10.97 DF=9 P=0.2807	
		%	0	27.3	54.5	18.2	100			%	0	0	0	100	100		
성별	50대	N 0	2	2	4	8	X ² =11.53 DF=9 P=0.2409	이상	남	N 0	0	0	1	1	X ² =10.97 DF=9 P=0.2807		
	%	0	25.0	25.0	50.0	100			%	0	0	0	100	100			
연령	대도시	N 1	27	13	5	46	X ² =70.23 DF=9 P=0.0000	도시	남	N 4	7	22	31	64	X ² =10.97 DF=9 P=0.2807		
	%	2.2	58.7	28.3	10.9	100			%	6.3	10.9	34.4	48.4	100			
성별	중도시	N 4	18	8	3	33	X ² =11.53 DF=9 P=0.2409	거주지역별	남	N 9	8	14	13	35	X ² =10.97 DF=9 P=0.2807		
	%	12.1	54.5	24.2	9.1	100			%	0	22.9	10.0	37.1	100			
연령	농촌	N 2	6	4	6	18	X ² =11.53 DF=9 P=0.2409	농촌	남	N 0	1	0	0	1	X ² =10.97 DF=9 P=0.2807		
	%	11.1	33.3	22.2	33.3	100			%	0	100	0	0	100			
성별	공업단지	N 0	2	1	0	3	X ² =11.53 DF=9 P=0.2409	공업단지	남	N 0	0	0	0	0	X ² =10.97 DF=9 P=0.2807		
	%	0	66.7	33.3	0	100			%	0	0	0	0	0			
연령	소계	N 7	53	26	14	100	X ² =11.53 DF=9 P=0.2409	소계	남	N 4	16	36	44	100	X ² =10.97 DF=9 P=0.2807		
	%	7.0	53.0	26.0	14.0	100			%	4.0	16.0	36.0	44.0	100			
국가	성별	남	N 6	34	18	12	70	X ² =3.21 DF=3 P=0.3600	성별	남	N 4	29	28	21	82	X ² =4.53 DF=3 P=0.2013	
		%	8.6	48.6	25.7	17.1	100			%	4.9	35.4	34.1	25.6	100		
	연령	여	N 13	54	24	9	86	X ² =15.02 DF=12 P=0.2403	10대	남	N 5	34	57	22	118	X ² =16.23 DF=12 P=0.1807	
		%	16.3	42.5	30.0	11.3	100			%	4.2	26.8	48.3	18.6	100		
	성별	10대	N 7	20	10	5	42	X ² =7.51 DF=9 P=0.5837	20대	남	N 0	3	5	3	11	X ² =10.97 DF=9 P=0.2807	
		%	16.7	47.6	23.8	11.9	100			%	0	27.3	45.5	27.3	100		
	연령	20대	N 6	35	19	6	66	X ² =7.51 DF=9 P=0.5837	30대	남	N 1	17	14	18	50	X ² =16.23 DF=12 P=0.1807	
		%	9.1	53.0	28.8	9.1	100			%	2.0	34.0	28.0	36.0	100		
	성별	30대	N 5	7	4	4	20	X ² =7.51 DF=9 P=0.5837	40대	남	N 0	9	16	5	30	X ² =10.97 DF=9 P=0.2807	
		%	25.0	35.0	20.0	20.0	100			%	0	30.0	53.3	16.7	100		
	연령	40대	N 1	3	5	4	13	X ² =7.51 DF=9 P=0.5837	50대	남	N 4	2	31	11	67	X ² =10.97 DF=9 P=0.2807	
		%	7.7	23.1	38.5	30.8	100			%	6.0	31.3	46.3	16.4	100		
성별	50대	N 0	3	4	2	9	X ² =7.51 DF=9 P=0.5837	이상	남	N 4	13	19	6	42	X ² =10.97 DF=9 P=0.2807		
	%	0	33.3	44.4	22.2	100			%	9.5	31.0	45.2	14.3	100			
연령	대도시	N 9	24	12	10	55	X ² =7.51 DF=9 P=0.5837	도시	남	N 8	53	25	36	172	X ² =10.97 DF=9 P=0.2807		
	%	16.4	43.6	21.8	18.2	100			%	4.7	30.8	45.6	20.9	100			
성별	중도시	N 10	36	27	9	82	X ² =7.51 DF=9 P=0.5837	거주지역별	남	N 1	9	9	4	23	X ² =10.97 DF=9 P=0.2807		
	%	12.2	43.9	32.9	11.0	100			%	4.3	39.1	39.1	17.4	100			
연령	농촌	N 0	2	0	0	2	X ² =7.51 DF=9 P=0.5837	농촌	남	N 0	0	1	3	4	X ² =10.97 DF=9 P=0.2807		
	%	0	100	0	0	100			%	0	0	25.0	75.0	100			
성별	어촌	N 0	1	0	0	1	X ² =7.51 DF=9 P=0.5837	어촌	남	N 0	1	0	0	1	X ² =10.97 DF=9 P=0.2807		
	%	0	100	0	0	100			%	0	100	0	0	100			
연령	공업단지	N 0	6	3	2	11	X ² =7.51 DF=9 P=0.5837	공업단지	남	N 0	0	0	0	0	X ² =10.97 DF=9 P=0.2807		
	%	0	54.5	27.3	18.2	100			%	0	100	0	0	100			
성별	소계	N 19	68	42	21	150	X ² =7.51 DF=9 P=0.5837	소계	남	N 9	63	85	43	200	X ² =10.97 DF=9 P=0.2807		
	%	12.7	45.3	28.0	14.0	100			%	4.5	31.5	42.5	21.5	100			

10. 경찰의 대민 봉사행정에 있어서 경찰관의 근무행태는?

구분	매우 고압적이다	고압적이다	사부적이다	친절하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많이 좋았다	종종 나아진 편이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나빠졌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	성남	N	4	11	9	22	X ² =2.56 DF=3 P=0.4638	성남	N	5	15	31	7	58	X ² =1.60 DF=3 P=0.6605	X ² =139.07 F=9 P=0.0000	
		%	8.7	23.9	19.6	47.8			100	%	8.6	25.9	53.4	12.1			100
	성여	N	1	15	10	28	54	X ² =15.60 DF=12 P=0.2105	성여	N	4	7	27	4	42		X ² =16.77 DF=6 P=0.0102
		%	1.9	27.8	18.5	51.9	100			%	9.5	16.7	64.3	9.5	100		
	10대	N	0	7	8	11	26	X ² =1.90 DF=3 P=0.5941	10대	N	5	16	33	3	57		X ² =17.85 DF=12 P=0.1203
		%	0	26.9	30.8	42.3	100			%	8.8	28.1	57.9	5.3	100		
	20대	N	4	12	5	21	42	X ² =8.21 DF=9 P=0.5134	20대	N	4	6	22	6	38		X ² =9.27 DF=12 P=0.6800
		%	9.5	28.6	11.9	50.0	100			%	10.5	15.8	57.9	15.8	100		
	30대	N	0	3	5	5	13	X ² =13.39 DF=9 P=0.1456	30대	N	0	0	1	0	1		X ² =1.70 DF=6 P=0.6375
		%	0	23.1	38.5	38.5	100			%	0	0	100	0	100		
	40대	N	0	3	1	7	11	X ² =3.21 DF=9 P=0.9000	40대	N	0	0	1	2	3		X ² =1.50 DF=6 P=0.6000
		%	0	27.3	9.1	63.6	100			%	0	0	33.3	66.7	100		
	50대	N	1	1	0	6	8	X ² =1.50 DF=6 P=0.6000	50대	N	0	0	1	0	1		X ² =1.50 DF=6 P=0.6000
		%	12.5	12.5	0	75.0	100			%	0	0	100	0	100		
	이상	N	4	14	3	20	46	X ² =9.63 DF=9 P=0.3811	이상	N	7	19	31	7	64		X ² =16.77 DF=6 P=0.0102
%		8.7	30.4	17.4	43.5	100	%			10.9	29.7	48.4	10.9	100			
부	도시	N	0	8	8	17	33	X ² =1.90 DF=3 P=0.5941	도시	N	2	3	27	3	35	X ² =13.39 DF=9 P=0.1456	
		%	0	24.2	24.2	51.5	100			%	5.7	8.6	77.1	8.6	100		
	농촌	N	1	2	3	12	18	X ² =1.90 DF=3 P=0.5941	농촌	N	0	0	0	1	1	X ² =1.90 DF=3 P=0.5941	
		%	5.6	11.1	16.7	66.7	100			%	0	0	0	100	100		
	공업단지	N	0	2	0	1	3	X ² =1.90 DF=3 P=0.5941	공업단지	N	0	0	0	0	0	X ² =1.90 DF=3 P=0.5941	
		%	0	66.7	0	33.3	100			%	0	0	0	0	0		
소계	N	5	26	19	50	100	X ² =1.90 DF=3 P=0.5941	소계	N	9	22	58	11	100	X ² =1.90 DF=3 P=0.5941		
	%	5.0	26.0	19.0	50.0	100			%	9.0	22.0	58.0	11.0	100			
미	성남	N	7	17	20	26	70	X ² =1.90 DF=3 P=0.5941	성남	N	10	42	27	3	82	X ² =1.70 DF=6 P=0.6375	X ² =13.39 DF=9 P=0.1456
		%	10.0	24.3	28.6	37.1	100			%	12.2	51.2	32.9	3.7	100		
	성여	N	4	18	22	36	80	X ² =17.85 DF=12 P=0.1203	성여	N	10	55	48	5	118	X ² =9.27 DF=12 P=0.6800	
		%	5.0	22.5	27.5	45.0	100			%	8.5	46.6	40.7	4.2	100		
	10대	N	1	8	13	20	42	X ² =8.21 DF=9 P=0.5134	10대	N	0	7	4	0	11	X ² =1.90 DF=3 P=0.5941	
		%	2.4	19.0	31.0	47.6	100			%	0	63.6	36.4	0	100		
	20대	N	4	17	23	22	66	X ² =1.90 DF=3 P=0.5941	20대	N	7	23	18	2	50	X ² =1.90 DF=3 P=0.5941	
		%	6.1	25.8	34.8	33.3	100			%	14.0	46.0	36.0	4.0	100		
	30대	N	3	5	1	11	20	X ² =1.90 DF=3 P=0.5941	30대	N	3	16	9	0	30	X ² =1.90 DF=3 P=0.5941	
		%	15.0	25.0	5.0	55.0	100			%	10.0	60.0	30.0	4.0	100		
	40대	N	3	2	2	6	13	X ² =1.90 DF=3 P=0.5941	40대	N	6	34	24	3	37	X ² =1.90 DF=3 P=0.5941	
		%	23.1	15.4	15.4	46.2	100			%	9.0	50.7	35.8	4.5	100		
	50대	N	0	3	3	3	9	X ² =1.90 DF=3 P=0.5941	50대	N	4	15	20	3	42	X ² =1.90 DF=3 P=0.5941	
		%	0	33.3	33.3	33.3	100			%	9.5	35.7	47.6	7.1	100		
	이상	N	6	12	15	22	55	X ² =1.90 DF=3 P=0.5941	이상	N	20	80	67	5	172	X ² =1.90 DF=3 P=0.5941	
%		6.1	23.2	26.8	43.9	100	%			11.6	46.5	39.0	2.9	100			
국	도시	N	5	19	22	36	82	X ² =1.90 DF=3 P=0.5941	도시	N	0	15	6	2	23	X ² =1.90 DF=3 P=0.5941	
		%	6.1	23.2	26.8	43.9	100			%	0	65.2	26.1	8.7	100		
	농촌	N	0	0	2	0	2	X ² =1.90 DF=3 P=0.5941	농촌	N	0	1	2	1	4	X ² =1.90 DF=3 P=0.5941	
		%	0	0	100	0	100			%	0	25.0	50.0	25.0	100		
	공업단지	N	0	4	3	4	11	X ² =1.90 DF=3 P=0.5941	공업단지	N	0	1	0	0	1	X ² =1.90 DF=3 P=0.5941	
		%	0	36.4	27.3	36.4	100			%	0	100	0	0	100		
소계	N	11	35	42	62	150	X ² =1.90 DF=3 P=0.5941	소계	N	20	97	75	8	200	X ² =1.90 DF=3 P=0.5941		
	%	7.3	23.3	28.0	41.3	100			%	10.0	48.5	37.5	4.0	100			

11. 경찰관의 지역순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구분		꼭 필요하다	우범지역에만 필요	하나마다이다	비상시에만 필요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구분		꼭 필요하다	우범지역에만 필요	하나마다이다	비상시에만 필요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영	성별	남	N 30 % 65.2	N 11 % 23.9	N 4 % 8.7	N 1 % 2.2	N 46	$X^2=0.73$ DF=3 P=0.8662	성별	남	N 40 % 69.0	N 11 % 19.0	N 6 % 10.3	N 1 % 1.7	N 58	$X^2=1.62$ DF=3 P=0.6541	$X^2=45.09$ DF=9 P=0.0000		
		여	N 31 % 57.4	N 15 % 27.8	N 6 % 11.1	N 2 % 3.7	N 54			여	N 33 % 78.6	N 6 % 14.3	N 3 % 7.1	N 0 % 0	N 42				
	연령	10대	N 15 % 57.7	N 6 % 23.1	N 5 % 19.2	N 0 % 0	N 26	$X^2=16.63$ DF=12 P=0.1642	연령	10대	N 42 % 73.7	N 9 % 15.8	N 6 % 10.5	N 0 % 0	N 57	$X^2=3.43$ DF=12 P=0.9917			
		20대	N 21 % 50.0	N 15 % 35.7	N 3 % 7.1	N 3 % 7.1	N 42			20대	N 27 % 71.1	N 7 % 18.4	N 3 % 7.9	N 1 % 2.6	N 38				
		30대	N 8 % 61.5	N 3 % 23.1	N 2 % 15.4	N 0 % 0	N 13			30대	N 1 % 100	N 0 % 0	N 0 % 0	N 0 % 0	N 1				
		40대	N 9 % 81.8	N 2 % 18.2	N 0 % 0	N 0 % 0	N 11			40대	N 2 % 66.7	N 1 % 33.3	N 0 % 0	N 0 % 0	N 3				
		50대	N 8 % 100	N 0 % 0	N 0 % 0	N 0 % 0	N 8			50대	N 1 % 100	N 0 % 0	N 0 % 0	N 0 % 0	N 1				
		이상	N 0 % 0	N 0 % 0	N 0 % 0	N 0 % 0	N 0			이상	N 0 % 0	N 0 % 0	N 0 % 0	N 0 % 0	N 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28 % 60.9	N 11 % 23.9	N 6 % 13.0	N 1 % 2.2	N 46	$X^2=45.54$ DF=9 P=0.0000	거주지역별	대도시	N 46 % 71.9	N 11 % 17.2	N 6 % 9.4	N 1 % 1.6	N 64	$X^2=11.19$ DF=6 P=0.0827			
		소도시	N 20 % 60.6	N 11 % 33.3	N 2 % 6.1	N 0 % 0	N 33			소도시	N 27 % 77.1	N 6 % 17.1	N 2 % 5.7	N 0 % 0	N 35				
		농촌	N 12 % 66.7	N 4 % 22.2	N 2 % 11.1	N 0 % 0	N 18			농촌	N 0 % 0	N 0 % 0	N 1 % 100	N 0 % 0	N 1				
		공업단지	N 1 % 33.3	N 0 % 0	N 0 % 0	N 2 % 66.7	N 3			공업단지	N 0 % 0	N 0 % 0	N 0 % 0	N 0 % 0	N 0				
		소계	N 61 % 61.0	N 26 % 26.0	N 10 % 10.3	N 3 % 3.0	N 100			소계	N 73 % 73.0	N 17 % 17.0	N 9 % 9.0	N 1 % 1.0	N 100				
		소계	N 43 % 61.4	N 13 % 18.6	N 9 % 12.9	N 5 % 7.1	N 70			소계	N 68 % 82.9	N 6 % 7.3	N 8 % 9.8	N 0 % 0	N 82				
	미	성별	남	N 46 % 57.5	N 18 % 22.5	N 10 % 12.5	N 6 % 7.5	N 80	$X^2=0.39$ DF=3 P=0.9431	성별	남	N 82 % 74.6	N 7 % 5.1	N 9 % 19.5	N 0 % 0.8	N 100		$X^2=4.49$ DF=3 P=0.2134	$X^2=45.09$ DF=9 P=0.0000
			여	N 27 % 64.3	N 6 % 14.3	N 5 % 11.9	N 4 % 9.5	N 42			여	N 8 % 72.7	N 1 % 9.1	N 2 % 18.2	N 0 % 0	N 11			
		연령	10대	N 37 % 56.1	N 14 % 21.2	N 11 % 16.7	N 4 % 6.1	N 66	$X^2=11.09$ DF=12 P=0.5209	연령	10대	N 35 % 70.0	N 4 % 8.0	N 10 % 20.0	N 1 % 2.0	N 50		$X^2=6.11$ DF=12 P=0.9103	
			20대	N 11 % 55.0	N 6 % 30.0	N 0 % 0	N 3 % 15.0	N 20			20대	N 25 % 83.3	N 2 % 6.7	N 3 % 10.0	N 0 % 0	N 30			
30대			N 8 % 61.5	N 4 % 30.8	N 1 % 7.7	N 0 % 0	N 13	30대			N 55 % 82.1	N 3 % 4.5	N 9 % 13.4	N 0 % 0	N 67				
40대			N 6 % 66.7	N 1 % 11.1	N 2 % 22.2	N 0 % 0	N 9	40대			N 33 % 78.6	N 2 % 4.8	N 7 % 16.7	N 0 % 0	N 42				
50대			N 36 % 65.5	N 8 % 14.5	N 9 % 16.4	N 2 % 3.6	N 55	50대			N 132 % 76.7	N 10 % 5.8	N 29 % 16.9	N 1 % 0.6	N 172				
이상			N 44 % 53.7	N 20 % 24.4	N 9 % 11.0	N 9 % 11.0	N 82	이상			N 20 % 87.0	N 1 % 4.3	N 2 % 8.7	N 0 % 0	N 23				
거주지역별		대도시	N 1 % 50.0	N 0 % 0	N 1 % 50.0	N 0 % 0	N 2	$X^2=11.18$ DF=9 P=0.2635	거주지역별	대도시	N 3 % 75.0	N 1 % 25.0	N 0 % 0	N 0 % 0	N 4	$X^2=4.75$ DF=9 P=0.8556			
		소도시	N 8 % 72.7	N 3 % 27.3	N 0 % 0	N 0 % 0	N 11			소도시	N 1 % 100	N 0 % 0	N 0 % 0	N 0 % 0	N 1				
		농촌	N 8 % 59.3	N 3 % 20.7	N 0 % 12.7	N 0 % 7.3	N 11			농촌	N 156 % 78.0	N 12 % 6.0	N 31 % 15.5	N 1 % 0.5	N 200				
		공업단지	N 89 % 59.3	N 31 % 20.7	N 19 % 12.7	N 11 % 7.3	N 150			공업단지	N 1 % 100	N 0 % 0	N 0 % 0	N 0 % 0	N 1				
		소계	N 89 % 59.3	N 31 % 20.7	N 19 % 12.7	N 11 % 7.3	N 150			소계	N 156 % 78.0	N 12 % 6.0	N 31 % 15.5	N 1 % 0.5	N 200				
		소계	N 89 % 59.3	N 31 % 20.7	N 19 % 12.7	N 11 % 7.3	N 150			소계	N 156 % 78.0	N 12 % 6.0	N 31 % 15.5	N 1 % 0.5	N 200				

12. 경찰인력은 인구에 비례하여..

구 분		너무 많다	많은 편이다	적절 하다	모자 란다	너무 모자란다	계	집단간의 차이분석	국가간의 차이분석	
성 별	남	N	0	6	17	17	6	X ² =1.73 DF=3 P=0.6372		
		%	0	13.0	37.0	37.0	13.0			100
	여	N	0	7	11	26	7	X ² =11.40 DF=12 P=0.4953		
		%	0	13.0	25.9	48.1	13.0			100
영 향 별	10대	N	0	3	8	12	3	X ² =9.86 DF=9 P=0.3618		
		%	0	11.5	30.8	46.2	11.5			100
	20대	N	0	6	16	15	5			
		%	0	14.3	38.1	35.7	11.9			100
	30대	N	0	4	1	7	1			
		%	0	30.8	7.7	53.8	7.7			100
	40대	N	0	0	4	5	2			
		%	0	0	36.4	45.5	16.2			100
	50대	N	0	0	2	4	2			
		%	0	0	25.0	50.0	25.0			100
	이상	N	0	0	25.0	50.0	25.0			X ² =84.41 DF=12 P=0.000
		%	0	0	25.0	50.0	25.0			
국 거 주 지 역 별	대도시	N	0	8	13	15	6	X ² =21.91 DF=12 P=0.0517		
		%	0	17.4	28.3	41.3	13.0			100
	소도시	N	0	2	11	16	4			
		%	0	6.1	33.3	48.5	12.1			100
	농어촌	N	0	3	4	3	3			
		%	0	16.7	22.2	44.4	16.7		100	
	공업단지	N	0	0	3	0	0			
		%	0	0	100	0	0		100	
	소계		N	0	13	31	43		13	
			%	0	15.0	31.0	43.0		13.0	100
성 별	남	N	3	4	20	28	6	X ² =18.66 DF=16 P=0.2868		
		%	43	57	41.4	40.0	8.6		100	
	여	N	2	5	31	24	18			
		%	25	63	38.8	30.0	22.5	100		
미 영 향 별	10대	N	0	4	18	17	3	X ² =21.91 DF=12 P=0.0517		
		%	0	9.5	42.9	40.5	7.1		100	
	20대	N	4	4	25	23	10			
		%	6.1	6.1	37.9	34.8	15.2		100	
	30대	N	0	0	11	3	6			
		%	0	0	55.0	15.0	30.0		100	
	40대	N	0	1	4	5	3			
		%	0	7.7	30.8	38.5	23.1		100	
	50대	N	1	0	2	4	2			
		%	11.1	0	22.2	44.4	22.2		100	
	이상	N	1	4	17	19	14			
		%	18	7.3	30.9	34.5	25.5		100	
국 거 주 지 역 별	대도시	N	1	4	17	19	14	X ² =21.91 DF=12 P=0.0517		
		%	18	7.3	30.9	34.5	25.5		100	
	소도시	N	3	3	42	26	8			
		%	3.7	3.7	51.2	31.7	9.8		100	
	농어촌	N	0	0	0	2	0			
		%	0	0	0	100	0		100	
	공업단지	N	1	2	1	5	2			
		%	9.1	18.2	9.1	45.5	18.2		100	
	소계		N	5	9	60	52		24	
			%	3.3	6.0	40.0	34.7		16.0	100

연구보고서 97-20

주요국가간 경찰의 임무 및 치안상태의 비교연구

1998년 7월 일 인쇄
1998년 7월 일 발행

발행 : 이 규 식
편집 : 치안연구소
인쇄 : 대한문화사
